202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I)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기 획 재 정 위 원 회

❖ 기획재정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8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1

【총 괄】 ····· 11

1.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상한 준수 및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필요 ····· 11
2.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중' 보고 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조치 및 후속 처리결과 보고 필요 ····· 18

【일반회계】 ····· 23

<세 출> ····· 23

3.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예비비의 불용 과다 부적절 ····· 23
4. 국고업무관리 사업: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 26

5.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 기금 이월명세서의 국회 제출 필요 ····· 31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재정데이터분석센터 및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이용실적 저조 ····· 33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보조사업 정보공시대상 확대 및 국회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검토 필요 ····· 38

【대외경제협력기금】 ····· 42

<수 입> ····· 42

8. 정부출자주식매각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래탄소펀드 출자 손실 발생 · 42

<지 출> ····· 45

9. 대개도국차관(ODA) 사업: 과도한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 잔액을 활용한 프로그램차관 초과집행 지양 ····· 45
10.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연례적인 이월 개선과 낙찰차액의 불용 원칙 준수 필요 ····· 49

【국유재산관리기금】 ····· 53

<총 괄> ····· 53

11.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 연례적인 집행부진 개선 필요 ····· 53

【기후대응기금】 ····· 58

<총 괄> ····· 58

12. 재원 없는 이월 부적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부실 작성 시정 필요58

<수 입> ····· 63

13. 기타경상이전수입(환경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 저조 ····· 63

<지 출> ····· 66

14.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기금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및 성과관리 부적정 ····· 66

15. 국제감축 시범사업(산업통상자원부):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반영 및 교부 필요 ····· 71
16. 공공열분해시설 설치(환경부): 철저한 사업계획 사전 수립 필요 ····· 74
17. 노동전환지원금(고용노동부): 빈번한 사업 내용 변경 및 지원계획 승인 기준 개선 필요 ····· 77

【복권기금】 ····· 81

<수 입> ····· 81

18. 기타경상이전수입: 연례적 보조금 잔액 반납지연 개선 필요 ····· 81

<지 출> ····· 84

19.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84

【외국환평형기금】 ····· 88

<수 입> ····· 88

20. 국공채수입: 외평채 발행여건 등 면밀히 고려한 계획액 편성 필요 ····· 88

<지 출> ····· 91

21.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한도 초과한 조기상환 문제 ····· 91

❖ 국세청 ····· 96

Ⅰ. 개 관 ····· 96

1. 결산 개요 ····· 96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99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9

Ⅱ. 사업별 검토 ····· 100

<총 괄> ····· 100

1. 특정업무경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왜곡 이행 부적정 등 ····· 100

【일반회계】 ····· 103

<세 출> ····· 103

2.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예산상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전용 부적정 ····· 103

3. 승소장려금: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 지급 부적정 ····· 105

4. 기관운영 기본경비: 공사비 낙찰차액의 임의 사용 부적정 ····· 108

5. 부과·징수 지원 사업: 연례적인 이·전용(감) 개선 필요 ····· 110

❖ 관세청 ····· 113

Ⅰ. 개 관 ····· 113

1. 결산 개요 ····· 11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16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6

Ⅱ. 사업별 검토 ····· 117

【일반회계】 ····· 117

<세 입> ····· 117

1.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징수실적의 제고 필요 ····· 117

2.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결손 요인의 최소화 필요 ····· 120

<세 출> ····· 122

3. 청사시설관리 사업: 공사비 낙찰차액의 임의 사용 및 수의계약 부적정 ···· 122

4. K-Customs Week 개최 사업(신규): 예산 전용 등 절차 미준수 ····· 126

❖ 조달청 ·····128

Ⅰ. 개 관 ····· 128

1. 결산 개요 ····· 12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32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3

Ⅱ. 사업별 검토 ····· 134

【총 괄】 ·····134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환류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34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139

<세 입> ····· 139

2. 기타영업외잡수익 등: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주요 세입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139

3. 전년도세계잉여금: 연례적 과소계상에 따른 조달특별회계 내 여유재원 과다보유 문제 ····· 144

<세 출> ····· 147

4.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신규): R&D 과제 전문기관의 역량 제고 및 기획평가관리비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147

5.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자체전용을 통한 신규 용역 추진 부적정 ····· 150

6.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 연례적 세목조정 최소화 및 세목조정 전 지출행위 지양 필요 등 ····· 153
7.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기존 계약 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 156
8.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및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종료) 사업: 내역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지 않은 용역업무 재위탁 부적정 ····· 160

【조달특별회계(자본계정)】 ····· 164

<세 출> ····· 164

9.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164

❖ 통계청 ····· 169

Ⅰ. 개 관 ····· 169

1. 결산 개요 ····· 16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73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74

Ⅱ. 사업별 검토 ····· 175

【총 괄】 ····· 175

1. 민간위탁사업비: 수의 계약을 통한 특정 기관과의 장기간 업무위탁 부적정 등 ·· 175

【일반회계】 ····· 181

<세 출> ····· 181

2. 비대면조사 사업: 비대면조사팀 신설 후 단기간 내에 기능이 조정되는 등 비효율 발생 ····· 181
3.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85

4. 시험조사 사업: 응답률 하락 및 조사요원 중도포기율 증가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88
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조사명부 작성 방식 개선 및 시험조사 실시 시기 조정 필요 ····· 191

교 육 위 원 회

❖ 교육부 ····· 197

Ⅰ. 개 관 ····· 197

1. 결산 개요 ····· 19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02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03
4.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업 현황 ····· 204

Ⅱ. 사업별 검토 ····· 205

【일반회계】 ····· 205

<세 입> ····· 205

1. 면허료 및 수수료: 연례적인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과소편성 및 세출예산 초과지출 승인 ····· 205

<세 출> ····· 208

2. 교육급여 사업: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률 제고 필요 및 바우처 신청 과정 통합 필요 ····· 208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 자체수입 확보 내실화 필요 등 ····· 213

4.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법률상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 ····· 217
5.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집행가능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지연 방지 필요 등 ····· 223
6.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재단채 조달비용 절감방안 필요 등 ····· 227
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의 학업수료에 대한 관리 필요 등 ····· 232
8.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보조사업 추가지연 방지 필요 ····· 237
9. 교원해외진출 사업: 해외 교원파견 계획 대비 실적 저조 ····· 240
10. 한국어능력시험개선 사업: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 지연 ····· 243
11.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고교생 현장실습 지원금 집행부진 ····· 247
12.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계획대비 교육인원 실적 저조 ····· 2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254

<세 출> ····· 254

13.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등 ····· 2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59

<세 출> ····· 259

14.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종료): 대학인권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관리 필요 ····· 259
15.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사업 취소 부적정 ····· 263
16.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사업성과 제고 필요 등 ····· 265
17.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 예산 집행구조 개선 필요 등 ····· 275

18.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연차별 최소투자비율 준수 필요 ····· 279
19.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예산 적기 교부와 글로컬대학 성과검증을 통한 인센티브 교부 필요 ····· 284
20.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연례적인 사업순연 문제 ····· 290
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292
22.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동물실험실 구축사업 추진 지연 및 실험실습기자재 장비 활용실적 저조 등 ····· 297
23.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실집행저조 문제 개선 필요 ····· 304
24.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및 공공임상교수제 모집정원 미달 문제 등 ····· 309
25. 매치업 운영 사업: 학습과정 이수율 제고 방안 필요 등 ····· 314
26.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전문기술석사과정 활성화 및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내실화 필요 ····· 318

【사학진흥기금】 ····· 323

<수 입> ····· 323

27.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수납실적 제고 필요 ····· 323

<지 출> ····· 327

28.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융자실적 저조 ····· 32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330

<지 출> ····· 330

29.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집행 부적정 ····· 330

❖ 국가교육위원회 ·····333

Ⅰ. 개 관 ····· 333

1. 결산 개요 ····· 33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36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36

Ⅱ. 사업별 검토 ····· 337

【일반회계】 ·····337

<세 출> ····· 337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연 등 … 33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5

Ⅰ. 개 관 ····· 345

1. 결산 개요 ····· 34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52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53
4.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355

Ⅱ. 사업별 검토 ····· 358

【총 괄】 ·····358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호의 발생이자 사용규정 개정 필요 ····· 358
2.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미수납문제 개선 필요 ····· 361
3.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및 미정산·미반납 과제의 면밀한 관리 필요 ·· 364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실적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등 기술료 수입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 367

【일반회계】 ·····371

<세 입> ····· 371

5. 과징금: 연례적으로 저조한 수납률 개선 필요 ····· 371

<세 출> ····· 374

6. 집단연구지원(R&D) 사업: 연구비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시 등록 및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등 방지 필요 ····· 374
7.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379
8.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사업: 슈퍼컴퓨터 시스템 도입의 추가지연 방지 및 발생이자 국고반납 필요 ····· 382
9.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R&D) 사업: 연구비 집행내역의 Ezbaro 적시 등록 및 글로벌 R&D의 조기 계획수립 필요 ····· 386
10.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사업: 과제공고 또는 해외국가와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연구과제 집행부진 ····· 391
11.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사업: 해외기관과의 조기 계획수립을 통한 보다 철저한 글로벌 R&D 과제 수행 필요 ····· 396
12.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지연으로 인한 이월금 과다 및 발생이자의 국고반납 필요 ····· 400
13.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404

14.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종료과제의 신속한 정산 및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필요 ····· 40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411

<세 출> ····· 411

15.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사업: 연구수행기관의 사업집행현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411

16.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R&D) 사업: 스마트시티 랩 및 인프라 구축의 추가적인 지연 방지 필요 ····· 4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417

<세 출> ····· 417

17.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및 추가지연 방지 필요 ····· 417

【우편사업특별회계】 ····· 420

<세 출> ····· 420

18. 우체국 건립 사업: 일부 우체국 건립사업 집행부진 ····· 42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424

<세 출> ····· 424

19.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추가 사업지연 방지 필요 ····· 424

【과학기술진흥기금】 ····· 427

<수 입> ····· 427

20. 기타경상이전수입: 기술료 제도 변화를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계획현액 편성 필요 ····· 427

【정보통신진흥기금】 ·····430

<수 입> ····· 430

21. 법정부담금: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입 계획액 편성 필요 430

22. 기타민간차입금: 연중 계획변경을 통한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의 적정성 검토 ····· 433

<지 출> ····· 437

23.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활용도가 저조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이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437

24. 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 및 사업범위 축소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41

25.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종료과제의 신속한 정산 및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필요 ····· 448

【방송통신발전기금】 ·····451

<지 출> ····· 451

26.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정보화): 종료과제의 신속한 정산 및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필요 ····· 45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 ·····455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기술료 집행 법정비율 타당성 검토 필요 ····· 455

28. 미납된 기술료의 징수대안 마련 필요 ····· 459

29.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용도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경상경비 등 부적정한 집행 문제 ····· 463

30. 국회 의결 예산액 대비 수권 상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 469

31.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설사업 집행부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473
3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임차 공유지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477

❖ 방송통신위원회 ····· 481

Ⅰ. 개 관 ····· 481

1. 결산 개요 ····· 48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85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86

Ⅱ. 사업별 검토 ····· 487

【총 괄】 ····· 487

1. 보조사업 총괄: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절차 준수 필요 ····· 487

【일반회계】 ····· 493

<세 입> ····· 493

2.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세입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 493

<세 출> ····· 496

3.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후 교부할 필요 ····· 496
4.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 통신분쟁조정 결정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499
5.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개선권고 대비 실제 개선조치 비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503

【방송통신발전기금】 ·····506

<지 출> ····· 506

6.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ISP 수립 없이 정보화사업 추진 부적정 및 공개된 AI 데이터 적극 활용 필요 ····· 506

❖ 원자력안전위원회 ·····514

Ⅰ. 개 관 ····· 514

1. 결산 개요 ····· 514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518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19

Ⅱ. 사업별 검토 ····· 520

【일반회계】 ·····520

<세 입> ·····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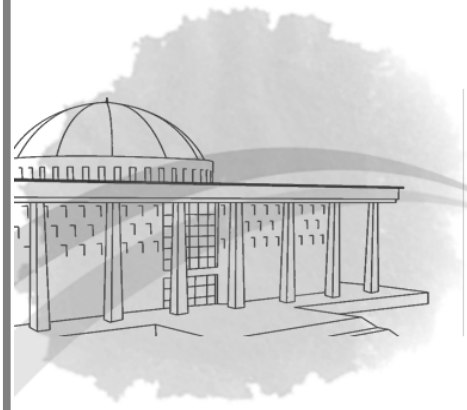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구분 계상 필요 ····· 520

<세 출> ····· 523

2.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 조치결과 연기 시 안전지침 준수 필요 ····· 523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연구개발과제 관리 방안 개선 필요 ····· 52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5조 5,694억 9,300만원(13.7%)이 적은 350조 2,910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조 5,963억 7,500만원(13.7%)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1,648,220	397,185,125	396,156,669	△1,028,456	395,882,017	395,882,017	340,347,348	△55,534,669	△55,809,321
기 금	9,525,912	9,525,912	9,730,712	204,800	9,978,482	9,978,482	9,943,658	△34,824	212,946
총수입	351,174,132	406,711,037	405,887,381	△823,656	405,860,499	405,860,499	350,291,006	△55,569,493	△55,596,375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조 5,861억 3,300만원(13.4%)이 적은 29조 7,507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2,637억 300만원(16.7%)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503,689	6,100,237	1,235,183	△4,865,054	5,169,894	5,169,894	1,152,660	△4,017,234	△82,523
기 금	25,121,241	24,827,698	24,251,858	△575,840	29,199,916	29,166,982	28,598,083	△568,899	4,346,225
총지출	29,624,930	30,927,935	25,487,040	△5,440,895	34,369,810	34,336,876	29,750,743	△4,586,133	4,263,703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49조 8,683억 2,900만원으로, 476조 1,012억 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09조 8,382억 3,0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1%)되고 2조 2,835억 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63조 9,794억 7,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38,715,378	438,715,378	-	438,715,378	464,215,228	397,952,253	2,283,503	63,979,47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152,951	11,152,951	-	11,152,951	11,885,978	11,885,978	-	-
- 지역자율계정	2,274,874	2,274,874	-	2,274,874	2,698,495	2,698,495	-	-
- 지역지원계정	8,547,042	8,547,042	-	8,547,042	8,840,498	8,840,498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74,064	274,064	-	274,064	280,017	280,017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6,971	56,971	-	56,971	66,968	66,968	-	-
합 계	449,868,329	449,868,329	-	449,868,329	476,101,206	409,838,230	2,283,503	63,979,473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6조 3,210억 7,900만원으로, 이 중 13조 9,202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2.9%)되고 38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조 3,970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6,852,966	26,852,966	14,774	-	△730,669	26,137,071	13,736,197	3,864	12,397,0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4,008	184,008	-	-	-	184,008	184,008	-	-
- 지역자율계정	184,008	184,008	-	-	-	184,008	184,008	-	-
- 지역지원계정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	-	-
합 계	27,036,974	27,036,974	14,774	-	△730,669	26,321,079	13,920,205	3,864	12,397,01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465조 834억 8,800만원으로, 876조 1,975억 6,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67조 4,048억 1,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0%)되고 8조 7,927억 5,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284,694,615	299,280,361	627,362,411	619,505,915	-	7,856,496
국유재산관리기금	2,580,994	2,582,894	6,281,248	5,419,725	-	861,523
기후대응기금	2,486,723	2,299,158	12,842,738	12,832,477	-	10,260
대외경제협력기금	1,621,131	1,621,131	3,282,051	3,218,936	-	63,115
복권기금	7,819,368	7,909,785	7,874,222	7,872,865	-	1,35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70,138	770,138	624,164	624,164	-	-
외국환평형기금	136,287,466	150,620,021	217,930,728	217,930,728	-	-
합 계	436,260,435	465,083,488	876,197,561	867,404,810	-	8,792,75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465조 3,669억 6,200만원으로, 이 중 437조 6,540억 8,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4.0%)되고 2,324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조 3,535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공자금관리기금	284,694,615	299,280,361	-	299,280,361	285,412,915	-	12,158,874
국유재산관리기금	2,580,994	2,582,894	196,531	2,779,425	2,682,940	158,142	73,969
기후대응기금	2,486,723	2,299,158	69,429	2,368,588	2,226,698	59,949	97,803
대외경제협력기금	1,621,131	1,621,131	17,514	1,638,645	1,515,114	14,398	119,843
복권기금	7,819,368	7,909,785	-	7,909,785	7,872,865	-	128,63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70,138	770,138	-	770,138	624,164	-	20,848
외국환평형기금	136,287,466	150,620,021		150,620,021	137,319,387	-	753,592
합 계	436,260,435	465,083,488	283,474	465,366,962	437,654,083	232,489	13,353,56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 자산은 전년 대비 12조 8,911억 6,500만원이 증가한 502조 7,732억 8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14조 3,371억 5,900만원, 1,500억 5,900만원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27조 4,527억 7,2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1조 4,424억 7,400만원 증가한 1,032조 4,309억 9,4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의 53조 1,343억 5,3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8조 5,513억 900만원 감소한 △529조 6,577억 8,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8조 7,54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조 1,578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6조 9,163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518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02,773,208	489,882,043	12,891,165	2.6
		유동자산	115,660,384	129,997,543	△14,337,159	△11.0
		투자자산	352,278,976	324,826,204	27,452,772	8.5
		일반유형자산	34,343,669	34,493,728	△150,059	△0.4
		무형자산	82,687	104,020	△21,333	△20.5
		기타비유동자산	407,492	460,549	△53,057	△11.5
	부 채		1,032,430,994	980,988,520	51,442,474	5.2
		유동부채	120,420,215	122,152,775	△1,732,560	△1.4
		장기차입부채	910,400,030	857,265,677	53,134,353	6.2
		장기충당부채	75,218	78,152	△2,934	△3.8
		기타비유동부채	1,535,530	1,491,915	43,615	2.9
	순자산		△529,657,786	△491,106,477	△38,551,309	△7.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8,754,708	12,596,873	6,157,835	48.9
	재정운영순원가		14,765,608	9,020,109	5,745,499	63.7
	재정운영결과		16,916,347	11,164,449	5,751,898	51.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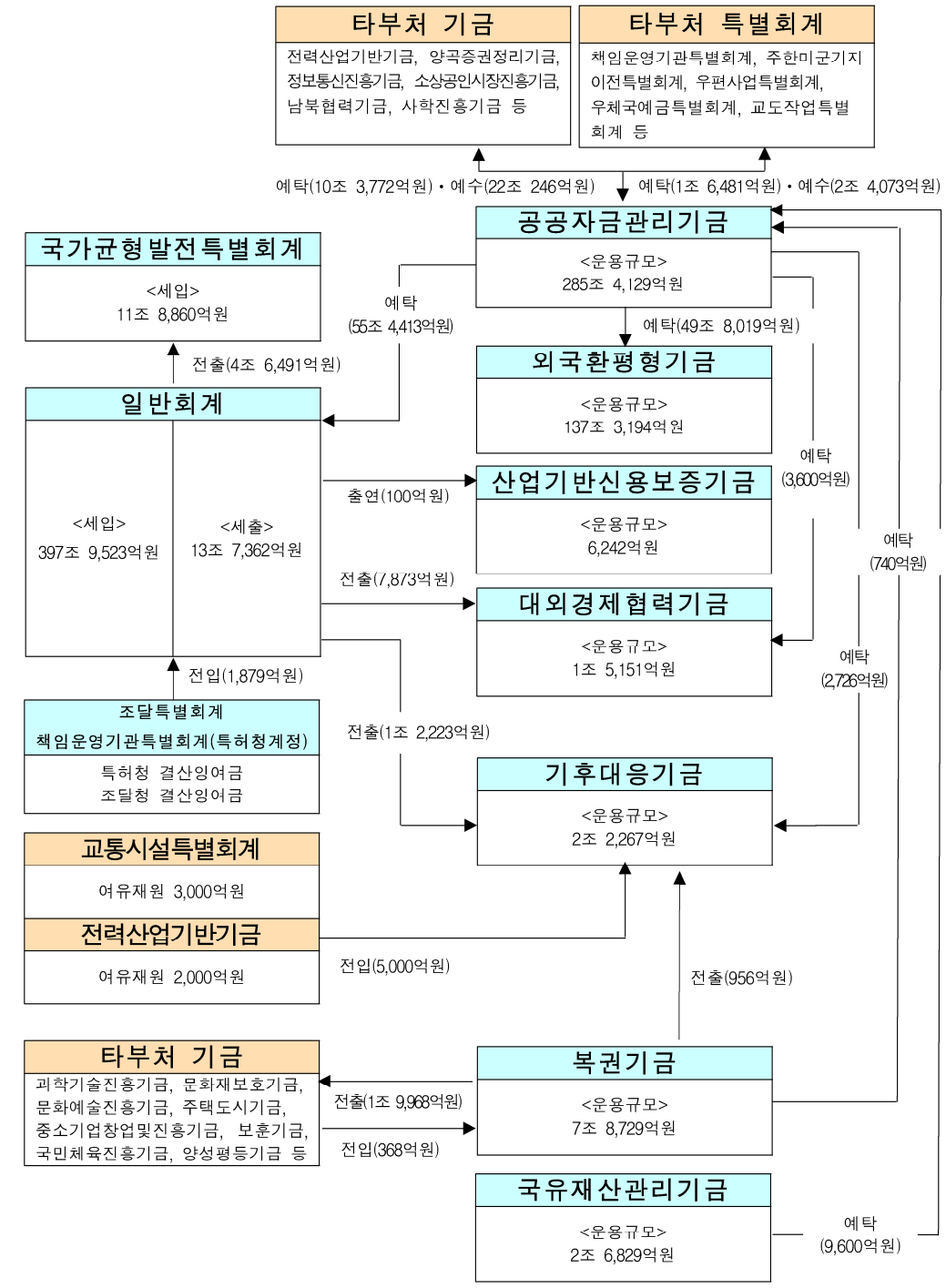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4조 6,491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2,223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7,873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00억원 각각 전출하였고, 조달특별회계에서 1,40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474억원을 일반회계로 각각 전출하였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55조 4,413억원을 예탁하였음.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49조 8,019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에 3,600억원, 기후대응기금에 2,726억원을 각각 예탁하였고, 복권기금으로부터 74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9,600억원을 예탁받았으며, 복권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956억원 전출하였음.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타부처 기금에 10조 3,772억원 예탁하고 22조 246억원을 예수하였으며,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1조 6,481억원을 예탁하고 2조 4,073억원 예수하였음. 또한 복권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 1조 9,968억을 전출하였고, 368억원을 전입받았으며, 기후대응기금은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 및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2,000억원을 각각 전입받았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조세정책의 수립·추진,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재정제도 혁신 및 집행관리, 국고의 관리·운영, 공공기관 관련 정책 기획·조정, 복권정책 기획·집행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기획재정부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중'으로 보고한 건 중 일부는 과거에도 '조치중'으로 보고된 것임에도 현재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이행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조치중'인 건에 대한 후속보고절차가 없어 결산 시정요구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는 조치미완료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조치결과를 후속보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고 있어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연례적으로 세부사업 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에서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차관을 대규모로 초과집행하는 등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내용과 집행결과 간 차이가 큰 상황이므로, 사업 간 과도한 계획변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가 크고 상당수 프로그램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부지 확보 여부, 사전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 사업별 집행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상한 준수 및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2]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으로 전망되며,[3] 2024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1조원으로 2023년 전망치 대비 7.6조원 증가하고, 주요 증가항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3.6조원), 근로·자녀장려금(+0.9조원), 연금계좌세액공제(+0.2조원)가 있음.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3년 확정적인 국세감면액은 2024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연도별 국세감면율 추이(2022~2024)]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잠정	2024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63.5	69.5[1)]	77.1
○ 국세수입총액[2)] (B)	422.9	369.1	394.9
○ 국세감면율 [A/(A+B)]	13.0	15.8[1)]	16.3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3)]	14.6	14.3	14.6

주1) 2023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은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작성한 2023년 전망치이며, 2024년 8월에 2023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이 확정될 예정임

2)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4.3.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4)]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5)]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최근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2년 실적은 13.0%이고 2023년과 2024년 전망치는 각각 15.8%, 2024년 16.3%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출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를 1.5%p, 2024년에도 법정한도 잠정치인 14.6%를 1.7%p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6)]

---

4)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6)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2021~202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도출되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2024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확정치도 8월에 도출될 예정임.

2018년 이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2019년과 2020년도 있으며, 2019년에는 법정상한 13.3%를 0.6%p 상회한 13.9%, 2020년에는 법정한도 13.6%보다 1.2%p 높은 14.8%를 기록하였음. 당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긴 하였으나 2023년 잠정치 15.8%, 2024년 전망치 16.3%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세감면율이 15.0%를 상회하는 것은 2023년이 처음인 상황임.

[2018년 이후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수입액 실적과 전망치]

(단위: 억원, %)

구 분	2018실적	2019실적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잠정	2024전망
조세지출규모	439,533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4,988	771,144
국세수입액	2,935,704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690,578[1)]	3,949,465
국세감면율	13.0	13.9	14.8	13.5	13.0	15.8	16.3
법정상한	14.0	13.3	13.6	14.3	14.6	14.3	14.6

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른 금액으로 2024년 3월 기준 잠정치에 해당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에는 당초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총액이 428.6조원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14.3%보다 낮은 13.9%로 전망하였으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모수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한 것인 반면, 2024년에는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2022년 대비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 규모를 크게 늘려 법정한도를 의도적으로 초과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

「국가재정법」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규정한 취지는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법정한도 설정을 통해 국세감면액을 적정 규모로 제한하려는 것임.

최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크게 늘렸던 2022년보다 2023년에 재정수지가 개선되긴 하였으나, 2023년 예산 대비 결산 기준 재정수지는 총수입 감소에 따라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 기준으로 총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을 증가시킴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3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도 2022년 1,067.4조원, 2023년 1,126.7조원, 2024년 예산 기준 1,195.8조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7)]

7) 참고로, 2023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가 계획 대비 각각 저조하여 국가채무가 예산 기준보다 감소하였음.

[최근 3회계연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예산	결산	
총수입(A)	617.8	625.7	573.9	612.2
총지출(B)	682.4	638.7	610.7	656.6
통합재정수지(A-B)	△64.6	△13.1	△36.8	△44.4
GDP 대비 %	△3.0	△0.6	△1.6	△1.9
관리재정수지	△117.0	△58.2	△87.0	△91.6
GDP 대비 %	△5.4	△2.6	△3.9	△3.9
국가채무	1,067.4	1,134.4	1,126.7	1,195.8
GDP 대비 %	49.4	50.4	50.4	51.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2회계연도 연속으로 초과하는 것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규정한 취지,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8]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현황을 보면, 실시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이고, 면제건수는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7건, 2023년 6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건수가 실시건수보다 많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면제 비율이 각각 87.5%, 85.7%로 나타나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2018년 이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비타당성평가대상(A)	10	5	5	4	8	7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2	3	1	1	1
예비타당성평가 면제(B)	9	3	2	3	7	6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제1호					
면제 비율(B/A)	90.0	60.0	40.0	75.0	87.5	85.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은 6건 중 4건이 “타당성 낮음”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정도로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도입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건의 대부분에 대해 평가를 면제한 후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매년 2건씩 실시하는 것으로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1건씩만 실시하였음.

[2020~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연도	과제명	수행기관	평가기간	평가결과
2020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2.~2020.9.	타당성 낮음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한국개발연구원	2020.2.~2020.9.	타당성 낮음
2020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2.~2020.9.	일부 도입 타당
2021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2.~2021.9.	도입 타당
2022	선박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한국개발연구원	2022.1.~2022.9.	타당성 낮음
2023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2023.1.~2023.9.	타당성 낮음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에 규정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는 ⅰ)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제1호), ⅱ)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제2호), ⅲ)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3호), ⅳ)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제4호)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면제사유 중 제1호가 추상적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1호에 따른 면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건은 모두 제1호가 적용되었음.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용 및 사유]

조세특례 항목	내용	면제 사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대 · 중견기업 7%p↑, 중소기업 9%p↑)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대응 (조특법 § 142⑤1)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 · 원천기술의 공제율 상향(일반 2%p↑, 신성장 · 원천 3~6%p↑),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 상향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조특법 § 142⑤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연간 4,000만원 → 연간 7,000만원), 최대지급액 인상(80만원 → 100만원)	출산 ·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심화에 대응 (조특법 § 142⑤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023년 4월~12월 동안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10%p↑)	소상공인 지원 및 장기 소비위축 대응 (조특법 § 142⑤1)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2024년 말까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0%p 상향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소득격차 확대 등 대응 (조특법 § 142⑤1)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면세 공급에서 과세로 전환 후 납부한 부가세 사후 환급	물가인상 우려 등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조특법 § 142⑤1)

자료: 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법률안 의결 전에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제도개선)을 의결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자체평가하여 법률안 의결 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완료(2021.11.17.)”한 것으로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도 2023년까지 매년 예비타당성평가를 대부분 면제한 채 1회씩만 실시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9)]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비타당성평가를 2건 수행하는 등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2023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조세특례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준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시정요구 목적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의 최소화에 있는 것임에도 예비타당성평가를 대부분 면제하고,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시정요구를 준수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특히,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1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역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 적용 등을 통해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9)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세감면 제도 도입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차년도 예산안 제출시 세입예산안에는 반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신규 조세특례의 내역과 면제 사유를 첨부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 의결되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조특법상 면제요건·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

10)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향(비상경제장관회의, 2022.9.)의 주요 내용은 ⅰ)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 ⅱ)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실시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이 불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중' 보고 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조치 및 후속 처리결과 보고 필요

가. 개 요

「국회법」 제84조제2항[11]에 따라 정부는 국회 결산 심의결과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1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와 4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후속조치결과를 각각 제출하고 있음.[12]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시정요구 71건(중복 4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8건・주의 25건・제도개선 42건이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시정요구사항 71건에 대해 5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3.1%)하고 1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8	21	41	3	67
예비비	-	-	-	4	1	1	4
합계	-	-	8	25	42	4	71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7	56	83.6	11
예비비	4	3	75.0	1
합계	71	59	83.1	12

11)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후속조치결과는 통상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시한인 5월 말에 제출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중’으로 보고한 건 중 일부는 과거에도 ‘조치중’으로 보고된 것임에도 현재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이행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조치중’인 건에 대한 후속보고절차가 없어 결산 시정요구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는 ‘조치중’인 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조치결과를 후속보고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조치중’으로 보고한 건 중 일부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지적되었고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치중’으로 보고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국고금 운용 수익금 세입이입기준 마련에 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조치중)
(16) 국고금 누적운용 수익금 세입 이입 등 처리기준 마련 필요	ㅇ [지적사항]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은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25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ㅇ 이는 자금조달비용을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은 2022년말 기준 3,287억원에 이르고 있음 ㅇ 국고금 운용수익금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국고금 수익금의 자의적 운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비용에 납입하고도 충분하다면 국고에 이입되는 것이 바람직 -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 결과 국회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에 대하여 법령상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이를 미이행 ㅇ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처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ㅇ 국고금관리법 제34조*에 근거, 국고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세입·세출외로 운용)으로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 이자비용 지급에 활용 중 *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제②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등 2. 그밖의 국고금 운용 관련 경비 지급 ㅇ **누적 운용수익금의 세입이입 여부 및 그 규모 등은 차년도 일시차입 소요 및 이자비용·운용수익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 구체적인 세입이입 기준에 대한 지침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ㅇ 조치기한 : 2024년 12월 31일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등 처리기준 마련 필요”를 보면,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처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누적 운용수익금의 세입이입 여부 및 그 규모 등은 차년도 일시차입 소요 및 이자비용·운용수익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세입이입 기준에 대한 지침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이라며 ‘조치중’으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이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기준을 마련하고, 차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통합계좌에 유보시킨 여유자금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으로 의결되었던 것으로, 당시 기획재정부는 “…운용수익금 소요 발생 관련 세부상황 검토 선행 후 동 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적정 세입이입 기준 마련 추진”이라며 ‘조치중’으로 보고하였음에도 이후 2024년 6월 현재까지 실질적인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임.

[국고금 운용 수익금 세입이입기준 마련에 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조치중)
(49)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법령상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기준 마련 필요	ㅇ [지적사항]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국고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운용수익금으로 이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으로 이를 상환함 ㅇ 그러나 이러한 국고금 운용수익금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이 내부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 ㅇ 또한, 기획재정부는 차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국고금 운용수익금과 일시차입 이자상환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 외로 통합계좌에 유보해 운용할 계획이나, 이를 세출사업에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정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재검토 필요 ㅇ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기준을 마련하고, 차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통합계좌에 유보시킨 여유자금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ㅇ 매년 발생 이자비용, 이자비용 충당 구조 등 운용수익금 소요 발생 관련 세부상황 검토 선행 예정 - 동 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적정 세입이입 기준 마련 추진 *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병행 ㅇ 조치기한 : 2022년 12월 31일

또한 기획재정부가 ‘조치중’으로 보고한 건 중 “결산보고서 작성 기간을 줄여 예산심의 기간 확대 필요”를 보면,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절대적 시간이 소요되며 디지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 “일선 관서는 현재도 출납정리, 세입세출마감, 결산보고서 통합절차 등 작업시 시간 부족으로 오류 발생함을 호소” 등을 기재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단축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단축하는 경우 여러 우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국가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 관련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조치중)
(6) 결산보고서 작성 기간을 줄여 예산심의 기간 확대 필요	ㅇ [지적사항]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을 현행 5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1개월 줄이고, 해당 기간만큼 예산심의 기간을 늘려 내실 있는 정부 예산 편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앙관서 결산서 작성 13일 단축 -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및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제출 총 17일 단축 -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5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단축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개정 사항 ㅇ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 필요함 ㅇ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ㅇ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 ㅇ 다만, 결산보고서 작성은 단계적 절차별로 일일이 입력하는데 절대적 시간이 소요되며 디지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 ㅇ 일선 관서는 현재도 출납정리, 세입세출마감, 결산보고서 통합절차 등 작업시 시간 부족으로 오류 발생함을 호소 ㅇ 한편, 디브레인으로 기재부 결산보고서 3개월 단축 효과 기발생(9.3→5.31, ‘07년 국가재정법) ㅇ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결산이 추가되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 완료 후에 재무제표 작성 등에 더 많은 시간 필요 *기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외에 2025회계연도부터는 현금흐름표 추가 - 업무량·작성 기간 증가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높아짐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매년 재무결산 오류 지적 발생 ㅇ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회 변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회에서 추가 결산서 작성·제출 요구가 증가중인 상황도 고려 필요 *2010년 성인지 결산서 추가, 2023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추가 ㅇ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결산일정은 기간이 짧은 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기한을 단축하라는 시정요구(안)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상임위 또는 예결위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며, 그럼에도 국회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되었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치결과만을 보면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특히, 「국회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회 결산 심의결과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중'으로 보고한 경우 정부는 그 자체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건의 이후 처리결과를 후속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회법」의 취지가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예시와 같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치중'으로 보고한 후 실질적인 이행조치 및 후속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사실상 이행되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시정요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조치중'으로 보고한 건에 대해 이행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가결산보고서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총괄적으로 작성하는 부처로서 향후 예산안 또는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거 '조치중'으로 보고된 건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3.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예비비의 불용 과다 부적절

가. 개 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은 2023년 2월에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에 따라 신설된 조세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13억 8,7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이 중 1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되고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3년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	-	-	-	1,387	1,387	119	50	1,218	736

나. 검토의견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은 연구용역 지연에 따른 후속절차 순연에 따라 예비비 배정액의 87.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를 결정하고, 연구용역 기간을 현실성 있게 설정하는 등 예비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조세개혁의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14]에 따라 추진단은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조세제도 개편의

13) 일반회계-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조세개혁추진단)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조세제도 개편 관련 홍보 및 여론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함.[15)]

기획재정부는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24일에 예비비를 13억 8,700만원 배정하였으며, 예비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7억 9,200만원, 정책연구비 2억원, 일반용역비 1억 3,500만원, 일반연구비 1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2023년도 조세개혁추진단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	-	1,387	1,387	119	50	1,218	736
일용임금	-	-	34	34	-	-	34	34
일반수용비	-	-	792	792	21	-	771	771
특근매식비	-	-	9	9	2	-	7	7
임차료	-	-	3	3	2	-	1	1
일반용역비	-	-	135	135	-	-	135	135
기타운영비	-	-	5	5	4	-	1	1
국내여비	-	-	13	18	15	-	3	3
국외업무여비	-	-	53	47	-	-	47	53
사업추진비	-	-	23	23	14	-	10	23
관서업무추진비	-	-	14	14	14	-	-	14
일반연구비	-	-	100	100	-	-	100	150
정책연구비	-	-	200	200	47	50	103	100
보험금	-	-	7	7	-	-	7	-
고용부담금	-	-	-	-	-	-	-	7

자료: 기획재정부

14)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② 추진단은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2.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에 필요한 법 · 제도 개선
3. 조세제도 개편 관련 홍보 및 여론 수렴
4. 조세제도 개편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 · 분석
5. 조세제도 개편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6. 그 밖에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이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제도 개편이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이 있음.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③ 제2항에서 "조세제도 개편"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개편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 제고
4. 그 밖에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당초 추진단은 유산취득세 전환[16]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등을 위한 홍보, 여론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이 지연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홍보 및 여론조사 등 후속조치를 착수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예비비 배정액 13억 8,700만원 중 1억 1,900만원 집행에 그쳤으며 예비비 배정액의 87.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조세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예비비 배정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지연되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배정된 예비비의 87.8%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를 결정하고, 연구용역 기간을 현실성 있게 설정하는 등 예비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6)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이후 유지되어 온 상속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으로서, 각국의 상속세제가 법제나 문화·관습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하여 왔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주요 국가가 독일, 프랑스 등 비영어권이어서 영어권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문헌자료 수집·분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연구용역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기간을 7개월(2022.10~2023.5)로 설정하였고, 연구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2023.9월까지 1차 연장, 2023.12월까지 2차 연장하여, 공청회 개최, 홍보 및 여론조사 실시 등 후속절차는 2024년에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4. 국고업무관리 사업: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고업무관리’ 사업은 공공기관 결산, 출자·배당정책 지원 등 국고업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 300만원 중 4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1%)되고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3년도 국고업무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고업무관리	516	516	-	△13	503	418	-	85	365

나. 검토의견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다음연도 결산에서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제60조[18)]에 따르면 정부는 ①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②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음.

---

17) 일반회계-국고업무관리(2233-302)(국고국)

18)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3년에 정부는 총 2조 8,228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였으며,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 각각 유가증권 2조원과 유가증권 4,350억원을 출자하였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SR에 각각 건물 288억원과 유가증권 3,590억원을 출자하였음.[19)]

[2023회계연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소관 부처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액			
		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합 계		28,228	-	288	27,940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20,000	-	-	20,000
	한국산업은행	4,350	-	-	4,350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288	-	288	-
	㈜ SR	3,590	-		3,590

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유재산법」 제61조[20)]에 따르면, 현물출자는 ①정부출자기업체가 주무기관의 장에게 현물출자를 신청, ②주무기관의 장이 현물출자 적정성 검토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물출자 요청, ③기획재정부장관이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21)]에 따라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정부는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9호에

19) 2024년에도 6월까지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유가증권 4조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각각 유가증권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였음.

20) 「국유재산법」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물출자는 지분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출자대상이 현물인 점 외에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에도 국회의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현물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국유재산 처분업무보다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와 유사한 교환·양여·매각 등 국유재산의 처분은 정부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22)]

그러나 현물출자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회가 현물출자에 대해 사후 확인하는 역할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22)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일본은 총무대신이 현물출자를 승인하고, 독일은 현물출자 후 국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있어 현물출자 제도가 있는 세계 주요국가에서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현물출자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개별법에 현물출자 근거를 둔 일본, 독일과 달리 일반법에 근거하여 정부출자기업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현물출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 2021.6.).

[2018년 이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액
2018	한국해양진흥공사	유가증권	13,500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970
	소 계		24,470
2021	한국자산관리공사	유가증권	6,500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차량정비기구 등	1,80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03
	소 계		8,707
2022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5,650
	한국자산관리공사	유가증권	5,00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25
	소 계		11,075
2023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20,000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4,35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288
	㈜ SR	유가증권	3,590
	소 계		28,228
2024.6.	주택도시보증공사	유가증권	40,000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20,000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20,000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정부는 매년 「국유재산법」 제9조[23]에 따라 국유재산의 처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반면, 현물출자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유재산의 매각 등과 달리 국회가 사전에 정부의 현물출자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

23)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 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 · 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특히, 현행「국유재산법」제60조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관한 국회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 기금 이월명세서의 국회 제출 필요

가. 개 요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은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회계·결산지원단 운영, 국가결산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억 1,200만원 중 11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6%)되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3년도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회계제도운영	1,212	1,212	-	-	1,212	1,122	-	90	1,162

나. 검토의견

세출예산과 달리 기금은 이월명세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국회에서 기금 이월 사유별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기금 이월명세서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25)] 및 제72조제2항[2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세출예산(지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함.

---

24) 일반회계-국가회계제도운영(2631-301)(재정관리국)

2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26)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27]은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의 보고서에 이월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이월명세서에는 부처별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과 함께, 부처별·회계별로 사유별 이월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2023년도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중 사유별 이월내역 일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용지매입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외자구매 지연	세수부족	기타
전체 합계	3,861,662	1,194,608	499,684	199,978	124,668	62,630	656,980	1,123,114
대통령경호처	5,669	0	0	0	0	0	0	5,669
일반회계	5,669	0	0	0	0	0	0	5,669
국회	9,322	516	6,631	160	0	0	0	2,015
일반회계	9,322	516	6,631	160	0	0	0	2,015
대법원	19,697	911	16,545	0	0	0	0	2,241
일반회계	17,198	1	16,545	0	0	0	0	653
등기특별회계	2,499	910	0	0	0	0	0	1,589

주) 2023년도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일부를 발췌하였으며, 단위를 ‘원’에서 ‘백만원’으로 수정
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그러나 세입세출결산과 달리 기금 수입지출결산 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월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금지출은 세출예산과 같이 결산보고서를 통해 이월규모 및 사유별 이월내역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2023년도 결산 기준 사업성기금(49개)의 총 지출규모가 149.7조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금지출에 대한 국회의 결산심사 내실화를 위해 기금지출 이월명세서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28]

---

27)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이월명세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8)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이월사유 등은 참고자료 형태로 국회에 제공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재정데이터분석센터 및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이용실적 저조

가. 개 요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운영’ 사업은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보안체계 속에서 분석·가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억 1,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29)]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은 국세 외의 벌금및과료, 과징금, 과태료 등 다양한 국세외수입을 통합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30)]

[2023년도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운영 및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정보화)	17,196	17,196	-	-	17,196	17,136	-	60	22,240
재정데이터분석 센터 운영	619	619	-	-	619	619	-	-	619
국세외수입포털 시스템 운영	58	58	-	-	58	58	-	-	-

나. 검토의견

첫째,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2022년 구축되었으나 아직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와의 목적·제공 데이터 및 시설 구조 등이 유사하므로, 재정절감 및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이를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9) 일반회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2713-501)(재정정책국)

30)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운영은 2024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사업 내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보안체계 속에서 분석·가공·반출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구축되었으며,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음.

이 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2,638명이 이용하였으며, 유형별로 '데이터분석·가공'이 89명,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639명,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 1,910명으로, 재정정보시스템 및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이 전체 이용실적의 96.6%이고 센터 설치·운영의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는 데이터분석·가공은 전체 이용실적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데이터분석센터 개소 후 이용실적]

(단위: 명)

연도	월	이용실적				비고
		계	데이터분석·가공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	
2022	6월	73	30	24	19	시범운영
	7월	12	8	4	-	
	8월	14	1	2	11	
	9월	41	0	14	27	정식운영
	10월	34	1	16	17	
	11월	60	1	47	12	
	12월	504	2	4	498	
2023	1월	1	1	-	-	
	2월	20	4	16	-	
	3월	9	4	5	-	
	4월	22	5	17	-	
	5월	9	2	7	-	
	6월	234	2	21	211	
	7월	242	6	51	185	
	8월	127	3	11	113	
	9월	206	3	10	193	
	10월	226	6	20	200	
	11월	264	3	68	193	
	12월	112	1	30	81	
2024	1월	14	2	12	-	
	2월	46	-	30	16	
	3월	37	4	14	19	
	4월	151	-	129	22	
	5월	180	-	87	93	
합계		2,638	89	639	1,910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더욱이 한국재정정보원은 2024년 6월부터 센터의 명칭을 ‘재정데이터분석센터’에서 ‘재정분석교육센터’로 변경하였고 재정데이터 분석·활용교육 및 재정정보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중심으로 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였음.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보안체계 속에서 국민이 분석·가공·반출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음에도 재정데이터 분석·가공건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센터의 기능을 일반인 대상 데이터분석·가공보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정보시스템 및 재정데이터 분석·활용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공무원 대상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은 센터가 운영되기 전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의 인프라 등으로 실시하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특히,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전국에 총 13개소가 구축되어 있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와 유사한 시설체계 및 기능을 갖추고 있고 통계데이터센터 역시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31] 별도로 재정데이터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예산안 확정을 거쳐 2022년에 구축되었으나,[32] 재정데이터 분석·가공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당초 재정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하려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이 아닌 ‘재정데이터 분석·활용’에 중점을 두고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향후에도 이용실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지속 운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33]

---

31)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2023년 32억 4,500만원이 투입되어 개소당 평균 2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개소당 연간 평균 이용자수는 377명에 불과한 수준임.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미 유사한 시설체계를 갖춘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가 전국 10개소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접근성 확보, 이용실적 제고, 재정절감상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향후 한국재정정보원이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와 재정데이터를 공유하여 통합·운영하는 등 사업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33) 참고로, 재정데이터센터 운영사업은 2022년에 구축비 5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센터 임차료 1억 3,800만원과 운영비 3억 2,400만원 등 총 6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은 임차료 1억 3,800만원, 운영비 3억 7,700만원 등 6억 1,900만원임.

둘째,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시스템 이용실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국세 외의 벌금및과료, 과징금, 과태료 등 다양한 국세외수입을 통합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2022년 2월 개통되었음. 2024년 5월까지 28개월간 이용실적을 보면, 회원가입건수도 누적 432건이고 접속건수가 월평균 57.7건, 납부건수는 월평균 1.9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임.

[국세외수입포털 이용실적]

(단위: 건)

연도	월	접속건수	신규회원가입건수	납부건수
2022년	2월	134	28	2
	3월	180	17	-
	4월	40	3	-
	5월	20	4	-
	6월	30	3	-
	7월	76	5	-
	8월	21	2	-
	9월	84	6	-
	10월	80	1	-
	11월	27	-	-
	12월	2	1	-
2023년	1월	157	92	17
	2월	89	44	8
	3월	36	9	3
	4월	21	8	3
	5월	25	4	3
	6월	28	7	3
	7월	26	12	6
	8월	40	5	2
	9월	140	68	1
	10월	110	41	-
	11월	112	18	1
	12월	18	6	-
2024년	1월	30	6	-
	2월	16	4	-
	3월	10	6	-
	4월	20	17	2
	5월	43	15	1
합계		1,615	432	52
월평균		57.7	15.4	1.9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이와 같이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홍보부족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주된 이용자인 국세외수입 납부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개인별로 보면 벌금,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납부소요는 연간 수 건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포털에 접속하여 국세외수입 납부 또는 미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통합해서 납부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이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반면,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터페이스상으로도 일반적인 납부방식과 비교할 때 간소한 점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사유 등으로 시스템 개통 후 2년여가 경과한 2024년에 월평균 접속건수가 23.8건, 1~5월 누적 회원가입건수가 48건, 납부건수가 3건에 불과하여 이용실적이 2022년 및 2023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편의성 개선 및 홍보 강화 외에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이용실적을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보조사업 정보 공시대상 확대 및 국회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처리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08억 3,200만원 중 207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3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20,832	20,832	-	-	20,832	20,739	-	93	17,964

나. 검토의견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보조사업 정보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조금통합포털을 통해 국회에서 보조사업별 집행세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35)]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34) 일반회계-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2713-501)(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3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 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모[36]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는 보조금통합관리망(보조금통합포털)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제3조[37]에서 정보공시 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음.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38]에 따라 정산보고서와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정보공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통합포털에 공시되지 않고 있으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집행 실적 및 성과 등의 보조사업 관련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 실적보고서도 공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3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 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실적보고서’는 지정된 양식이 없어 시스템상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상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로 작성 및 제출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제3항[39]에 따르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일자별 집행명세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세목별·건별 집행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계좌이체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현금지급
	.....	.....	.....		보조사업비 카드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2024.1.

그러나 일자별 집행명세서는 정산보고서의 첨부서류임에도 정보공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별 집행명세서에 보조사업자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일반국민에게 공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만, 정보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어도 보조사업에 대

39)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한 국회의 결산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자별 집행명세서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보조금통합포털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협력기금】

<수 입>

8. 정부출자주식매각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래탄소펀드 출자 손실 발생

가. 개 요

‘정부출자주식매각대’ 는 정부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수입을 귀속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계상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 157억 6,0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40]

[2023년도 정부출자주식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정부출자주식매각대	-	-	15,760	15,760	-	-	100.0	-

2023년에 발생한 수입은 과거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이 해당 펀드의 청산에 따라 회수된 것임.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0만 달러를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에 출자하였고, 이 중 일부를 투자하여 확보한 탄소배출권이 전액 감액손실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당규모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펀드 출자 시 출자에 따른 성과 및 회수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출자 여부 및 규모를

40) 대외경제협력기금-정부출자주식매각대(78-781)(개발금융국)

결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의무감축국 전환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선진금융기법 습득 및 경험축적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이 주관하는 미래탄소펀드의 운용에 참여하고자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미래탄소펀드 출자계획을 수립하였음.[41)]

이에 2009년 9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에 2,0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자약정액 총 2,000만 달러를 미래탄소펀드에 순차적으로 납입하였음.

우리나라는 2010~2014년 펀드 출자액 2,000만 달러 중 614만 달러를 15건의 사업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총 682,029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확보하였으며, 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 약 169만 달러를 제외한 약 1,216만 달러는 투자되지 못한 채 2022년 10월 미래탄소펀드가 청산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23년에 투자잔액이 회수되어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반납된 것임.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 출자금 납입 및 사용·반납액]

(단위: 달러)

내역		금액
A	납입액	20,000,000
B	수수료	200,000
C	펀드운용비용(출자자간 분담)	1,493,676
D	투자금액	6,142,868
반환 대상액(A-B-C-D)		12,163,45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 투자실적]

구 분		사업건수	투자금액(달러)	탄소배출권(CER) 수취
미래탄소펀드		36건	50,573,608	8,088,258
	한 국	15건	6,142,859	682,0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나 2010년 전후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위축되었으며,[42)] 2021년에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2013년 이후

4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는 한국,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 포스코, 에네코(네덜란드 민간에너지기업)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되었고, 총 출자규모는 1억 1500만 달러이며, 아시아개발은행은 펀드 수탁관리·운용기관으로서 CDM 사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6개 출자자에게 투자비율대로 배정하였음.

42) 탄소배출권 시세는 CER당 2009년 11.14유로에서 2012년 0.7유로로 크게 하락하였음.

취득한 탄소배출권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2021년도 결산 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보유한 탄소배출권은 전액 감액손실 처리되었음.[43)]

결과적으로 출자액 2,000만 달러 중 614만 달러는 전액 손실 처리되었고, 169만 달러는 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1,216만 달러는 기금으로 회수되긴 하였으나 장기간 투자되지 못한 채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유사한 펀드 출자 시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에 따른 성과 및 회수가능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출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43) 감사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펀드 출자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대부분 2013년 전에 취득하여 탄소배출권의 실질적 효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지 출>

9. 대개도국차관(ODA) 사업: 과도한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을 활용한 프로그램차관 초과집행 지양

가. 개 요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고부가 사업 수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조 5,029억 7,600만원 중 1조 3,960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고 1,069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3년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개도국차관	1,502,976	1,502,976	-	1,502,976	1,396,071	-	106,905	2,070,164
아시아차관	705,400	500,307	-	500,307	456,839	-	43,468	849,890
아프리카차관	304,852	234,680	-	234,680	188,685	-	45,995	416,981
중동-CIS차관	131,972	10,946	-	10,946	9,631	-	1,315	112,383
중남미차관	36,396	13,918	-	13,918	13,264	-	654	43,86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324,356	743,125	-	743,125	727,652	-	15,473	608,861

이 사업은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45]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아시아차관은 계획현액 5,003억 700만원 중 4,568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434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아프리카차관은 계획현액 2,346억 8,000만원 중 1,886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459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 중동-CIS차관은 계획현액 109억 4,600만

44) 대외경제협력기금-대개도국차관(3331)(개발금융국)

45) 대외경제협력기금-아시아차관(융자)(ODA)(3331-301), 아프리카차관(융자)(ODA)(3331-303), 중동- CIS차관(융자)(ODA)(3331-305), 중남미차관(융자)(ODA)(3331-306),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원 중 96억 3,1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중남미차관은 계획현액 139억 1,800만원 중 132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계획현액 7,431억 2,500만원 중 7,276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154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세부사업 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른 세부사업의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프로그램차관을 집행하는 등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간 과도한 계획변경 및 프로그램차관의 대규모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등 4개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감액한 후 해당 재원으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의 계획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음.

최근 2회계연도 간 세부사업별 당초 계획액 대비 수정 계획액 비율을 보면, 2022년에는 아시아차관 72.6%, 아프리카차관 96.3%, 중동-CIS차관 26.8%, 중남미차관 78.5%,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61.7%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아시아차관 70.9%, 아프리카차관 77.0%, 중동-CIS차관 8.3%, 중남미차관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29.1%로 2022년 대비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은 당초 계획액의 2배 이상이 증액 변경되었음.

[최근 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내 세부사업별 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계획액			2023계획액		
	당초(A)	수정(B)	B/A	당초(C)	수정(D)	D/C
아시아차관	639,379	464,159	72.6	705,400	500,307	70.9
아프리카차관	319,980	308,175	96.3	304,852	234,680	77.0
중동-CIS차관	79,531	21,348	26.8	131,972	10,946	8.3
중남미차관	47,171	37,006	78.5	36,396	13,918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47,362	399,868	161.7	324,356	743,125	229.1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수원국 인도네시아) 등 5개 프로그램차관 사업으로 총 4,793억 2,200만원의 계획액 중 4,70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액에 ‘미정’으로 반영된 1,029억원 대비 3,675억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중 계획변경을 통한 프로그램차관 신설내역]

(단위: 백만원)

국가	내역사업명	2022계획			2023계획		
		당초	수정	증감	당초	수정	증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합계		247,362	399,868	152,506	324,356	743,125	418,769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분야 효율성 개선프로그램 Ⅲ	-	66,020	66,020	-	-	-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	-	52,816	52,816	-	78,474	78,474
	산업현대화 및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	-	-	77,508	77,508
방글라데시	기후탄력적 통합개발 프로그램차관	-	-	-	-	121,500	121,500
에콰도르	에너지전환·투자촉진 지원 프로그램(EDCF-IDB협조융자펀드리티기금지원)	-	-	-	-	66,840	66,840
인도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 I	-	-	-	-	135,000	135,000
미정	프로그램차관	60,000	-	△60,000	102,900	-	△102,900
계획변경 통한 프로그램차관 소계		60,000	118,836	58,836	102,900	479,322	376,4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프로그램차관은 도로·건물 등 인프라건설이 아니라 수원국의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지원 성격의 차관으로서 약정액 전액이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구속성 차관’에 해당하며, 공정률에 따라 집행하는 인프라건설 등 일반 ODA사업과 달리 프로그램차관은 공정률에 제한받지 않고 일시에 전액 집행가능하여 집행실적 제고에 용이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 일시적으로 집행이 지연된 사업의 미집행 예산을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프로그램차관 사업으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프로그램차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은 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은 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프로그램차관을 당초 계획액에 비하여 대규모로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또한, 구속성 차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차관 등 4개 세부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비구속성인 프로그램차관 사업을 신설·확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2023년에는 국세수입 결손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 등을 대규모로 불용한 상황에서 아시아차관 등 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차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따라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타 사업의 미집행 예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차관의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연례적인 이월 개선과 낙찰차액의 불용 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은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발굴·개발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업준비단계부터 사업실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411억 2400만원 중 259억 400만원이 집행(63.0%)되고 134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46)]

[2023년도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업진행컨설팅(ODA)	25,127	25,127	15,997	41,124	25,904	13,493	1,727	30,182

이 사업은 크게 ‘사업준비지원’, ‘사업실시지원’, ‘사후관리지원’으로 내역이 구분되며, 이 중 사업준비지원은 사업타당성조사(F/S)를 실시하기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가 편성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은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업타당성조사(F/S)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등 이월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2020년 48.0%, 2021년 31.3%, 2022년 42.5%, 2023년 63.0%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60%대에 그치고 있음.

46)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진행컨설팅(ODA)(3376-302)(개발금융국)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최근 4년간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19,600	19,600	5,172	24,772	11,879	60.6	48.0	8,703	4,189
2021	19,558	19,458	8,703	28,161	8,805	45.3	31.3	13,127	6,229
2022	22,195	22,161	13,127	35,288	14,983	67.6	42.5	15,997	4,308
2023	25,127	25,127	15,997	41,124	25,904	103.1	63.0	13,493	1,727

자료: 기획재정부

이는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2023년에도 134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내역사업별로는 '사업준비지원'의 이월액이 112억 5,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타당성조사(F/S)는 주로 하반기에 착수되어 다음연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총 조사건수 30건 중 2023년 상반기 중에 착수한 건이 6건(20.0%)에 불과하였고, 이에 따라 5건 만이 2023년에 완료되었음.

[2023년 사업타당성조사(F/S) 실시현황]

(단위: 건)

사업타당성조사 전체 실시건수	사업타당성조사 착수건수		사업타당성조사 완료건수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상반기 완료	2024년 하반기 완료(예정)
30	6	24	5	11	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따라서 사업타당성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대개도국차관 후보사업의 발굴 및 승인 시기도 순연되어 대개도국차관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업타당성조사의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등 연례적 이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47]

둘째,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사업타당성조사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사업타당성조사 추가 소요에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낙찰차액 불용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사업타당성조사(F/S)는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조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 사업타당성조사 경쟁입찰을

47) 참고로, 연례적 이월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은 202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미흡'을 받았음.

거쳐 발생한 낙찰차액은 총 23억 3,340만원이었음.[48)]

[2023년 사업타당성조사(F/S) 낙찰차액]

(단위: 백만원)

과제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시범적용 (2023년 1차) 용역	81.0	72.9	8.1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시범적용 (2023년 2차) 용역	161.0	156.2	4.8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시범적용 (2023년 4차) 용역	193.0	177.6	15.4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시범적용 (2023년 5차) 용역	288.0	279.0	9
가나 Ho 교육병원 인프라 확충사업 F/S	1,052.0	1,041.5	10.5
가나 쿠마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사업 F/S	1,487.0	1,047.8	439.2
르완다 지식산업센터 (STEM Lab Facility) 건립사업 F/S	925.0	787.0	138
방글라데시 객차 260량 공급사업 F/S 검토 및 보완 용역	528.0	514.9	13.1
방글라데시 마두나갓-마헤시칼리 송전망 개발사업 F/S	440.0	431.0	9
방글라데시 매트랩우타르-가자리아 도로 교량 건설사업 F/S 검토 및 보완 용역	402.0	400.0	2
방글라데시 수상운항인프라 현대화사업 F/S	1,014.0	932.9	81.1
에티오피아 의료기자재 공급사업(2차) F/S	668.0	654.6	13.4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교육개선사업 F/S	903.0	814.0	89
인도네시아 메단 하지 종합병원 확장사업 F/S	907.0	798.0	109
인도네시아 발리 경전철 사업 F/S	600	595.9	4.1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 F/S (추가과업)	68.0	68.0	0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보충융자) 경제성 분석	20.0	20.0	0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홍수피해 저감사업(2차) F/S	1,007.0	903.7	103.3
케냐 마차코스-에말리 도로사업 F/S	1,411.0	1,040.0	371
케냐 콘자 상하수도 사업 F/S	1,076.0	793.6	282.4
코트디부아르 디지털기업 테크노폴 건립사업 F/S	1,094.0	1,017.4	76.6
코트디부아르 부아케 교육병원 개선사업 F/S	1,110.0	1,010.1	99.9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석호(라군) 수상교통 개선사업 F/S	1,034.0	1,002.9	31.1
키르기즈스탄 도로건설장비 공급사업 F/S	390.0	385.9	4.1
탄자니아 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사업 F/S	998.0	923.0	75
탄자니아 무힘빌리 국립병원(본원) 재건립 사업 F/S	1,338.0	1,231.0	107
탄자니아 잔지바르 빙구니 병원 및 훈련센터 사업 F/S	942.0	800.7	141.3
파키스탄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PMC) 용역	926.0	907.0	19
필리핀 라푸라푸 해안도로 건설사업 F/S	1,627.0	1,550.0	77
필리핀 마신 해안 우회교량 건설사업 F/S (추가과업)	30.0	30.0	0
합 계	**22,720**	**20,386.6**	**2,333.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8) 다만, 일반용역비(210-14목)는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서, 사업타당성조사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전문수행기관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세출예산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금사업도 사업유형별·비목별 집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지침의 관련사항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집행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비목별 지침(일반용역비)]

예산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1-12. 일반용역비(210-14목) 다. 낙찰차액 사용 ㅇ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ㅇ사업유형별·비목별 집행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 예산집행지침의 관련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집행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F/S)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도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낙찰차액 중 10억 8,400만원은 불용 처리하고 12억 4,940만원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용도로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경우 집행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이를 준용하기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비목별 지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낙찰차액으로 추가 사업타당성조사 소요에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2023년 사업타당성조사(F/S) 낙찰차액 불용 및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낙찰차액 합계	낙찰차액 중 불용액	낙찰차액 중 사용액
2,333.4	1,084	1,249.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나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불용 원칙은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예산상 계획되지 않은 추가 집행을 억제하려는 취지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성격상 일반용역비의 낙찰차액 불용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낙찰차액 불용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괄>

11.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 연례적인 집행부진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은 중앙관서 단위로 편성되는 청사 신·증축 사업의 프로그램으로서 2023년도 기준 공용재산취득(대법원), 공용재산취득(법무부) 등 총 2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의 전체 수정계획액은 9,415억 8,100만원이고 집행액은 9,061억 7,600만원임.

[2023년도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별 결산]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2022 결산	2023계획		2023 결산	2024 계획
		당초	수정		
합 계	**674,081**	**941,581**	**941,581**	**906,176**	**865,460**
공용재산취득(대법원)	86,968	99,900	119,880	113,678	91,025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	499	3,209	2,568	-	5,380
공용재산취득(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632	16,402	19,682	16,230	15,066
공용재산취득(감사원)	9,206	9,459	9,459	7,546	3,420
공용재산취득(대통령경호처)	2,765	7,351	5,881	2,235	7,442
통합청관사(기획재정부)	36,108	58,700	52,627	57,279	64,621
공용재산취득(외교부)	14,033	22,893	18,315	2,325	18,961
공용재산취득(법무부)	151,883	174,472	209,366	211,837	166,753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38,924	32,483	25,987	36,182	49,377
공용재산취득(농림축산식품부)	4,853	7,852	7,852	8,804	9,726
공용재산취득(식품의약품안전처)	21	2,165	2,165	400	4,984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8,047	12,518	10,047	10,099	10,114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1,686	3,495	2,796	520	3,979
공용재산취득(국토교통부)	-	779	779	84	167
공용재산취득(국가보훈처)	227	237	190	220	4,021
공용재산취득(국세청)	75,860	57,832	69,398	67,374	60,858

프로그램	2022 결산	2023계획		2023 결산	2024 계획
		당초	수정		
공용재산취득(관세청)	20,327	58,370	58,370	56,231	3,677
공용재산취득(통계청)	1,576	5,007	6,008	6,890	3,771
공용재산취득(병무청)	151	4,544	4,544	1,849	10,161
공용재산취득(경찰청)	184,806	286,556	249,914	251,779	238,770
공용재산취득(산림청)	5,185	10,630	10,630	16,249	5,858
공용재산취득(기상청)	625	12,923	10,741	11,347	17,885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16,211	47,114	37,692	24,081	47,494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 소방청)	2,488	6,690	6,690	2,940	21,950

나. 검토의견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가 크고 상당수 프로그램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부지확보 여부 및 사전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 사업별 집행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3년도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우선 감액변경을 실시한 프로그램은 11개로서,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 공용재산취득(대통령경호처), 공용재산취득(외교부),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감액변경을 할 수 있는 한도인 △20.0%까지 변경을 하였으며, 그밖에 감액변경비율은 공용재산취득(국가보훈처)이 △19.8%,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19.7%, 공용재산취득(기상청) △16.9%, 공용재산취득(경찰청) △12.8%, 통합청관사(기획재정부) △10.3%임.

증액변경을 실시한 프로그램은 공용재산취득(대법원), 공용재산취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용재산취득(법무부), 공용재산취득(국세청) 및 공용재산취득(통계청)으로, 모두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증액변경을 할 수 있는 한도인 20.0%까지 변경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4개 프로그램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프로그램이 총 16개(66.7%)이고, 변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8개(33.3%)에 불과하였음.

[2023년도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별 계획변경규모 및 집행률]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2023계획			2023 결산(D)	계획변경 비율 (C/A)	당초계획 대비 집행 (D/A)	수정계획 대비 집행 (D/B)
	당초(A)	수정(B)	증감 (C=B-A)				
공용재산취득(대법원)	99,900	119,880	19,980	113,678	20.0	113.8	94.8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	3,209	2,568	△641	-	△20.0	-	-
공용재산취득(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402	19,682	3,280	16,230	20.0	99.0	82.5
공용재산취득(감사원)	9,459	9,459	0	7,546	0.0	79.8	79.8
공용재산취득(대통령경호처)	7,351	5,881	△1,470	2,235	△20.0	30.4	38.0
통합청관사(기획재정부)	58,700	52,627	△6,073	57,279	△10.3	97.6	108.8
공용재산취득(외교부)	22,893	18,315	△4,578	2,325	△20.0	10.2	12.7
공용재산취득(법무부)	174,472	209,366	34,894	211,837	20.0	121.4	101.2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32,483	25,987	△6,496	36,182	△20.0	111.4	139.2
공용재산취득(농림축산식품부)	7,852	7,852	0	8,804	0.0	112.1	112.1
공용재산취득(식품의약품안전처)	2,165	2,165	0	400	0.0	18.5	18.5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12,518	10,047	△2,471	10,099	△19.7	80.7	100.5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3,495	2,796	△699	520	△20.0	14.9	18.6
공용재산취득(국토교통부)	779	779	0	84	0.0	10.8	10.8
공용재산취득(국가보훈처)	237	190	△47	220	△19.8	92.8	115.8
공용재산취득(국세청)	57,832	69,398	11,566	67,374	20.0	116.5	97.1
공용재산취득(관세청)	58,370	58,370	0	56,231	0.0	96.3	96.3
공용재산취득(통계청)	5,007	6,008	1,001	6,890	20.0	137.6	114.7
공용재산취득(병무청)	4,544	4,544	0	1,849	0.0	40.7	40.7
공용재산취득(경찰청)	286,556	249,914	△36,642	251,778	△12.8	87.9	100.7
공용재산취득(산림청)	10,630	10,630	0	16,250	0.0	152.9	152.9
공용재산취득(기상청)	12,923	10,741	△2,182	11,347	△16.9	87.8	105.6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47,114	37,692	△9,422	24,080	△20.0	51.1	63.9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 소방청)	6,690	6,690	0	2,940	0.0	44.0	43.9
합 계	**941,581**	**941,581**	**0**	**906,176**	**0.0**	**96.2**	**96.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프로그램별 수정계획액 대비 집행액은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이 0%, 공용재산취득(국토교통부) 10.8%, 공용재산취득(외교부) 12.7%, 공용재산취득(식품의약품안전처) 18.5%,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18.6%, 공용재산취득(대통령경호처) 38.0%, 공용재산취득(병무청) 40.7%,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 소방청) 43.9%로서, 50% 미만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총 8개였으며 이 중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 공용재산취득(외교부),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프로그램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계획액보다 20%를 감액하였음에도 집행률이 20%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하였음.

집행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의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을 보면,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원 신축사업은 계획현액 25억 6,800만원 중 집행액이 없고 25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용재산취득(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부 청사시설 신축사업도 계획현액 7억 7,900만원 중 8,4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3년도 수정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 20% 미만 프로그램 내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 계획
	당초	수정						
인권교육원 신축 (1433-100)	3,209	2,568	-	2,568	-	51	2,518	5,430
국토교통부 청사시설 신축(3431-301)	779	779	-	779	84	695	-	167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사업(2231-300)	8,745	8,745	1,759	10,504	2,319	1,171	7,014	8,623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2231-360)	11,586	7,008	-	7,008	6	-	7,002	8,700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청사 신축(2231-410)	2,462	2,462	-	2,462	-	-	2,462	1,638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3131-310)	2,165	2,165	176	2,341	400	1,941	-	4,984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신축(3331-330)	3,495	2,796	454	3,251	520	2,652	78	3,97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공용재산취득(외교부)의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은 계획현액 105억 400만원 중 23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0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같은 프로그램 내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계획현액 70억 800만원 중 600만원이 집행되고 70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계획현액 24억 6,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이와 같은 사업들의 집행부진 사유는 인허가·부지매입 등 지연, 감리업체 입찰 유찰, 총사업비 조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있음.

[수정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 20% 미만 프로그램 내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세부사업명	집행부진 사유
인권교육원 신축	감리업체 입찰공고 유찰 등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 지연
국토교통부 청사시설	인허가 · 부지매입 등 지연, 총사업비 조정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설계 인허가 지연으로 불용액 발생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청사 신축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발주지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	감리비 사전검토(조달청) 진행으로 공사 착공 지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신축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의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를 줄이고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서 인허가·부지매입과 같은 사전 절차 진행상황, 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기금】

<총 괄>

12. 재원 없는 이월 부적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부실 작성 시정 필요

가. 개 요

기후대응기금 지출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기반구축’, ‘환경행정지원’,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으로 구성됨.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지출 총계 기준 당초계획액은 2조 4,867억 2,300만원이었으나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계획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출계획액을 1,875억 6,500만원(△7.5%) 줄이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수정계획액 2조 2,991억 5,800만원 중 2조 2,266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었음.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프로그램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년도				2024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기후대응기금 지출 총계	2,046,509	2,486,723	2,299,158	2,226,698	96.8	2,391,807
온실가스 감축(6100)	855,203	986,624	897,582	874,812	97.5	978,415
저탄소생태계조성(6200)	438,679	636,422	563,467	495,089	87.9	606,328
공정한 전환(6300)	147,837	203,781	197,691	201,309	101.8	197,272
탄소중립기반구축(6400)	574,654	627,591	620,426	619,913	99.9	478,174
환경행정지원(7100)	2,314	2,698	2,574	2,568	99.8	2,697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5,156	17,418	17,418	17,145	98.4	28,628
여유자금운용(9700)	22,668	12,189	-	15,863	순증	100,293

나. 검토의견

첫째,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0억 8,600만원의 재원 없는 이월조치를 하였으나,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없는 이월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도 상충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49] 기금지출의 이월사유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명시된 세출예산 이월사유보다 제한적임.[50]

기후대응기금은 2023년도에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급감에 따라 수입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0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별 재원 없는 이월규모는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환경부 집행)이 173억 8,500만원,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환경부 집행)사업 101억 1,300만원, 친환경설비투자(환경부 집행)사업 165억원 8,800만원이었음.

---

49)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재원 없는 지출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전체	재원없는 이월액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6131-600)	161,655	133,004	317	133,321	114,456	17,546	17,385	1,319
자원순환클러스터조정 (6233-400)	37,132	31,651	-	31,651	20,712	10,258	10,113	681
친환경설비투자 (6232-602)	100,000	93,000	-	93,000	70,000	23,000	16,588	-
합 계	298,787	257,655	317	257,972	205,168	50,804	44,086	2,000

자료: 기획재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상당수 특별회계는 설치근거 법률에「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51] 기후대응기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금 이월에 관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도 재원 없는 이월을 이월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수입재원 없는 이월조치를 하였음.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주요 자체수입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서, 수입부족에 따라 지출사업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해당 이월액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을 또 다시 마련해야 하고, 이는 다음연도에도 기금의 재원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법적 근거 없는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미

51)「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발생한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에 대해서는 2023년도 수입 여건을 고려하여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올해 중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주의)” 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없는 지출 이월액이 2022년 421억 3,900만원에서 2023년 440억 8,600만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기후대응기금에서 수입재원 없는 이월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국회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문서임에도 기후대응기금 변경명세서를 보면 변경사유가 대부분 ‘기금사업 효율화’라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국회가 변경명세서를 통해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변경사유를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0조제4항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52)]

이는 세출예산의 이·전용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 변경도 지출계획의 목적 외 집행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계획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각각 감사원과 국회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결산검사 및 국회의 결산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기금관리주체는 계획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대부분의 변경사유를 ‘기금사업 효율화’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의 지출규모를 구체적으로 왜 증액 또는 감액하였는지 국회가 변경명세서를 통해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임.

예를 들어, 저탄소생태계조성 프로그램의 녹색금융 단위사업의 출자금이 2023년 12월 29일에 100억원 감액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변경사유가 ‘기금사업 효율화’라고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의 산업저

52)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탄소화 단위사업 역시 연말에 96억 3,800만원을 감액하는 계획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움.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B)	증감 (B-A)	사 유
6200항 저탄소생태계조성	-	50,000	40,000	△10,000	
6232세항 녹색금융	-	50,000	40,000	△10,000	
460목 출자금	12/29	50,000	40,000	△10,000	기금사업 효율화
6200항 저탄소생태계조성	-	158,892	127,122	△31,770	
6232세항 녹색금융	-	147,000	115,230	△31,770	
450목 융자금	12/29	145,000	113,230	△31,770	기금사업 효율화
6200항(프로그램) 저탄소생태계조성	-	45,203	36,163	△9,040	
6231세항 유망기업인력육성	-	45,203	36,163	△9,040	
320목 민간이전	12/29	30,003	20,963	△9,040	기금사업 효율화
6100항 온실가스감축	-	86,150	76,512	△9,638	
6131세항 산업저탄소화	-	86,150	76,512	△9,638	
320목 민간이전	12/29	18,050	15,412	△2,638	기금사업 효율화
350목 일반출연금	12/29	61,400	54,400	△7,000	기금사업 효율화

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는 「국가재정법」이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국회와 감사원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임에도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상 변경사유를 일률적으로 ‘기금사업 효율화’라고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4항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가 정부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에 변경사유를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해야 할 것임.

<수 입>

13. 기타경상이전수입(환경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 저조

가. 개 요

기후대응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따른 정부의 배출권 매각(유상할당) 수입의 계상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각종 정산금 및 환급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2,086억 6,000만원 중 1,028억 9,1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996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2억 7,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53]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경상 이전수입	400,896	208,660	102,891	99,622	-	3,270	96.8	2,184

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은 2023년도까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2024년 계획액은 2,896억 9,400만원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2항[54]에 따르면, 기후

53) 기후대응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후변화정책관)

5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 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대응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며, 이 중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기후대응기금 핵심적인 자체수입에 해당함.

나. 검토의견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므로, 유상할당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계획액보다 수입실적이 많았으나, 2021년에는 계획액 4,903억 2,500만원의 60.1%인 2,944억 6,100만원, 2022년에는 계획액 7,305억 8,400만원의 43.4%인 3,167억 1,400만원이, 2023년에는 계획액 3,893억 4,000만원의 21.6%인 840억 8,800만원이 수납되는 데에 그쳤음. 이에 따라 2023년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875억 6,500만원의 지출액을 감액 조정하였음.

[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A)	204,600	215,818	490,325	730,584	389,340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B)	232,174	248,017	294,461	316,714	84,088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B/A)	113.5	114.9	60.1	43.4	21.6

주) 수입실적은 총거래대금에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환경부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을 3,412억 4,400만원(△46.7%)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실제 수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상할당 수입은 경제상황·배출권 수급 현황 등 시장여건에 따른 배출권의 가격과 유상할당 업체의 배출량에 따른 경매 수요량 등에 따라 변동되는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2023년 9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수입실적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은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으로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기금 지출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실제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획액보다 수입실적이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일부 지출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입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하였음.

기후대응기금은 전체 수입 중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합계의 비중이 2022년 결산 84.2%, 2023년 결산 93.9%에 달하여 외부재원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의 저조는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55)]

[2022~2024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2024 계획
			당초	결산	
기후대응기금 수입 총계(A)		2,046,509	2,486,723	2,226,698	2,391,807
자체수입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318,826	400,896	85,233	289,694
	기 타	4,424	-	50,967	24,457
	소 계(B)	323,250	400,896	136,200	314,151
	B/A	15.8	16.1	6.1	13.1
내부거래 (외부재원)	타 회계·기금 전입금	1,263,154	1,813,230	1,817,901	1,757,746
	공자기금 예수금	460,105	272,597	272,597	319,910
	소 계(C)	1,723,259	2,085,827	2,090,498	2,077,656
	C/A	84.2	83.9	93.9	86.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5)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검토(2024년~), 제4차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시 부문·업종별로 배출권 유상할당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함.

<지 출>

14.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기금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및 성과관리 부적정

가. 개 요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512억 3,000만원 중 1,001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2%)되고, 511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56)]

[2023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탄소중립전환선도 프로젝트융자지원	147,000	115,230	36,000	151,230	100,115	-	51,115	223,600

동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및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 내용]

구분	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비율	•사업장 당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의 100%(중소), 90%(중견), 50%(대기업) 이내	•대출금의 2.0% 이차보전
지원한도	•사업장 당 시설자금 500억원 이내, R&D 자금 100억원 이내	•사업장 당 시설자금 대출 시 연 10억원 이내, R&D 자금 대출 시 연 2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최대 10년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2.0%p 차감 (하한 1.3%)	•시중은행 차입금리 - 2.0%p(이차보전율)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56)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6232-400)(산업정책실)

2022년 최초 사업추진 당시에는 융자사업만 지출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지출구조조정 차원에서 융자금 중 600억원을 이차보전금 12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당시 변경한 바 있음. 이어 2023년에는 융자사업 수행을 위해 1,450억원의 기타민간융자금이, 이차보전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20억원의 이차보전금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 편성비목: 기타민간융자금 - (산출) 9,667백만원/기업 × 15개(신규 6개, 계속 9개) = 145,000백만원 - (예산안)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기타민간융자금(450-04) : 145,000백만원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이차보전지원	○ 편성비목: 이차보전금 - (산출) 약 200백만원/기업 × 10개(신규 6개, 계속 4개) = 2,000백만원 - (예산안)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금(320-05) : 2,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대응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따른 정부의 배출권 매각(유상할당) 수입의 계상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각종 정산금 및 환급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여 2023년 계획현액 2,086억 6,000만원 중 1,028억 9,1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996억 2,200만원만이 수납되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지출 사업들의 계획액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내역사업인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액 1,450억원에서 317억 7,000만원이 감소한 1,132억 3,000만원으로 수정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내역사업인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360억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는데, 2023년에 기후대응기금 배출권매각대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지출계획 변경(감액)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융자사업비 360억원을 포함하여 511억 1,500만원이 최종 불용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 재정여건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수정계획액 900억원 중 540억원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인 산업단지공단에 교부하고, 남은 360억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이는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저조하여 기금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360억원이 수입 재원 없이 이월된 것임.

[2022~2023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150,000	90,000	-	90,000	54,000 [52,685]	60.0	60.0	36,000	-
2023	145,000	113,230	36,000	149,230	98,115 [94,760]	86.7	65.7	-	51,1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도 이월액 360억원과 2023년도 당초 지출 계획액 1,450억원을 합한 1,810억원을 계획현액으로 확보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 저조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2023년 11월 25일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비 317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이러한 감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으로 981억 1,500만원만이 교부되었고, 511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최종 불용되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지출계획 편성 시 기금 내 재정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출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 타부처 소관 수행사업이라는 이유로 성과계획서를 미작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에 대해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목표와 관련이 없는 제조업생산능력지수를 성과지표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앙관서별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등 녹색금융 단위사업에 속한 총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타부처 수행사업이라는 이유로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하였음.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기획재정부 소관]]

(단위: 개,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023 예산	2023 결산	과제번호
녹색금융	7	400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151,230	100,115	성과관리 비대상
	7	500	기후대응보증 (기보출연)	40,000	40,000	성과관리 비대상
	7	501	기후대응보증 (신보출연)	40,000	40,000	성과관리 비대상
	7	600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45,000	45,000	성과관리 비대상
	7	601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	17,050	12,250	성과관리 비대상
	7	602	친환경설비투자	93,000	70,000	성과관리 비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어서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의 수행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성과보고서에서 동 사업을 〈프로그램 목표 Ⅱ-1〉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로 분류하고, 동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표로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제시하고 있음.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이 속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하에서 생산 시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 / “2015년도=100“과 비교시 상대적 생산능력 수준	목표	신규	104.2	104.2	104.8
		실적	104.8	106	105.3	(101.9)
		달성률(%)	-	101.7	101.1	9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하에서 생산 시 최대생산 가능량을 2015년도 당시의 실적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지수로, 탄소중립 및 기후대

응 목표와 관련이 없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동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서 보충적으로 ‘프로젝트 지원건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반영되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 국제감축 시범사업(산업통상자원부):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반영 및 교부 필요

가. 개 요

‘국제감축 시범사업’ 은 민간 주도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투자·구매 등 방법으로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52억 1,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57)]

[2023년도 국제감축 시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온실가스 국제감축	6,350	5,212	-	5,212	5,212	-	-	38,710
국제감축 시범사업	6,000	4,909	-	4,909	4,909	-	-	38,710

동 내역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60억원이 당초 계획에 편성되었으나,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10억 9,100만원이 자체변경(감)되었고, 수정계획액 49억 9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2023년도 국제감축 시범사업 집행액 세부 내역]

○ 4,909백만원
- 투자지원 집행 : 4,144백만원(4건* 건당평균 1,036백만원)
  * 2023년 투자지원 사업은 총 4건(2개국), 정부지원금 총 59.2억원 중 선금 70%
- 투자지원사업비 잔금(총사업비 30%) 이월 : 765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57) 기후대응기금 - 온실가스국제감축(6131-311)(투자정책국)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2023년 8월 4건의 시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현액 49억 900만원을 선금과 잔금 구분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전액 교부하여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를 반영하고 교부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대상 사업 1건, 베트남 대상 사업 3건에 대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소요되는 정부지원금 소요액은 계획상 59억 200만원이었으나,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법정민간대행사업비 10억 9,100만원이 자체변경(감)됨에 따라 49억 900만원을 전담기관에 교부하였음.

[2023년 말 기준 시범사업 내 선정된 프로젝트별 집행 내역]

(단위: tCO2eq/y, 백만원)

프로젝트명	사업기간	예상 감축 확보실적	정부 지원금 소요액 (계획)	전담기관			
				교부현액	실제 집행액 (2023년 말)	이월 사업비	이월 사업비 2024년도 집행액 (6월 말 기준)
우즈벡 벽돌공장 바이오펠릿 연료전환	2023.9~ 2033.9	4,082	900	746	630	116	-
베트남 폐냉매 회수 및 정제/재생	2023.9~ 2033.9	2,198	520	431	364	67	78
베트남 벽돌공장 석탄 가마 공정개선	2023.9~ 2033.9	12,222	3,000	2,488	2,100	388	450
베트남 산업단지 7MW 지붕 태양광 발전	2023.9~ 2033.9	7,420	1,500	1,244	1,050	194	225
합 계		25,922	5,920	4,909	4,144	765	753

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7월 2일 제출한 국제감축 시범사업의 2023년 말 기준 집행액 및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관련 자료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동 시범사업 내 프로젝트 4건에 대한 2023년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41억 4,400만원에 불과하였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내 집행가능한 각 프로젝트별 선금 외에도 잔금을 모두 교부함에 따라 교부현액 49억 900만원 중 ‘우즈벡 벽돌공장 바이오펠릿 연료전환’, ‘베트남 폐냉매 회수 및 정제/재생’, ‘베트남 벽돌공장 석탄 가마 공정개선’, ‘베트남 산업단지 7MW 지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선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연내 집행되고, 잔금은 이월되었기 때문임. 특히 ‘우즈벡 벽돌공장 바이오펠릿 연료전환’ 프로젝트는 이월된 잔금 1억 1,600만원이 2024년 6월 말까지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프로젝트의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사업비 교부 및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58] 또한,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8)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기능보강 유형 사업(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에 따라 연차별 연부율 기준 편성 및 교부 방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기능보강 사업 : 연례적 실집행 부진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연차별 교부방식 변경 사업 현황>

○ 노인요양시설 확충 : 공립요양시설 신축 예산 교부방식 변경('23년 3개년(1:3:6) → '24년(안) 4개년(1:2:3:4))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신축 : ('23년) 2개년도 교부 → ('24년) 3개년도 교부
- 리모델링 : ('24년) 2개년도 연차별 교부방식으로 변경 반영
- 장기임차 : ('24년) 상·하반기 나누어 하반기 물량은 2차년도 분할 교부

16. 공공열분해시설 설치(환경부): 철저한 사업계획 사전 수립 필요

가. 개 요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후 연료유를 생산하여 석유화학원료로 사용하는 열분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7억 5,000만원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되었음.[59)]

[2023회계연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1,800	750	-	-	750	750	-	-	993

환경부는 2026년까지 10기의 공공열분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23년 당초 계속사업 1개소의 공사비, 신규사업 2개소의 설계비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후기금 지출구조조정으로 계획현액이 7억 5,000만원으로 수정되어 4개소의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설계비로 7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였음.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당초계획 및 집행내역]

2023년 당초 계획	2023년 집행내역
○ 계속사업(1개소) : 2,600백만원(공사비, 연부율 40%) × 50% = 1,300백만원 ○ 신규사업(2개소) : 2개소 × 500백만원(설계비) × 50%= 500백만원	○ 750백만원(4개소 추진 중) -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 750백만원

자료: 환경부

59) 기후대응기금-공공열분해시설설치(6131-306)(자원순환국)

나. 검토의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간 지자체가 전무하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2023년 12월 말 기준, 6개의 보조사업자 중 구미시, 인천 서구, 횡성군은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이를 제외한 3개소는 타당성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임. 일례로 구미시의 경우 2022년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를 위해 교부받은 1억 2,000만원을 2022년 전액 이월한 후, 2023년 공사비 일부인 5,000만원을 추가 교부받은 이후 타당성조사를 위해 1,000만원만 집행하고 5,000만원을 이월, 1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구미	2022	250	120	120	120	-	120	-	120	-	120	-	-
	2023	1,300	50	50	50	120	170	10	50	-	50	110	-
인천 서구	2022	250	50	50	50	-	50	31	50	31	19	-	61.2
	2023	-	-	-	-	19	19	13	-	-	-	6	-
횡성	2022	250	130	130	130	-	130	13	130	7	123	-	5.4
	2023	-	200	200	200	123	323	-	200	-	200	123	-
춘천	2022	250	50	-	-	-	50	-	50	-	50	-	-
	2023	-	-	-	-	50	50	-	-	-	50	-	-
김해	2023	250	250	250	250	-	250	22	250	22	228	-	8.8
함안	2023	250	250	250	250	-	250	50	250	50	200	-	20.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사유로 실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2022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구미와 횡성, 인천서구, 춘천 모두 국고지원 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고, 또한 2022년도 춘천시는 공법 변경(가스화→유화)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이 추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환경부가 집행부진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는 지방비 미확보·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는 환경부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전에 고려했어야 하는 내용이고,[60]

사업시행 이후 2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계 단계에 들어간 지자체가 없다는 것은 동 사업이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추진되었음을 의미함.[61]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유사 신규 사업을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이후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사업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1) 환경부는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과 달리 공공열분해를 통해 플라스틱유를 생산하는 동 시설의 특성상 기존 선례가 없어,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으나 2024년 이후 실집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임.

17. 노동전환지원금(고용노동부): 빈번한 사업 내용 변경 및 지원 계획 승인 기준 개선 필요

가. 개 요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 및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21억 8,000만원 중 4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21.9%)되고 17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62)]

[2023년도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노동전환지원금	5,260	2,180	-	2,180	478	-	1,702	3,742

나. 검토의견

첫째,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노동전환지원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중 빈번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을 위해 당초 52억 6,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23.11.24.)을 통해 30억 8,000만원이 감액된 21억 8,000만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사업예산을 감액한 이유를 ① 기업이 사업전환 자금(시설비·운영비)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이지만 훈련수요가 높지 않다는 점, ② 산업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재직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위한 직무훈련보다 신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설명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체의 지원금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62) 기후대응기금-노동전환지원금(6332-301)(노동시장정책관)

다만 노동전환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등이 자주 변경되며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2023년 3월, 지원대상에 석유화학·정유 및 시멘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2023년 9월 다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음.

[노동전환 지원금 사업 내용 변경 경과]

구분	주요개선 현황
1차 ('22.8)	**(지원대상 확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지원요건 완화)** 훈련기간 최소 3개월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변경
2차 ('23.3)	**(지원대상 확대)**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종 추가 **(지원범위 확대)** 직무재배치 훈련, 직무적응 훈련 추가 **(지원요건 완화)** 노조가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참여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노·사협의를 한 것으로 갈음 **(사업주 훈련장려금 신설)** 1개월 이상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면서, 1일 4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급
3차 ('23.9)	**(지원기간 확대)** 지원인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지원인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 추가 지원 **(지원시작일 확대)** 계획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실시한 훈련 지원 **(지원요건 완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노·사협의 요건 삭제, 훈련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변경 **(지원내용 확대)** 피보험자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명까지 지원
4차 ('24.2)	**(지원요건)** 과정당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에서 대상 근로자별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개선 **(지원기간)** 지원인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지원인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 추가 지원 **(지원시작일)** 대규모기업도 계획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실시한 훈련부터 지원으로 개선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원활한 산업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빈번한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담당자 교육을 어렵게 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임에도 참여를 승인하고, 훈련 실시 이후에서야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담당자 교육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63]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3) 2023. 3. 21. 시행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는 훈련비 지원은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요건만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2023.10.30. 계획서의 일부 승인을 받아 2023.12.11.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3. 9. 26. 개정·시행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의 요건에 '과정별로'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중 빈번하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는 지원계획 심사 기준에 활용할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원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제출한 훈련·전직지원 계획서를 지방 고용센터가 심사하여 승인하고, 직무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추진되고 있음.

[2023년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집행절차]

직무훈련·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승인	→	직무훈련·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지방 고용센터의 훈련·전직 지원 계획서 심사 기준이 정성적 기준에 치중되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심사 항목 중 하나인 사업내용의 심사를 '위탁기관 등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등으로 판단하고, 다른 심사 항목인 사업체의 특성을 '노동전환 관련 사업주의 근로자의 의지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량적인 기준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분	주요 내용
2023.3.21. 시행지침	○ (총칙) 지침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 ○ (훈련비 지원 내용) 지원기간: 참여 기업당 최대 12개월 지원 ***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필요**
2023.9.26. 개정 시행지침	○ (총칙) 지침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 ○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 지원요건: 근로자들에 대해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 시작일과 훈련 종료일 간격으로 산정 **** 각 훈련 등 과정별로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 내용	노사협의와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 및 방식의 적정성	20
	위탁기관/자체 훈련시설 등의 적정성	20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 가능성	20
	지원의 필요성	20
사업체의 특성	노동전환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지 등	20

자료: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방식이 기업별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직무훈련과 전직지원 서비스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임.

그러나 계획서의 심사가 정성적인 기준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별 고용센터가 상이한 승인 기준을 보유하게 되어 일관적인 심사가 어려워지며, 신청하는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생산성본부의 「2023년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결과보고서」에서도 지역 고용센터가 지원계획 승인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음.[64]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원계획 심사 기준에 활용할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원 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4) 한국생산성본부는 노동전환지원센터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을 안내하고,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복권기금】

<수 입>

18. 기타경상이전수입: 연례적 보조금 잔액 반납지연 개선 필요

가. 개 요

복권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복권기금의 지난 연도 교부성 예산(보조금·출연금)의 불용액을 반납처리하는 과목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238억 5,700만원으로 181억 9,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69억 4,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2%)되었으며, 12억 4,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65]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23,857	23,857	23,857	18,193	16,948	1,245	-	12,796

나. 검토의견

복권기금은 지난 연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집행잔액을 조속히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함.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및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

65) 복권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복권위원회사무처)

하도록 하며,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그러나 2020년 이후 복권기금의 보조금 교부액 중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2020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실집행잔액 중 12억 4,000만원, 2021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실집행잔액 중 국고 미반납액이 26억 3,800만원, 2022년에 교부한 보조금 실집행잔액 중 국고 미반납액이 66억 4,500만원으로, 보조금을 교부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조금 잔액이 미반납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도 이후 복권기금 보조금 실집행잔액 반납 및 미반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보조금 교부(집행)액	보조금 실집행액	보조금 실집행잔액 중 국고 미반납액
2020	655,278	639,321	1,240
2021	866,693	834,346	2,638
2022	902,368	868,164	6,645
2023	952,297	정산중	정산중

주) 2024년 5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실집행잔액 미반납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및 정산지연, e나라도움 반납계정 오류, 정산 미반납이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별도 계정을 통해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 계정 내에 실집행잔액이 예치되어 있을 것임에도 추가경정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집행잔액을 미반납하고 있으며,[66] 2022년도 보조사업이 정산지연, 반납계정 오류, 정산 미반납으로 2024년 4월까지 실집행잔액이 미반납되고 있을 정도로 미반납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6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22년도 복권기금 보조금 실집행잔액 미반납 사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보조사업자명	미반납액	미반납 사유
지방자치단체지원(경상)	서울특별시	66	추경예산 미편성
	울산광역시	7	
	강원도	215	
	충청남도	656	
	전라북도	97	
	전라남도	252	
	경상북도	705	
	경상남도	443	
입양아동 가족지원	서울특별시	154	시군 추경예산 미편성
	부산광역시	64	
	세종특별자치시	20	
	경기도	349	
	강원도	95	
	충청북도	92	
	충청남도	64	
	전라북도	127	
	전라남도	83	
	경상북도	13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서울특별시	2	지자체 정산 지연(수정 사항 다수 발생, 정산보고서 공문과 국고보조금 시스템과 불일치 등)
	광주광역시	32	
	충청남도	142	
	전라북도	15	
	전라남도	19	
	경상북도	26	
	경상남도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537	e나라도움 반납계정 오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91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미반납

주) 2024년 4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실집행잔액 수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연례적으로 보조금 실집행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예산 편성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 출>

19.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복권기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6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음.

이러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은 총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사업이 있음.[68]

법정배분사업은 2023년도 계획현액 1조 345억 5,900만원 중 1조 338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7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67)「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국민체육진흥법」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근로복지기본법」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문화재보호기금법」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8) 복권기금-지방자치단체지원(5531-30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5532-303),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8910-890),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8911-891),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89121-89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8914-894),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8920-89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6440-3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6541-31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6642-313)

[2023년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법정배분사업 합계	1,034,559	1,034,559	-	1,034,559	1,033,826	-	733	1,040,150
지방자치단체지원	176,062	176,062	-	176,062	175,329	-	733	169,86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76,999	176,999	-	176,999	176,999	-	-	179,600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09,957	109,957	-	109,957	109,957	-	-	125,055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91,450	91,450	-	91,450	91,450	-	-	91,954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64,400	64,400		64,400	64,400	-	-	63,51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78,907	78,907		78,907	78,907	-	-	72,752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158,339	158,339		158,339	158,339	-	-	152,6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58,664	58,664		58,664	58,664	-	-	70,1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47,205	47,205		47,205	47,205	-	-	41,697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72,576	72,576	-	72,576	72,576	-	-	72,967

나. 검토의견

기금별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은 2004년 이후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복권 발행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손실을 보전하고자 각 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가 도입되었음.

그 이후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現 국가유산보호기금)을 법정배분대상으로 추가하면서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전체 복권수익금의 30%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다른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정배분비율을 기존 비율과 비례하도록 일률적으로 조정하였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 추이]

구 분	2004년		2010년 이후
총 법정배분비율	30%		3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0%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0%		10.371%
근로복지진흥기금	6.195%		5.3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15%	⇒	6.356%
문화재보호기금 (現 국가유산보호기금)	-		14.286%
지방자치단체	20.145%		17.26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45%		17.2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4.28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6.820%		5.8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00%		6.428%

주) 각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정배분비율은 총 법정배분비율 내에서의 비율을 의미

그러나 법 제정 후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각 기금의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복권발행기관별 복권판매액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복권수익금 배분의 합리성 및 복권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는 법정배분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20%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권위원회의 가감조정만으로는 각 기금 등의 재정여건 및 지출소요를 충분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어, 202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계획안 편성 시 2022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정배분비율에 따른 기본배분액 1,302억 4,500만원에서 58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계획안에 사업비가 아닌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344억 300만원(전출금의 27.5%)이 포함되는 등 복권수익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기본배분액,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022년 법정배분 정산금을 반영 -기본배분액(1,302억 4,500만원): 2024년 복권수익금 2조 9,573억 8,400만원의 35% 중 12.583% -가감조정(△58억 6,100만원): 2022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반영 -2022년 법정배분액 정산금(6억 7,100만원) ○ 2024년도 전출금 1,250억 5,500만원의 27.5%인 344억 300만원이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경직적 운용을 해소하고, 복권수익금이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으로 법정배분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2022회계연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 필요에 관한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경직적 운용을 해소하고, 복권수익금이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법정배분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법정배분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4~6월)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은「복권 및 복권기금법」및「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만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후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및 복권수익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외국환평형기금】

<수 입>

20. 국공채수입: 외평채 발행여건 등 면밀히 고려한 계획액 편성 필요

가. 개 요

‘국공채수입’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에 따른 수입을 귀속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3조 4,830억원이나 6,308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69]

[2023년도 국공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C/B)	
	당초	수정(A)						
국공채수입	3,483,000	3,483,000	630,826	630,826	-	-	100.0	19,690,000

나. 검토의견

2022년과 2023년에 수입계획액(발행한도) 대비 외평채 발행 금액이 적은 편이고, 2024년에는 6월 말 현재 원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평채 발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입계획액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2년 이후 외평채 발행한도와 발행실적을 비교해보면, 2022년에는 발행한도가 외화 10억 달러였으나 발행실적이 없었고, 2023년에는 발행한도가 27억 달러였으나 엔화표시 외평채 700억엔(약 5억 달러) 발행이 유일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18.0조원과 외화 외평채 13억 달러가 발행한도로 설정되었으나, 6월 기준으로 외화 외평채 10억 달러가 발행되었고, 원화표시 외평채는 발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69) 외국환평형기금-국공채수입(81-811)(국제금융국)

[최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 및 발행량]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기준
외평채 발행 한도	10억 달러 (1.3조원)	27억 달러 (3.5조원)	19.7조원 (외화 13억 달러+원화 18.0조원)
외평채 발행실적	-	엔화 700억엔 (약 5억 달러, 0.6조원)	외화 10억 달러

주) 원화 기준 외평채 발행 한도액은 1달러 당 1,300원을 전제로 계산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과 2023년에는 국제금융·외환시장 상황 등 발행 여건, 기존 발행 채권 만기구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화표시 외평채를 한도 대비 적게 발행하였고, 2024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70]

[2021년도 이후 국공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당초	수정(A)					
2021	1,825,500	1,825,500	1,825,500	1,558,883	1,558,883	85.4	-
2022	1,131,000	1,131,000	1,131,000	-	-	-	-
2023	3,483,000	3,483,000	3,483,000	630,826	630,826	18.1	-
2024.6.	19,690,000	-	-	-	-	-	-

특히, 2024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줄이고 원금상환을 늘려 외평기금의 수지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71] 이에 따라 2024년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계획액이 전년 당초 계획 대비 44조 8457억원(90.0%) 증가한 94조 6,4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따른 것임.

70)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 및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채의 범위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으로 한정되므로,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과 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7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국고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예탁이자율을 산정하는 반면,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해 조달한 원화자산으로 외화자산을 매입한 후 안전자산인 달러 중심으로 운용함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보다 통상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함.

[2024년도 외평기금의 기금예수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계획(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금예수금 (수입)	55,301,850	55,301,850	49,801,850	56,647,550	1,345,700	2.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지출)	49,801,850	64,201,850	64,201,850	94,647,550	44,845,700	90.0

주) 2023년에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지 못해 2024년 6월 현재까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향후 법률 개정 여부 및 시기에 따라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량이 발행한도 대비 크게 저조할 수 있으며,[72]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인 국공채수입실적 저조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뿐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상황 등 외평채 발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평채 발행한도 및 외국환평형기금 국공채수입 계획액을 설정·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2) 참고로, 원화표시 외평채는 만기 1~2년물 위주로 발행될 계획으로,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상호 구축 가능성, 1~2년물 채권 발행량 증가에 따른 단기 채권 금리상승 가능성이 있어 원화 외평채의 월별 발행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 출>

21.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한도 초과한 조기상환 문제

가. 개 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64조 2,018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73)]

[2023년도 기금간거래(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49,801,850	64,201,850	-	64,201,850	64,201,850	-	-	94,647,550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의 2023년도 계획액은 당초 49조 8,018억 5,000만원이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당초 계획액보다 14조 4,000억원(28.9%)

73) 외국환평형기금-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9110-910)(국제금융국)

늘린 64조 2,018억 5,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하였음.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프로그램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3.10.24.)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14,400,000	외평기금 수지개선을 위해 고금리 부채를 중심으로 공자기금예수원금 14,400,000백만원을 조기상환

주)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프로그램(9100) 내 세부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이 유일함
자료: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서 주요항목 지출금액(프로그램 단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회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금간거래(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프로그램의 계획변경비율은 28.9%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한도인 20%를 초과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제70조제3항제4호다목인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근거하여 기금간거래(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프로그램 지출규모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였다고 설명함.[74]

그러나 해당 조항은 '예수원금'이 아닌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및 개인 등 정부 아닌 주체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예수금'은 정부내부적으로 회계-기금간 또는 기금간거래를 통해 빌린 자금으로 각각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도 '기금간거래(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과 '차입금원금상환'을 별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74)「국가재정법」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ⅰ)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ⅱ)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
ⅲ)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ⅳ)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ⅴ)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ⅵ)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차입금과 예수금은 둘 다 빌린 자금으로서 실질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도 타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4호다목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집행지침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차입금과 예수금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75] 차입금의 대상은 모두 정부 외부로서 내부거래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76] 예수금의 대상은 "타 회계 또는 기금" 등 정부 내부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77]

또한 「국가재정법」에 사용된 '차입금'의 개념도 대부분 예산집행지침과 마찬가지로 정부 외부로부터의 차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재정법」 제18조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세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면서,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의 개념에 정부 내부거래인 예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90조제4항제3호[78]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의 차입금에 예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그 외의 「국가재정법」상 차입금에는 예수금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제70조제5항[79]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가 제3항제4호다목(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근

---

75) 국내차입금 상환(510-01목), 해외차입금 상환(510-02목), 예수금 원금 상환(510-04목)

76) 국내차입금 상환(510-01목)의 대상은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차입금, 국공채, 한국은행 차입금 6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해외차입금 상환(510-02목)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차관, 기타 해외채무로서 정부 내부거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77) "510-04 예수금 원금 상환
1.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88.)

78)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9)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거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명세서에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3항제4호다목의 차입금을 국채 발행 및 상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수금과는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 제91조제3항제3호[80]는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차입금'에 대한 해석은 「국가재정법」의 조항의 취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임.[81]

그러나 동 조항은 국가채무의 구성내역은 '차입금'의 개념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오히려 '차입금'이 정부 외부로부터 조달한 재원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국가재정법」상 '차입금'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보다는 사전에 제출 여부에 대하여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외국환평형기금은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원금을 조기상환하고, 공자기금은 예수원금 조기회수를 통해 세수결손 상황에서 국채발행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가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하였거나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어야 한다고 보여짐.

---

80)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1)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의 채무관리 효율화라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의 채무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상환한 것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13억 3,300만원(△9.6%)이 적은 3,87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6억 1,500만원(△21.4%)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48,192	548,192	492,821	△55,371	428,539	428,539	387,206	△41,333	△105,615
총수입	548,192	548,192	492,821	△55,371	428,539	428,539	387,206	△41,333	△105,615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07억 9,200만원(△1.6%)이 적은 1조 8,935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2,100만원(△0.4%)이 감소함.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933,000	1,921,878	1,900,294	△21,584	1,924,078	1,924,078	1,893,573	△30,792	△6,721
총지출	1,933,000	1,921,878	1,900,294	△21,584	1,924,078	1,924,078	1,893,573	△30,792	△6,721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85억 3,900만원으로, 4조 8,142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872억 600만원이 수납(수납률 8.0%)되고 2,776억 9,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4조 1,493억 4,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28,539	428,539	-	428,539	4,814,250	387,206	277,697	4,149,347
합 계	428,539	428,539	-	428,539	4,814,250	387,206	277,697	4,149,34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243억 6,600만원으로, 이 중 1조 8,935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307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924,078	1,924,078	288	-	-	1,924,366	1,893,573	-	30,792
합 계	1,924,078	1,924,078	288	-	-	1,924,366	1,893,573	-	30,79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세청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6,485억 4,200만원이 증가한 33조 8,923억 3,6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192억 2,200만원, 78억 1,0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조 5,451억 2,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304억 5,300만원 각각 증가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7,773억 9,000만원 증가한 29조 2,986억 4,700만원으로, 이는 장기충당부채가 848억 9,4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64억 9,800만원 각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가 1조 8,687억 8,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288억 4,900만원이 감소한 4조 5,936억 8,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세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58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4억 5,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4,634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3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세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3,892,336	32,243,794	1,648,542	5.1
		유동자산	19,094,096	17,548,975	1,545,121	8.8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3,074,400	3,082,210	△7,810	△0.3
		무형자산	75,341	94,563	△19,222	△20.3
		기타비유동자산	11,648,499	11,518,046	130,453	1.1
	부 채		29,298,647	27,521,257	1,777,390	6.5
		유동부채	27,730,869	25,862,087	1,868,782	7.2
		장기차입부채	44,617	51,115	△6,498	△12.7
		장기충당부채	1,523,162	1,608,056	△84,894	△5.3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593,688	4,722,537	△128,849	△2.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58,915	285,371	△26,456	△9.3
	재정운영순원가		2,463,480	2,374,104	89,376	3.8
	재정운영결과		2,463,480	2,374,104	89,376	3.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세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국가 재정을 뒷받침,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국세행정 전반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주요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음.

2023년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하여, 국세청은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국세청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근무일수 15일 이상 직원에게는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지급하면서 근무일수 15일 미만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일할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개정하였으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관련하여, 국세청은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당초 예산상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나, 「국가재정법」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송수행비용 사업의 내역인 승소장려금은 지급 근거 및 한도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국세청 내부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승소장려금의 지급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 국세청은 공사비 낙찰차액 일부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 집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특정업무경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왜곡 이행 부적정 등

가. 개 요

‘특정업무경비’ (250-03목)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및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2023년도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 511억 7,000만원 중 510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250-03목)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정업무경비 합계	51,170	51,170	-	-	51,170	51,001	-	169	50,767
부과·징수자료수집비	49,031	49,031	-	-	49,031	48,867	-	164	48,725
역외탈세대응활동	1,792	1,792	-	-	1,792	1,789	-	3	1,713
조사활동지원	176	176	-	-	176	175	-	1	15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71	171	-	-	171	170	-	1	171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국세청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근무일수 15일 이상 직원에게는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지급하면서 근무일수 15일 미만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일할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개정하였으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는 국세청에 대해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이

근무일수 등 실소요를 반영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주의)" 을 채택하였음. 이는 당시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근무일수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직원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특정업무경비 지급액과 실제 근무일수와의 비례성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라는 취지임.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관련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ㅇ[지적사항]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서는 근무일수 15일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어 특정업무경비 지급액과 실제 근무일수와의 비례성이 낮음	ㅇ특정업무경비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2024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일할계산 지급방식 반영하여 조치
ㅇ[시정요구사항]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이 근무일수 등 실소요를 반영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주의)	ㅇ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29일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2024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일할계산 지급방식 반영하여 '조치완료' 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국세청이 2024년에 개정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15일 미만 근무 직원에게는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하면서,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여전히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수와 비례하여 지급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의 당초 취지를 왜곡하여 국세청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였음.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개정내용]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2024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개정)
ㅇ(지급기준) 매월 국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	ㅇ (지급기준) 매월 국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15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자료: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경찰청 치안활동비 등 다른 기관 유사 사례에서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법령 또는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뚜렷한 사유 없이 근무일수 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직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정액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세청은 국회 결산 시정요구 당초 취지에 따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예산상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전용 부적정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은 국세청 본부 조직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47억 7,600만원 중 246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2,994	22,994	-	1,782	24,776	24,692	-	84	22,945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당초 예산상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나, 「국가재정법」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2022년 12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채용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2023년에는 청년인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건비 사업에서 18억 2,500만원을 전용하여 일용임금(110-04목)으로 청년인턴 190명을 채용한 후 이들의

2) 일반회계-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7111-200)(운영지원과)

급여와 고용부담금을 집행하였는데,[3]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전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음.[4]

당초 2023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의 각목명세서를 보면, 일용임금 예산의 내역은 기록물관리 보조를 위한 2인에 대한 인건비로 명시되어 있을 뿐 청년인턴 관련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음.

[2023년도 각목명세서상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의 일용임금 내역]

(단위: 천원)

[200]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2,994,000
[110]인건비		11,445
[110-04]일용임금		11,445
1.기록물관리		11,445
가. 기록물관리 보조	2인×32,888원×174일 =	11,445

자료: 국세청

그럼에도 국세청은 청년인턴을 채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2023년에 세 차례에 걸쳐 총 200명의 청년인턴 채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총 190명으로 목표 대비 95%의 인원을 채용하였고 중도퇴사인원은 47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24.7%에 해당하였음

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승소장려금: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 지급 부적정

가. 개 요

‘승소장려금’ 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 포상 성격으로 지급 받는 금전적 포상금(310-03목) 과목으로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 8,2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5)]

[2023년도 승소장려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송수행비용	8,084	8,084	-	-	8,084	8,084	-	-	8,893
승소장려금	582	582	-	-	582	582	-	-	582

국세청 승소장려금은 기본승소장려금이 5~20만원이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본승소장려금 외에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패소한 사건이 있는 경우 소송수행자별 승소장려금 지급액에서 5~20만원을 차감하여 지급되고 있음.

2023년에 총 218명에게 총 5억 8,200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평균지급액은 2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2020~2023)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급금액(A)	577	582	582	582
지금인원(B)	205	186	197	218
1인당 평균지급액 (A/B)	2.81	3.13	2.95	2.67

자료: 국세청

5) 일반회계-소송수행비용(2133-301)(징세법무국)

나. 검토의견

승소장려금은 지급 근거 및 한도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국세청 내부규정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으나,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승소장려금의 지급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다만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국세청은 당초 국무총리훈령[6]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훈령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이 폐지(1995. 6. 23.)되었고, 이후 법무부가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2016. 5. 29.)되었음.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은 법령에 승소장려금의 지급 근거 및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세청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7]에 근거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어긋난 집행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에 기여한 내부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 수행 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 소송기법 연구 등 추가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승소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며, 승소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입장임.

---

6)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190호)」
3. 위법부당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조치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행정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소송수행상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고 승소판결을 받게한 소송수행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포상 및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

7)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 ①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마다 승소금액비율과 승소노력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세부지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승소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 제55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제60조의2(소송사무의 점검) 규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지급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승소장려금의 개인별 지급한도액은 연간 1,600만원으로 한다.

그러나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등을 통해 이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승소장려금 지급이 과연 승소율의 상승 등과 같은 유의미한 성과로 귀결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매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국세청은 승소장려금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기관운영 기본경비: 공사비 낙찰차액의 임의 사용 부적정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국세청 본부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0억 6,200만원 중 103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2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 기본경비	11,062	11,062	-	△429	11,062	10,348	-	285	12,408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공사비 낙찰차액 일부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 집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설비(420목) 예산 중 공사비(420-03목)·설계비(420-01·02목)·감리비(420-04목)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 등의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비 등 낙찰차액의 불용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예산상 계획되지 않은 추가 집행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국세청은 2023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약

8) 일반회계-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0)(운영지원과)

3,400만원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9)]

[2023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공사비 낙찰차액을 사용한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약건명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용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부세우관 문 교체 공사 (중부지방국세청)	16	본청에서 반납받아 다른 공사에 사용
	문학세우관 창호교체 공사 및 단열재 설치 공사 (인천지방국세청)	18	

자료: 국세청

9) 국세청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외에도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400만원을 금천 세무서 임시청사 소방공사에 사용하였음.

5. 부과·징수 지원 사업: 연례적인 이·전용(감) 개선 필요

가. 개 요

‘부과・징수 지원’ 사업은 국세 부과・징수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현지 출장여비(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14억 7,300만원 중 381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9%)되고 33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3년도 부과·징수 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부과・징수 지원	47,111	47,111	-	△5,638	41,473	38,102	-	3,371	45,355

나. 검토의견

부과・징수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전용(감)과 불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이・전용을 통해 부과・징수 지원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부족액을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020년 이후 연도별 이・전용 감액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76억 2,500만원, 2021년 67억 6,400만원, 2022년 189억 8,300만원, 2023년에는 56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0년 58.7%, 2021년 41.1%, 2022년 55.9%, 2023년 80.9%로 2023년에는 예년보다 집행률이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80% 수준에 그쳤음.

10) 일반회계-부과・징수 지원(2131-300)(기획조정관)

[최근 4년(2020~2023)간 부과·징수 지원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59,347	52,347	-	△7,625	44,722	30,739	58.7	68.7	-	13,983
2021	53,412	53,412	-	△6,764	46,648	21,939	41.1	47.0	-	24,709
2022	52,345	46,602	-	△18,983	27,619	26,038	55.9	94.3	-	1,581
2023	47,111	47,111	-	△5,638	41,473	38,102	80.9	91.9	-	3,371

2023년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관서 누수 피해복구비 지원, 은닉재산신고포상금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이·전용 사유였음.

[2023년 부과·징수 지원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이용 (2023.8.8.)	75	서울청 기본경비	420-03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관서 침·누수 피해복구비 지원
	71	중부청 기본경비		
	217	대전청 기본경비		
	56	광주청 기본경비		
	68	대구청 기본경비		
	20	부산청 기본경비		
	15	인천청 기본경비		
이용 (2023.9.25.)	583	압류재산공매	310-03	은닉재산신고포상금 부족
이용 (2023.9.25.)	1,965	납세고지서 등 발송	210-02	공공요금(우편요금) 부족
이용 (2023.10.23.)	1,000	서울청 기본경비	210-02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
전용 (2023.9.25.)	482	확정채무 지급	310-02	배상금 부족
전용 (2023.10.5.)	73	역외탈세대응활동	220-02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국외출장 수요 회복
전용 (2023.11.27.)	1,000	조사활동지원	310-03	법정신고포상금 부족
승인전용 (2023.12.7.)	13	역외탈세대응활동	340-02	OECD 정보교환IT시스템 사용료, IOTA 연회비 예산 부족

자료: 국세청

「국가재정법」 체계를 보면 제45조[11]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제46조 및 제47조에서 예외적으로 이용 또는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의 융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이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연례적인 이·전용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관세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96억 900만원(△20.7%)이 적은 750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9,800만원(28.9%)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7,568	37,568	58,217	20,649	94,624	94,624	75,015	△19,609	16,798
총수입	37,568	37,568	58,217	20,649	94,624	94,624	75,015	△19,609	16,798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80억 7,600만원(△2.8%)이 적은 6,221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 400만원(5.6%)이 증가함.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14,134	611,608	589,269	△22,339	640,249	640,249	622,173	△18,076	32,904
총지출	614,134	611,608	589,269	△22,339	640,249	640,249	622,173	△18,076	32,904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46억 2,400만원으로, 7,050억 3,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50억 1,5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6%)되고 30억 4,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6,269억 7,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4,624	94,624	-	94,624	705,034	75,015	3,040	626,979
합 계	94,624	94,624	-	94,624	705,034	75,015	3,040	626,97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441억 800만원으로, 이 중 6,221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71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7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40,249	640,249	3,859	-	-	644,108	622,173	7,176	14,759
합 계	640,249	640,249	3,859	-	-	644,108	622,173	7,176	14,759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관세청 자산은 전년 대비 342억 400만원이 증가한 4조 2,070억 4,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266억 9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73억 7,800만원 감소한 2조 7,899억 4,0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415억 4,10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가 904억 6,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15억 8,100만원이 증가한 1조 4,171억 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관세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471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683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1억 2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관세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207,044	4,172,840	34,204	0.8
		유동자산	2,702,983	2,793,634	△90,651	△3.2
		투자자산	1,096	798	298	37.3
		일반유형자산	1,454,772	1,328,163	126,609	9.5
		무형자산	38,868	42,197	△3,329	△7.9
		기타비유동자산	9,324	8,047	1,277	15.9
	부 채		2,789,940	2,837,318	△47,378	△1.7
		유동부채	2,703,640	2,794,106	△90,466	△3.2
		장기차입부채	68,245	26,704	41,541	155.6
		장기충당부채	18,055	16,508	1,547	9.4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417,103	1,335,522	81,581	6.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7,132	146,286	846	0.6
	재정운영순원가		668,317	528,215	140,102	26.5
	재정운영결과		668,317	528,215	140,102	26.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관세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관세청은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음.

2023년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세입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면허료 및 수수료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경조치 연장에 따라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과정에서 특허수수료 감경조치 연장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청사시설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공사비 낙찰차액 일부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설 보수공사 등에 집행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셋째, 관세청은 K-Customs Week 개최 행사를 용역업체를 통해 진행하였고 이 경우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일반수용비·임차료 및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또는 전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징수실적의 제고 필요

가. 개 요

관세청 세입예산 중 **‘과태료’**는「관세법」제277조에 따라 특허사항위반, 용도세율 적용위반, 적하목록 미제출,「외국환거래법」제32조에 따라 지급절차 위반, 지급수단 허위 수출입신고,「대외무역법」제5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단속 관련 검사 거부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3년에 징수결정액 644억 3,300만원 중 107억 8,000만원을 수납하고 535억 1,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3,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음.[2)]

‘과징금’은「관세법」제178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거나「대외무역법」제33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3년에 징수결정액 73억 1,800만원 중 39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33억 1,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음.[3)]

‘가산금’은 관세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체납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3년에 징수결정액 5,735억 2,500만원 중 16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5,689억 5,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8억 9,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음.[4)]

---

2) 일반회계-과태료(56-563)(심사국)

3) 일반회계-과징금(56-565)(심사국)

4) 일반회계-가산금(58-581)(심사국)

[2023년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과태료	7,426	7,426	64,433	10,780	145.2	16.7	53,515	138	8,892
과징금	3,068	3,068	7,318	3,993	130.1	54.6	3,319	6	2,857
가산금	1,356	1,356	573,525	1,675	123.5	0.3	568,953	2,896	1,319

나. 검토의견

관세청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세입과목별 주요 미수납사유와 연도별 수납률을 보면, 과태료는 주요 미수납사유가 '체납자무재산', '체납정리중', '납기미도래'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32.9%,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임.

[최근 4년(2020~2023)간 과태료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
					계	징수 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 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납 정리중	시효 완성
2020	8,978	16,061	5,280	32.9	10,644	-	1,602	136	1,896	7,010	137
2021	9,247	41,469	5,279	12.7	34,992	6	653	2	1,011	33,320	1,198
2022	4,813	54,887	10,421	19.0	44,273	286	1,729	444	2,233	39,581	194
2023	7,426	64,433	10,780	16.7	53,515	628	6,305	362	24,592	21,627	138

자료: 관세청

과징금의 주요 미수납사유는 '체납정리중', '체납자무재산'이며,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51.3%, 2021년 45.8%, 2022년 51.1%, 2023년 54.6%임.

[최근 4년(2020~2023)간 과징금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
					계	징수유예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무재산	체납정리중	시효완성
2020	2,541	3,198	1,641	51.3	1,542	160	53	13	469	847	15
2021	2,541	5,933	2,720	45.8	2,939	466	154	26	40	2,252	274
2022	2,617	6,711	3,431	51.1	3,078	182	60	86	76	2,674	203
2023	3,068	7,318	3,993	54.6	3,319	24	10	82	293	2,910	6

자료: 관세청

가산금은 주요 미수납사유가 ‘체납정리중’, ‘정리유예’, ‘체납자무재산’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3~0.4% 수준에 그치고 있음.

[최근 4년(2020~2023)간 가산금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
					계	징수유예	통관진행	정리유예	체납자무재산	체납정리중	시효완성
2020	770	432,405	1,631	0.4	427,737	3	237	23,069	39,869	364,560	3,037
2021	1,260	459,429	1,473	0.3	454,501	-	177	7,746	29,483	417,095	3,455
2022	1,000	515,459	1,972	0.4	504,916	-	105	12,137	12,323	480,351	8,572
2023	1,356	573,525	1,675	0.3	568,953	-	65	20,521	20,071	528,295	2,896

자료: 관세청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은 법령상 의무 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수단으로서, 수납실적이 저조할 경우 그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 징세기관과의 합동단속 활성화 등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결손 요인의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 는 면허·허가·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의 수입 과목으로, 관세청의 면허료 및 수수료는 면세점이 납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5] 2023년도 예산액은 749억 1,300만원으로 515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15억 3,900만원이 수납되고 2,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면허료 및 수수료	74,913	74,913	51,560	51,539	68.8	99.9	21	-	101.020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는「관세법」제176조의2제4항[6]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면세업체별로 매출액의 0.1~1.0%를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에 대한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감경될 수 있음.

나. 검토의견

면허료 및 수수료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8.8%로, 이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경조치 연장에 따른 것이고 2024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수납액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과정에서 특허수수료 감경조치 연장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65-651)(심사국)

6)「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2021년(2020년 매출액)부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였음.

그러나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은 특허수수료를 감경하지 않고 100% 부과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23년 2월 말에 정부가 특허수수료 감경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 749억 1,300만원의 68.8%인 515억 6,000만원에 그쳤음.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특허수수료를 감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24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을 2023년보다 261억 700만원(34.8%) 증액한 1,01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3월에 특허수수료 감경조치 재연장이 결정되어 2024년에도 면허료 및 수수료의 예산액 대비 과소수납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4년 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22,158	122,158	78,428	78,410	64.2	99.9	18	-
2021	58,595	58,595	24,650	24,633	42.0	99.9	17	-
2022	25,330	25,330	36,949	36,926	145.8	99.9	23	-
2023	74,913	74,913	51,560	51,539	68.8	99.9	21	-
2024	101,020	-	-	-	-	-	-	-

자료: 관세청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이후에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음에도 면허료 및 수수료는 예산안 편성상 계획(특허수수료 100% 부과)과 실제 조치(특허수수료 50% 감경) 간에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관세청의 면허료 및 수수료 과목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수백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세입결손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예산안 편성단계 또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특허수수료 감경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세입결손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세 출>

3. 청사시설관리 사업: 공사비 낙찰차액의 임의 사용 및 수의계약 부적정

가. 개 요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관세청 본청과 세관 및 소속기관의 시설개선, 유지보수, 청·관사 임차 및 보육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5억 2,900만원 중 108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4%)되고 2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3년도 청사시설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사시설관리	10,294	10,294	1,235	±30	11,529	10,886	203	440	10,294

나. 검토의견

첫째, 관세청은 공사비 낙찰차액 일부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시설 보수공사 등에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설비(420목) 예산 중 공사비(420-03목)·설계비(420-01·02목)·감리비(420-04목)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 등의

7) 일반회계-청사시설관리(7132-440)(기획조정관)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비 등 낙찰차액의 불용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예산상 계획되지 않은 추가 집행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정한 재정규율 사항임.

그러나 관세청은 2023년에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총 1억 4,700만원을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공사 시급 소요에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음.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8)]

[2023년 청사시설관리사업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공사비 낙찰차액을 사용한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약건명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용도
청사시설관리	2023년도 노후관사 리모델링 공사	96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보수공사 시급 소요에 사용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화물용승강기 교체(제조구매 및 설치)	42	
	노후관사 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싱크대 및 신발장) 구매	9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관세평가분류원은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3억 2900만원의 계약금액을 6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쟁입찰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9)]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 또는 지명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관세청은 청사시설관리 사업 외에도 특송화물통관지원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6,000만원을 적재공간 확보 관련 공사에 사용하면서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의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은 총 3억 2,900만원 규모인 환경개선공사를 계약금액 약 5,500만원의 6개 계약 건으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은 각 계약 건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10]에 따른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시 5,500만원 이하)의 건으로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6건 공사계약의 세부내용을 보면, 공사시기가 2023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으로 유사하고, 공사대상 공간도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내부의 회의실/사무실/방송실/민원실/체력단련실 등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내'라는 동질성이 있음에도 관세평가분류원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3개 여성기업과 총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023년 관세평가분류원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건명	계약금액	업체명	계약착수 연월	계약종료 연월	수의계약 사유
관세평가분류원 환경개선 공사(회의실/방송실/민원실)-전기통신	55	㈜거륭이엔지	2023.04.	2023.05.	여성기업
관세평가분류원 2,3,4층 사무실 공사	55		2023.04.	2023.05.	여성기업
관세평가분류원 환경개선 공사(체력단련실/샘플보관실)	55	㈜나무	2023.04.	2023.05.	여성기업
관세평가분류원 환경개선 공사(회의실/방송실/민원실)-외부마감	54		2023.04.	2023.05.	여성기업
관세평가분류원 환경개선 공사(회의실/방송실/민원실)-목공사	55	참존종합건설	2023.04.	2023.05.	여성기업
관세평가분류원 2,3,4층 회의실 공사	55		2023.04.	2023.05.	여성기업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공사의 규모와 목적, 시기 및 대상 등 공사내용을 감안할 때 하나의 공사 건으로 하여 경쟁입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최대금액인 5,500만원의 계약 건으로 다수 분할하여 특정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K-Customs Week 개최 사업(신규): 예산 전용 등 절차 미준수

가. 개 요

‘K-Customs Week 개최’ 사업은 세계 관세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에 개최하는 K-Customs Week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도 K-Customs Week 개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187	1,187	-	-	1,187	1,172	-	15	287
K-Customs Week 개최	900	900	-	-	900	886	-	14	-

K-Customs Week는 202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관계자가 모여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마약 등 위해물품 국가 간 이동 차단 등을 의제로 여러 회의가 진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관세청은 K-Customs Week 개최 행사를 용역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일반수용비·임차료 및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또는 전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관세청은 K-Customs Week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와 계약금액 8억 7,900만원(조달수수료 699만원 별도)으로 “K-Customs Week 행사 기획 및 준비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11) 일반회계-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1441-501)(국제관세협력국)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7,800만원, 임차료(210-07목) 1억 3,600만원, 일반용역비(210-14목) 1억 6,200만원, 국외업무여비(220-02목) 4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용역업체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일반용역비이고 나머지 일반수용비 등은 관세청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이나, 관세청은 해당 용역업체에게 일반수용비・임차료 및 국외업무여비 등의 예산도 집행하였음.

[2023년도 K-Customs Week 개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K-Customs Week 개최	900	900	-	-	900	886	-	14	-
일반수용비	178	178	-	-	178	164	-	14	-
임차료	136	136	-	-	136	136	-	-	-
일반용역비	162	162	-	-	162	162	-	-	-
국외업무여비	424	424	-	-	424	424	-	-	-

이에 대해 관세청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를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 내부 직원들이 직접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일반용역비 외에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주요 과업을 통합하는 발주계약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 경우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는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국외업무여비는 일반용역비로 전용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일반용역비로 전액 집행했어야 함에도 관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일반용역비로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사업을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및 국외업무여비로도 집행하였음.

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비목별 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세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744억 200만원(23.2%)이 많은 3,946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4억 6,400만원(16.3%)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92,962	493,987	573,070	79,083	517,227	517,227	636,609	119,382	63,539
총수입	300,862	300,862	339,166	38,304	320,228	320,228	394,630	74,402	55,464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26억 3,000만원(△8.6%)이 적은 2,404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1억 9,200만원(△14.3%)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92,962	493,987	477,326	△16,713	517,227	517,227	494,094	△23,133	16,768
총지출	294,665	293,640	280,636	△13,004	263,074	263,074	240,444	△22,630	△40,192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172억 2,700만원으로 7,035억 2,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366억 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5%)되고 669억 1,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조달특별회계	517,227	517,227	-	517,227	703,523	636,609	-	66,914
- 손익계정	351,786	351,786	-	351,786	539,759	472,845	-	66,914
- 자본계정	165,441	165,441	-	165,441	163,764	163,764	-	-
합 계	517,227	517,227	-	517,227	703,523	636,609	-	66,914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247억 1,000만원으로, 이 중 4,940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2%)되고 151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4억 3,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조달특별회계	517,227	517,227	7,483	±1,354	-	524,710	494,095	15,182	15,433
- 손익계정	351,786	351,786	5,032	±1,354	-	356,818	340,975	6,648	9,195
- 자본계정	165,441	165,441	2,451	-	-	167,892	153,120	8,534	6,238
합 계	517,227	517,227	7,483	±1,354	-	524,710	494,095	15,182	15,433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조달청 자산은 전년 대비 1,115억 4,600만원이 증가한 2조 6,094억 8,2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76억 1,200만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조 7,939억 1,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1억 9,700만원 감소한 86억 6,100만원으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가 각각 5억 6,400만원, 6억 3,700만원 감소한 데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27억 4,300만원이 증가한 2조 6,008억 2,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조달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980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8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53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3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조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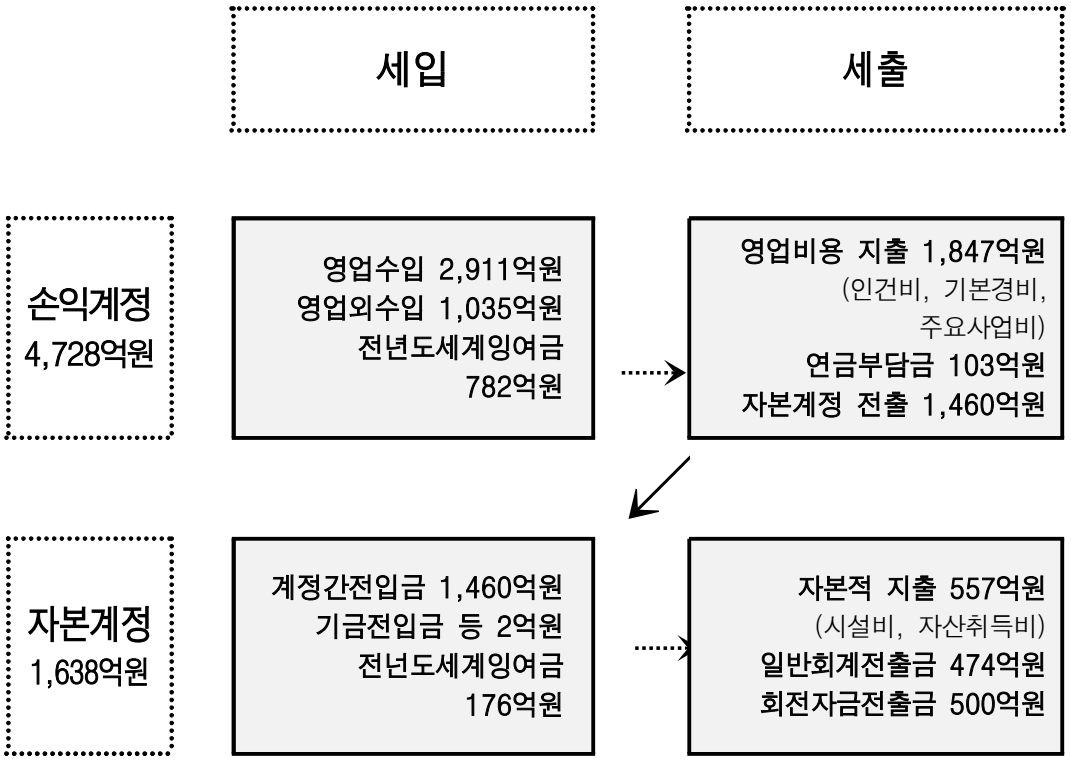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609,482	2,497,936	111,546	4.5
		유동자산	1,793,912	1,663,909	130,003	7.8
		투자자산	4,199	3,413	786	23.0
		일반유형자산	783,744	801,356	△17,612	△2.2
		무형자산	23,703	23,653	50	0.2
		기타비유동자산	3,924	5,605	△1,681	△30.0
	부 채		8,661	9,858	△1,197	△12.1
		유동부채	3,499	4,063	△564	△13.9
		장기차입부채	5,158	5,795	△637	△11.0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4	-	4	-
	순자산		2,600,821	2,488,078	112,743	4.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98,018	△139,854	41,836	△29.9
	재정운영순원가		△162,321	△152,531	△9,790	6.4
	재정운영결과		△115,361	△93,058	△22,303	24.0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조달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정부기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외에 별도로 회전자금을 보유, 수요물자사업과 비축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익금은 조달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함.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73억 5,700만원, 회전자금으로 5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조달특별회계 재정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조달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및 공적개발원조 연계 등을 통한 해외 레퍼런스 확보와 수출상담회·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나라장터 전면 개편을 위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평가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조달 심사·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조달청은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 증가로 인하여 기타영업외잡수익의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수요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적정 규모로 반영함과 동시에 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을 2023년 최초로 R&D 과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소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한국조달연구원은 이 중 평가·운영 업무를 외부 기관인 과학사업화진흥원에 재위탁하고 기획평가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재교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조달청은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연을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비용 관련 예산을 개월 수에 따라 조정·불용하지 않고, 기존 장기계속 계약(별도 시스템인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을 통해 예산과 과업을 일괄 통합하는 방식으로 연내 집행처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환류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2)3)]

이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원칙적으로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됨.

기획재정부는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부터는 부처 자체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의무화하고, 지출구조정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

2)「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서 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음.

[2021~2023년 조달청 소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평가 결과	2023 결산	2024 요구액	2024 확정예산	평가사유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지원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지원	미흡 (2023)	3,545	3,704	3,704	성과지표의 목표치 부적절
조달전문 교육운영	조달전문교육운영	미흡 (2022)	1,210	1,265	1,265	집행률부진
	조달전문교육수입 대체경비		251	257	257	집행률부진
정부조달국제 협력체제구축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2,494	3,585	3,585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184	544	544	
조달전문교육 운영	조달전문교육운영	미흡 (2021)	1,210	1,265	1,265	집행률부진, 성과목표 미달
	조달전문교육수입 대체경비		251	257	257	

자료: 조달청

지난 3년간 실시된 2021~2023년 조달청 소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1개 단위사업, 2022년 2개 단위사업, 2023년 1개 세부사업이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검토의견

2021~2023년 '미흡' 등급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목표가 평가대상 사업이 아닌 다른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감액을 중심으로 달성되고 있어 자율평가 결과 환류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평가 결과가 실제 평가 대상사업의 지출구조조정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난 3년간 조달청 소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단위사업 수준 평가가 이루어졌던 2021년은 ‘조달전문 교육운영’ 1개 사업이, 2022년은 ‘조달전문 교육운영’ 및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구축’ 2개 사업이 ‘미흡’등급을 받았으며, 세부사업 수준 평가로 전환되었던 2023년에는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1개 사업이 ‘미흡’등급을 받았음.

[2021년~20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사업					
	구분	사업명	구조 조정 목표	구분	사업명	당해 연도 예산(A)	지출 구조 조정 금액	차년도 예산 (정부안) (B)	증감 (B-A)
2023 (2022 회계)	세부 사업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450	세부 사업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9,833	△750	9,642	△191
2022 (2021 회계)	단위 사업	조달전문 교육 운영	△1,271	단위 사업	조달전문교육 운영	1,478	△10	1,493	15
					정부조달 국제협력제재 구축	3,325	△527	2,798	△527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10,623	△800	12,812	2,189
					소 계	15,426	△1,337	17,103	1,677

(단위: 백만원)

평가 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사업					
	구분	사업명	구조 조정 목표	구분	사업명	당해 연도 예산(A)	지출 구조 조정 금액	차년도 예산 (정부안) (B)	증감 (B-A)
2021 (2020 회계)	단위 사업	조달전문 교육 운영	△603	단위 사업	조달전문 교육 운영	1,546	△92	1,478	△68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856	△32	1,839	△17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3,531	△180	3,368	△16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223	△122	3,584	361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1,186	△56	1,119	△67
					조달행정 역량강화	5,929	△121	5,945	16
					소 계	17,271	△603	17,333	62

자료: 조달청

그런데 이들 사업의 자율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에 환류된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평가 결과 도출된 지출구조조정 목표 △6억 300만원 중 △9,200만원만이 해당 단위사업(‘조달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삭감을 통해 달성되었음. 비슷하게, 2022년의 경우 지출구조조정 목표 △12억 7,100만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5억 3,700만원만이 ‘미흡’ 등급을 받은 2개 단위사업(‘조달전문교육 운영’ △1,000만원,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구축’ △5억 2,700만원)에서 달성되었음.

2023년의 경우에도 ‘미흡’ 등급을 받은 세부사업은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이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세부사업은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으로, 2024년도 정부안 기준 예산액이 7억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은 미흡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 중 일부를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규정에 따라 총지출구조조정 목표(△1%)를 충족한 경우로서, 단위(세부)사업별 △10%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평가등급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 마련이 가능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가능한 향후 해당 지침의 예외가 아닌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하겠다고 밝혔음.[4)]

예외규정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3개년 연속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지출구조조정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보다 다른 사업의 삭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 있고, 사업 단위의 사업성과 관리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조달청은 연도별 지출구조조정 목표가 '미흡' 등급을 받은 평가대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감액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원칙>

□ 지출구조조정 원칙

ㅇ (원칙) 미흡 등급 단위('23년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10%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삭감을 준수

ㅇ **(예외) 총지출구조조정 목표(△1%)를 충족한 경우로서, 단위(세부)사업별 △10%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평가등급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 마련가능**

자료: 조달청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2. 기타영업외잡수익 등: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주요 세입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타영업외잡수익’ 은 회전자금 예치이자수입, 재활용사업수입, 이화학시험수수료, 대금납입 연체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896억 5,700만원 중 885억 9,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8%)되고, 미수납액 10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음.[5)]

‘시설계약사업수입’ 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에 따른 수수료가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497억 5,200만원 중 453억 5,550만원이 수납(수납률 91.2%)되고, 미수납액 43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음.[6)]

[2023년도 기타영업외잡수익 및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영업외 잡수익	18,519	18,519	89,657	88,590	-	1,067	98.8	53,246
시설계약 사업수입	39,306	39,306	49,752	45,355	-	4,397	91.2	40,686

나. 검토의견

첫째, 조달청은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이 증가하고

5)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기타영업외잡수익(69-697)(기획조정관)

6)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시설계약사업수입료 및 수수료(45-454)(시설사업국)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과소반영하여 최근 4년간 기타영업외잡수익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정 규모로 세입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기타영업외잡수익의 수납액은 885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85억 1,900만원의 478.3%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21년 114.2%, 2022년 275.1%보다 높은 수준임.

[2020~2023년 기타영업외잡수익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18,000	18,000	18,000	21,817	20,928	116.3
2021	19,148	19,148	19,148	22,841	21,857	114.2
2022	17,572	17,572	17,572	49,088	48,342	275.1
2023	18,519	18,519	18,519	89,657	88,590	478.3

자료: 조달청

기타영업외잡수익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 이유는 동 수입의 주된 수입원인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이 최근의 고금리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조달청은 세입예산 편성시 직전년도 5개년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관성적으로 예치이자 수납액을 추계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결산상 수납액은 2020년 128억 7,700만원에서 2021년 158억 4,500만원, 2022년 432억 1,800만원. 2023년 820억 4,400만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음. 이렇게 수납액이 2020년 대비 6.4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동안 예산액은 1.05배 증가하는 데에 그치면서,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게 되었음.

[2021~2023년 회전자금 예치이자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회전자금예치이자	12,655	12,877	12,655	15,845	11,875	43,218	13,284	82,044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기타영업외잡수익 세입예산 편성 시 최신의 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설계약사업수입도 매년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요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계약사업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20년 105.3% 이후로 2021~2023년 매년 110%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은 전년대비 4.8%p 증가한 115.4%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20~2023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미수납액(B-C)	미수납률((B-C)/B)
	본예산	추경(A)					
2020	33,788	33,788	37,801	35,586	105.3	2,215	5.6
2021	37,869	37,869	45,709	43,449	114.7	2,260	4.9
2022	38,917	38,917	46,321	43,023	110.6	3,298	7.1
2023	39,306	39,306	49,752	45,355	115.4	4,397	8.8

자료: 조달청

당초 계획보다 수납액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징수결정된 시설계약사업 수입이 연도 내에 징수되지 못하고 미수납되는 비율은 2023년 8.8%로 2020년 5.6%보다 3.2%p 증가하였음.

특히, 발생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수요기관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의 비율이 2020년 이후 급증하여 2023년 49.5%를 기록하였음.

[2018~2023년 미수납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

사 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요기관 예산부족(A)	113	361	167	412	1,267	2,220
납기미도래	2,259	2,206	2,047	1,848	2,031	2,176
합 계(B)	2,372	2,567	2,214	2,260	3,298	4,396
A/B	4.8	14.1	7.5	18.2	38.4	49.5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해 조달청은 미수납액이 집중되어 있는 일부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 납부를 촉구(2023.9.5.~2024.2.28.)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요기관에 발송하는 ‘공사계약 체결 안내문서’에 조달수수료 납부 안내문을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023년도 미수납액 발생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미수납액	미수납액 규모 상위 3개 사업	사업명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267	45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43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36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59	38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33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33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문화체육관광부	94	61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실시설계
		25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8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전기공사
법무부	81	8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축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71	21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19	흑산도항 개발사업
		16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62	24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보강공사
		22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16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	22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16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6	20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2공구)
		16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1공구)
국방시설본부	17	17	22-국-00부대 설계용역(B515)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	15	15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2단계)
국토교통부	13	10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3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라남도	11	11	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10	10	인천지방법원 별관 증축 및 주차타워 설치 공사
전라북도 정읍시	9	6	정읍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건축공사(장기계속계약)
		2	정읍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전기공사
		1	정읍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소방공사
대통령경호처	7	7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경호처 특수운전훈련장 건립공사)

(단위: 백만원)

기관명	미수납액	미수납액 규모 상위 3개 사업	사업명
충청남도 서산시	6	6	와우천 정비사업
전라북도 남원시	5	5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괄분)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4	4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외 기반시설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4	4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BL3) 신축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4	4	도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준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2	영장류 ABL3 연구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
경상남도 밀양시	2	2	죽월 마을하수도 설치사
경상남도 양산시	1	1	양산 내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1	1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신축공사(통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1	1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합 계	2,220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향후 시설계약사업수입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요기관 예산 부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전년도세계잉여금: 연례적 과소계상에 따른 조달특별회계 내 여유재원 과다보유 문제

가. 개 요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 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782억 3,7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7)]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	37,519	37,519	78,237	78,237	-	-	100.0	92,914

나. 검토의견

조달청은 매년 손익계정의 전년도세계잉여금 과소 계상에 따라 초과수납이 발생하여 조달특별회계 내 여유재원이 과다 보유되고 있으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0~2023년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세입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22.2%와 116.4%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91.4%, 2023년에는 208.5%로 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의 2배 수준을 보였음.

7)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88-893)(기획조정관)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의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31,533	31,533	31,533	38,547	38,547	122.2
2021	26,090	26,090	26,090	28,601	30,384	116.4
2022	29,548	29,548	29,548	56,568	56,568	191.4
2023	37,519	37,519	37,519	78,237	78,237	208.5
2024	92,914					

자료: 조달청

뿐만 아니라 2023년 결산상 손익계정의 잉여금은 1,318억 7,000만원으로 추계되어 2024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929억 1,400만원보다 389억 5,600만원이 초과수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2023년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이 당초 예산 대비 687억 6,000만원 초과수납되었고,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375억 1,900만원에 비해 407억 1,800만원 초과수납되는 등 세입에서 초과수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2021~2023년 조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결산
세입(계정합)	511,956	573,070	636,609
손익계정(A)	345,515	395,730	472,845
자본계정	166,441	177,340	163,764
세출(계정합)	407,120	477,274	494,094
손익계정(B)	288,947	317,492	340,975
자본계정	118,173	159,782	153,120
손익계정 결산상 잉여금 (A-B) (*차년도 결산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수납액)	56,568	78,238	131,870

자료: 조달청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의 초과 수납은 해당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어져 차년도 결산 시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의 초과 수납 요인으로 또다시 작용하게 됨. 그 결과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의 과소 계상은 매년 조달특별회계 내 과도한 여유재원을 잉여금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전년도세계잉여금(손익)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조달특별회계 내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보유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세 출>

4.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신규): R&D 과제 전문기관의 역량 제고 및 기획평가관리비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은 공공기관 및 국민이 제출한 혁신제품 수요 중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수행 결과물을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기지정된 혁신 제품의 국내 확산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7억 1,600만원 중 15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3%)되고, 1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음.[8)]

[2023년도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716	1,716	-	-	1,716	1,532	184	-	1,816

조달청은 2023년 3월 3일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재)한국조달연구원을 조달청 소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음.[9)] 해당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조달연구원이 선정되었음.

2023년 동 R&D 과제비 16억 5,000만원의 4%에 해당하는 6,600만원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과제비와 기획평가관리비를 합한 17억 1,600만원의 과제비 중 15억 3,200만원을 조달연구원에 지급하였음.

---

8)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1235-338)(신성장조달기획관)

9)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조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달연구원을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조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3년도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과제비 조달연구원 지급 내역]

세사업 명	예산
시범구매연계형 (R&D)	○ 666백만원 : 666백만원(2개 × 500백만원 × 8/12개월)
Scale-up형 (R&D)	○ 800백만원 : 800백만원(4개 × 300백만원 × 8/12개월)
기획평가관리비	○ 66백만원

자료: 조달청

나. 검토의견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 중 4,000만원을 과학사업화진흥원에 재교부하고 과제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한국조달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기관 지정 및 기평비 지급비율을 섣불리 확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이 제출한 한국조달연구원의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책임연구원 1인과 연구원 4명의 인건비로 총 1,410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 경비 중 운영·평가비로 5,012만원, 그 외 출장비 및 기타비용으로 112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한국조달연구원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내역]

(단위: 만원)

구분			금액
인건비(A)	책임연구원 1인		252
	연구원 4인		1,158
경비(B)	운영평가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4,000
	평가위원 수당		1,012
출장비(C)			27
기타비용(D)			85
순원가(E=A+B+C+D)			6,534
간접비			66
합계			6,600

자료: 조달청

이 중 경비 5,012만원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타 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평가관리, 선정과제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의 평가운영비가 일괄 지급되었고, 그 외 1,012만원은 평가위원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조달연구원 기획평가관리비 중 경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내역		경비활용 금액	비고
		항목	지급액		
2023.06.09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안내,접수,공고, 평가등평가관리, 선정과제관리 및 시스템 운영비	40,000	40,000	평가업무 협력기관
2023.05.09	각 평가위원	평가수당	10,120	10,120	평가수당 개별 건별 직접 집행

자료: 조달청

R&D 과제 전문기관으로 2023년 3월 지정된 이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체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의 60.6% 수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타 기관에 일괄 지급하면서, 선정과제 관리 및 평가 등의 핵심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더구나 조달청은 2022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공공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정책개발 수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한국조달연구원을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 실질적인 평가·운영 업무는 타 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위탁하는 형태의 기관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상 과제비는 17억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조달연구원에 지급되는 기획평가관리비는 1억 1,6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되어 과제비 대비 비율이 6.8% 수준에 이르고 있음.

참고로, 조달청은 2024년 3월 또다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획평가관리비 1억 1,600만원 중 4,000만원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지급하였음.

따라서 조달청은 R&D 전문기관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 규모 증액을 추진하기에 앞서, 조달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서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자체전용을 통한 신규 용역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AI, 모바일분야 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99억 7,00만원 중 330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7%)되고 64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3년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등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세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35,088	35,088	4,882	-	39,970	33,039	6,464	467	15,843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734억원을 투입하여, 조달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25개의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예정임. 시스템 구축은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개년치의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조달청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 사무실 임차공간 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자체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운영방안 관련 연구용역비로 지출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내 임차 사무공간 환경

10)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1131-505)(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

개선(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등 사무공간 구성) 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그런데 조달청은 불용예상액 일반 수용비 2,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2023년 9월 15일 자체전용(증)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등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2023년도 편성 예산 전액이 정책연구비로 자체전용되면서 순감되었음.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내 정책연구비 자체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에서				~ 으로				비고
세부사업	목	세목	금액	세부사업	목	세목	금액	
차세대구축(정보화)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	차세대구축(정보화)	연구비(260)	정책연구비(02)	50	자체전용
		시설장비유지비(09)	30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안정적·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나라장터 운영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대비하여 주요 기능, 역할, 조직 등 기관 운영방안 및 설립 로드맵 작성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3분기 자체전용을 실시하여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해당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시스템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2024년도 예산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체전용이 불가피하였다고 밝혔음.

그러나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구축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총사업비 1,73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이후 5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또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추진된 사업임. 이를 고려할 때, 시스템 구축 이후의 운영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논의는 총사업비 대상 사업을 최초 추진할 당시부터 충분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확정되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더구나, 조달청은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임차료와 일반용역비 간 세목조정이 반복되고 있어 잦은 세목조정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잦은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전액을 순감하여 사전 계획에 없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지적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조달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자체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 시점부터 순감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 연례적 세목조정 최소화 및 세목조정 전 지출행위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은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31억 7,300만원 중 785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5%)되고, 45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7억 9,700만원 중 76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1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3년도 기관운영 인건비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 인건비	83,727	83,727	-	△554	83,173	78,582	-	4,591	85,575
기관운영 기본경비	7,629	7,629	-	168	7,797	7,677	-	120	8,641

나. 검토의견

첫째, 조달청은 매년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보수(110-01목)의 불용 예상액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전용하여 배상금 지급 소요에 충당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연례적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이 제출한 2018~2022년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이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배상금 예산액보다 배상금 소요(소송비용액과 손해배상액의 합)가 많아 인건비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음.

---

11)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기관운영 인건비(총액)(7101-101)(운영지원과)

12)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7111-251)(운영지원과)

[2018~2023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배상금 예산액		0	30	40	40	40	50
배상금	합계	64	57	128	130	353	101
	소송비용액[1]	42	35	63	96	63	34
	손해배상액[2]	22	22	65	34	290	67
이전용 금액		64	27	88	90	313	51

주 1) 소송비용액: 소송 패소에 따라 상대방에서 사용한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2) 손해배상액: 행정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로, 행정처분에서 소송판결일까지 발생하는 상대방 손해액 등

자료: 조달청

특히 2023년 예산상 배상금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나, 배상금 소요액이 이를 초과하여 총 5,100만원이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기본경비 사업으로 전용(증)되었음.

[2023년도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세목		세부사업명	세목
2023	전용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220-01 (국내여비)	17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310-02(배상금)
	전용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110-01(보수)	5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310-02(배상금)
	전용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110-01(보수)	14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310-02(배상금)
	전용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110-01(보수)	2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310-02(배상금)
	전용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110-01(보수)	5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310-02(배상금)
	전용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110-01(보수)	8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310-02(배상금)
	합 계			51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의무지출 소요에 해당하는 배상금 예산의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보수의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인건비 편성 및 인력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내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기 전에 지출결의 없이 착공식 행사를 진행하여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3)]

조달청은 2023년 12월 14일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중 300만원을 ‘군산비축창고 신축 착공식 비용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증)하고, 2023년 12월 15일 착공식 행사 용역 업체에 지급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내 예산 세목조정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세목조정 증액			세목조정 감액			세목조정 사유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12.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일반 용역비 (210-14)	3,00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일반 수용비 (210-01)	△3,000	군산비축창고 신축 착공식 비용 부족분 충당

자료: 조달청

그런데 군산비축창고 신축 착공식이 개최된 날짜는 12월 6일로, 해당 업체의 용역제공 역시 12월 6일에 이루어졌음.

이는 예산상 자금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한 집행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13)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7.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기존 계약 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직접 및 위탁운영,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외 조달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를 수행하며,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정책변화, 시스템 노후화 등에 따라 조달정보시스템을 구축(또는 재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66억 800만원 중 264억 9,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3년도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달정보화 (정보화)	26,608	26,608	-	-	26,608	26,492	-	116	22,249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나라장터 운영위탁’**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라장터 시스템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2022~2024년 3개년 장기계속계약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음.

동 사업의 다른 내내역사업인 **‘나라장터 유지보수’** 사업은 나라장터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신규 구축 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편성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2022~2024년 3개년 장기계속계약에 의하여 운영위탁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14) 조달특별회계-조달정보화(정보화)(1131-501)(공정조달국)

[나라장터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사업의 2022년 예산 2023년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A)	2023년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B)		
나라장터 운영위탁(A)		4,332	4,672	4,941	610	
	나라장터	3,474	3,815	3,815	341	데이터 품질관리 등 운영범위 확대(+3명)
	국방상용물자전용몰	60	60	60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696	696	696		
	건설일자리지킴이	102	102	102		
	디지털서비스전용몰	(269)	(269)	269	269	신규사업 (운영인력 +3명)
나라장터 유지보수(B)		3,713	3,713	4,022	308	
	나라장터	3,396	3,396	3,396		
	스마트나라장터App	78	78	78		
	레미콘아스콘 전용몰	49	49	49		
	건설일자리지킴이	112	112	112		
	공사비분석시스템	79	79	79		
	디지털서비스전용몰	-	-	251	251	신규사업
	국방상용물자전용몰	-	-	57	57	신규사업
합계(A+B)		8,045	8,045	8,963	918	

주 1)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위탁 비용 2억 6,900만원은 2022년 예산부터 반영되어 있었으나, 2022년 및 2023년 예산에는 나라장터 운영위탁 비용이 아닌 별도 정보화사업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괄호 안의 금액으로 표시함

2) 디지털서비스전용몰, 국방상용물자전용몰은 2023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나라장터 운영위탁 및 나라장터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3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라장터 관련 시스템으로 포섭되어 나라장터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결산액에 반영되었음

자료: 2022년 및 2023년 예산 내역은 조달청이 제출한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국회 예산안 확정 후 부처에서 제출)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 예산상 나라장터 운영위탁, 나라장터 유지보수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46억 7,200만원, 37억 1,300만원인 반면, 결산액은 49억 4,100만원, 40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디지털서비스전용몰과 국방상용물자전용몰이 2023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나라장터 외 정보화시스템으로 분류되어 관련 예산이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가, 2023년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조 및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나라장터시스템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금액을 변경(증액)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임.

나. 검토의견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2023년 5월에 종료되었으므로 2023년 예산에 반영된 1년치 유지보수비 2억 5,100만원 중 일부를 불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별도로 수행 중이던 다른 장기계속 계약(나라장터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추가로 위탁하고 유지보수비 예산을 전액 지급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구축’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핑계로 2020년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시스템 구축 관련 ISP를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본예산으로 시스템 구축 총사업비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일정이 2022년 5월까지 지연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이월을 지양하라는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조달청은 2021년 12월 말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구축 완료를 전제로, 2022년 예산부터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위탁 비용 연간 소요 2억 6,900만원을, 최초 1년 무상유지보수 이후 2023년 예산부터는 유지관리비용 연간 소요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구축이 완료된 시점은 2022년 5월이었음.

[디지털서비스전용몰 구축 이후 운영위탁 및 유지관리비용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 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구축비	-	2,690	-	-	-		
운영위탁 비용	시스템 증설에 따른 운영위탁 소요(인력 3명 12개월분 인건비)	-	269	269	269	269	269
유지관리 비용	최초 1년 무상유지보수, 이후 구축비의 10%를 연간 소요로 편성	-	-	251	251	251	251

주) 2021년 계획서 작성 당시에는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이 작성 누락되어, 2022년 및 2023년 예산 편성 근거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조달청

2023년 예산부터 편성된 유지보수비 2억 5,100만원은 구축비의 10%를 연간 소요로 편성한 것이므로, 시스템 구축이 당초 계획인 2021년 말에서 2022년 5월로 지연됨에

따라 정보화시스템 구축업체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2023년 5월에 종료되었음을 고려하면 유지보수비용 역시 실제 용역 개시시점에 맞추어 일부 불용되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전용몰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나라장터시스템 위탁운영 업체 A에 대한 장기계속 계약금액을 연중 수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 불용 없이 1년치 운영위탁비용 2억 6,900만원과 유지보수비용 2억 5,100만원이 전액 기존의 업체 A에 지급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 나라장터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 금액을 살펴보면, 당초 금액은 79억 9,600만원이었으나, 디지털서비스전용몰에 대한 1년치의 유지보수 비용 2억 5,100만원과 운영위탁비용 2억 6,900만원, 그 외 추가 위탁비용이 포함되어 총 9억 1,800만원이 증액된 89억 6,3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고, 해당 금액이 업체 A에 지급되었음.

[2023년 나라장터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금액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사업계약 내역				
	계약명	변경전 계약금액 (당초)	변경후 계약금액 (변경계약서 기준)	수주업체	계약기간
8,963	나라장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7,996	8,963	A업체	23.1-23.12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해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전용몰 구축업체의 무상 유지보수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추가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하여 기존의 나라장터시스템 위탁운영 업체 A에 추가 기능개선 및 보수비로 1년치 유지보수비를 연내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음.[15]

이는 별건의 계약을 통해 경쟁입찰에 부쳤어야 할 사항을 기존 장기계속 계약의 과업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공정한 조달문화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자마자 구축업체가 무상보수할 수 없는 추가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미흡한 사업관리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조달청은 2023년 동안 디지털서비스전용몰에 대한 40건의 추가 기능 개선을 수행하였고, 이는 SW 대가산정 기준으로 기능점수가 508.5FP 약 393백만원에 해당하는 개발규모로 유지관리 예산(251백만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8.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및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종료) 사업: 내역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지 않은 용역업무 재위탁 부적정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사업은 혁신제품 지정·구매제도, 혁신조달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공혁신조달 확산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억 3,600만원 중 27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1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다른 내역사업인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 선정 및 온라인 마케팅 정보제공 등으로 조달업체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종합쇼핑몰 및 벤처나라시스템 등록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7,200만원 중 2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및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9,833	9,833	150	7	9,990	8,885	-	1,105	10,097
공공혁신조달 사업 운영비	2,836	2,836	-	-	2,836	2,726	-	110	3.050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	272	272	-	-	272	263	-	9	-

조달청은 2023년 예산 기준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사업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21억 6,000만원을 사용하여 (재)한국조달연구원과 일반용역 계약(총액 방식)을 체결하고, 한국조달연구원 내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를 2022년부터 설립·운영하고 있음.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정책, 교육, 기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지원 조직임.

16)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구매사업국)

[2023년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사업 및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 운영사업 예산 편성 근거]

구분	편성 근거
공공혁신조달 사업 운영비	○ 일반수용비(210-01): 436,85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700천원 ○ 임차료(210-07): 17,760천원 (혁신조달 업무차량 임차비) ○ 유류비(210-08): 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2,348,000천원 **1.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 : 2,160,000천원** **가. 혁신제품 규격검토 : 1,000,000원×500건 = 500,000천원** **나.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 : 699,000천원** **다. 스카우터 및 수요 인큐베이팅 사업 : 401,000천원** **라.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사업 : 380,000천원** **마. 혁신제품 원가검토 : 1,000,000원×30건 = 30,000천원** **바. 혁신조달 및 시범구매 사업성과 측정·분석 : 100,000천원** **사. 혁신조달 정책연구 : 50,000천원** 2. 혁신조달 경진대회 행사대행 용역(전시회 등 부대행사 포함) : 88,000천원 3. 지역기반 혁신제품 구매 확산 : 100,000천원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지원 운영	○ 벤처나라 지정심사 및 기타운영비 22백만원 **○ 일반용역비: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규격검토 용역비 250백만원**

자료: 조달청

한편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지원 운영’ 사업에는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 및 규격검토 용역 발주를 위한 일반용역비 2억 5,000만원이 2023년 신규 편성되었음. 벤처나라는 벤처나라에 등록된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납품을 지원하는 별도 플랫폼임.

나. 검토의견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지원 운영’ 사업의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 및 규격검토 용역 업무를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에 포함하여 외부기관에 재위탁하였는데, 향후 위탁용역 추진 시 재위탁을 통해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3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규격검토’ 일반용역비 2억 5,000만원에 대해 통상의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사업 내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 사업자 선정 용역’에 통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일반용역비 2억 4,600만원

을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에 최종 지급하였음.

그런데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는 한국벤처기업협회에 벤처나라 지정업무 서류검토 지원업무를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외주위탁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2억 4,6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외주위탁비 명목으로 2023년 4월 20일 재교부하였음.

[2023년도 용역사업비 중 기타경비 산출 내역서]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최초 계약 기준 (2023.4.1)	계약금액
3. 기타 경비			288
1) 국내여비	책임연구원	•66,400원 x 1명 x 15회	1
	연구원/연구보조원	•47,400원 x 43명 x 10회	20
2) 전문가 자문비(평가, 교육, 회의 수당 등)		•30,000원 x 30명 x 8회	72
3) 벤처나라 외주위탁비 (한국벤처기업협회)		**•1억 2,000만원 x 1회**	**120**
4) 정책연구 외주용역비		•1,500만원 x 2회	30
5) 인쇄비		•30,000원 x 100부 x 9회	27
6) 유인물비		•20원 x 4,500매 x 10회	1
7) 전산처리비 등(토너, 복사지 등)		•40,000원 x 20개 x 8회	6
8) 통신비		•20,000원 x 44명 x 10회	9
9) 우편비		•10만원 x 10곳 x 2회	2

자료: 조달청

이어서 혁신조달지원센터는 물량증가와 과업추가로 인해 1개월 연장계약(2024년 1월)에 따른 추가 용역비로 총 3,2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한국벤처기업협회에 재교부하여 총 1억 5,200만원의 용역비가 한국벤처기업협회에 외주위탁비로 지급되었음.

[벤처나라 상품지정 하도급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계약일자	계약금액(부가세포함)	계약기간	비고
1	2023.4.20	120	2023.4.1~2023.12.31	최초계약
2	2023.9.18	12	2023.4.1~2023.12.31	물량증가
3	2023.9.18	8	2023.9.1~2023.12.31	과업추가
4	2024.1.2	12	2024.1.2~2024.1.31	1개월 연장계약
합 계		152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해 조달청은 2022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혁신조달방안」[17]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제품 적격성 검토 등 기존에 위탁해오던 업무를 직접수행으로 운영방침을 전환, 2023년 7월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함에 따라 벤처나라 상품 지정 서류 및 규격검토 업무도 2024년부터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2023년도에는 벤처나라 관련 업무를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용역에 일시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달청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내역사업간 경계를 준수하여 별도의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내역사업의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 사업자 선정 용역'에 벤처나라 상품 지정 서류 및 규격검토 업무를 포함시켜 외부기관에 재위탁한 것은 공정한 조달문화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예산부터는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규격검토 업무 직접수행 방침에 따라 해당 일반용역비가 순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용역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예산 집행 사례라 할 것임.

따라서 조달청은 내역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내역사업의 일반용역계약 내 하도급계약을 통해 외부기관에 업무위탁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7) 정부는 2022년 1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갑질, 퇴직자의 업무개입 등 불합리한 조달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퇴직자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고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되었음.

【조달특별회계(자본계정)】

<세 출>

9.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은 제안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용함으로써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05억 4,200만원 중 487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17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3년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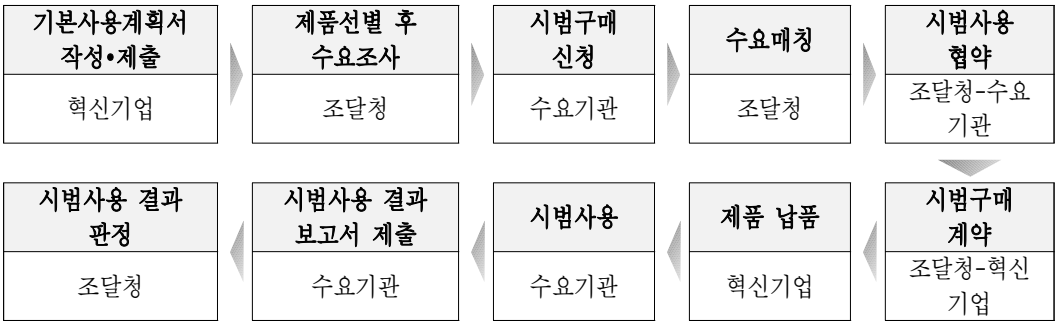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48,300	48,300	2,242	-	50,542	48,859	1,763	21	53,000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①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② 조달청은 해당 수요를 혁신기업과 매칭하여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③ 혁신기업이 수요기관에 시범구매용 제품을 납품, ④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18) 조달특별회계-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1237-433)(구매사업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괄(혁신시제품 유형 2 기준)]



자료: 조달청

이후 조달청은 시범사용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건들에 대하여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를 거친 후, 이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특례를 적용하게 됨.

조달청은 2023년도 본예산에 혁신제품 구매 435억원, Net-Zero 혁신제품 구매 30억원, 공공서비스 우수장비 구매비용 18억원을 합한 483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음.

[2023년 공공혁신조달사업 예산 편성 근거]

구분	편성 근거
본예산	○ 혁신제품 구매(43,500백만원) - 145개(구매예상 제품 수) × 300백만원(계약 평균단가) ○ Net-Zero 혁신제품 구매(3,000백만원) - 10개(구매예상 제품 수) × 300백만원(계약 평균단가 예상치) ○ 공공서비스 우수장비 구매(1,800백만원) - 6개(구매예상 제품 수) × 300백만원(계약 평균단가 예상치)

자료: 조달청

나. 검토의견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범구매 이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제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범구매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실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추가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

으로 나타남.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범사용 이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수는 총 74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24년 4월까지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총 41개로 나타났음.

[2024년 4월 기준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미제출 건 현황(2023년 시범구매 건)]

(단위: 백만원)

연번	제품명	기관별 계약금액
1	3D정보모델을활용한교량및터널의BIM솔루션	20
2	스마트해양용선박와이파이를위한듀얼TVWS게이트웨이	274
3	다목적전동지게차	63
4	다목적전동지게차	21
5	와류형공기분사기술기반에어샤워게이트	31
6	지역사회노쇠정량평가를위한복합신체기능평가기기	9
7	지역사회노쇠정량평가를위한복합신체기능평가기기	9
8	냉난방공조기공기살균시스템	55
9	TPU혼합화강토를이용한환경친화적인기능성경량가로수보호판	36
10	운송(차량.선박등)수단및시설용비상탈출(유리파쇄)장치	0
11	유지전력제로및신속한개방속도를보장하는수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28
12	장선및클립체결기술을이용하여장기내구성과시공성을향상시킨데크로드시스템	43
13	장선및클립체결기술을이용하여장기내구성과시공성을향상시킨데크로드시스템	166
14	졸음운전차량의도로공사장돌진상황에경보음이발생하는침입경보시설	7
15	졸음운전차량의도로공사장돌진상황에경보음이발생하는침입경보시설	216
16	졸음운전차량의도로공사장돌진상황에경보음이발생하는침입경보시설	14
17	졸음운전차량의도로공사장돌진상황에경보음이발생하는침입경보시설	3
18	구조물지진재해안전관리플랫폼	116
19	구조물지진재해안전관리플랫폼	70
20	구조물지진재해안전관리플랫폼	93
21	비대면시대에쉬운업무진행,업무생산성향상을위한협업툴	433
22	스마트충전분배기술(PowerBalancing)을적용한전기자동차충전기	230
23	미세먼지흡착분해및항균탈취기능친환경인조잔디	20
24	미세먼지흡착분해및항균탈취기능친환경인조잔디	176
25	고장예지및데이터복구기술의하수맨홀스마트악취,침수위측정및IT&BT융합기술의악취저감장치	168
26	영상인식기반보행자검지와레이더기반차량검지정보를융합한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74
27	영상인식기반보행자검지와레이더기반차량검지정보를융합한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37
28	지하수데이터기반물사용량예측및AI펌프제어가가능한지하수통합관리시스템	114
29	지하수데이터기반물사용량예측및AI펌프제어가가능한지하수통합관리시스템	114
30	폐섬유재활용기술을적용하여개발한섬유패널“플러스넬“기반공공시설용데크및벤치	150
31	IOT공기살균기	31
32	석면자재보수용글러브백	72

(단위: 백만원)

연번	제품명	기관별 계약금액
33	석면자재보수용글러브백	2
34	석면자재보수용글러브백	40
35	운전자시야사각지대보행자감지및운전자경보기능을구현한보행자교통사고예방시스템	160
36	일체형호흡근강화기기(IMT/PEP)	85
37	일체형호흡근강화기기(IMT/PEP)	85
38	바른자세에필요한근육과관절의운동능력을향상시키는자세교정운동기구및운동앱	58
39	바른자세에필요한근육과관절의운동능력을향상시키는자세교정운동기구및운동앱	58
40	바른자세에필요한근육과관절의운동능력을향상시키는자세교정운동기구및운동앱	58
41	전통무늬자연석판석	36
합 계		3,475

주) 제품명이 동일한 건은 복수의 기관이 신청한 시범구매 건임
자료: 조달청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미제출 기관 41개 기관 중 5개 기관(6건)에 대하여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수요를 매칭하여 시범구매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1개 기관(C공사, 2024.1.25. 추가 수요매칭 건)은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미제출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구매를 재차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 시범구매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 중 추가 수요매칭이 이루어진 기관 현황]

기관명	미제출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간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수요매칭 시범사용기간 (추가 수요매칭일)
A연구원	'23.2.7 ~ '24.1.3 ('24.2.3)	'23.11.29 ~ '23.12.29 ('23.10.5)
B공단	'23.9.5 ~ '24.2.3 ('24.3.3)	'24.4.11 ~ '24.8.9 ('24.1.25)
C공사	'22.5.30 ~ '23.8.26 ('23.9.26)	'23.9.11 ~ '24.4.8 ('23.4.11.)
		'24.3.8 ~ '25.2.1 ('24.1.25)
D공단	'23.10.18 ~ '24.1.16 ('24.2.16)	'24.3.8 ~ '24.6.6 ('24.1.25)
E지자체	'23.11.7 ~ '24.2.24 ('24.3.24)	'24.3.15 ~ '24.9.16 ('24.1.25)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해 조달청은 시범구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수요매칭된 기관은 C공사 1건으로,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설치예정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시범사용 및 보고서 제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혁신제품 시범사용 관리를 강

화하고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시범구매를 제한하는 불이익 규정을 신설(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하였다고 밝힘.

조달청은 C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의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전에 추가 수요매칭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제재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나, D공단의 사례와 같이 시범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에서도 신규 수요매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단순히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달물품 지정을 통하여 상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의 제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추가 수요매칭 기회를 부여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통계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억 4,300만원(△27.8%)이 적은 3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00만원(△44.8%)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54	3,454	6,261	2,807	4,400	4,400	3,457	△943	△2,804
총수입	3,454	3,454	6,261	2,807	4,400	4,400	3,457	△943	△2,804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97억 1,400만원(△2.5%)이 적은 3,83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2,100만원(4.5%)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79,823	377,832	367,469	△10,363	393,704	393,704	383,990	△9,714	16,521
총지출	379,823	377,832	367,469	△10,363	393,704	393,704	383,990	△9,714	16,521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4억원으로 34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4억 5,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1,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400	4,400	-	4,400	3,472	3,457	-	14
합 계	4,400	4,400	-	4,400	3,472	3,457	-	14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37억 7,500만원으로, 이 중 3,839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97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1]	예비비				
일반회계	393,704	393,704	-	71	-	393,775	383,990	-	9,785
합 계	393,704	393,704	-	71	-	393,775	383,990	-	9,785

주 1) 총계 기준
2) 이·전용등에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을 포함함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통계청 자산은 전년 대비 151억 4,900만원이 증가한 2,954억 6,3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87억 7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11억 400만원 증가하고 무형자산이 236억 7,9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소한 4억 6,300만원으로 유동부채 1억 9,200만원 감소 및 장기차입부채 7,200만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51억 6,300만원이 증가한 2,949억 9,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통계청 프로그램 순원가는 1,987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1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1,996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2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결과는 3,95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 4,3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통계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95,463	280,314	15,149	5.4
		유동자산	23,136	31,843	△8,707	△27.3
		투자자산	3,261	2,157	1,104	51.2
		일반유형자산	201,707	202,103	△396	△0.2
		무형자산	63,875	40,196	23,679	58.9
		기타비유동자산	3,483	4,015	△532	△13.3
	부 채		463	478	△15	△3.1
		유동부채	214	406	△192	△47.3
		장기차입부채	-	72	△72	△100.0
		장기충당부채	249	-	249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94,999	279,836	15,163	5.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98,738	299,908	△101,170	△33.7
	관리운영비		199,699	78,484	121,215	154.4
	비배분수익		2,634	2,234	400	17.9
	재정운영순원가		395,802	376,159	19,643	5.2
	재정운영결과		395,802	376,159	19,643	5.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통계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통계청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통계를 개발하는 등 국가통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통계등록부 개정 및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했음. 또한, 자연재해 기반 SGIS 서비스 확대 등 통계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및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음.

2023년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통계청의 위탁사무 거의 전부를 특정 기관에 장기간 위탁하고 해당 기관과 위탁사무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청은 2022년 비대면조사를 전담 수행하고 비대면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개선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하였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신설함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설 후 단기간 내에 비대면조사팀의 기능이 조정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조직 신설 및 개편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통계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개소의 경우 2022년에 비하여 2023년 이용실적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통계청은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민간위탁사업비: 수의 계약을 통한 특정 기관과의 장기간 업무 위탁 부적정 등

가. 개 요

통계청의 민간위탁사업비는 2023년 12개 세부사업에 반영되어 예산현액 97억 9,200만원 중 96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1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통계청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도								2024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3,302	3,302	-	-	3,302	3,203	-	99	-
통계교육지원 (1032-304)	170	170	-	-	170	168	-	2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 (2031-302)	1,617	1,617	-	-	1,617	1,609	-	8	-
마이크로데이터제공 (2032-307)	657	657	-	-	657	651	-	6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2032-308)	919	919	-	-	919	913	-	6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정보화) (2032-311)	2,277	2,277	-	-	2,277	2,267	-	10	-
경제구조통계작성 (3031-301)	234	234	-	-	234	233	-	1	-

세부사업명	2023년도								2024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402	402	-	-	402	400	-	2	-
통계조사지원 (3037-309)	85	85	-	-	85	85	-	-	-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3037-310)	50	50	-	-	50	50	-	-	-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55	55	-	-	55	55	-	-	-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7011-253)	24	24	-	-	24	24	-	-	-
합 계	9,792	9,792	-	-	9,792	9,658	-	134	-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은 (재)한국통계진흥원과 2023년 총 12건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2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재)한국통계진흥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액은 45억 1,100만원으로 통계청 전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액의 46.7%를 차지함.

[2023년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체결한 계약 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액	세부사업명	비목
2023년 국가통계개발사업 위탁 사업	2023-03-02~ 2023-12-13	741,000,000	1031-301 (국가통계정책추진)	320-02
2024회계연도 통계예산 사전검토기준 관리 위탁사업	2023-03-01~ 2023-10-31	50,000,000		320-02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위탁 사업	2023-01-01~ 2023-12-31	2,067,500,000		320-02
2023년 국가주요지표체계관리 위탁 사업	2023-01-01~ 2023-12-31	98,800,000	2031-302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320-02
2023년 통계자료제공 위탁 사업	2023-01-01~ 2023-12-31	645,400,000	2032-307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320-02
2023년 통계데이터센터 교육홍보 위탁 사업	2023-01-01~ 2023-12-31	294,000,000	2032-308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320-02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액	세부사업명	비목
2023 국제인구통계 협력사업	2023-04-05~ 2023-12-15	400,000,000	3034-307 (인구주택총조사)	320- 02
2023년 통계조사 모니터링 위탁 사업	2023-04-01~ 2023-10-31	84,900,000	3037-309 (통계조사지원)	320- 02
2023년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사업	2023-01-01~ 2023-12-31	50,000,000	3037-310 (국가통계표본설계 및 지원)	320- 02
2023년 빅데이터분석기사 관리 위탁 사업	2023-03-01~ 2023-12-11	12,000,000	7011-253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320- 02
2023년 사회조사분석사 업무 관리 위탁 사업	2023-03-01~ 2023-12-11	12,000,000		320- 02
2023년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위탁 사업	2023-01-01~ 2023-12-31	55,197,000	7011-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320- 02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통계청의 위탁사무 거의 전부를 (재)한국통계진흥원이라는 특정 기관에 장기간 위탁하고 해당 기관과 위탁 사무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통계사무의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 마련을 위하여 2018년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를 제정하였는데, 고시에 따르면 통계청은 수탁기관 지정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됨.[2)]

2)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통계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과 평가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통계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21년 12월 고시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였음.

2018년 통계청은 고시에 따라 통계간행물 발간 및 관리, 통계작성 및 홍보, 통계교육, 통계품질진단, 국제협력 등 통계발전지원 사업의 수탁기관을 공고하였고, (재)한국통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5년간(2019년~2023년) 통계발전지원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됨. 또한 해당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3)]

그런데 통계청이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은 「통계법」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중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제외한 모든 사무임.[4)] 기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 거의 전부를 장기간 특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과 위탁사무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한 것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2018년 수탁기관 선정 시 진흥원이 단독 응찰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사업위탁 및 계약)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4) 「통계법」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 · 진흥 · 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공고 시 위탁사무를 개별 사무로 분할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특정 위탁사업에 특화된 다양한 기관이 지원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포괄적 범위의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고함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통계청은 2018년 고시 제정 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는데 통계청의 민간위탁사업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탁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도 보임.

따라서 통계청은 민간위탁사업 수행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청은 정기통계품질진단·통계 작성 및 홍보 등의 위탁사업 수행 시 일반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라는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는 ‘통계청은 통계간행물, 통계교육, 정기통계품질진단, 국제협력, 통계 작성 및 홍보, 통계정보화 업무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비를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고,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집행과정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고 통계청은 해당 위탁사업을 2023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였음.

그러나 통계청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수탁기관 지정기간(2019년~2023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들을 일반경쟁방식으로 전환함을 사유로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음.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의 경우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청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고,[5] 통계청이 「통계법」 제29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사무를 수탁기관인 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로 위탁사업을 편성하는 경우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비 잔액 및 사업비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반납받는 등 사업비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으나 일반용역비와 관리용역비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정기통계품질진단, 통계 작성 및 홍보 등의 위탁사업 수행 시 해당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비대면조사 사업: 비대면조사팀 신설 후 단기간 내에 기능이 조정되는 등 비효율 발생

가. 개 요

‘비대면조사’ 사업은 조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응답자 맞춤형 조사를 통한 응답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집중형 스마트조사센터 및 스마트조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5억 8,800만원 중 14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4%)되고 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비대면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계조사지원	25,998	25,998	-	-	25,998	25,437	-	561	30,792
비대면조사	1,817	1,817	-	△229	1,588	1,435	-	152	525

나. 검토의견

통계청은 2022년 비대면조사를 전담 수행하고 비대면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개선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하였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신설함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설 후 단기간 내에 비대면조사팀의 기능이 조정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조직 신설 및 개편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2022년 비대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비대면조사센터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6) 일반회계-통계조사지원(3037-309)(조사관리국)

현장조사를 비대면조사로 전환하고, 지방청의 현장조사 대상처를 본청 비대면조사센터로 이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음.

이를 위하여 통계청은 2021년 9월 「집중형 비대면조사센터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관리국 조사기획과 내에 3팀 47명(공무원 16명, 공무직 31명)으로 센터를 신설하고, 지방청의 공무원 10명과 공무직 31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며, 2028년까지 사업체 조사는 대상처의 90%까지, 농어업조사는 대상처의 80%까지 단계적으로 비대면조사센터에 이관할 계획이었음.

이러한 비대면조사센터의 신설로 통계청은 조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2026년까지 79억 8,4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비대면조사센터 도입 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누적 합계
편익 합계	523	1,179	1,696	2,110	2,476	**7,984**
조사표 설계시간 및 개발 비용 절약	116	126	137	148	160	686
QA 업무 효율 증가	33	34	35	36	37	176
조사자료 입력 효율 증가	131	399	545	699	857	2,632
답례품 관리업무 효율 증가	84	86	88	90	93	441
답례품 배송 절감	77	118	163	210	258	825
CATI조사 업무 효율성 향상	37	191	339	439	515	1,521
현장조사 출장비용 절감	45	225	389	488	556	1,703

자료: 통계청

그러나 2022년 3팀 46명 규모의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한 후 비대면조사 수행과정에서 대규모 표본 개편에 따른 대응 부족, 지방청 인력 이관에 따른 지방청 내부 불만 등 조직 내·외부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7)]

이에 따라 통계청은 2023년 비대면조사팀을 스마트조사센터로 전환하고 스마트조사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대상처는 비대면조사팀에서 조사하고, 그 외 대면조사 병행이 필요한 대상처는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조사(비대면조사) 수행처를 개편하였음. 이러한 개편에 따라 2023년 12월분 조사기준 지방청의 스마트조사 대상처는 12,176개로 전체의 61.8%이고, 센터의 스마트조사 대상처는 7,530개로 전체의 38.2%임.

7) 통계청은 당초 비대면조사센터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직제 개정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대면조사팀으로 조정되었고, 증원 규모도 3인(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에서 2인으로 조정(6급 1명, 7급 1명)되었음.

[2023년 12월분 조사 기준 스마트조사 현황]

(단위: 개)

기준	구분	전체 대상처	스마트조사 방법						기타조사 (대면 등)
			소계	CASI	SASI	E-MAIL	FAX	CATI	
2023. 12월분	전체	26,643	19,706 (100.0%)	3,127	2,859	10,218	2,015	1,487	6,937
	지방청	19,113	12,176 (61.8%)	1,605	1,893	7,145	1,521	12	6,937
	센터	7,530	7,530 (38.2%)	1,522	966	3,073	494	1,475	-

자료: 통계청

현재 센터와 지방청의 역할분담을 보면,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비대면조사를 단계적으로 80~90%까지 비대면조사팀(스마트조사센터)에서 실시한다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센터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비대면조사를 센터와 지방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2028년까지 스마트조사센터로의 구체적인 비대면조사 이관 목표를 폐지하되, 지방청의 현장 상황과 대상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상처 중 조사대상 변동성이 적은 대상처는 센터로 이관하고, 그 외는 지방청에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임.

비대면조사팀 신설에 따라 직제상 공무원 인력이 증원(6급 1명, 7급 1명)되었고, 운영비도 2022년 12억 6,700만원, 2023년 18억 2,000만원이 각각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역할분담을 보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는 별도의 비대면조사팀(센터) 신설 없이 각 지방청에서 비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문제 발생으로 비대면조사팀 신설 1년 후 기능이 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이 비대면조사팀 신설 시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및 고려를 미흡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통계청은 비대면조사팀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비대면조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021년, 33억 7,500만원)하였는데,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을 비슷한 시기에 구축(2021년~2023년)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 구축보다는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하위 항목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은 향후 조직 신설 및 개편 시 조직 내·외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이용자가 공공·민간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33억 2,600만원 중 32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6%)되고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11,920	11,920	-	-	11,920	11,558	-	362	7,740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3,326	3,326	-	-	3,326	3,245	-	81	3,750

나. 검토의견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통계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개소의 경우 2022년에 비하여 2023년 이용실적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통계청은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계데이터센터는 전국 12개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2023년 기준 12개소의 연간 이용자 수가 4,528명(비대면 이용자수 제외)에 불과하고 좌석당 월평균 3.6명(비대면 이용자수 제외)만 이용하고 있음.

8) 일반회계-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2032-308)(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데이터센터 현황 및 이용실적]

(단위: 석, 명)

구분(개소시기)		좌석수(석)	이용실적(명)							
			2020		2021		2022		2023	
			연간 이용자수	좌석당 월평균	연간 이용자수	좌석당 월평균	연간 이용자수	좌석당 월평균	연간 이용자수	좌석당 월평균
서울	중구('18.11.)	10	848	7.1	1,200	10.0	928	7.7	1,514	12.6
	강남('22.6.)	11	-	-	-	-	204	2.6	516	3.9
	상암('21.9.)	**5**	**-**	**-**	**72**	**3.6**	**80**	**1.3**	**21**	**0.4**
	국회('22.9.)	**3**	**-**	**-**	**-**	**-**	**53**	**4.4**	**154**	**4.3**
부산('18.7.)		12	135	0.9	67	0.5	269	1.9	376	2.6
대구('21.3.)		**13**	**-**	**-**	**66**	**0.5**	**314**	**2.0**	**138**	**0.9**
광주('20.3.)		**12**	**94**	**0.8**	**129**	**0.9**	**238**	**1.7**	**245**	**1.7**
대전('18.11.)		16	379	2.0	532	2.8	525	2.7	672	3.5
세종(KDI)('22.3.)		5	-	-	-	-	171	3.4	584	9.7
국립암센터('23.6.)		3	-	-	-	-	-	-	26	1.2
전북('23.5)		8	-	-	-	-	-	-	148	2.3
제주('23.3)		7	-	-	-	-	-	-	134	1.9
비대면(온라인)*		-	174	-	267	-	898	-	337	-
합계		105	1,630	2.7	2,333	2.9	3,680	3.5	4,865	3.9

주) 이용자 주문형 분석 서비스 제공 실적과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참가자가 MDIS와 KOSIS 자료만을 이용한 경우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2023년 32억 4,500만원이 투입되어 개소당 평균 2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개소당 연간 평균 이용자수는 377명에 불과한 수준임.

특히 서울 상암·국회 및 대구의 경우 좌석당 월평균 이용자수를 보면, 2023년 이용실적이 2022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광주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제고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국회는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자료 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활용 제한을 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과 '통계청은 정부부처, 연구자 등 이용자 특성 및 연구, 교육, 창업 등 이용 유형별 데이터센터 이용방식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한바 있으나, 시정요구사항 조치완료(2024년 1월 31일) 이후에도 이용실적에 있어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통계데이터센터 월별 이용실적(2023년 1월~2024년 6월)]

(단위: 명)

2023.1.	2023.2.	2023.3.	2023.4.	2023.5.	2023.6.	2023.7.	2023.8.	2023.9.
144	120	246	273	396	727	712	470	375
2023.10.	**2023.11.**	**2023.12.**	**2024.1.**	**2024.2.**	**2024.3.**	**2024.4.**	**2024.5.**	**2024.6.**
462	515	425	266	**294**	**363**	**413**	**688**	**772**

주) 비대면 이용자수를 포함한 실적임
자료: 통계청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전반의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용실적 저조 원인을 개소별로 분석하여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시험조사 사업: 응답률 하락 및 조사요원 중도포기율 증가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시험조사’ 사업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과정 점검 등 시험조사를 통해 최적의 수행방안을 도출하고 조사항목을 점검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억 400만원 중 3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고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3년도 시험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구주택총조사	1,997	1,997	-	-	1,997	1,919	-	78	26,326
시험조사	403	403	-	1	404	389	-	15	306

나. 검토의견

시험조사 사업은 2023년 2차 시험조사 결과 응답률이 하락하고 조사요원의 중도포기율은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유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률은 97.8%이고, 2020년은 96.3%로 응답률이 1.5%p 하락하여 2025년 총조사 시 응답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2022년 1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시험조사의 응답률은 95.5%로 2020년 총조사 응답률인 96.3%보다 다소 낮으나 유사하였음.

9) 일반회계-인구주택총조사(3034-307)(조사관리국)

[2025 인구주택총조사 1차 시험조사 응답률]

(단위: 가구, %)

행정구역	조사 대상	조사 완료	인터넷			전화	방문면접			부재	불응
			소계	모바일	PC		소계	태블릿	종이		
전국	7,911	7,556	2,984	2,352	632	542	4,030	3,921	109	241	114
	(100.0)	**(95.5)**	(37.7)	(29.7)	(8.)	(6.9)	(50.9)	(49.6)	(1.4)	(3.0)	(1.4)
분당구	3,013	2,792	1,469	1,138	331	170	1,153	1,049	104	139	82
	(100.0)	(92.7)	(48.8)	(37.8)	(11.)	(5.6)	(38.3)	(34.8)	(3.5)	(4.6)	(2.7)
무안군	1,658	1,527	254	195	59	51	1,222	1,222	0	101	30
	(100.0)	(92.1)	(15.3)	(11.8)	(3.6)	(3.1)	(73.7)	(73.7)	(0.0)	(6.1)	(1.8)
구미시	3,240	3,237	1,261	1,019	242	321	1,655	1,650	5	1	2
	(100.0)	(99.9)	(38.9)	(31.5)	(7.5)	(9.9)	(51.1)	(50.9)	(0.2)	(0.0)	(0.1)

자료: 통계청

그런데 2차 시험조사의 응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82.5%로 응답률이 2020년 총조사 대비 13.8%p 하락하여 차기 총조사 시 응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2025 인구주택총조사 2차 시험조사 응답률]

(단위: 가구, %)

행정구역	조사 대상	조사 완료	인터넷			전화	방문면접			부재	불응
			소계	모바일	PC		소계	태블릿	종이		
전국계	8,107	6,685	2,065	1,782	283	158	4,462	4,025	437	1,300	122
	(100.0)	**(82.5)**	(25.5)	(22.0)	(3.5)	(1.9)	(55.0)	(49.6)	(5.4)	(16.0)	(1.5)
중랑구 (중화2동)	2,472	2,314	532	422	110	54	1,728	1,726	2	129	29
	(100.0)	(93.6)	(21.5)	(17.1)	(4.4)	(2.2)	(69.9)	(69.8)	(0.1)	(5.2)	(1.2)
아산시 (탕정면 온양1동)	3,995	2,909	1,191	1,050	141	77	1,641	1,232	409	1,014	72
	(100.0)	(72.8)	(29.8)	(26.3)	(3.5)	(1.9)	(41.1)	(30.8)	(10.2)	(25.4)	(1.8)
완주군 (삼례읍)	1,640	1,462	342	310	32	27	1,093	1,067	26	157	21
	(100.0)	(89.1)	(20.9)	(18.9)	(2.0)	(1.6)	(66.6)	(65.1)	(1.6)	(9.6)	(1.3)

자료: 통계청

한편, 실제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요원의 경우 1차 시험조사 시 총 63명 중 4명이 중도포기하여 중도포기율이 6.3%였으나 2차 시험조사 시 61명 중 13명이 중도포기하여 중도포기율이 21.3%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5 인구주택총조사 1차 및 2차 시험조사 조사요원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채용인원수	중도포기합계	포기율
1차 시험조사	63명	4명	6.3%
2차 시험조사	61명	13명	21.3%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구주택총조사는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및 각종 표본조사의 조사틀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 응답률 하락 및 조사요원 중도포기율 증가의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조사명부 작성 방식 개선 및 시험조사 실시 시기 조정 필요

가. 개 요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5년 주기의 국가기본통계로 농림어가 수, 농림어가 인구 등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기본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12억 2,900만원 중 11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3년도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림어업총조사	1,229	1,229	-	-	1,229	1,163	-	66	2,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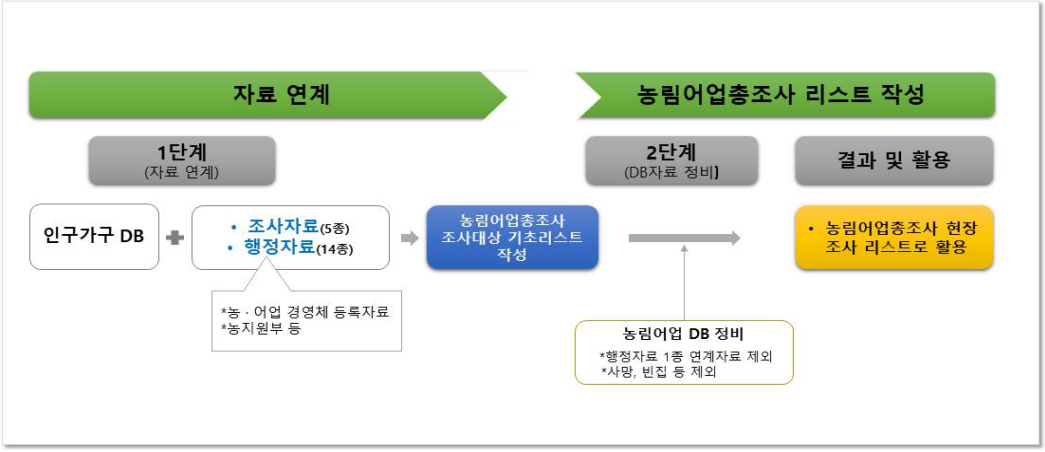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첫째,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조사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명부는 2010년 총조사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된 농림어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표본조사로 전환되면서, 2015년의 조사명부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시 확인한 농림어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2020년 가구주택기초조사가 농림어가 일부만 확인하는 조사로 실시되면서 2020년부터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별도로 조사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10) 일반회계-농림어업총조사(3035-308)(사회통계국)

[농림어업총조사 명부 작성 방식]



자료: 통계청

그런데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대비한 2022년 1차 시험조사 시 명부상 농림어가와 현장조사 시 농림어가의 일치율이 72.8%였고, 2차 시험조사 시에는 43.2%로 크게 하락하였음.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1차 시험조사 명부상 농림어가 확인 결과]

(단위: 가구, %)

구 분	전 체	구성비	전북 고창군	구성비	전북 군산시	구성비
명부상 농림어가	3,029	100.0	1,464	100.0	1,565	100.0
(-) 非농림어 가구	785	25.9	441	30.1	344	22.0
(-) 부재·불응.불능	38	1.3	3	0.2	35	2.2
확인된 농림어가	2,206	**72.8**	1,020	69.7	1,186	75.8

주) 제1차 시험조사 대상은 전북 고창군과 전북 군산시였음
자료: 통계청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2차 시험조사 명부상 농림어가 확인 결과]

(단위: 가구, %)

구 분	전 체	구성비	부산 기장군	구성비	경남 거창군	구성비
명부상 농림어가	6,238	100.0	3,730	100.0	2,508	100.0
(-) 부재 · 불응 · 불능	87	1.4	82	2.2	5	0.2
(-) 非농림어가구	3,456	55.4	2,453	65.8	1,003	40.0
확인된 농림어가	2,695	**43.2**	1,195	32.0	1,500	59.8
(+) 신규 가구	26	-	4	-	22	-
최종 농림어가	2,721	-	1,199	-	1,522	-

주) 제2차 시험조사 대상은 부산 기장군과 경남 거창군이었음
자료: 통계청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가에 대한 행정자료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는 농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보유한 농업경영체 자료가 2014년 기준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 조사명부 일치율이 낮게 도출되었다는 설명임.

또한 2차 시험조사 시에는 1차 시험조사와 행정자료 활용 방식을 다소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명부를 작성하였기에 명부 일치율이 하락하였으며, 시험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전 조사명부 작성 관련 개선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어업총조사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임.

명부와 현장조사 간 일치율이 저하될 경우 불필요한 조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계청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대비하여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시험조사 실시 시기를 총조사 실시 시기와 유사하도록 조사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 시점은 2020년 12월 1일 0시 현재로, 조사시기는 2020. 12. 1.~12. 18.이었고,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도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12월 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그런데 2025 농림어업총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시험조사가 2022년~2023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모두 실제 총조사 시기와는 차이가 있는 8월~9월에 실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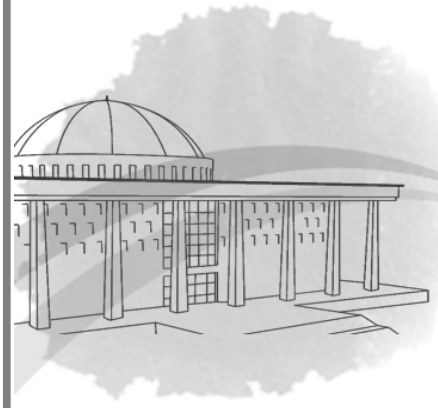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시험조사 결과]

구 분	1차 시험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기간	2022.8.23. ~ 9. 6.	2023. 9. 8. ~ 9. 25.
조사항목	72개 항목 (공통 13개, 농가 28개, 임가 7개 해수면 12개, 내수면 12개)	73개 항목 (공통 14개, 농가 28개, 임가 7개, 해수면 12개, 내수면 12개)
주요내용	어업경영체 현황 파악, 조사대상리스트 현장 검증	농림어가 외국인 현황 파악(국적항목 추가), 태블릿 PC 조사환경 검토
조사대상	3,478가구 (농가·임가 2,981가구, 해수면어가 441가구, 내수면어가 56가구)	6,383가구 (농가·임가 5,777가구, 해수면어가 591가구, 내수면어가 15가구)
응답률	98.7%	98.6%

자료: 통계청

시험조사가 총조사에 대비한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조사 시기와 실제 총조사 시기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조사 개선사항의 발굴 및 반영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통계청은 농림어업총조사의 시험조사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위원회



교육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35억 6,000만원(0.7%)이 적은 6조 4,193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35억 6,400만원(△7.4%)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77,682	177,682	388,713	211,031	246,194	246,194	673,519	427,325	284,806
기 금	6,148,739	6,148,739	6,544,192	395,453	6,216,707	6,216,707	5,745,822	△470,885	△798,370
총수입	6,326,421	6,326,421	6,932,905	606,484	6,462,901	6,462,901	6,419,341	△43,560	△513,564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조 7,553억 7,200만원(11.7%)이 적은 91조 5,688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조 9,695억 2,300만원(△8.9%)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3,814,972	94,685,223	94,630,675	△54,548	95,993,631	95,993,631	85,273,986	△10,719,645	△9,411,237
기 금	5,810,139	5,922,139	5,907,690	△14,449	6,004,257	6,330,583	6,282,429	△48,154	374,739
총지출	89,625,111	100,607,362	100,538,365	△68,997	101,997,888	102,324,214	91,568,842	△10,755,372	△8,969,523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조 5,050억 6,100만원으로, 13조 7,329억 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조 7,370억 2,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21억 7,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77,050	277,050	-	277,050	634,922	632,741	9	2,17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244	15,244	-	15,244	20,163	20,163	-	-
- 지역지원계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470,037	-	3,470,037	3,489,000	3,489,00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42,730	9,742,730	-	9,742,730	9,595,117	9,595,117	-	-
합 계	13,505,061	13,505,061	-	13,505,061	13,739,202	13,737,021	9	2,171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교육부 세출예산현액은 110조 1,996억 6,500만원으로, 이 중 99조 3,294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1%)되고 173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조 8,528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96,915,883	96,915,833	13,113	△2,391	-	96,926,556	86,243,138	16,637	10,666,7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21,158	421,158	-	-	-	421,158	383,741	-	37,417
- 지역지원계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470,037	-	-	-	3,470,037	3,470,037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01	9,377,301	258	4,355	-	9,381,914	9,232,583	670	148,661
합 계	110,184,379	110,184,329	13,371	1,964	-	110,199,665	99,329,499	17,308	10,852,85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3조 6,049억 2,600만원으로, 11조 7,484억 6,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조 6,662억 3,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3%)되고 6억 3,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815억 9,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46,158	13,246,158	11,307,181	11,271,346	639	35,196
사학진흥기금	358,768	358,768	441,288	394,889	-	46,399
합 계	13,604,926	13,604,926	11,748,469	11,666,235	639	81,595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3조 6,049억 2,600만원으로, 이 중 11조 6,662억 3,500만원이 지출(집행률 85.5%)되고 3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07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46,158	13,246,158	-	13,246,158	11,271,346	-	25,946
사학진흥기금	358,768	358,768	-	358,768	394,889	384	24,842
합 계	13,604,926	13,604,926	-	13,604,926	11,666,235	384	50,78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교육부 자산은 전년 대비 3조 479억 2,300만원이 증가한 60조 1,054억 1,0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1조 9,534억 3,000만원 증가하고 유동자산이 6,974억 9,4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34억 5,700만원 감소한 1조 8,274억 9,900만원으로 기타비유동부채 742억 2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조 1,213억 8,100만원이 증가한 58조 2,779억 1,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교육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6조 7,79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6,085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5조 6,18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8,611억 5,5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교육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60,105,410	57,057,487	3,047,923	5.3
		유동자산	4,593,515	3,896,021	697,494	17.9
		투자자산	24,266,081	22,312,651	1,953,430	8.8
		일반유형자산	31,154,165	30,766,805	387,360	1.3
		무형자산	82,400	72,016	10,384	14.4
		기타비유동자산	9,250	9,994	△744	△7.4
	부 채		1,827,499	1,900,956	△73,457	△3.9
		유동부채	329,998	285,830	44,168	15.5
		장기차입부채	958,681	1,002,399	△43,718	△4.4
		장기충당부채	2,559	2,265	294	13.0
		기타비유동부채	536,260	610,462	△74,202	△12.2
	순자산		58,277,912	55,156,531	3,121,381	5.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6,779,388	101,387,926	△14,608,538	△14.4
	재정운영순원가		85,614,285	99,476,992	△13,862,707	△13.9
	재정운영결과		85,618,424	99,479,579	△13,861,155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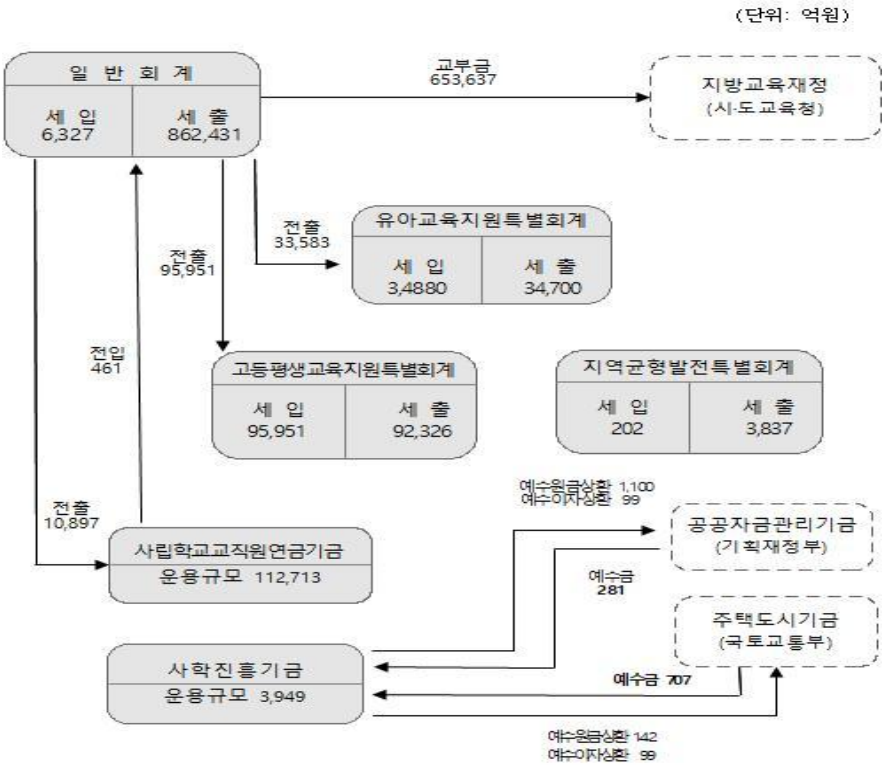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교육부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4개 회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의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3,583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9조 5,951억원이 전출되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1조 897억원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81억원을 전입받고, 예수원금 1,100억원과 예수이자 99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707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142억원과 예수이자 99억원이 상환되었음.

[2023회계연도 교육부 재정흐름도]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소외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투자를 강화하였음.

2023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급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위반하여 교부한 사항에 대해 주의조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학자금 대출을 위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신용위험(credit risk)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장학재단은 채권발행 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현장실습 지원금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직업계고 학생수와 현장실습 참여학생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성과가 미흡하므로,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실집행이 부진한 플랫폼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2025년 새롭게 추진되는 RISE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매치업 학습과정 신청자 수 대비 이수율이 과거보다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4.「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업 현황

유보통합 정책에 의한「정부조직법」 개정(2024.6.27.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2개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사업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되었으며, 이체 규모는 4조 7,733억 4,3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	2023년			2024년 예산	이체부처
		본예산	결산	집행률		
일반회계	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3	62	74.7	8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4	31	91.2	39	
	본부 인건비	2,433	2,433	100.0	2,415	
	영유아보육료 지원	3,025,145	3,163,445	104.6	2,673,100	
	시간제보육 지원	20,413	20,413	100.0	25,005	
	보육사업관리	4,655	4,421	95.0	4,31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000	1,000	100.0	982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892	1,892	100.0	1,314	
	보육실태조사	-	-	-	690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21,772	21,772	100.0	21,72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750,362	1,810,784	103.5	1,886,30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75,854	165,186	93.9	108,075	
	어린이집 기능보강	3,473	3,616	104.1	-	
지특회계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율)	-	-	-	7,38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제주)	-	-	-	185	
	어린이집 기능보강(세종)	-	-	-	71	
	어린이집 확충	-	-	-	41,654	
합 계					4,773,343	

자료 : 교육부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연례적인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과소편성 및 세출예산 초과지출 승인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수입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221억 5,2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2)]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면허료 및 수수료	17,680	17,680	22,152	22,152	-	-	100.0	12,948

주) 2024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일부(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

나. 검토의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를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고, 적정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초과지출 승인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65-651)(정책기획관)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수반되는 경비에 편성된 세출예산보다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함.[3)]

2023년 면허료 및 수수료가 발생한 수입대체경비 사업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과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의 결산내역을 보면, ① 당초 세입예산 176억 8,000만원보다 54억 7,100만원 많은 221억 5,100만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고, ② 세출예산액 119억 8,00만원에서 94억 8,700만원 초과지출 승인된 214억 7,500만원 중 194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20억 1,9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액	초과지출승인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면허료 및 수수료	8,980	9,073	9,07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5,902	4,355	10,257	8,821	1,436
	8,700	13,078	13,078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6,086	5,132	11,218	10,635	583
계	17,680	22,151	22,151			11,988	9,487	21,475	19,456	2,01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최근 5년간 2020년을 제외하면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매년 약 44억~86억원 가량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고 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과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에서 초과지출 승인도 최근 4년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9	10,104	10,104	-	10,104	18,757	18,757	185.6	100.0	-	-
’20	15,929	15,929	-	15,929	15,386	15,386	96.6	100.0	-	-

3)「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16,553	16,553	-	16,553	23,342	23,342	141.0	100.0	-	-
'22	15,386	15,386	-	15,386	19,828	19,828	128.9	100.0	-	-
'23	17,680	17,680	-	17,680	22,152	22,152	125.3	100.0	-	-

자료: 교육부

[최근 4년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및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 초과지출 승인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	예비비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0	4,500	-	**5,302**	969	10,771	10,596	98.4	-	175
	'21	4,953	-	**8,024**	-	12,977	12,955	99.8	-	22
	'22	5,575	-	**7,339**	-	12,914	12,450	96.4	-	464
	'23	5,902	-	**4,355**	-	10,257	8,821	86.0	-	1,436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20	3,994	-	**451**	1,546	5,991	5,727	95.6	-	264
	'21	5,010	-	**3,982**	44	9,036	8,769	97.0	-	267
	'22	5,245	-	**2,517**	2,272	10,034	9,568	95.4	-	466
	'23	6,086	-	**5,132**		11,218	10,635	94.8	-	583

주) 예비비 등은 예비비와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을 포함한 것
자료: 교육부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은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집행행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추이[4] 등을 고려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를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고, 적정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초과지출 승인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4) 최근 5년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현황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515,592	533,748	631,632	567,682	389,204
한국어능력시험	375,871	218,869	330,016	357,395	421,812

자료: 교육부

<세 출>

2. 교육급여 사업: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률 제고 필요 및 바우처 신청 과정 통합 필요

가. 개 요

‘교육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73억 1,300만원 중 1,573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3년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육급여	157,313	157,313	-	-	157,313	157,311	-	2	160,399

동 사업은 2022년 7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의 급여형태를 현금(계좌이체)에서 바우처로 변경하여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였음.

[교육급여 보장 수준]

(단위: 원)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 활동 지원비	초	415,000	↑84,000 (25.4%)	461,000	↑46,000 (11.1%)
	중	589,000	↑123,000 (26.4%)	654,000	↑65,000 (11.0%)
	고	654,000	↑100,000 (18.1%)	727,000	↑73,000 (11.2%)
평균 증가율		23.3%↑		11.1%↑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자료: 교육부

5) 일반회계-교육급여(1131-300)(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나. 검토의견

첫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급여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서울은 60%, 기타 지역은 80~90%까지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은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18개월로 설계되었는데,[6]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의 충분한 활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학생들에게 사용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교육급여 바우처는 일단 신청하고 나면 실제 사용기간은 장시간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7] 사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교육급여의 활용도를 높이고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교육급여 사업의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보면, 2023년 3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년이 지난 2024년 2월까지 실집행률이 8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급여 신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23년 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교육청	15,637	-	15,637	12,750	-	-	81.5
부산교육청	12,004	-	12,004	10,127	-	-	84.4
대구교육청	9,001	-	9,001	8,255	-	-	91.7
인천교육청	11,532	-	11,532	10,523	-	-	91.3
광주교육청	7,026	-	7,026	6,290	-	-	89.5
대전교육청	5,526	-	5,526	4,608	-	-	83.4
울산교육청	1,675	-	1,675	1,346	-	-	80.3
세종교육청	648	-	648	618	-	-	95.4
경기교육청	31,486	-	31,486	26,263	-	-	83.4
강원교육청	5,788	-	5,788	4,830	-	-	83.4
충북교육청	5,524	-	5,524	4,961	-	-	89.8

6) 2023.3.~2024.6.까지 신청하고 2024년 8월까지 사용

7) 교육부는 교육급여 신청 후 통상 2~3개월 내에 지원액을 모두 소진한다고 설명함.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충남교육청	6,095	-	6,095	5,270	-	-	86.5
전북교육청	10,036	-	10,036	8,543	-	-	85.1
전남교육청	7,105	-	7,105	5,932	-	-	83.5
경북교육청	9,395	-	9,395	8,557	-	-	91.1
경남교육청	13,129	-	13,129	10,677	-	-	81.3
제주교육청	2,866	-	2,866	2,610	-	-	91.0
소계	154,473	-	154,473	132,160	-	-	85.6

주) 2024.2. 기준
자료: 교육부

사업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교육급여 신청과 집행실적이 조금씩 더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8] 국가 예산은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에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이 사업과 같이 처음부터 사업기간을 18개월로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신청기간 7개월, 사용기한 약 1년이며,[9] 여성가족부의 여성용품 바우처 사업도 사용기한을 당해연도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급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사업기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8) <지방자치단체 시기별 교육급여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잡행액	실집행률
2023.12. 기준	154,473	125,390	81.2
2024.2. 기준	154,473	132,160	85.6
2024.4. 기준	154,473	136,320	88.2

자료: 교육부

9)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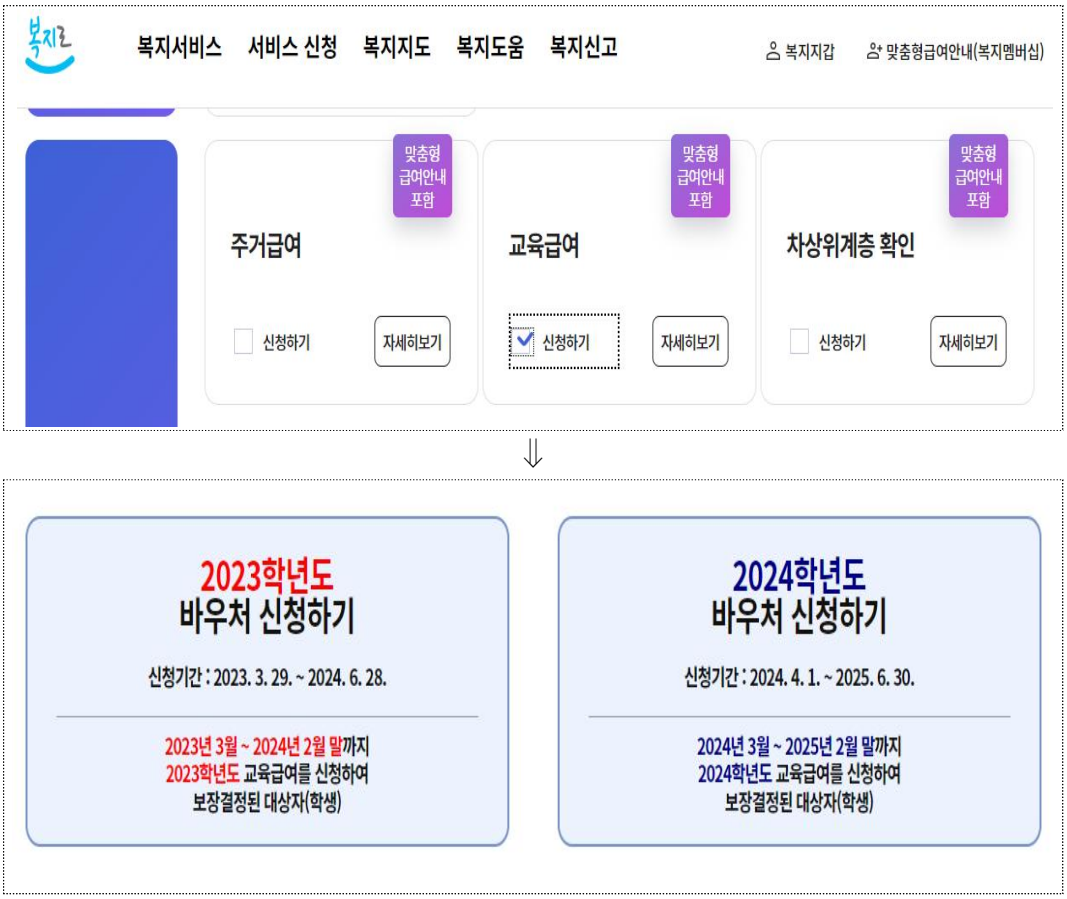
구분	신청기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3.5.31.~'23.12.29.	'23.7.1.~ '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3.5.31.~'23.12.29.	'23.10.11.~'24.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자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둘째, 교육급여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과 실제 바우처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달라 교육급여 수급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신청 과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육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고,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으로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정]



자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교육급여바우처 사이트(e-voucher.kosaf.go.kr) 신청화면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바우처의 통합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의 개정과 행복e음 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나, 지자체 현장에서 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급여 신청 시 지급수단만 정하면 되는 과정을 두고,[10] 별도의 시스템까지 만들어 교육급여 수급자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신청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음.

10)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 자체수입 확보 내실화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은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94억 4,5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11)]

[2023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9,445	39,445	-	-	39,445	39,445	-	-	36,521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지차보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하므로, 2024년에 수립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다른 수입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지차보전기관[12)]으로서 최근 5년간 매년 사업수입 1억 9,800만원을 자체수입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은 1~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

11) 일반회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1303-500)(디지털교육기획관)

12)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함.

[최근 5년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체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사업수입	198	2	198	2	198	1	198	0	198	1
사업외수입	120	202	120	73	120	108	120	174	185	247
이자수입	-	58	-	24	-	30	-	117	-	197
잡수입	-	144	-	49	-	78	-	57	-	50
전년이월금	1,178	979	1,178	709	1,178	630	1,178	686	1,178	634
계	1,496	1,183	1,496	784	1,496	739	1,496	860	1,561	882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 국회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받았으며,[13] 2024년 초에 신규 사업수입 발굴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자체수입 확보 방안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rowspan="3">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td><td>사업 개요</td><td>KERIS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지정(교육부, 2009.06.)되어, 연수원(약 174개 기관)의 인가・변경・폐지 및 콘텐츠 품질관리 사업을 수행</td></tr>
<tr><td>확보 방안</td><td>기관에서 수행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연수 콘텐츠 내용 심사료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발굴(2023년도 수익 1백만원 발생)</td></tr>
<tr><td>예상 수입</td><td>(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th><th>2027</th></tr><tr><td>수입액</td><td>1</td><td>3</td><td>5</td><td>5</td><td>5</td></tr></table></td></tr>
<tr><td rowspan="3">AI 디지털교과서 기술검정심사</td><td>사업 개요</td><td>KERIS는 AI 디지털교과서 기술 심사 지원 기관으로 지정(교육부, 2023.08.)되어, 기술 심사 업무를 수행</td></tr>
<tr><td>확보 방안</td><td>디지털교과서 기술검정심사를 통해 2025년부터 매년 6,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td></tr>
<tr><td>예상 수입</td><td>(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th><th>2027</th></tr><tr><td>수입액</td><td>0</td><td>0</td><td>60</td><td>42</td><td>22</td></tr></table></td></tr>
</table>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와 AI디지털교과서 기술검정심사 수입을 합쳐

13)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수지차보전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

도 6,000만원 내외에 불과하여 매년 사업수입으로 계획한 1억 9,800만원에는 미치치 못하고 있으므로, 기 수립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수입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4세대 나이스 개편 이후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만족도가 급감한 바 있으므로, 향후 서비스 개편 사업 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전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줄이고, 서비스 신규 개통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임.[14)]

2002년 11월 최초 개통 이후, 2006년과 2011년 2차례 개편에 이어 2020년 제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음.

[제4세대 나이스 구축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4세대 나이스 응용SW 및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20.9. ~ '23.12.(안정화 기간 포함)
개통시기	'23.6.21.
사업예산	2,824억원(출연금 37억원, 특별교부금 850억원, 지방비 1,937억원)
추진조직	4세대 나이스구축 TF(66명, 교육부 7 시도교육청 33 KERIS 26)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2023.6.19.

그런데 제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2023년 11월에 이루어진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교직원의 만족도는 전년도 90.81에서 33.66으로 급감하고, 학생(87.33→72.11)과 학부모(84.72→67.42)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14) 초·중등학교(11,600여개), 교육행정기관(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대학·전문대학(400여개) 등에서 사용되고, 학생 545만 명, 교직원 55만 명, 학부모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교무·학사·인사·급여 등 44개 단위업무 처리에 이용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나이스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자 수	977	3,259	8,628	640	1,466	2,725	11,389	875	979
만족도 점수	90.56	86.64	83.01	90.81	87.33	84.72	33.66	72.11	67.42

주 1) 만족도 점수는 약간만족, 대체로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한 비율 합계
2) 교직원은 제4세대 나이스, 학생은 나이스플러스, 학부모는 학부모서비스 시스템 대상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직원의 경우 학기말 업무집중시기 접속지연, 사용법 변경에 따른 초기 업무 혼선(재처리, 처리 오류 조치 등) 등으로 불만족 요인이 발생하였고, 학생·학부모는 기존 '학생-학부모 서비스'를 '나이스 플러스'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등록 및 재가입으로 초기 불편이 발생하여 불만족 요인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향후 서비스 신규 개통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4세대 나이스 구축 이후 최근까지도 학생 온라인 출결 시스템과 관련된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15]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인천일보, 「교육행정시스템 '4세대 나이스' 불편 가득」, 2024.4.25.
중도일보, 「학생 온라인 출결 시스템 '유명무실' 교원들 "출결 민원 끊이지 않아"」, 2024.5.2.

4.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법률상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

가. 개 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보통교부금’ 은 2023년 예산현액 73조 5,334억 4,400만원 중 63조 4,164억 5,600만원이 집행(86.2%)되고 10조 1,169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은 2023년 예산현액 6,681억 6,700만원 중 4,581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6%)되고 2,100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은 2023년 예산현액 2,227억 2,200만원 중 1,527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6%)되고 700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은 2023년 예산현액 1조 3,363억 3,3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19)]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통교부금	73,533,444	73,533,444	-	-	73,533,444	63,416,456	-	10,116,988	66,338,469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68,167	668,167	-	-	668,167	458,158	-	210,009	600,426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22,722	222,722	-	-	222,722	152,719	-	70,003	200,14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336,333	1,336,333	-	-	1,336,333	1,336,333	-	-	1,200,852
합계	75,760,666	75,760,666	-	-	75,760,666	65,363,666	-	10,397,000	68,339,889

16) 일반회계-보통교부금(1501-300)(교육자치협력안전국)

17) 일반회계-지역현안 특별교부금(1502-300)(교육자치협력안전국)

18) 일반회계-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1502-301)(교육자치협력안전국)

19) 일반회계-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교육자치협력안전국)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를 합산한 금액임.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0%, 30.0%, 10.0%의 비율로 교부되고 있음.[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

종류 및 재원		교부기준(2023년)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7% +교육세 일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 교부금 (내국세 20.79%의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으로 교육부 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 (10%)	보통교부금 산정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 감소 또는 재해예방 특별수요

주 1) 교육세에서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됨.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교부받음.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위반하여 교부한 사항에 대해 주의조치할 필요가 있음.

교부금 예산의 편성과 교부 절차는 ① 세수가 초과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교부하거나, 추경편성을 하지 못한 경우 정산을 통해 차년도나 차차년도에 차액만큼 더 교부해야 하고, ② 세수가 부족한 경우 감액 추경을 해서 교부액을 줄이거나, 추경편성을 하지 못하면 일단 편성된 예산만큼 교부하고 정산을 통해 차년도나 차차년도에 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21)]

---

2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한시적으로 교부됨.

2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

그런데 2023년 세수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그동안 교부금을 전액 교부한 후 차차년도에 사후정산하던 방식에서, 교부단계에서부터 수정된 국세수입 전망치를 감안하여 교부금을 불용하는 사전정산 방식을 사용하였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10조 1,169억 8,800만원, 특별교부금 2,800억 1,200만원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교부금 자금의 감액을「국가재정법」제43조제5항[22]에 따른 '배정된 예산의 집행 보류'로 보며, 집행자금 미교부가 불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음.[23]

문제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24]을 위반하였다는 점임.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전액 교부함으로써 법률상 교부비율보다 많은 68.6%를 교부하였고, '지역현안 특별교부금'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각각 23.5%, 7.8%를 교부하여 법률상 교부비율보다 적게 교부하였음.

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2)「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 기획재정부는 2023.9.18.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시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2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대비 교부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3년 예산액(A)	비율	최종 교부액(B)	비율	미교부액(A-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100%	65,363,666	100%	10,397,000
○ 보통교부금	73,533,444	97.1%	63,416,456	97.0%	10,116,988
○ 특별교부금	2,227,222	2.9%	1,947,210	3.0%	280,012
- 국가시책	1,336,333	(60.0%)	1,336,333	(68.6%)	-
- 지역현안	668,167	(30.0%)	458,158	(23.5%)	210,009
- 재난안전	222,722	(10.0%)	152,719	(7.8%)	70,003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첫째, 「국가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제43조의2제2항[25]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중앙행정관서에게 집행자금의 배정계획을 수립·수정하거나 자금의 집행을 재배정·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임.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26]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매년 1월 31일 교부하였으므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교부 완료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회수할 근거가 없으며, 연도 중 통보된 자금 교부로 인한 집행비율 미준수는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임.

셋째, 법률상 교부비율과 다르게 집행한 내역은 결산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25)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교육부의 첫 번째 설명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 변경은 분기별 배정액 조정, 개별사업 검토에 따른 배정 여부 등에 관한 재량으로 볼 것이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비율을 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사이의 배분 비율도 재량사항이 될 수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배분 비율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교육부의 두 번째 설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부했기 때문에 법률상 교부비율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으나, ① 하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 상 인정할 수 없고,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단서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실제로 2021년 1월에는 68.7%, 2022년 1월에는 64.8% 등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규정 때문에 집행이 구속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0~2023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월별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899,836			1,007,639			1,313,725			1,336,333
월별	심의액	교부액	교부율	심의액	교부액	교부율	심의액	교부액	교부율	심의액	교부액	교부율
전년도	872,046	-	-	766,925	-	-	970,663	-	-	1,162,047	-	-
1월	-	809,176	**87.5**	20,331	746,883	**68.7**	-	945,148	**64.8**	-	1,095,040	**79.1**
2월	-	34,010	3.7	-	24,161	2.2	24,437	31,489	2.1	-	18,895	1.4
3월	20,453	29,035	3.1	25,855	-	0.0	-	12,573	0.9	174,286	98,835	7.1
4월	-	15,683	1.7	-	21,721	2	-	-	0.0	-	16,891	1.2
5월	-	1,000	0.1	-	11,275	1.1	-	-	0.0	-	34,150	2.5
6월	-	-	0.0	-	5,350	0.5	-	-	0.0	-	31,456	2.3
7월	32,686	△6,658*	-0.7	21,152	-	0.0	463,799	-	0.0	48,218	37,533	2.7
8월	-	1,494	0.1	252,538	277,411	25.5	-	463,689	31.8	-	32,507	2.4
9월	-	33,445	3.6	-	-	0.0	-	6,000	0.4	-	6,269	0.4
10월	-	8,000	0.9	-	-	0.0	-	-	0.0	-	10,865	0.8
11월	-	-	0.0	-	-	0.0	-	-	0.0	-	2,110	0.1
12월	-	-	0.0	-	-	0.0	-	-	0.0	-	-	0.0
합계		925,185	100.0		1,086,801	100.0		1,458,899	100.0		1,384,551	100.0

주) 합계는 감교부(전년도 집행잔액) 및 세계잉여금 포함
자료: 교육부

교육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1월로 정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① 세수결손 상황에 따라 법률상 교부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②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산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③ 다른 교부금은 교부하지 않으면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만 세수와 관계없이 전액 집행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

특히, 이와 같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집행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세수 초과나 결손 시 법률상 교부비율을 위반할 수 있게 되는 선례가 된다는 점,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교육부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어 법률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집행가능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지연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부설학교 시설의 신·증축, 노후된 건물의 개축·리모델링, 기존 건물의 유지 보수, 석면제거 및 내진 보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10억 3,400만원 중 203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7%)되고, 102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3년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2,165	52,165	3,678	-	55,843	44,942	10,276	625	58,320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7,356	27,356	3,678	-	31,034	20,397	10,276	563	29,454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예산에는 신·증축 등을 위한 신규사업 2건 및 계속사업 8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해 27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22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 36억 7,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0억 3,400만원 중 2023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24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102억 7,600만원에

27) 일반회계-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교육자치협력안전국)

달하고 있음.

시설확충 사업이 이월되는 원인은 주로 방학 기간에 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전북대 부설고와 같이 설계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연, 한국우진학교 및 한국선진학교와 같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수렴에 따른 설계 지연도 그 원인으로 나타남.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이월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기관명	학교	2023년		실집행률 (A/A+B)	실집행 부진사유
		지출액(A)	이월액(B)		
서울교대	부설초	237,497	253,273	48.4	. 학생들의 안전, 소음 등으로 부터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 추진하여 사고이월 발생 (2월 완료)
전주교대	부설초	30,110	30,200	49.9	. 도장공사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 및 교복 오염,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1월 완료)
광주교대	부설초	191,798	790,640	19.5	. 학생들의 안전 및 소음·진동 등으로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2월 완료 및 4월 완료)
대구교대	부설초	371,481	1,636,315	18.5	.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방학 기간 내(하계, 동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2월 완료)
진주교대	부설초	102,375	108,690	48.5	.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1월 완료)
전북대	부설고	-	1,486,451	-	. 조달청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3회)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본, 중간,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달청 적정성 검토 3회 실시 (1회당 최소 4개월 소요)
경북대	부설고	574,863	1,382,390	29.4	.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1월 완료)
제주대	부설초	68,002	71,114	48.9	.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1월 완료)

(단위: 천원, %)

기관명	학교	2023년		실집행률 (A/A+B)	실집행 부진사유
		지출액(A)	이월액(B)		
제주대	부설중	162,788	162,788	50.0	. 변압기 교체공사로 학생들의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방학 기간 내(12~2월) 단전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3월초 완료)
경상국립대	부설중	124,465	124,465	50.0	.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1월 완료)
경상국립대	부설고	937,851	1,289,585	42.1	. 연도별 차수 공사로서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을 위하여 방학 기간 내(하계, 동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2월 완료/관급자재 5월 완료)
공주대	부설고	23,674	23,674	50.0	.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 수능시험을 위하여 동계방학 기간 내(12~2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1월 완료)
한국우진학교		838,439	2,309,039	26.6	. 특수학교 특성상 설계진행 간 학부모, 특수교사, 보조교사 등의 의견수렴으로 인하여 설계 기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발생 (현재 공사진행 중 - 선급금 및 기성 등 지급)
서울맹학교		-	543,368	-	. 특수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 소음·진동,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학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방학기간에 실시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공사추진 중 - 7월완료 예정)
한국선진학교		64,413	64,413	50.0	. 특수학교 특성상 설계진행 간 학부모, 특수교사, 보조교사 등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 기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발생 (3월 완료 - 공사진행)
계		3,663,344	10,276,405	26.6	

주) 2023.12. 말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학기 중에는 학사일정(수업·수능)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워 겨울방학(12월~)중에 공사가 집중되고, 절대 공사기간(2~3개월)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문제는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최근 5년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31,040	31,040	138	-	31,178	22,989	7,027	1,162
2020	39,882	39,882	7,027	-	46,909	40,464	4,851	1,594
2021	36,450	36,450	4,851	-	41,302	32,880	5,056	3,361
2022	29,248	29,248	5,056	-	29,248	21,839	3,678	3,881
2023	27,356	27,356	3,678	-	31,034	20,397	10,276	563

자료: 교육부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규모만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하지 못할 금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기관이 유보하고 있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재단채 조달비용 절감방안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대납이자, 이자면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의 고유사업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355억 4,1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28)]

[2023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장학재단 출연	321,741	321,741	-	13,800	335,541	335,541	-	-	367,38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대납이자	182,530	182,530	-	16,000	198,530	198,530	-	-	191,020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면제	8,625	8,625	-	△2,400	6,225	6,225	-	-	18,86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군이자면제	1,572	1,572	-	△550	1,022	1,022	-	-	874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9,755	9,755	-	-	9,755	9,755	-	-	9,045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14,056	14,056	-	750	14,806	14,806	-	-	26,684
학자금대출손실 보전금	11,862	11,862	-	-	11,862	11,862	-	-	27,489
고유사업비	43,005	43,005	-	-	43,005	43,005	-	-	42,118
재단운영비	50,336	50,336	-	-	50,336	50,336	-	-	51,289

28) 일반회계-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학자금 대출을 위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신용위험(credit risk)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장학재단은 채권발행 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29]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30]

재단채 발행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은 연간 채권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고, 채권 발행조건(금액, 만기 등)을 채권투자자에게 사전공고한 후 입찰,[31] 발행[32]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금을 조달하게 됨.

2023년에는 5년물 8,900억원, 3년물 4,500억원 등 총 1조 6,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최근 3년간 재단채 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최근 3년간 재단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발행금액	2년물	3,700	31.4	500	4.2	1,200	7.5
	3년물	2,800	23.7	7,000	58.3	4,500	28.1
	5년물	4,200	35.6	3,600	30.0	8,900	55.6
	10년물	800	6.8	500	4.2	-	-
	20년물	300	2.5	400	3.3	1,400	8.8
	소계	11,800	100.0	12,000	100.0	16,000	100.0
평균만기		4.3년		4.4년		5.5년	
발행금리(가중평균)		1.82		4.05		3.85	

자료: 교육부

2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30)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1)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낮은 입찰금리순으로 고지된 발행예정액에 해당하는 금리로 낙찰

32) 채권 계약서 작성,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발급, 예탁결제원 등록발행 및 한국거래소 사회적가치채권 등록, 상장 등

그런데 재단채는 정부보증 채권으로서 국고채와 마찬가지로 신용위험(credit risk)[33]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채 조달금리가 모든 연물별로 국고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개년 연물별 재단채(정부보증채), 국고채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평균
재단채	3년물	1.65	1.16	1.53	3.62	3.81	2.35
	5년물	1.70	1.40	1.90	3.74	3.88	2.52
	10년물	1.77	1.63	2.15	3.67	3.94	2.63
국고채	3년물	1.53	0.99	1.39	3.20	3.57	2.13
	5년물	1.59	1.23	1.72	3.32	3.59	2.29
	10년물	1.70	1.50	2.07	3.36	3.64	2.45

자료: 한국장학재단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고채는 유동성[34]이 높아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선호하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단채는 유동성이 다소 낮아 국고채보다 금리가 소폭 높게 형성된다고 설명함.

그러나 내역사업인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군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등 사업예산이 모두 재단채 조달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국가가 대납하고 있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은 채권 조달비용 상승을 유동성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35]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로 재단채 발행에만 의존한다면 국고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자면제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대상의 범위와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3) 채권발행기관 부도시, 채권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34) 투자자가 필요한 시기에 채권매매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35) 재단채 투자 IR자료에 국고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중 이자면제 사업으로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군복무자 및 기초・차상위, 다자녀에 대한 대출이자 면제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군복무자에 대한 대출이자 면제 사업이 있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의 당초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각각 68.4%, 60.6%로 다른 내역사업들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8,625	8,625	6,225	6,225	-	6,225	5,903	-	322	68.4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1,572	1,572	1,022	1,022	-	1,022	952	-	70	60.6

자료: 교육부

이자면제 대상별로 보면 군복무자와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 실적이 저조함.

[이자면제 대상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예산 대비 집행률
군복무자	3,237	2,002	61.8
기초・차상위	2,642	583	22.1
다자녀	4,318	4,269	98.9
합 계	10,197	6,854	67.2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군이자면제 사업의 경우 군입대자의 감소,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학자금대출 수요 감소,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21~'23년 1.7%) 등의 영향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사업은 2022년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함.

과다하게 편성된 이자면제 예산은 내역변경을 통해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부족분에 지원하였는데, 향후 교육부는 목적사업에 적정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의 범위와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인원이 2023년 말 기준 7,788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학자금 중복지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36]에 따르면, 학자금 중복지원(대출+장학금, 장학금+장학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음.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인원은 2023년 12월말 기준 7,788명이며, 장학금 반환이 필요한 중복지원금(장학금+장학금)은 4억원(346명)임.

[최근 5년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복지원 인원	15,391	12,263	10,138	8,656	7,788
중복지원 금액	16,356	13,080	11,093	9,814	8,846

자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중복지원 금액 중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외부의 장학금 수령을 통한 중복지원자가 95.8%(7,442명, 85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중복지원이 차츰 해소될 예정이라고 함.

다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상환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환이 이루어지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것이지만,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중복지원 해소를 위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볼 것임.

향후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의 학업수료에 대한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조 5,526억 3,600만원 중 4조 4,460억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1,066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37)]

[2023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566,436	4,566,436	-	△13,800	4,552,636	4,446,000	-	106,636	4,720,453
국가장학금지원	4,030,777	4,030,777	-	△22,345	4,008,432	3,901,796	-	106,636	4,097,498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376,445	376,445	-	-	376,445	376,445	-	-	469,125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56	57,856	-	-	57,856	57,856	-	-	57,626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99,338	99,338	-	8,545	107,883	107,883	-	-	94,184
운영비(인건비)	2,020	2,020	-	-	2,020	2,020	-	-	2,020

나. 검토의견

첫째,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액과 지원인원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해왔으나 졸업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장학금 수혜자의 학업 수료에 대한 통계 등을 포함하여 장학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7) 일반회계-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Ⅰ유형 사업과 고졸 재직자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Ⅱ유형 사업으로 구분됨.

최근 5년간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액은 2019년 317억 2,6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4,386명에게 563억 6,600만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지원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졸업자수는 매년 감소 중이며, 2019년 수혜자 중 졸업자수 비율은 55.4%, 2020년 수혜자 중 졸업자수 비율은 48.3%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지원실적 및 졸업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금액	31,726	39,041	42,413	48,015	56,366
지원인원(A)	9,100	9,181	10,784	12,404	14,386
졸업자(B)	5,040	4,437	3,552	2,880	1,684
지원인원 대비 졸업자 비율(B/A)	55.4	48.3	32.9	23.2	11.7

주) 2024년 3월 현재 졸업으로 확인되는 장학생 현황

자료: 한국장학재단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졸업자수 통계는 연도별 수혜자 중 2024년 3월까지의 졸업자수이므로 최근 연도일수록 재학생 비율이 높아 졸업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19년 이후 지원인원 대비 졸업자 비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원인원에 비해 졸업자수가 적은 것은 장학금을 받은 뒤 휴학 등으로 졸업이 지연되거나, 제적 또는 자퇴에 따른 결과로 추측할 수 있음.[38]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학적유지와 의무재직 요건이 부과되는데,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의 이수가 필수이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해당 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음.[39]

38) 교육부는 과거 장학금 수혜자의 졸업·휴학·자퇴 등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39)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장학생 심사 관련 내용]

구분	학적 심사	기업 재직여부 관련 심사
신규 장학생	학적(해당 학기 재학 여부)	현재 재직 여부
	직전학기 성적 충족 여부	선발 전 2년 이상 재직 충족주
계속 장학생	학적(해당 학기 재학 여부)	현재 재직 여부
	직전학기 성적 충족 여부	수혜 학기당 4개월(120일) 의무재직 이행 여부

주)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이상(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자료: 한국장학재단

문제는 학적변동 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될 뿐 환수하는 규정은 없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므로, 장학금을 수혜한 당해 학기를 이수하고 의무재직만 하면 졸업 여부까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희망사다리 Ⅱ유형 환수현황을 보면, 200~6,00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학적변동이나 의무재직 변동으로 인한 장학금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최근 5년간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환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환수금액	25	60	15	5	2

자료: 한국장학재단

따라서 교육부는 장학금 규모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장학금 수혜자의 학업 수료에 대한 통계 등을 포함하여 장학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9구간 이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연계)[40]의 경우 Ⅰ유형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9구간 이상도 지원하고 있는데,[41] 그 인원과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40) 사업계획상 대학자체노력연계 2,100억원과 신·편입생 지원 900억원으로 구분되나 상호 활용이 가능

[2019~2023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자체노력연계)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기타	합계
'23	금액	4,775	27,822	22,237	22,277	24,775	11,697	30,261	15,861	32,403	43,587	235,695
	비율	2.0%	11.8%	9.4%	9.5%	10.5%	5.0%	12.8%	6.7%	13.7%	18.5%	100.0%
	인원	7,553	37,347	32,245	34,716	40,009	20,922	58,765	36,433	77,261	63,902	395,394
	비율	1.8%	9.1%	7.9%	8.5%	9.8%	5.1%	14.4%	8.9%	18.9%	15.6%	100.0%
'22	금액	4,215	29,632	22,540	22,546	24,120	10,719	25,195	13,909	27,923	37,124	217,923
	비율	1.9%	13.6%	10.3%	10.3%	11.1%	4.9%	11.6%	6.4%	12.8%	17.0%	100.0%
	인원	7,216	41,913	35,943	38,403	43,791	22,424	59,955	36,898	76,766	61,901	409,786
	비율	1.7%	9.9%	8.5%	9.0%	10.3%	5.3%	14.1%	8.7%	18.1%	14.6%	100.0%
'21	금액	29,748	40,059	30,426	31,143	32,576	15,108	36,508	27,478	60,088	2,841	305,974
	비율	9.7%	13.1%	9.9%	10.2%	10.6%	4.9%	11.9%	9.0%	19.6%	0.9%	100.0%
	인원	42,428	57,467	48,130	51,108	57,283	29,136	78,506	51,742	108,749	5,212	506,434
	비율	8.0%	10.8%	9.1%	9.6%	10.8%	5.5%	14.8%	9.8%	20.5%	1.0%	100.0%
'20	금액	29,361	40,093	31,609	31,866	32,636	14,908	36,515	28,147	60,660	3,266	309,060
	비율	9.5%	13.0%	10.2%	10.3%	10.6%	4.8%	11.8%	9.1%	19.6%	1.1%	100.0%
	인원	42,203	58,347	50,435	53,839	60,483	30,444	81,904	55,673	114,598	3,079	523,422
	비율	7.7%	10.6%	9.2%	9.8%	11.0%	5.5%	14.9%	10.1%	20.8%	0.6%	100.0%
'19	금액	29,134	44,093	32,903	31,481	34,536	15,692	38,991	28,653	60,020	4,653	320,155
	비율	9.1%	13.8%	10.3%	9.8%	10.8%	4.9%	12.2%	8.9%	18.7%	1.5%	100.0%
	인원	38,965	58,666	49,290	50,224	57,137	28,761	78,155	50,755	106,913	1,404	498,706
	비율	7.5%	11.3%	9.5%	9.7%	11.0%	5.5%	15.0%	9.8%	20.5%	0.3%	100.0%

주 1) 기타: 9구간, 10구간 기타(미산정) 포함(재난지원장학금 등 지원내역 포함)
2) 중복제거한 순인원으로, 지원인원의 비율은 지원구간별 총합(중복포함) 건수를 반영
3) 상기 II유형 구간별 지원현황은 대학자체노력연계 지원금액으로, 학자금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599억 7,600만원) 미포함

자료: 한국장학재단

2023년에는 9구간 이상 지원인원이 63,902명으로 전년대비 2,001명 늘었고, 지원금액도 43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6,300만원 증가함.

41) 9구간은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300%(2023년 기준 1,080~1,62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이며, 10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를 초과하는 구간임.

국가장학금 Ⅱ유형 중 일부는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탈락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Ⅱ유형을 통해 9구간 이상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42)]

42)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넘어가면 수혜절벽이 발생하기 때문에 9구간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8.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보조사업 추가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은 국내·외 유네스코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對유네스코 외교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5억 500만원 중 44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2023년도 UNESCO 교육협력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19,999	19,999	-	-	19,999	19,958	-	41	19,821
UNESCO 교육협력지원	4,505	4,505	-	-	4,505	4,464	-	41	1,880

나. 검토의견

유네스코회관 안전보강 사업은 관계기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되었는데,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당초 연장 승인된 기간 안에 보조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중 하나인 UNESCO 교육협력지원 사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협회연맹에 각각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는 43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유네스코협회연맹에는 9,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43) 일반회계-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글로벌교육기획관)

[UNESCO 교육협력지원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교육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4,370	4,370	4,370	4,370	-	4,370	2,046	2,324	-	46.8
유네스코 협회연맹	135	135	94	94	-	94	75	-	19	55.6

자료: 교육부

2023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운영비 외에 유네스코회관[44] 안전보강을 위한 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은 유네스코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보강 공사와 임대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비 25억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자체부담 6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임.

[유네스코회관 안전보강 사업비 부담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예 산
국고	-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1회	150
	- 콘크리트 균열 등 보수 공사	1억 5,200만원*1식	152
	- 커튼월 보수 및 창호 교체 공사	8억 5,100만원*1식	851
	- 외변 마감 공사	4억 2,700만원*1식	427
	- 외부벽체 가설비계	9,500만원*4월	380
	- 가건물 철거 및 정비	2억원*1식	200
	- 변압기 교체 공사	2억 1,,000만원*1식	210
	- 감리비	8,000만원*1회	80
	- 지하층 등 방수 공사비	5,000만원*1회	50
	소 계		2,500
자체 부담	- 커튼월 보수 및 창호 교체 공사	2억원*1식	200
	- 외벽 마감 공사	1억원*1식	100
	- 외부벽체 가설 비계	9,200만원*2월	184
	- 지하층 등 방수공사비	5,000만원*1식	50
	- 감리비	4,000만원*1회	40
	- 설계공모 및 진행경비	2,600만원*1식	26
	소 계		6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작성

44) <유네스코회관 개요>

구분	내용
소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상업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연면적/건폐율/용적률	13,367㎡ / 85.62% / 911.46%
구조/용도	철근 콘크리트 / 업무시설,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국고로 지원한 25억원의 사업비 중 대부분인 23억 2,400만원이 이월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설계업체 선정에 따른 설계완료가 2023년 7월에 완료되었고, 설계 관련 심의, 문화재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시공사 선정이 2023년 12월에야 이루어졌음. 그에 따라 2024년 1월 완료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사업 기간이 2024년 10월까지 연장되었음.[45)]

[유네스코회관 안전보강 사업 당초 계획]

일정	내용
외벽 보수 및 창호 교체에 대한 공개 설계용역 공모 (2023년 1~2월)	- 조달청을 통한 설계 제안 공모 / 일반공개경쟁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설계자 선정 및 설계 (3~6월)	- 제반 인허가 업무 대행 : 문화재 현상 변경, 경관 심의, 대수선 허가 등 -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 작성, 공사비 산출, 공정표 작성 등
시공사 공개 입찰 및 계약 (7~8월)	- 조달청을 통한 시공사 공개 입찰 실시
안전보강 공사 시행 (9~12월 / 2024년 1월)	- 유네스코회관 전체 외벽 (1~13층) 콘크리트 균열부위 보강 - 기존 외벽 마감재 철거 및 적합한 재료로 재마감 (가설비계 설치 후 공사) - 1층 가건물 및 외벽 부착 가설물 철거 및 정비 - 회관 전면 (북면) 커튼월 창틀 및 유리 교체 - 회관 동, 서, 북면 창호 보수 및 교체 - 1층 가건물 철거 및 외벽 부착 가설물 등 철거 또는 보수 - 지하층 특고압실 등 바닥, 11층 베란다 등 방수 공사 시행 - 기계실 노후 변압기 교체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작성

교육부는 정해진 기간 내 보조금 미집행 시 전액 환수를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2023.12.→2024.10.)하였는데,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당초 연장 승인된 기간 안에 보조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45) 관계기관(서울 중구청 등)의 공사 설계 관련 심의 지연, 조달청 계약 요청 등 시공사 선정 시 안전 관련 사항 보완, 코로나 19 이후 주변 지역(명동)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협의 등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가 2023년 12월에 완료

9. 교원해외진출 사업: 해외 교원파견 계획 대비 실적 저조

가. 개 요

‘교원해외진출 사업’ 은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교원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3억 6,700만원 중 31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1%)되고,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46)]

[2023년도 교원해외진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97,645	97,645	-	-	97,645	95,211	11	2,423	119,093
교원해외진출 사업	4,367	4,367	-	-	4,367	3,150	11	1,206	4,367

나. 검토의견

해외 교원파견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교원 해외진출 사업은 예산현액 43억 6,700만원 중 불용액이 12억 600만에 달하여 집행률이 72.1%로 저조함.

파견교원 지원비와 체제비 용도의 기타보전금 불용액이 7억 3,400만원으로 가장 큰데, 이는 곧 교원파견 실적이 계획대비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당초 국립국제교육원의 해외교원 파견계획에 따르면, 10개국에 6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47)] 연장평가 대상자 20명 및 하반기 선발예정자 4명을 제외한 9개국 36명을 신규선발하기 위해 모집공고(2023.5.) 하였음.

---

46) 일반회계-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4531-300)(국립국제교육원)

47) 10개국 60명 배정(네팔 3명, 말레이시아 10명, 세르비아 8명, 우즈베키스탄 10명, 태국 5명, 파라과이 3명, 카자흐스탄 7명, 키르기스스탄 6명, 우간다 4명, 캄보디아 4명)

[2023년도 장기파견자 1차 선발현황]

(단위: 명)

선발 분야	배정 인원	지원 인원	1차 합격인원	2차전형					
				결시	응시	불합격 사유		최종 합격인원	예비 합격자
						인성검사 부적합	60점 미만		
초등	3	7	6	2	4	-	-	3	1
수학	5	3	3	-	3	-	2	1	-
과학	8	4	4	-	4	-	1	3	-
ICT	5	5	3	-	3	-	-	2	1
미술	1	3	2	1	1	-	-	1	-
한국어	14	45	42	6	36	1	2	14	19
계	36	67	60	9	51	1	5	24	21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1차 선발에 36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24명이 선발되었고, 미충원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2차 모집공고(16명 선발[48])를 하여 최종 7명이 추가로 선발(2023.11.)되었음.

2023년 최종 선발에 따른 국가별 파견된 해외교원은 52명으로, 계획인원 60명 대비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도 해외 교원파견 현황]

(단위: 명)

구분	파견분야								합계
	초등	수학	과학	ICT	예체능	한국어	직업기술	퇴직자문관	
네팔	-	-	-	-	-	3	-	-	3
말레이시아	-	-	-	-	-	10	-	-	10
세르비아	-	1	1	1	2	2	-	-	7
우즈베키스탄	-	1	3	1	-	-	-	-	5
태국	-	-	-	-	-	-	5	-	5
파라과이	-	-	-	-	-	4	-	-	4
카자흐스탄	-	-	-	-	-	7	-	-	7
키르기스스탄	-	-	-	-	-	6	-	-	6
우간다	2	-	-	-	-	-	-	-	2
캄보디아	1	1	1	-	-	-	-	-	3
합계	3	3	5	2	2	32	5	-	52

주) 퇴직자문관은 퇴직교원 또는 퇴직 교육행정가를 의미함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해외교원 파견실적 부진과 예산불용에 대해 국립국제교육원은 중등 교과 지원자 부

48) 1차 선발 시 미충원된 12명과 하반기 선발 4명

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초등, 중등(수학, 과학, ICT)분야의 결원 발생 시 타교과(한국어 교과 포함)로 배정하여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이 사업의 배경이 ODA 국가 기초교육 향상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우수교원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수학·과학 등 기초교과목이 아닌 한국어 교육에 편중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가 필요함.

파견국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도 52명의 교원 중 32명(61.5%)이 한국어 교원이며,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종학당, 외교부 소관 한글학교 등 이미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부처	주요 업무	해외 한국어교육기관
교육부	- 양국 교육부간 양해각서 등을 기반으로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제도권 내 현지 초중고교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 교육 ※ 한국어채택교 현황: 47개국, 2,154개교, 약 20.2만명('23 기준) ※ 제2외국어 채택: 23개국, 대입과목 채택: 10개국('23 기준) - 한국교육원에서 주로 재외동포 성인 대상 한국어 강좌 운영 ※ 한국교육원 현황: 19개국 43개원 약 2.1만명 수강('23 기준) -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 평가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 지원자 현황: 88개국 42.1만명('23 기준)	현지 초중고교, 한국교육원
문체부	- 주로 문화적 수요 기반으로 세종학당(대학 등 국외 현지 기관)을 통해 외국인 성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 세종학당 현황: 85개국, 248개소, 약 21.6만명('23 기준)	세종학당
외교부(재외동포청)	- 민간자생단체인 한글학교에서 한국인 정체성 교육 등을 위해 주로 재외동포 학생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 한글학교 현황: 111개국, 1,433교, 약 8.3만명('23 기준)	한글학교

자료: 교육부

아울러 모집정원에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파견교원에 대한 처우 문제도 원인일 수 있으므로,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교원파견의 경우 일부 공관[49]은 파견기간을 10개월로 설정함으로써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적정한 체재기간을 포함하여 선발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9)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10. 한국어능력시험개선 사업: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 지연

가. 개 요

‘한국어능력시험개선’ 사업은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토픽Ⅰ·Ⅱ IBT 시범시행 및 문제은행 도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8억 7,400만원 중 24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6%)되고, 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50]

[2023년도 한국어능력시험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어능력시험개선	2,596	2,596	278	-	2,874	2,431	339	104	1,946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추진하기로 계획된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능력시험개선 사업은 ① 한국어능력시험 IBT[51] 시스템 구축 고도화와 ② 토픽 IBT 시범시행 및 문항 공모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은 토픽 IBT 시스템(3단계) 결과분석 및 지능형 평가 플랫폼 구축에 2억 7,800만원, 토픽 IBT 시스템(4단계) 고도화 및 자동채점 개발에 8억 1,300만원이 소요되었음.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국어능력시험 전 영역 IBT 전환을 위한

50) 일반회계-한국어능력시험개선(4531-303)(국립국제교육원)

51) IBT(Internet-Based Test)란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을 개선하여 발전시킨 평가 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험의 접수 및 시행, 성적의 발송이 가능한 시험 방식임

ISP 수립 이후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되었음.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단계별 사업현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기간	'20.5.~'21.6.	'21.5.~'22.10.	'22.11.~'23.9.
소요예산	26억 6,400만원	24억 7,300만원	19억 9,800만원
개발업체	㈜넷플라이	㈜엔에스데블	㈜엔에스데블
개발내용	- 말하기 평가 시스템 응용기능 구축 (분석・설계・구현・시험) - 토픽 전영역 IBT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토픽 운영기반시스템 재개발 및 데이터 이관	- 스마트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 지능형 자동채점 기반 구축 - 출제·채점 인력 양성·관리 및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1단계 개발 응용시스템 기능 최적화	- 토픽 결과 분석시스템 구축 - 접수시스템 기능 고도화 (클라우드 구축) - 1・2단계 개발 응용시스템 기능 최적화

자료: 교육부

그런데 2020년 시작한 1단계 사업이 2021년까지 지연되며 2021년 추진한 2단계 사업은 2022년 10월에 완료, 2022년에 추진한 3단계 사업은 2023년 9월까지 수행되어 단계별 사업이 순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23년 추진하기로 계획된 4단계 사업은 2023년 12월에야 사업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3년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이와 같은 사업지연에 따라 최근 4년간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함.

[최근 4년간 한국어능력시험개선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2,974	-	2,974	2,146	72.2	619	209
2021	2,974	619	3,593	2,885	80.3	415	293
2022	3,367	415	3,782	3,333	88.1	278	171
2023	2,596	278	2,874	2,431	84.6	339	104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국립국제교육원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현황]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사업
내용</td><td>- 목적: 시험 운영관리 업무의 연계·통합 및 AI 기반 채점의 자동화 등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시험(IBT) 체제 고도화
- 내용
· 일반 시행 및 TOPIK Ⅰ·Ⅱ IBT(듣기, 읽기, 쓰기), TOPIK 말하기 평가 시스템 기능 개선
· TOPIK Ⅱ 쓰기 단답형 답안 자동채점 개발
· 1~3단계 개발 시스템 전반 기능 개선 및 현행화 / 통합 회원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선
· 감리 시행</td></tr>
<tr><td>공고</td><td>-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시스템 고도화 및 자동채점 개발 용역 (게시일: 2023.12.7.)</td></tr>
<tr><td>사업자
선정</td><td>-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개 업체 단일 응찰에 따라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추진</td></tr>
<tr><td>착수일</td><td>- 2023.12.11.</td></tr>
<tr><td>작업
상황</td><td>- 상세 요구사항 분석 및 아키텍쳐 설계(~2024.4.30.)
- 설계 감리 후속 조치 및 테스트 서버 구축 진행(~2024.5.31.)
- 응용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진행(~2024.8.31.)
<table>
<tr><th>대상시스템</th><th>상세 작업 진행 내용</th></tr>
<tr><td>토픽 홈페이지</td><td>메인 디자인 시안 반영, 홈페이지 퍼블리싱 진행</td></tr>
<tr><td>토픽 운영시스템</td><td>접수현황 및 결과, 결제관리 기능 개선, 개인 및 단체 접수 기능 개선</td></tr>
<tr><td>토픽 기초 자율 평가</td><td>토픽 홈페이지내 변경된 메뉴 정책과 디자인 반영한 페이지 개선</td></tr>
<tr><td>신규 접수시스템</td><td>접수현황 관리 기능, 결제/환불/취소 현황 관리 기능 개선</td></tr>
<tr><td>문항공모시스템</td><td>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개선, 문항 등록 탬플릿 추가 개발</td></tr>
<tr><td>시행시스템</td><td>응시자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보안 강화, 시행관리시스템 기능 개선</td></tr>
<tr><td>출제관리시스템</td><td>재택 및 보안 합숙 출제 관리 기능 개선, 문항관리 기능 개선</td></tr>
<tr><td>재택채점 관리시스템</td><td>채점관리 및 채점 기능 개선, 척도점수 변환체계 함수 검증</td></tr>
<tr><td>문제은행시스템</td><td>문항 및 검사지 관리, 타시스템 연계 기능 개선</td></tr>
<tr><td>자동 채점 POC</td><td>토픽 PBT/IBT 쓰기 자동채점 기능 개발</td></tr>
<tr><td>전문인력양성 시스템</td><td>인력풀 위촉장 관리 기능 개선, 온라인 연수 및 평가 기능 개선</td></tr>
<tr><td>결과분석시스템</td><td>문항 분석 검사지 분석, 통계 조회 기능 고도화</td></tr>
</table></td></tr>
<tr><td>완료예정</td><td>- 2024.10.6.</td></tr>
</table>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둘째,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서 일반용역비(210-14)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편성이 잘못된 경우 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이나 영상자료 제작 등은 일반용역비를 통해 집행하고, 전산개발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일반연구비로 편성하고 편성이 잘못된 경우 적절하게 전용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예산과목 용도 구분]

일반용역비(210-14)	일반연구비(260-0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내용 재구성

11.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고교생 현장실습 지원금 집행부진

가. 개 요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수당(월 60만원,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05억 2,8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52)]

[2023년도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7,500	127,500	-	△3,472	124,028	124,028	-	-	121,480
	현장실습 지원금	24,000	24,000	-	△3,472	20,528	20,528	-	-	18,000

나. 검토의견

현장실습 지원금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직업계고 학생수와 현장실습 참여학생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지원을 위해 34억 7,200만원을 인성교육진흥사업에 이용(移用)(감)한 예산현액 205억 2,800만원을 보조사업자인 한국장학재단에 교부하였음.

그런데 이용(移用)을 통한 예산감축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205억 2,800만원 중 실집행이 161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52) 일반회계-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현장실습 지원금 계획대비 실적]

(단위: 억원, 명, %)

구 분	2023년 계획	2023년 실적	2024년 계획
지원금액	205	161	180
지원인원	20,000	13,983	17,000

주) 2024.5.말 최종 지원 기준
자료: 한국장학재단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진학률의 증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취업여건 악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 위축[53]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음.

2023년에도 당초 20,000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13,983명('24.5. 기준) 지원에 그쳐 최근 3년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음.

[최근 6년간 현장실습 참여학생수 추이]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장실습 참여학생수	21,948	26,124	23,938	25,636	19,027	13,888

자료: 교육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을 2023년 예산(240억원)보다 60억원을 줄인 180억원만을 편성하였으나, 직업계고 학생수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실적 저조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학생수 추이]

(단위: 명)

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자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2020	89,998	5,666	79,503	4,829
2021	78,994	5,735	69,663	3,596
2022	76,760	5,791	67,480	3,489
2023	71,591	5,929	62,853	2,809
2024	64,159	5,662	55,503	2,994

자료: 교육부

53)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수와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추이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54]

54) <현장실습 지원금 1일당 단가는 최근 5년간 국고 3만원, 지방비 3만원으로 동일>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고	3	3	3	3	3
지방비(교육청 자체 재원)	-	-	3	3	3

자료: 교육부

12.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계획대비 교육인원 실적 저조

가. 개 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 재학생(고3), 미취업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수요 발굴 및 채용 연계를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2억 6,5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55]

[2023년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4,265	4,265	-	-	4,265	4,265	-	-	4,265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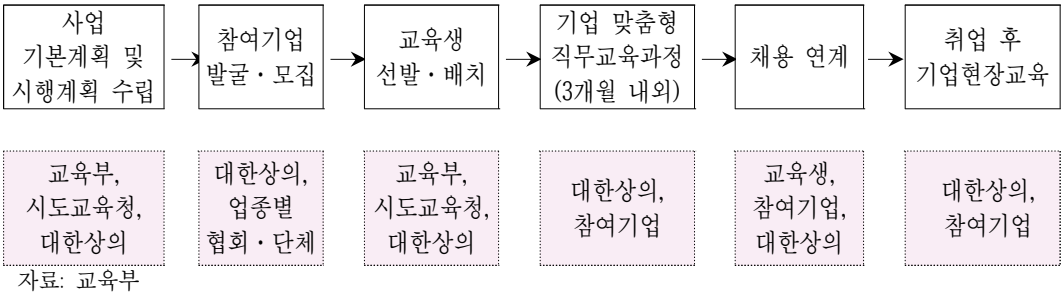
당초 계획 대비 교육인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사업수요와 지방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격인원을 늘려서 합격자 중 상당수가 입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3개월 내외의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거점 공동훈련센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채용연계형 사전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이후 취업컨설팅과 취업 후 기업현장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사업추진 절차는 계획수립, 참여기업 발굴·모집, 교육생 선발, 직무교육, 채용 등의 순서로 이루어짐.

55) 일반회계-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4606-306)(평생직업교육정책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사업 절차]



자료: 교육부

사업예산은 국고(42억 6,500만원)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한 85억 3,000만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간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였음.

그런데 「2023년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시행계획」에는 교육인원 1,350명, 채용연계 70%, 참여기업 1,000개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계획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2022년 사업목표(1,050명) 대비 300명을 확대한 1,350명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1,036명만이 입교하여 직무교육을 받았고, 그중 966명이 수료(수료율 93%)하였으며, 605명이 취업(취업률 63%)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및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교육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모집	접수	합격	입교	수료 (수료율)	취업 (취업률)	대학진학 (진학률)	군입대 등	중도탈락
2022	1,050	1,480	1,050	893	859 (96.1%)	526 (61%)	135 (15.7%)	미파악	34 (3.9%)
2023	1,350	2,361	1,860	1,036	966 (93%)	605 주 (63%)	175 (18.1%)	48 (5%)	70 (7%)

주) 교육수료 후 미취업자(취업희망자) 대상으로 1년간 후속 취업지원 中
자료: 교육부

특히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목표인원 1,350명보다 510명 많은 1,860명을 합격시켰으나, 실제 입교는 합격인원의 55.7%에 불과한 1,036명만 하게 되었음.[56]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인원과 입교 희망인원 간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인원에 대한 적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56) 교육부는 합격자수가 입교자수보다 많은 것에 대해, 일부 지원자가 2개 과정에 복수 합격하였고,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모집인원 대비 1.3배수 가량을 합격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1,036명은 최종 입교 희망자라고 설명함.

[지자체별 모집인원 대비 입교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예산 인원	접수인원	합격인원	입교인원	비고
서울	120	323	247	120	
부산	80	175	130	70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대구	40	135	110	40	
인천	80	210	177	105	모집인원 대비 입교초과
광주	100	71	71	64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대전	20	30	20	11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울산	54	81	49	39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세종	10	7	7	4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경기	300	675	537	299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강원	30	83	73	29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충북	30	113	84	35	모집인원 대비 입교초과
충남	60	142	112	70	모집인원 대비 입교초과
전북	20	71	52	20	
전남	20	27	25	20	
경북	40	99	70	38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경남	40	42	35	22	모집인원 대비 입교미달
제주	50	77	61	50	
합계	1,094	2,361	1,860	1,036	

주) 모집인원 대비 입교 초과인 인천, 충북, 충남은 추경 편성
자료: 교육부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교육인원이 저조하다보니 대한상공회의소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실집행률 7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보조사업자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4,265	4,265	4,265	4,265	-	4,265	3,182	-	1,083	74.6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고와 지방비 1:1 매칭을 위한 본예산을

편성(1,094명분)하였으나 목표 물량(1,350명분)에는 부족하였다는 점, 대부분의 교육청은 2023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예산을 증액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면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워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 중 다수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2023년 사업목표를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되나, 지방비 부족 등으로 인해 합격자 대비 입교자를 줄이며 사업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수요와 지방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격인원을 늘려서 합격자 중 상당수가 입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3.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등

가. 개 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교육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 교육과정 실현과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211억 5,800만원 중 3,837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1%)되고, 37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57)]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421,158	421,158	-	-	421,158	383,741	-	37,417	358,484

동 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보통교부금) 70%의 비율로 추진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실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불필요하게 자금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월 및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2023년 예산 4,211억 5,800만원 중 91.1%인 3,837억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교육자치협력안전국)

4,100만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었는데, 2023년말 기준 실집행액은 2,212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52.5%,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도 57.7%에 불과하여 국회 시정요구[58]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집행실적이 반복되고 있음.[59]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국비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 (C/A)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 (C/B)
서울교육청	70,331	47,419	1,177	45,242	23,912	1.7	2.5
부산교육청	33,905	32,648	21,537	11,111	1,257	63.5	66.0
대구교육청	19,426	18,819	13,846	4,973	607	71.3	73.6
인천교육청	12,458	11,222	7,404	3,819	1,235	59.4	66.0
광주교육청	6,206	5,653	2,651	3,001	554	42.7	46.9
대전교육청	24,051	23,709	15,674	8,035	342	65.2	66.1
울산교육청	18,054	17,685	11,400	6,285	369	63.1	64.5
세종교육청	656	656	-	656	-	-	-
경기교육청	53,936	53,908	27,723	26,185	28	51.4	51.4
강원교육청	16,549	16,000	10,617	5,383	549	64.2	66.4
충북교육청	14,481	12,944	8,501	4,443	1,537	58.7	65.7
충남교육청	26,892	23,638	14,125	9,513	3,254	52.5	59.8
전북교육청	20,987	19,833	8,610	11,223	1,154	41.0	43.4
전남교육청	32,539	31,773	26,376	5,397	766	81.1	83.0
경북교육청	35,166	33,532	30,946	2,586	1,634	88.0	92.3
경남교육청	31,331	30,132	18,754	11,378	1,199	59.9	62.2
제주교육청	4,190	4,170	1,939	2,231	20	46.3	46.5
계	421,158	383,741	221,280	161,461	38,417	52.5	57.7

자료: 교육부

58)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사업시행 첫 해인 2021년에 대상학교 선정, 사전 기획, 사용자 참여를 통한 설계 추진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지연되었는 바 향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2022년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59) 2024년 3월 기준으로도 61.1%에 불과함.

이 사업은 국고(30%)와 지방비(70%)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집행률에 비해 지방비 집행률은 더 낮은 경우가 많아 실제 총사업비의 실집행률은 국비 실집행률 52.5%보다 더 낮은 36.8%로 나타남.

예를 들어, 부산교육청의 국비 실집행률은 63.5%이지만 지방비 실집행률은 31.4%이고, 강원교육청도 국비 집행률(64.2%)보다 지방비 실집행률(16.7%)이 더 낮으며, 전남교육청은 국비 실집행률은 81.1%이나 지방비 실집행률은 6.2%로 국비와 지방비 간 실집행률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국비/지방비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국비			지방비			전체
	예산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예산액 (C)	집행액 (D)	실집행률 (D/C)	실집행률 (B+D/A+C)
서울교육청	70,331	1,177	1.7	166,772	8,955	5.4	4.3
부산교육청	33,905	21,537	63.5	179,580	56,467	31.4	36.5
대구교육청	19,426	13,846	71.3	60,642	36,998	61.0	63.5
인천교육청	12,458	7,404	59.4	27,350	12,688	46.4	50.5
광주교육청	6,206	2,651	42.7	41,139	19,970	48.5	47.8
대전교육청	24,051	15,674	65.2	75,847	52,670	69.4	68.4
울산교육청	18,054	11,400	63.1	60,548	37,826	62.5	62.6
세종교육청	656	-	-	1,693	1,635	96.6	69.6
경기교육청	53,936	27,723	51.4	123,113	34,596	28.1	35.2
강원교육청	16,549	10,617	64.2	50,000	8,364	16.7	28.5
충북교육청	14,481	8,501	58.7	42,552	24,642	57.9	58.1
충남교육청	26,892	14,125	52.5	125,634	63,381	50.4	50.8
전북교육청	20,987	8,610	41.0	32,254	18,121	56.2	50.2
전남교육청	32,539	26,376	81.1	133,521	8,279	6.2	20.9
경북교육청	35,166	30,946	88.0	218,796	37,572	17.2	27.0
경남교육청	31,331	18,754	59.9	70,308	31,914	45.4	49.9
제주교육청	4,190	1,939	46.3	14,235	2,875	20.2	26.1
계	421,158	221,280	52.5	1,423,984	456,953	32.1	36.8

주) 2023년말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국비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전체 평균(52.5%)보다 낮은 지자체로는 서울·광주·경기·전북 및 제주교육청 등이 있으며, 교육부는 각종 심의 지연과 의견수렴, 사업 반대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실집행 저조사유]

(단위: %)

사업시행주체	2023년 실집행률	실집행 저조 사유
서울교육청	1.7	사업 반대 및 각종 심의 지연
광주교육청	42.7	각종 심의 지연 발생
세종교육청	-	학사일정 지연
경기교육청	51.4	각종 심의 및 사업 관계자 의견수렴 등으로 인한 지연
전북교육청	41.0	규모 재검토 및 각종 심의 등 지연
제주교육청	46.3	각종 심의 지연

주 1)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 52.5% 미만 지자체
2) 2023년말 기준
자료: 교육부

향후 교육부는 지자체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지자체에서 자금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황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임.

둘째, 지자체별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재산을 공시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60]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6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6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당초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1년에 선정된 사업은 2023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사업을 통해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지속된 사업지연으로 인해 교육부는 연부율을 조정하여 사업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2021년 선정된 사업 중 일부는 2024년에, 일부는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임.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선정연도별 연부율 현황]

(단위: %)

구분	2021년 대상(4년차)		2022년 대상(3년차)		2023년 대상(2년차)	
	사업 기간	연부율(%) '21:'22:'23:'24:'25	사업 기간	연부율(%) '22:'23:'24:'25:'26	사업 기간	연부율(%) '23:'24:'25:'26:'27
연부율	5년 (15개 교육청)	10:30:20:20:20	4년 (14개 교육청)	10:20:20:30:20	5년 (17개 교육청)	10:5:25:30:30
	3년 (2개* 교육청) *대전,울산	완료 10:30:60	3년 (3개* 교육청) *대전,세종, 울산	10:30:60		

주) 3개 교육청(대전, 세종, 울산)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기존대로 3년 추진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자체별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중요재산취득보고·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고 공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14.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종료): 대학인권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관리 필요

가. 개 요

‘대학 인권센터 시범대학 운영’ 사업은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할 시범대학을 선정·지원하여 우수 운영사례 보급·확산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8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음.[62)]

[2023년도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학 인권센터 시범대학 운영	800	800	-	-	800	800	-	-	-

나. 검토의견

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운영 사업의 성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학인권센터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

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운영 사업은 2022~2023년 시범사업으로, 2023년은 카톨릭관동대학교 등 10개 대학에 8,000만원씩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였음.

6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2232-316)(인재정책기획관)

[2023년 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운영 보조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교육부			보조사업자(각 대학)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가톨릭관동대학교	80	80	80	80	-	80	80.0	-	-	100.0
경북대학교	80	80	80	80	-	80	66.1	-	-	82.6
대구한의대학교	80	80	80	80	-	80	73.9	-	-	92.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0	80	80	80	-	80	74.2	-	-	92.7
전남대학교	80	80	80	80	-	80	79.3	-	-	99.2
전주대학교	80	80	80	80	-	80	61.5	-	-	76.9
중앙대학교	80	80	80	80	-	80	79.2	-	-	99.0
창원대학교	80	80	80	80	-	80	79.6	-	-	99.5
충북대학교	80	80	80	80	-	80	67.9	-	-	84.9
한국외국어대학교	80	80	80	80	-	80	64.1	-	-	80.2

주) 2024.2.말 기준
자료: 교육부

2022년 신규사업 추진 당시는 1유형(인권센터 운영 선도) 2개교에 각 7,000만원, 2유형(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4개교에 각 7,750만원, 3유형(인권네트워크 구축 활동) 1개교에 5,0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2023년에는 모든 대학교에 동일하게 8,000만원씩 지원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전체 392개 대학 중 33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317개 대학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63]

첫째,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력 배치 및 적정인력 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1호[64]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6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대학인권센터 전담 인력 배치하고 재원 지원 방안 마련해야」, 2024.3.18.

6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센터를 직원 1명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22개교로 나타났으며, 3인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가 214개교로 약 70%에 해당함.

[2023년도 대학인권센터 인력 현황]

(단위: 명, 개교, %)

인원수	1	2	3	4	5	6	7	8	9	10	13	합계	평균
대학수	22	92	100	54	32	6	6	1	1	2	1	317	3.2
(비율)	(6.9)	(29.0)	(31.5)	(17.0)	(10.1)	(1.9)	(1.9)	(0.3)	(0.3)	(0.6)	(0.3)	(1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의견표명의 건」, 2024.1.

또한, 대학 중 전직원이 인권센터 업무만 전담하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317개 중 12개교로 3.8%에 불과하고, 전담직 비율이 1/2 미만인 학교가 222개교(70.0%)이며, 전담직이 없는 학교도 181개교(57.1%)에 달하고 있음.

[2023년도 대학인권센터 전담인력 현황]

(단위: 개교, %)

구분	전담직 비율								합계
	1/2 미만				1/2 이상				
	전담직 없음						전직원 전담직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현황	181	57.1	222	70.0	95	30.0	12	3.8	31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의견표명의 건」, 2024.1. 재구성

둘째,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센터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셋째,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22년 3월부터 대학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 11월 기준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이 35개교로 미설치비율이 8.9%에 이르고 있음.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교, %)

대상 대학	설치	미설치	설치비율
392	357	35	91.1

주) 2023.11. 기준
자료: 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운영 사업은 2023년 종료되었으나, 시범사업의 성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학인권센터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사업 취소 부적정

가. 개 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은 AI·디지털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성기관의 자율적 혁신 및 예비교원의 역량 수준 도약을 위해 대학원 수준의 양성과정 개편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05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65]

[2023년도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13,400	13,400	-	-	13,400	2,900	-	10,500	7,900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10,500	10,500	-	-	10,500	-	-	10,500	4,900

나. 검토의견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하고, 2024년 6월에 마련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고도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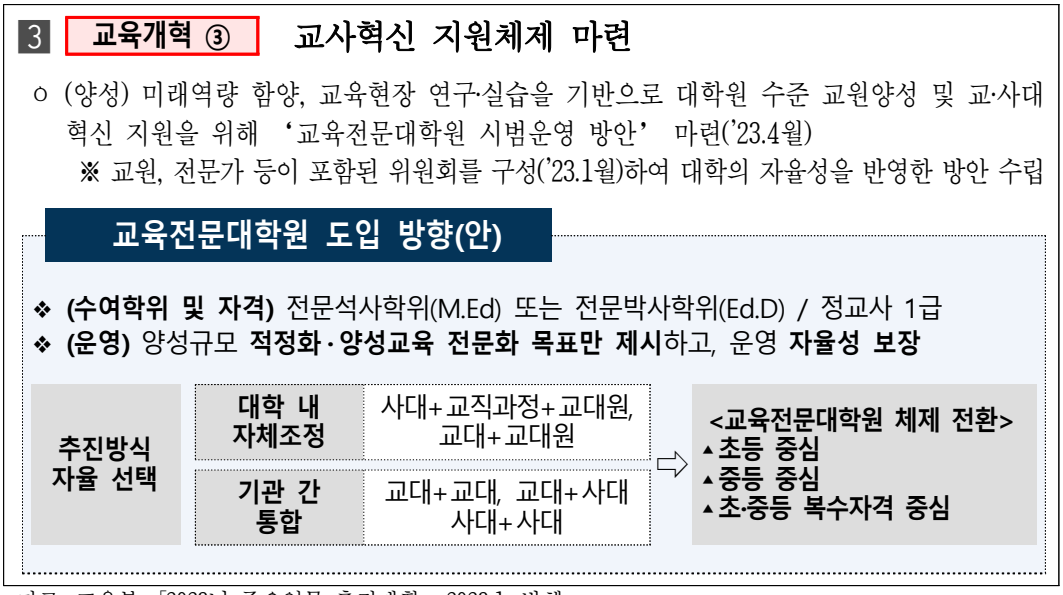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은 AI 디지털 대전환,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예비교원을 양성하고자 교육전문대학원 2개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려는 사업이었음.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023년 1월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6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2232-321)(교원학부모지원관)

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였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2023년 교육부 업무추진 계획]



자료: 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1. 발췌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협의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교대생 등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음.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사업 유예요청('23.4.)에 따라 사업은 잠정 보류되었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였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법 교육 강화, 다역량 교원 양성,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계획(시안)(2023.9.)」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2024.6.)」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한 합의 과정이 중요함에도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향후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하고, 2024년 6월에 마련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고도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16.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사업성과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과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572억 4,7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66)]

[2023년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557,247	557,247	-	-	557,247	557,247	-	-	443,765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17,100	17,100	-	-	17,100	17,100	-	-	25,800
대학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 (BRIDGE3.0)	16,800	16,800	-	-	16,800	16,800	-	-	21,000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00	15,000	-	-	15,000	15,000	-	-	63,000

내역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청년(고졸자)의 진학 및 조기취업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고, 중소(견)기업에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우수인재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71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BRIDGE3.0)’** 사업은 대학 내 창의적 자산(기술, 특허, 아이디어 등)의 ‘탐색-실사-고도화-실용화’ 전 과정을 지원하여 대학 기술사업화(기술이전·기술창업)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8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6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인재정책실)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 등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0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최근 3년간 계약학과 등록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등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기업은 학생과 채용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대학(원) 11개교에 171억원이 지원되었고, 전문대학 8개교에 96억원이 지원되었음.[67]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 선정 현황]

구분	선정연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일반대 (11)	2018년	한국공학대, 한양에리카	-	목포대, 전남대	경일대	-
	2020년	가천대	순천향대			동의대
	2023년		한밭대(대학원)	-	경일대(대학원)	부산대(대학원)
전문대 (8)	2021년	경기과학대, 명지전문대	-	동강대	구미대	동의과학대
	2022년		백석문화대			부산과기대
	2023년		혜전대			

주) 2018년 선정 대학의 경우, 2024년 2월에 사업 종료되어 사후 관리기간 도입
자료: 교육부

최근 5년간 계약학과의 취업률은 일반대는 95% 내외, 전문대는 9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학인원 중 중도탈락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취업생이라고 보면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이 높아지거나 중도탈락 인원이 낮아지면 사업성과가 제고된다고 볼 수 있음.

67) 전문대는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4603-301)'이라는 별도 세부사업이 있음.

[최근 5년간 계약학과 대학, 전문대학 취업실적]

(단위: 명, %)

사업명	연도	입학 인원 (A)	1학년 중도탈락인원 (B)	취업생 (C=A-B)	취업률 (C/A)	비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일반대)	20년	427	19	408	95.6	19학번
	21년	357	13	344	96.4	20학번
	22년	545	30	515	94.5	21학번
	23년	750	32	718	95.7	22학번
	24년	749	41	708	94.5	23학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전문대)	20년	-	-	-	-	19학번
	21년	-	-	-	-	20학번
	22년	-	-	-	-	21학번
	23년	241	21	220	91.3	22학번
	24년	471	44	427	90.7	23학번

주) 2018년 선정 대학의 경우, 2024년 2월에 사업 종료되어 사후 관리기간 도입
자료: 교육부

그런데 일반대학 계약학과의 경우 2022학년도에 등록률 73.3%로 최근 6년간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2023년 69.7%, 2024년 67.2%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취업성과가 제고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6년간 일반대학 계약학과 등록률 현황]

(단위: 명, %)

학교명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경일대	71	83.5	51	58.6	57	65.5	64	71.1	67	67.0	86	71.7
목포대	95	73.1	77	59.2	64	49.2	81	54.0	61	63.0	38	31.7
전남대	61	93.8	54	73.0	51	60.7	53	63.1	42	50.0	41	48.8
한국공학대	73	60.8	66	55.0	43	35.8	84	70.0	96	80.0	100	83.3
한양대ERICA	127	84.7	109	72.7	89	59.3	130	87.3	120	80.0	111	74.0
가천대	-	-	-	-	159	99.4	199	99.5	235	97.9	214	89.2

(단위: 명, %)

학교명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동의대	-	-	-	-	26	26.0	48	48.0	63	63.0	69	69.0
순천향대	-	-	-	-	56	43.1	91	70.0	65	50.0	56	43.1
합 계	427	77.6	357	63.6	545	56.7	750	73.3	749	69.7	715	67.2

자료: 교육부

전문대학 계약학과의 경우 등록률이 2022학년도 50.4%에서 2023학년도 66.0%로 증가했다가 2024학년도 65.7%로 소폭 하락하였음. 다만, 전문대는 1학년 중도탈락비율(약 10%)이 일반대의 중도탈락비율(약 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록률 현황]

(단위: 명, %)

학교명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등록	등록률
경기과학기술대	23	21.9	44	41.9	73	69.5
구미대	46	51.1	48	53.3	66	73.3
동강대	7	10.0	54	77.1	31	44.3
동의과학대	48	53.3	69	76.7	68	75.6
명지전문대	117	93.6	149	90.9	150	78.9
백석문화대	-		62	68.9	74	77.9
부산과학기술대	-		45	42.9	42	40.0
혜전대	-		-	-	45	50.0
합 계	241	50.2	471	66.0	549	65.7

자료: 교육부

참고로, 대학원 계약학과의 경우 2023년 3개교를 선정하였으나 2024학년도부터 모집인원을 받고 있으며, 전반기 각각 20명 모집인원에 경일대 20명, 부산대 11명, 한밭대 14명이 등록하였음.

둘째,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1,140만원~8,390만원(평균 2,590만원)에 불과하므로, 건당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2015~2017년까지 추진된 제1기 BRIDGE[68] 사업, 2018~2022년까지 추진된 제2기 BRIDGE+ 사업을 개선·고도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임.

제2기 BRIDGE+ 사업은 총 24개교에 지원하여 기술이전 8,650건, 기술료 수입 2,818억 5,600만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제2기 BRIDGE+ 사업 성과]

(단위: 건, 백만원)

연번	대학명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1	강원대	89	99	91	110	114	1,185	1,320	1,489	1,917	2,473
2	건국대	-	-	40	48	40	-	-	1,319	1,070	1,010
3	경북대	-	-	148	185	127	-	-	2,934	3,320	3,746
4	경상국립대	58	60	71	76	60	1,265	941	1,113	1,489	971
5	경희대	101	73	86	87	98	3,665	4,268	4,782	4,672	5,157
6	고려대	103	134	109	133	120	3,176	5,419	4,241	4,649	4,112
7	국민대	-	-	96	104	93	-	-	1,458	2,065	2,076
8	단국대	-	-	99	131	136	-	-	1,691	2,221	2,786
9	동국대	-	-	80	76	33	-	-	897	1,143	651
10	부산대	82	73	78	90	84	2,277	2,722	2,317	2,451	1,861
11	서강대	72	63	39	47	47	1,101	1,311	1,135	1,064	1,017
12	성균관대	113	99	102	76	77	5,016	4,473	3,186	3,941	2,707
13	세종대	38	40	52	57	53	1,660	2,180	4,047	3,389	5,150
14	숙명여대	9	15	26	27	26	788	525	803	783	1,113
15	숭실대	24	88	84	62	80	791	651	1,517	1,466	1,477
16	아주대	59	60	64	71	43	2,137	2,631	3,349	5,209	2,163
17	연세대	76	109	81	110	96	3,432	4,042	4,397	8,908	4,665
18	전남대	88	90	79	96	111	1,466	2,015	1,894	2,321	2,607
19	전북대	71	102	120	133	82	1,674	1,449	1,548	1,743	1,677
20	중앙대	71	43	50	55	58	2,005	1,743	1,036	1,334	1,441
21	충남대	118	163	-	-	-	1,761	2,025	-	-	-

68)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 대학 내 창의적 자산(기술, 특허, 아이디어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대학 기술사업화(기술이전·기술창업)를 지원

(단위: 건, 백만원)

연번	대학명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2	충북대	-	-	163	222	195	-	-	1,622	2,381	2,786
23	포항공과대	25	36	38	34	37	2,097	2,481	2,453	3,885	3,583
24	한국공학대	-	-	98	73	65	-	-	609	664	567
25	한양대	58	45	33	47	51	2,291	3,039	3,155	2,065	27,896
계		1,255	1,392	1,927	2,150	1,926	37,787	43,235	52,992	64,150	83,692

주) 건국대, 경북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충북대, 한국공학대 2020년 신규선정, 충남대 2020년 단계평가 탈락
자료: 교육부

다만, 제2기 BRIDGE+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건수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 수입이 평균 3,000만원 내외로 소규모 기술이전에 치중되어 있어, 중대형 기술이전의 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69)]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대학명	건당 기술이전 수입료				
		2018	2019	2020	2021	2022
1	강원대	13.3	13.3	16.4	17.4	21.7
2	건국대	-	-	33.0	22.3	25.3
3	경북대	-	-	19.8	17.9	29.5
4	경상국립대	21.8	15.7	15.7	19.6	16.2
5	경희대	36.3	58.5	55.6	53.7	52.6
6	고려대	30.8	40.4	38.9	35.0	34.3
7	국민대	-	-	15.2	19.9	22.3
8	단국대	-	-	17.1	17.0	20.5
9	동국대	-	-	11.2	15.0	19.7
10	부산대	27.8	37.3	29.7	27.2	22.2
11	서강대	15.3	20.8	29.1	22.6	21.6
12	성균관대	44.4	45.2	31.2	51.9	35.2
13	세종대	43.7	54.5	77.8	59.5	97.2
14	숙명여대	87.6	35.0	30.9	29.0	42.8
15	숭실대	33.0	7.4	18.1	23.6	18.5
16	아주대	36.2	43.9	52.3	73.4	50.3

69) 2022년의 경우 한양대가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 양극재 특허 40개를 LG화학에 대형이전하며 건당 기술료 수입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음.

(단위: 백만원)

연번	대학명	건당 기술이전 수입료				
		2018	2019	2020	2021	2022
17	연세대	45.2	37.1	54.3	81.0	48.6
18	전남대	16.7	22.4	24.0	24.2	23.5
19	전북대	23.6	14.2	12.9	13.1	20.5
20	중앙대	28.2	40.5	20.7	24.3	24.8
21	충남대	14.9	12.4	-	-	-
22	충북대	-	-	10.0	10.7	14.3
23	포항공과대	83.9	68.9	64.6	114.3	96.8
24	한국공학대	-	-	6.2	9.1	8.7
25	한양대	39.5	67.5	95.6	43.9	547.0
연평균		30.1	31.1	27.5	29.8	43.5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중대형 기술이전 사업화의 미흡 외에도 해외기술 이전의 저조, 지역연계 부족, 전담 인력 인센티브 부족, 기여자 보상 부족 등이 제2기 BRIDGE+ 사업의 개선점으로 나타났는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BRIDGE 3.0 사업을 통해 개선하며 사업을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임.

[BRIDGE 3.0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통한 대학 자산 실용화 확대,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통한 중·대형 기술의 이전(**건당 1억 원 이상**) 및 사업화 촉진
기간	2023. 3월 ~ 2026. 2월(2+1년) ※ 2년 후 평가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지역거점형은 2025년 RISE 통합 후 지자체에서 결정
예산	168억원(사업비+사업관리비)
규모	기술거점형(16교), 지역거점형(8교), 총 24교 내외 선정 ※ (기술거점형) 교당 평균 6.6억 원, (지역거점형) 교당 평균 7.7억 원

자료: 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2023. 재구성

2023년은 BRIDGE 3.0 사업의 원년으로 24개의 참여대학 선정이 2023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기술거점형 16개, 지역거점형 8개 대학이 선정되었음.[70]

그런데, 2023년 BRIDGE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기술이전 건수 2,011건, 기술이전 수입료 520억 3,900만원으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70) 지역거점형 대학은 2025년부터 RISE 사업으로 편입될 예정임.

1,140만원~8,390만원(평균 2,590만원)에 불과하므로, 건당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BRIDGE 3.0 참여대학 선정 결과 및 지원액, 기술이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연번	학교명	2023년 지원액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
기술거점형	1	가천대	610	45	965	21.4
	2	광운대	610	33	1,302	39.5
	3	국민대	610	95	2,120	22.3
	4	단국대	610	132	2,285	17.3
	5	서강대	610	56	1,089	19.4
	6	서울과학기술대	610	34	608	17.9
	7	서울대	610	65	4,896	75.3
	8	성균관대	610	74	3,803	51.4
	9	세종대	610	46	3,859	83.9
	10	숙명여대	610	22	515	23.4
	11	숭실대	610	46	653	14.2
	12	아주대	610	56	2,833	50.6
	13	연세대	610	77	4,040	52.5
	14	이화여대	610	45	1,583	35.2
	15	전북대	610	84	1,551	18.5
	16	포항공대	610	28	1,397	49.9
지역거점형	1	부산대	730	122	2,555	20.9
	2	경북대	730	146	3,242	22.2
	3	전남대	730	127	2,390	18.8
	4	충남대	730	94	1,207	12.8
	5	한양대ERICA	730	157	1,784	11.4
	6	강원대	730	141	2,821	20.0
	7	충북대	730	241	3,258	13.5
	8	인제대	730	45	1,283	28.5
합계			15,600	2,011	52,039	25.9

자료: 교육부

셋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성과가 미흡하므로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2023년 신규로 반도체 분야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한 사업임.[71]

동 사업의 교육과정이 효과적이고 적정한지 여부는 참여 학생의 수료율과 취업률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2023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실적]

(단위: 명, %)

구분		참여 인원 (A)	수료 인원 (B)	배출 인원 (C)	취업 인원 (D)	수료율 (B/A)	취업률 (D/C)
대학	가천대	182	180	14	1	98.9	7.1
	강릉원주대	135	135	49	11	100.0	22.4
	단국대	152	103	71	10	67.8	14.1
	한국공학대	127	67	49	8	52.8	16.3
	한국해양대	100	30	23	1	30.0	4.3
	소계	696	515	206	31	74.0	15.0
전문대학	경기과학기술대	172	149	103	23	86.6	22.3
	동양미래대	173	94	60	16	54.3	26.7
	두원공대	161	161	143	33	100.0	23.1
	오산대	125	125	61	9	100.0	14.8
	울산과학대	155	155	43	7	100.0	16.3
	소계	786	684	410	88	87.0	21.5
총계		1,482	1,199	616	119	80.9	19.3

주 1) 수료인원은 졸업예정자와 재학생을 포함, 배출인원은 졸업생을 의미
2) 취업 인원은 2024.3.22.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먼저, 참여인원에 비해 수료인원이 미진(70% 미만)한 대학들이 있으므로(단국대, 한국공학대, 한국해양대, 동양미래대) 2차년도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음, 배출인원 대비 취업인원인 취업률의 경우 대학은 평균 15.0%, 전문대학은 21.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인 8.2개월[72]까지 취업인원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설명임.[73]

71) 2024년부터는 반도체 외에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으로 확대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이 첨단분야에 대응한 신속한 인재공급, 기업과 연계한 현장성 높은 집중 교육임을 감안하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8.2개월까지 기다려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인재양성 부트캠프'라는 특수 목적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이 취업과 인재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기업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음.

72)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73) 교육부는 진학 및 병역을 제외한 2024년 2분기 기준 취업률이 42.4%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17.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 예산 집행구조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은 한-미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대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에게 미국 어학연수(2~4개월), 인턴십(3~12개월), 여행(1개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7억 1,700만원 중 36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74)]

[2023년도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325	11,325	-	-	11,325	11,294	-	31	13,331
한・미대학생연수 (WEST)	3,717	3,717	-	-	3,717	3,686	-	31	6,302

동 사업은 단기과정(6개월), 중기과정(12개월), 장기과정(18개월)으로 구분됨.

사업예산은 국립국제교육원의 직접사업비(6억 3,700만원)와 한국장학재단에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금(30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대상자 선발이 지연되는 경우 보조금 실집행이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로 이연되며 연례적인 이월 및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소한 2회계연도는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미대학생연수(WEST[75)]) 사업의 2021년 실집행률은 35.6%, 2022년은 54.2%, 2023년은 40.8%에 불과해 실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7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2256-303)(국립국제교육원)

75) 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 민간보조금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연도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2021	3,594	3,594	3,594	-	3,594	1,280	2,314	-	35.6
2022	3,300	3,300	3,300	-	3,300	1,788	1,512	-	54.2
2023	3,080	3,080	3,080	-	3,080	1,257	1,823	-	40.8

자료: 교육부

특히, 장기과정은 사업기간이 3회계연도에 걸쳐 있음에도 예산은 1회계연도에 모두 편성됨에 따라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023년 장기과정의 경우 2025년 초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임.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일정 예시]

일정		추진내용			
		단기(하반기)	중기(상반기)	중기(하반기)	장기(상반기)
'23	1분기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참가자 모집공고			
	2분기	-	참가자 선발	-	참가자 선발
	3분기	참가자 선발	어학연수	참가자 선발	어학연수
	4분기	참가자 선발	어학연수/인턴십	참가자 선발	어학연수
'24	1분기	어학연수/인턴십	인턴십	어학연수/인턴십	인턴십
	2분기	인턴십	인턴십	인턴십	인턴십
	3분기	-	인턴십	인턴십	인턴십
	4분기	-	-	인턴십	인턴십
'25	1분기	-	-	-	인턴십

자료: 교육부

특히 이 사업은 2023년(2022년 대상)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집행률 부진으로 인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과관리 개선을 요구받았음.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코로나 19로 제한됐던 대면프로그램 전면 재개, 장기 유형(18개월) 재운영, 지원단가 상향, 신규참가대학 가점 부여, 타교생 취약계층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계획하였음.[76]

76) 교육부, 「2022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3.5.

다만,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과 집행부진의 예산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최소한 2회계연도는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연수 참가자가 여학생(80.1%), 수도권(70.9%), 4년제 대학(98.9%)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보다 균형있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층 수혜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참가인원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별로는 4년제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보임.[77]

[최근 5년간 유형별 선발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성별		지역별		대학별		전공별		선발 인원
	남자	여자	수도권	비수도권	4년제	전문대	일반	이공계	
2019	79	252	225	106	329	2	245	86	331
	23.9	76.1	68.0	32.0	99.4	0.6	74.0	26.0	100.0
2020	미선발								
2021	40	156	137	59	194	2	156	40	196
	20.4	79.6	69.9	30.1	99.0	1.0	79.6	20.4	100.0
2022	35	176	155	56	207	4	170	41	211
	16.6	83.4	73.4	26.6	98.1	1.9	70.6	19.4	100.0
2023	37	149	132	54	184	2	138	48	186
	19.9	80.1	70.9	29.1	98.9	1.1	74.2	25.8	100.0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2023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결과 보고서」, 2024.1.

또한,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3분위까지의 저소득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8~10분위가 5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수프로그램 신청자들의 특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학생들이 보다 균형있게

77) 참가자의 편중에 대해 교육부는 연수프로그램 신청자의 구성, 영어성적 요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수도권·전문대 및 이공계 대학생에게는 어학성적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심사 합격의 우대혜택을 부여 중이라고 설명함.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수혜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선발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저소득층					일반				선발 인원
	기초생활 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소계	4~5 분위	6~7 분위	8~10 분위	소계	
2019	31	46	21	46	144	34	25	128	187	331
	9.4	13.9	6.3	13.9	43.5	10.3	7.5	38.7	56.5	100.0
2020	미선발									
2021	6	24	8	10	48	8	20	120	148	196
	3.1	12.2	4.1	5.1	24.5	4.1	10.2	61.2	75.5	100.0
2022	12	26	15	14	67	9	12	123	144	211
	5.7	12.3	7.1	6.6	31.7	4.3	5.7	58.3	68.3	100.0
2023	4	21	14	13	52	15	10	109	134	186
	2.2	11.3	7.5	7.0	28.0	8.0	5.4	58.6	72.0	100.0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2023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결과 보고서」, 2024.1.

셋째, 2023년은 참가자 만족도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서비스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으므로, 서비스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면, 2023년은 종합만족도가 65.7로 전년대비 4.9 하락하였으며, 특히 서비스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72.7에서 60.7로 크게 떨어졌음.

이는 현지 중개기관의 인턴십 매칭 불만족이 원인으로 보이므로, 국립국제교육원은 서비스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종합	70.0	68.1	60.7	70.6	65.7
프로그램 만족도	70.3	68.5	61.9	69.2	66.8
서비스기관 만족도	64.6	61.7	55.9	72.7	60.7
성과 만족도	79.6	78.7	64.7	75.9	73.5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2023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결과 보고서」, 2024.1.

18.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연차별 최소투자비율 준수 필요

가. 개 요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Death Valley[78] 단계에 있는 대학 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75억원 전액이 집행되었음.[79]

[2023년도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학창업 활성화	18,094	18,094	-	-	18,094	18,094	-	-	23,132
대학창업펀드 조성	7,500	7,500	-	-	7,500	7,500	-	-	7,500

정부가 75%, 대학 등이 25%로 매칭출자하는 구조로, 정부는 벤처투자 모태조합(母펀드)을 통해 대학창업펀드(子펀드)에 출자, 대학 등은 약정비율에 따라 출자함.

나. 검토의견

펀드출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자부터 투자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투자실적이 미흡한 일부 자펀드는 연차별 최소 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학생기업·창업초기·지방기업 등 시장에서 펀드조성 및 투자가 곤란한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매년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민간투자금과 합쳐 자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실행하는 사업임.

교육부는 2023년 말 기준 865억을 출자하였고, 2024년 3월 말 기준 민간투자금 513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1,378억 8,000만원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음. 그 중 누적기준 871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24년 4월까지 청산된 펀드는 없음.

78) 초기 창업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

7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대학창업 활성화(2256-310)(지역인재정책관)

[대학창업펀드 자펀드별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자펀드명	결성연도 (운용기간)	총결성액	총 결성액		누적 투자건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회수금액
			정부 출자	민간 부담			
NUC-4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2017(7년)	3,850	2,300	1,550	20	3,299	992
고려대 대학창업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7(10년)	3,000	2,250	750	15	2,403	2,118
부산연합 제2호 개인투자조합	2017(10년)	3,000	2,200	800	11	2,500	1,002
서울대 STH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7(10년)	6,000	3,000	3,000	31	5,216	1,107
YUTH 대학창업기업 개인투자조합	2017(8년)	3,000	2,250	750	14	2,480	388
포스텍 경북 챌린지 씨드 1호 개인투자조합	2018(10년)	5,000	2,650	2,350	16	4,011	1,825
한양대학교 창업엔진 개인투자조합	2018(10년)	2,740	2,050	690	14	2,215	1,387
미래-과기특성화대학 창업투자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8(10년)	6,750	3,700	3,050	14	5,425	318
하이파이브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2018(7년)	3,000	1,600	1,400	15	2,401	785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	2018(10년)	4,000	2,000	2,000	31	3,257	197
부산-대경연합 제3호 개인투자조합	2018(10년)	4,180	3,000	1,180	12	3,345	409
연세대학교기술지주 대학창업기업 개인투자조합 YUTH 2호	2019(10년)	3,500	2,625	875	13	2,806	802
대경 다이나믹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9(10년)	5,050	3,750	1,300	22	4,041	292
부산대대학창업 제2호 개인투자조합	2019(10년)	4,200	3,000	1,200	19	3,501	416
숭실대 SUJI 제1호 개인투자조합	2019(10년)	1,700	1,225	475	12	1,390	-
빛가람 1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2020(8년)	4,000	2,900	1,100	15	3,618	-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2020(10년)	1,002	750	252	8	803	-
한양대학교 창업엔진 개인투자조합 2호	2020(7년)	1,000	750	250	7	800	-
국민대-G1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2020(8년)	2,040	1,500	540	9	1,627	-
카이스트대학 창업투자조합	2020(7년)	3,000	2,250	750	11	2,400	-

(단위: 백만원)

자펀드명	결성연도 (운용기간)	총결성액	총 결성액		누적 투자건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회수금액
			정부 출자	민간 부담			
미래지주 창업투자 제3호 개인투자조합	2020(10년)	5,000	3,750	1,250	13	4,001	-
포스텍 홀딩스 5호 투자조합	2020(10년)	4,000	3,000	1,000	17	3,245	-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2호	2020(10년)	1,002	750	252	8	802	-
연세대학교기술지주 개인투자조합 YUTH 3호	2020(10년)	5,000	3,750	1,250	19	3,950	-
충남대-로우 대학창업 투자조합 1호	2021(8년)	2,000	1,300	700	9	1,608	-
전북대학교 제2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2021(8년)	2,700	1,550	1,150	4	651	-
한밭대학교-CNVP 대학창업펀드 1호 개인투자조합	2021(7년)	1,100	750	350	12	801	-
연세대학교기술지주 개인투자조합 YUTH 4호	2021(10년)	4,400	2,400	2,000	11	2,350	-
지스타트업(G-Startup) 대학창업뉴딜펀드	2021(8년)	4,000	2,500	1,500	9	2,599	-
고려대 대학창업 제2호 개인투자조합	2021(8년)	5,000	3,500	1,500	17	4,100	-
경북대학교-로우파트너스 대학창업투자조합 1호	2022(8년)	2,000	1,300	700	8	1,198	-
대학창업투자조합	2022(10년)	3,000	1,700	1,300	3	500	-
카이스트 청년창업 부스트 투자조합	2022(7년)	5,500	3,500	2,000	3	800	-
부산대대학창업 제3호 개인투자조합	2022(10년)	3,500	2,000	1,500	8	1,701	-
한양대학교 창업엔진 개인투자조합 3호	2022(7년)	5,170	1,500	3,670	12	2,600	-
고려대 대학창업 제 3호 개인투자조합	2023(8년)	4,100	2,500	1,600	2	402	-
강원대기술지주더존비즈온 강원특별자치도대학창업펀드제1호	2023(8년)	2,800	1,500	1,300	2	401	-
부산대대학창업 제4호 개인투자조합	2023(10년)	3,000	1,000	2,000	-	-	-
미래지주 창업투자 제5호 개인투자조합	2023(10년)	4,600	2,500	2,100	1	334	-
39건		137,880	86,500	51,380	455	87,130	

주) 2024.3. 말 기준
자료: 교육부

2017~2023년 1,378억 8,000만원의 펀드 조성을 통해 학생기업·초기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해 50%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총 투자액 871억 3,000만원 중 57.2%인

498억 6,000만원을 학생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대학 창업기업에 75% 이상, 학생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도록 한 투자 기준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80)]

[기업 유형별 투자 실적]

(단위: 백만원, 건, 개, %)

구분	계	대학 창업기업			외부기업
		학생기업	교원기업	대학 자회사	
투자액 (비율)	87,130	49,860 (57.2)	17,800 (20.4)	5,360 (6.1)	14,110 (16.2)
투자 건수 (비율)	455	262 (57.6)	92 (20.2)	27 (5.9)	74 (16.3)
투자기업수 (비율)	346	192 (55.5)	71 (20.5)	20 (5.8)	63 (18.2)

주) 2023.12.말 기준
자료: 교육부

다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결성된 39개의 자펀드 기준수익률[81)]이 모두 0%로 운용되고 있는 바, 운용사는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0%만 초과하여도 성과보수를 받게되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2024년 출자사업부터 교육계정 기준수익률을 3%로 상향하였으나, 2023년까지 결성된 39개 자펀드의 운용기간이 보통 7~10년이라는 점에서 0% 기준수익률의 한계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대학창업펀드 출자 공고상 연차별 최소 투자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성일을 기준으로 약정 총액 대비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 함.

[대학창업펀드 연차별 최소 투자비율]

(단위: %)

구분	결성일로부터 1년	결성일로부터 2년	결성일로부터 3년	결성일로부터 4년
약정총액대비 비율	20	40	60	80

자료: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교육부 소관)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3.3.

펀드출자 사업은 출자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민간에 자금이 공급되므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자부터 투자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80) 대학창업펀드 출자 공고상 기준

81) 펀드 기준수익률이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IRR)임. 모태펀드는 자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일정비율을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및 2022년 결성된 일부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2023년 결성된 4개의 자펀드는 결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는 않았으나('24.6. 시점) 정책효과를 위해 투자를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투자 미흡 자펀드 현황]

(단위: 백만원, %)

자펀드명	운용사	결성일	결성액	누적 투자 금액	결성액 대비 투자금액비율	결성일로부터 기간
전북대학교 제2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특허법인지원	'21.08.24.	2,700	651	24.1	2년 이상
대학창업투자조합	벤처박스	'22.08.22.	3,000	500	16.7	1년 이상
카이스트 청년창업 부스트 투자조합	카이스트청년 창업투자지주	'22.08.26.	5,500	800	14.5	1년 이상
고려대 대학창업 제3호 개인투자조합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23.09.04.	4,100	402	9.8	1년 미만
강원대기술지주 더존비즈온 강원특별자치도대학창업펀드제1호	강원대학교 기술지주	'23.10.13.	2,800	401	14.3	1년 미만
부산대대학창업 제4호 개인투자조합	부산대 기술지주	'23.09.27.	3,000	-	-	1년 미만
미래지주 창업투자 제5호 개인투자조합	미래과학 기술지주	'23.11.16.	4,600	334	7.3	1년 미만

주) 2024.3. 말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19.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예산 적기 교부와 글로컬 대학 성과검증을 통한 인센티브 교부 필요

가. 개 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지방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강점 분야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 허브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900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음.[82)]

‘국립대학육성사업’ 은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580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음.[83)]

[2023년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학혁신지원(R&D)	1,100,984	1,100,984	-	-	1,100,984	1,100,984	-	-	1,004,607
(3유형)지방대학 활성화사업	190,000	190,000	-	-	190,000	190,000	-	-	이관
국립대학육성사업	458,000	458,000	-	-	458,000	458,000	-	-	572,200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3유형인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며 2023년 신규로 1,900억원이 편성된 사업임.[84)]

참고로,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1유형인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유형인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은 신산업 분야 인재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 부처와 협업하여 대학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8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대학혁신지원(R&D)(2301-300)(지역인재정책관)

8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지역인재정책관)

84) 대학혁신지원(R&D) 1유형에 참여 중인 지방 사립대는 동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이 지연되며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야 교부됨으로써 대학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이월되었는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은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학육성사업, 사립대는 대학혁신지원(R&D), 전문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R&D)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교별 지원금은 포뮬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통해 분배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학혁신지원(R&D) 3유형인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총 지원비 1,900억원 중 포뮬러 사업비에 60%(1,140억원), 인센티브에 40%(760억원) 비율로 배분되었음. 포뮬러 사업비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인 기준경비,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인 규모지수, 재학생 충원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한 각 변환점수의 합인 교육여건지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졌고, 인센티브 사업비는 ① 대학혁신 특성화 계획평가 결과와 ②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글로컬대학과 연계하여 대학별로 차등 배분되었음.

[2023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포뮬러 사업비]

포뮬러 사업비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지수	×	조정상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자료: 교육부, 「2023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2023.5.

인센티브 사업비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글로컬대학'이란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대학을 말하는데,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임.

2023년 6월 15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예비지정되었고, 2023년 11월 10개 대학[85]이 최종적으로 본지정되었음.

그런데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경우 글로컬대학에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대학별 50억원 내외)하고자 2023년 11월까지 예산 배분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하다가,

85)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국립대 7, 사립대 3)
① 강원대·강릉원주대, ② 경상국립대, ③ 부산대·부산교대, ④ 순천대, ⑤ 안동대·경북도립대, ⑥ 울산대, ⑦ 전북대, ⑧ 충북대·한국교통대, ⑨ 포항공대, ⑩ 한림대

11월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완료되고 나서야 인센티브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하였음.

이에 따라 대학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차년도로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대학별 실집행률이 2024년 2월 기준 7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대학별 배분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대학명	포뮬러	인센티브		합계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사업계획 평가	글로컬			
1	가톨릭꽃동네대학교	362	150	-	512	453	88.5
2	건국대학교(글로컬)	2,185	1,290	-	3,475	3,112	89.6
3	건양대학교	1,519	628	-	2,147	2,089	97.3
4	경남대학교	1,786	817	-	2,603	1,957	75.2
5	경동대학교	1,391	624	-	2,015	1,495	74.2
6	경성대학교	2,239	1,023	-	3,262	2,585	79.2
7	경운대학교	907	582	-	1,489	1,158	77.8
8	경일대학교	1,944	1,245	-	3,189	2,306	72.3
9	계명대학교	3,830	2,455	-	6,285	4,564	72.6
10	고려대학교(세종)	2,259	1,334	-	3,593	2,581	71.8
11	고신대학교	1,225	799	-	2,024	1,506	74.4
12	광주대학교	1,672	707	-	2,379	1,835	77.1
13	광주여자대학교	1,285	543	-	1,828	1,336	73.1
14	나사렛대학교	1,244	515	-	1,759	1,599	90.9
15	남부대학교	1,094	463	-	1,557	1,123	72.1
16	남서울대학교	1,856	768	-	2,624	1,878	71.6
17	대구가톨릭대학교	1,974	885	-	2,859	2,147	75.1
18	대구대학교	2,077	932	-	3,009	2,851	94.7
19	대구한의대학교	1,429	641	-	2,070	1,946	94.0
20	대전대학교	2,098	1,239	-	3,337	2,691	80.6
21	동국대학교(WISE)	1,662	745	-	2,407	1,771	73.6
22	동명대학교	1,327	866	-	2,193	2,017	92.0
23	동서대학교	1,880	1,227	-	3,107	2,902	93.4
24	동신대학교	1,334	805	-	2,139	1,844	86.2
25	동아대학교	3,552	1,623	-	5,175	4,692	90.7
26	동양대학교	1,148	515	-	1,663	1,221	73.4
27	동의대학교	2,362	1,079	-	3,441	2,805	81.5
28	목원대학교	1,552	917	-	2,469	1,765	71.5

(단위: 백만원, %)

연번	대학명	포물러	인센티브		합계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사업계획 평가	글로컬			
29	목포가톨릭대학교	563	339	-	902	716	79.4
30	배재대학교	1,730	716	-	2,446	1,714	70.1
31	백석대학교	2,099	1,239	-	3,338	2,559	76.7
32	부산가톨릭대학교	1,424	650	-	2,074	1,852	89.3
33	부산외국어대학교	1,292	844	-	2,136	1,241	58.1
34	서원대학교	1,880	1,110	-	2,990	2,629	87.9
35	선문대학교	2,216	1,309	-	3,525	3,072	87.1
36	세명대학교	1,081	447	-	1,528	1,144	74.9
37	송원대학교	1,064	449	-	1,513	1,060	70.1
38	순천향대학교	2,543	1,502	-	4,045	4,007	99.1
39	신라대학교	1,038	474	-	1,512	1,190	78.7
40	연세대학교(미래)	2,427	1,556	-	3,983	3,724	93.5
41	영남대학교	3,541	1,589	-	5,130	4,406	85.9
42	영산대학교	1,280	585	-	1,865	1,514	81.2
43	예수대학교	585	247	-	832	738	88.7
44	우석대학교	1,185	714	-	1,899	1,687	88.8
45	우송대학교	2,263	1,336	-	3,599	2,758	76.6
46	울산대학교	2,563	1,673	5,000	9,236	1,969	21.3
47	원광대학교	1,741	1,050	-	2,791	2,394	85.8
48	인제대학교	1,223	799	-	2,022	1,553	76.8
49	전주대학교	2,678	1,616	-	4,294	3,998	93.1
50	조선대학교	2,856	1,723	-	4,579	3,969	86.7
51	중부대학교	968	400	-	1,368	1,116	81.6
52	중원대학교	1,184	490	-	1,674	1,447	86.4
53	창신대학교	629	287	-	916	748	81.7
54	청운대학교	1,214	502	-	1,716	1,267	73.8
55	청주대학교	2,080	1,229	-	3,309	2,507	75.8
56	초당대학교	1,376	830	-	2,206	1,552	70.4
57	포항공과대학교	1,237	793	5,000	7,030	1,706	24.3
5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66	1,397	-	3,763	2,945	78.3
59	한남대학교	2,398	1,416	-	3,814	3,356	88.0
60	한동대학교	1,811	812	-	2,623	1,902	72.5
61	한라대학교	672	302	-	974	892	91.6
62	한림대학교	2,485	1,593	5,000	9,078	4,243	46.7

(단위: 백만원, %)

연번	대학명	포뮬러	인센티브		합계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사업계획 평가	글로컬			
63	한서대학교	1,717	710	-	2,427	2,351	96.9
64	호남대학교	2,066	872	-	2,938	2,225	75.7
65	호서대학교	2,243	1,325	-	3,568	2,656	74.4
66	호원대학교	1,089	658	-	1,747	1,248	71.4
합 계					190,000	142,284	74.9

주) 2024.2. 말 기준
자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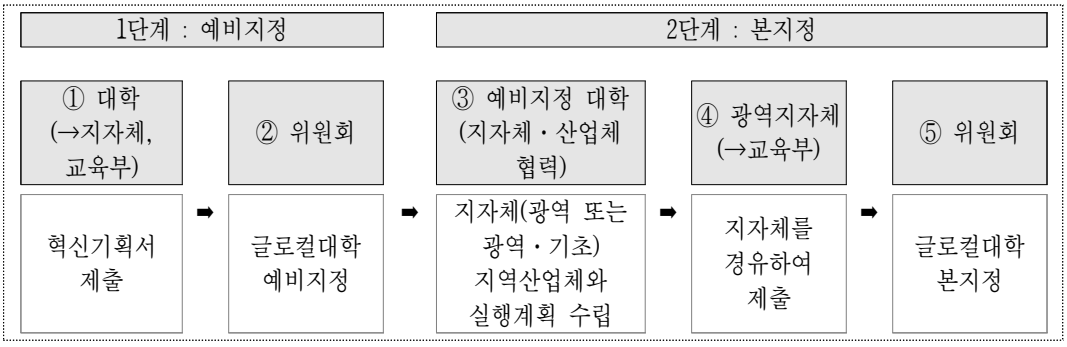
예산 교부의 지연은 대학 단계에서의 결산 지연으로 이어져 사업성과를 검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에 따라 대학에 교부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글로컬대학 혁신모델에 대한 어떠한 성과 검증도 없이 계획서 평가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도록 하고, 학교 통합 등의 핵심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각 대학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 시 혁신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혁신기획서(5페이지 내)를 제출하고, 본지정 신청 시에는 대학·지자체 및 지역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함.

교육부는 이러한 계획서의 심사만으로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도]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하여 학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86] 계획서 제출만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 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어떠한 성과 검증도 없이 글로컬대학에 지정된 이유만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도록 하고 학교 통합 등의 핵심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86) 2023년 10개교, 2024년 10개교 내외 예정, 2025~2026년 각 5개교 내외 예정

20.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연례적인 사업순연 문제

가. 개 요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표준화된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구축 · 개선을 통한 사학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 중인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사학기관 전용 회계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4억 4,0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87]

[2023년도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사학혁신 지원사업	3,099	3,099	-	-	3,099	3,099	-	-	2,173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2,440	2,440	-	-	2,440	2,440	-	-	1,725

나. 검토의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순연에 따른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자체 회계시스템 개발이나 민간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사립대학을 위해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보급하여, 사립대학의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회계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1차 사업으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하였고, 2023년 2차 사업에 이어 2025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임.

8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사학혁신 지원사업(2301-303)(지역인재정책관)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로드맵]

1차('21년 ~ '22년)	2차('23년~ '24년)	3차('24년)	4차('25년)
· 정보화 계획 수립 (BPR/ISP) · 예산: 2억원	⇨ · 시스템 개발 : 통합포털, 경영정보, 예산회계, 전자결재 · 클라우드 기반 운영 인프라 전환 · 예산: 24억 4,000만원	⇨ · 시스템 개발: 통합포털(2차), 인사급여 · 데이터 이관: 기존 사용자 데이터 이관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예산: 17억 2,500만원	⇨ · 시스템 개발: 연구행정, 자산(구매) 관리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예산: 17억 7,700만원(예정)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출연한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말 기준 25.8%에 불과함.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2,440	2,440	2,440	2,440	-	2,440	629	1,811	-	25.8

자료: 교육부

이러한 집행실적 저조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자체조달[88]에서 중앙조달[89]로 조달청 입찰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계약체결 일정이 지연되었고, 2023년 사업기간이 정보화 계획(BPR/ISP)상 10개월로 산정되어 사업예산이 이월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1년 ISP 수립을 4개월간 진행하였으므로 1차 사업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검토기간이 1년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2023.4.) 및 시행계획(2023.7.) 수립에 7개월이 소요되어 조달청 계약 발주를 7월에야 추진한 것이 사업지연의 주원인으로 보임.

향후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순연에 따른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88)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되,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89) 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 조달청에 일임하는 방식

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은 지자체·대학 및 지역혁신기관이 협력기반(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대학교육 혁신 및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540억원 중 3,460억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80억원이 불용되었음[90]

[2023년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354,000	354,000	-	-	354,000	346,000	-	8,000	342,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42,000	342,000	-	-	342,000	342,000	-	-	342,000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	-	12,000	4,000	-	8,000	-

나. 검토의견

첫째,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실집행이 부진한 플랫폼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2025년 새롭게 추진되는 RISE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0년 3개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3개의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여, 2023년에는 총 9개 플랫폼에

9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2301-400)(지역인재정책관)

3,4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현황]

플랫폼명	선정 연도	핵심분야	참여대학
광주・전남	'20	■ 에너지신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 목포대 등 17개 대학
울산・경남	'20	■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 스마트제조 ICT ■ 미래모빌리티 ■ 스마트공동체 ■ 저탄소 그린에너지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4개 대학
충북	'20	■ 제약바이오 ■ 정밀의료・기기 ■ 화장품・천연물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13개 대학
대전・세종・충남	'21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 모빌리티 ICT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대학
강원	'22	■ 정밀의료 ■ 디지털헬스케어 ■ 스마트수소에너지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
대구・경북	'22	■ 전자정보기기 ■ 미래차 전환부품	경북대, 영남대 등 22개 대학
부산	'23	■ 스마트항만물류 ■ 친환경 스마트선박 ■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14개 대학
전북	'23	■ 미래 수송기기 ■ 에너지 신산업 ■ 농생명・바이오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8개 대학
제주	'23	■ 청정바이오 ■ 지능형 서비스 ■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제주대 등 3개 대학

자료: 교육부

그런데 2023년에 신규로 선정된 부산・전북 및 제주를 제외한 6개 지역혁신플랫폼 모두 이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당해연도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특히,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플랫폼은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업비가 2023년도로 이월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2년 결산시정요구를 통해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나,[91]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 사업비의 실집행률 현황을 보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광주・전남 76.5%, 대구・경북 79.0%, 부산 56.9%, 전북 71.1% 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91)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 원인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플랫폼명	선정 연도	예산액				집행액 (F)	집행률 (F/E)
		전년도 이월금 (A)	2023년 사업비		합 계 (E=A+B+C)		
			국비(B)	지방비(C)			
광주・전남	'20	9,721	45,431	19,471	74,623	57,081	76.5
울산・경남	'20	10,583	47,831	22,620	81,035	68,647	84.7
충북	'20	5,729	32,295	13,841	51,890	46,121	88.9
대전・세종・충남	'21	10,431	43,031	18,442	71,904	62,976	87.6
강원	'22	10,662	29,895	12,813	53,370	45,881	86.0
대구・경북	'22	10,347	52,631	22,557	85,536	67,544	79.0
부산	'23		29,895	12,813	42,717	24,316	56.9
전북	'23		29,895	12,813	42,708	30,348	71.1
제주	'23		29,895	12,813	42,715	34,961	81.8

주 1) 2024.2.말 기준
2) 당해연도 산입이자는 소액이므로 생략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작성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된 사업은 2025년부터 RISE 체제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으로,[92]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하고 종료될 예정임. 따라서 2023년 예산의 실집행 부진은 2024년도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실집행이 부진한 플랫폼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2025년 새롭게 추진되는 RISE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120억원의 예산 중 80억원이 불용되었는데,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은 2023년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새롭게 편성된 사업임.

9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기존의 RIS 사업을 개편, 고도화한 것으로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임. 대학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함.

동 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되는 RISE 체제에 대비하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플랫폼의 총괄운영센터[93] 역할을 대학이 아닌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도록 법인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임.

지방비와 1:1 매칭을 조건으로 3개 지자체에 각 40억원씩, 12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나, 지자체의 참여 저조로 인해 40억원만 집행되고 80억원은 불용되었음.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의 지방비 대응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였으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방비를 투입하며 사업에 참여할 만한 유인과 필요성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음.

예를 들어, ① 2023년 신규로 선정된 플랫폼은 선정 당시부터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운영에 추가로 4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할 만큼 기대효과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② 기존 6개 플랫폼들은 이미 대학이 총괄운영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총괄운영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었을 것이라는 점, ③ 기존 6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94]은 여러 지자체가 참여한 복수형 플랫폼이라 지방비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예산 편성이 지자체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교육부는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업에 참여한 전북의 경우, 2023년 11월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2024년 4월 기준 실집행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예산 80억원 중 36억 9,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9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플랫폼 운영조직의 하나로 기획・집행기구를 의미함. 2022년 선정된 플랫폼까지 주로 대학이 총괄운영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의 관심 부족, 사업비 집행의 불편함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총괄운영센터를 대학이 아닌 지자체 소관 법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94) 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개요(전북) 및 실집행현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사업목적</td><td>○ 전북지역 혁신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록 전환하여 성공적인 지역 특색에 맞는 RISE체계 기반 마련
○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자체 주도로 해소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매개체 역할 수행
○ 전북도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JB지산학협력단(RISE센터) 역할 강화</td></tr>
<tr><td>사업기간</td><td>○ 2023.11. ~ 2024.12.</td></tr>
<tr><td>사업비</td><td>○ 80억원(국비 40억원, 도비 40억원)</td></tr>
<tr><td>수행기관</td><td>○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td></tr>
<tr><td>사업내용</td><td>○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지원
- JB지산학협력단 기기 임대 및 구매, 홈페이지 구축 등
○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행정연계 지원, 성과관리, 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 구축
○ 성과 활용・확산 지원
- RISE 전문대학 연계형 교육체계 연구, 기업・학생 설문조사, RISE 성과 확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포럼・협의회 운영
○ 전담 인력 인건비 및 파견 수당 지원
- JB지산학협력단장, 전담인력 인건비, 도・대학 파견자 파견수당</td></tr>
<tr><td>실집행 현황</td><td>(단위: 천원)
<table>
<tr><th colspan="2">예산액</th><th colspan="2">집행액</th></tr>
<tr><th>국비</th><th>지방비</th><th>국비</th><th>지방비</th></tr>
<tr><td>4,000,000</td><td>4,000,000</td><td>1,847,245</td><td>1,847,245</td></tr>
<tr><td colspan="2">8,000,000</td><td colspan="2">3,694,490</td></tr>
</table>
주) 2024.4. 기준</td></tr>
</table>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22.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동물실험실 구축사업 추진 지연 및 실험실습기자재 장비 활용실적 저조 등

가. 개 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38개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278억 8,100만원 중 3,248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29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95)]

[2023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327,881	327,881	-	-	327,881	324,897	-	2,984	327,709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68,024	268,024	-	-	268,024	265,720	-	2,304	267,930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59,857	59,857	-	-	59,857	59,177	-	680	59,779

내역사업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680억 2,400만원 중 2,657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23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업은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확충과 실험·연구공간 분리 및 실험실 내 전기·소방·환기 성능개선 등을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실험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98억 5,700만원 중 591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6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9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교육자치협력안전국)

나. 검토의견

첫째,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의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집행부진한 사업주체에 대한 예산교부를 중지하는 등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대학 단위 실집행률은 대학회계연도[96]인 2024년 2월말 기준으로 92.4%에 이르고 있음.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3년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등
합계	268,024	247,684	92.4	20,340

주) 2024.2.말 기준
자료: 교육부

그런데 다른 내역사업인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액 598억 5,700만원 중 302억 6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3년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등
합계	59,857	30,206	50.5	29,651
안전환경개선	12,168	9,706	79.8	2,462
안전장비구입	18,872	17,821	94.4	1,051
동물실험실 구축	28,817	2,679	9.3	26,138

주) 2024.2.말 기준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의 집행률이 9.3%로 극히 부진한 것이 원인임.

2023년 신규로 선정된 대학 중 충북대 외에 충남대, 경상대는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대학들도 2023년 집행률이 0.7%~19.9%

9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에 불과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물실험실 학교별 실집행액 및 집행저조 사유]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 기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 잔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저조 사유
전남대 (계속)	'21~ '25	6,200	41	0.7	6,159	6,159	-	(공사계약 지연) 설계도서 기술검토·협의에 따른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 지연
전북대 (계속)	'21~ '25	6,290	330	5.2	5,960	5,960	-	(건축협의 지연) 건축협의 보완사항(도시계획 및 축산폐수)에 따른 환경부 질의회신·협의(2회)에 따른 지연
부산대 (계속)	'21~ '25	6,200	489	7.9	5,711	5,711	-	(건축협의 지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관련 양산시 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 지연
경북대 (계속)	'21~ '25	6,200	1,235	19.9	4,965	4,965	-	(현장여건 변동) 터파기 공정 진행 중 암판정(지반 상이) 및 가시설(흙막이) 계획 변경 검토, 협의 등으로 지연
제주대 (계속)	'22~ '25	1,200	254	21.2	946	946	-	(건축협의 지연) 기존 실험동물센터 해체공사 및 신축건물 건축협의 보완사항 제주시 협의 지연
강원대 (계속)	'22~ '25	1,200	7	0.6	1,193	1,193	-	(공사계약 지연) 조달청 적격심사 과정 중 최종 낙찰자 선정 변경(1순위 → 5순위) 및 감리자 선정 등으로 지연
충북대 (신규)	'23~ '25	477	437	91.6	40	-	40	-
충남대 (신규)	'23~ '25	525	-	-	525	525	-	(부지선정 지연)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등으로 지연
경상대 (신규)	'23~ '25	525	13	2.5	512	493	19	(부지선정 지연) 동물실험센터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등으로 지연
합계		28,817	2,806	9.3	26,011	25,952	59	

주) 2024.2. 말 기준
자료: 교육부

집행저조 사유를 보면 주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건축협의 지연, 부지선정 지연, 계약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특히,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전액 이월시키거나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과다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여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신규선정 때부터 부지선정, 관련 절차 사전이행 등을 점검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5,000만원 이상 장비의 활용실적이 연평균 10건 이하로 저조한 대학들이 있으므로, 향후 장비구매 지원 시 활용도를 점검함으로써 장비구매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023년말 기준 대학별 5,000만원 이상의 실험실습기자재 장비를 보유한 현황을 보면, 활용실적이 연평균 10건 이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음.

예를 들어, 제주대는 5,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55건 구매하였으나, 그중 연평균 활용실적이 10건 이하인 장비구매가 30건(총구매건수 대비 54.5%)이며, 금액으로 보면 총구매금액 대비 52.2%로 나타나 투입예산 대비 장비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부경대・목포대・강릉원주대 및 한국해양대 등도 활용실적이 저조한 장비를 구입한 비율이 31.6%~54.6%(금액비율)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학별 5,000만원 이상 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대학교	장비건수 (A)	금액 (C)	활용실적 연평균 10건 이하 장비			
			장비건수 (B)	총구매건수 대비 비율(B/A)	금액 (D)	총구매금액 대비 비율(D/C)
충남대	48	18,398	4	8.3	1,784	9.7
전북대	48	17,818	12	25.0	2,664	15.0
전남대	54	15,869	16	29.6	3,617	22.8
경북대	82	25,312	10	12.2	2,167	8.6
부산대	49	14,996	9	18.4	1,834	12.2
강원대	105	20,538	39	37.1	5,514	26.8
충북대	49	18,053	10	20.4	2,157	11.9
경상국립대	77	21,762	20	26.0	5,599	25.7
제주대	55	9,945	30	54.5	5,195	52.2
부경대	57	17,389	16	28.1	5,494	31.6

(단위: 건, 백만원, %)

대학교	장비건수 (A)	금액 (C)	활용실적 연평균 10건 이하 장비			
			장비건수 (B)	총구매건수 대비 비율(B/A)	금액 (D)	총구매금액 대비 비율(D/C)
목포대	39	6,586	25	64.1	3,599	54.6
공주대	55	11,294	9	16.4	1,281	11.3
안동대	10	1,342	1	10.0	87	6.5
군산대	47	8,405	9	19.1	903	10.7
강릉원주대	49	6,913	32	65.3	3,453	49.9
창원대	48	10,322	1	2.1	163	1.6
순천대	47	10,124	16	34.0	2,423	23.9
한국해양대	42	6,215	25	59.5	2,848	45.8
금오공과대	39	10,888	9	23.1	1,656	15.2
한국교통대	35	6,632	4	11.4	779	11.7
한밭대	45	9,602	8	17.8	1,012	10.5
한경국립대	32	6,157	10	31.3	1,804	29.3
서울과기대	56	18,293	17	30.4	2,919	16.0

주) 2023.12. 말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시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장비구매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3,000만원 이상 장비 구매 시 30일 이내에 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효과 등을 위해 규정에 따라 장비를 등록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에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와 공동활용 목적으로 지정된 장비구축 운영사업에서 취득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97]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국

9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 NTIS 사이트에서 장비활용종합포탈(www.zeus.go.kr)로 연결됨.

립대의 장비 등록 현황을 보면, 30일 이내에 등록한 비율이 2023년 16.4% 등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최근 5년간 30일 이내에 등록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구매 장비 NTIS 등록 현황]

(단위: 건)

대학교	2019		2020		2021		2022		2023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서울교대	-	-	-	-	-	-	1	-	-	-
부산교대	-	-	-	-	1	-	-	-	1	-
경인교대	-	-	-	-	-	-	-	-	-	-
춘천교대	-	-	-	-	1	-	-	-	-	-
청주교대	-	-	-	-	1	-	-	-	-	-
공주교대	-	-	-	-	-	-	2	-	-	-
전주교대	-	-	-	-	-	-	-	-	2	-
광주교대	-	-	-	-	-	-	-	-	3	-
대구교대	-	-	-	-	-	-	-	-	-	-
진주교대	-	-	-	-	-	-	1	-	2	-
충남대	18	2	12	1	16	-	7	-	111	1
전북대	15	-	17	-	12	-	19	3	55	22
전남대	3	-	15	6	15	1	6	-	87	5
경북대	12	9	15	8	14	4	9	7	83	21
부산대	10	-	14	-	10	-	8	-	122	-
강원대	12	5	16	3	21	-	12	3	104	8
충북대	6	2	19	11	25	2	12	1	40	7
경상국립대	23	6	20	2	4	-	10	1	86	14
제주대	9	4	12	-	18	-	15	-	38	3
한국교원대	-	-	-	-	8	6	3	3	8	6
부경대	10	1	15	2	15	-	3	-	124	3
목포대	2	1	7	2	9	1	11	-	29	5
공주대	5	-	11	-	7	-	7	-	42	15
안동대	3	-	8	-	12	12	10	10	40	7
군산대	4	3	6	2	9	4	9	5	18	3
강릉원주대	7	1	8	5	7	2	7	5	39	37
창원대	8	-	10	-	8	-	11	-	64	9

(단위: 건)

대학교	2019		2020		2021		2022		2023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	30일 이내 등록 장비
순천대	8	4	17	5	15	-	4	-	36	7
한국해양대	4	2	4	-	5	-	15	9	36	25
한국체육대	6	-	2	-	-	-	3	3	5	1
목포해양대	1	1	2	-	7	-	5	-	4	-
금오공과대	3	2	5	-	8	-	8	-	39	8
한국방송대	2	-	2	-	10	-	2	-	12	-
한국교통대	10	2	12	3	8	1	15	3	52	6
한밭대	4	-	7	-	9	-	8	-	15	1
한경국립대	2	-	12	-	7	-	7	2	53	3
서울과기대	5	-	11	3	8	-	10	5	32	8
합 계	192	45	279	53	287	33	236	60	1374	225

주 1) 2023.12. 말 기준
2) 주장비, 보조장치, 부대장비 포함
자료: 교육부

향후 교육부는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효과 등을 위해 국립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를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3.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실집행저조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조 19억 9,700만원 중 9,940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7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98)]

[2023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대학시설확충	1,001,853	1,001,853	144	-	1,001,997	994,077	150	7,770	1,005,309

내역사업으로 확충사업, 보수사업, 정책사업, BTL정부지급금으로 구성됨.

확충사업은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여건 제고하는 것이고, 보수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정책사업은 석면제거, 안전인증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장애인 E.V.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BTL정부지급금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기숙사의 시설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요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교부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2740-300)(교육자치협력안전국)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4년 2월 기준 74%에 불과하며, 시설 신·증축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충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47.3%로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도 국립대학시설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진행상황
확충사업	287,469	135,849	47.3	사업기간 미도래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일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상반기 내 집행 예정
보수사업	519,701	445,852	85.8	방학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집행잔액 및 정산 등으로 4월 집행 완료 예정 (동계방학 ’23.12 ~ ’24.2.)
정책사업	114,903	81,586	71.0	방학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집행잔액 및 정산 등으로 4월 집행 완료 예정 (동계방학 ’23.12 ~ ’24.2.)
BTL 정부지급금	79,780	78,447	98.3	매월 집행되는 BTL 정부지급금 집행 완료(일부 1월 지급)
합계	1,010,853	741,735	74.0	

주) 2024.2. 기준
자료: 교육부

2024년 2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확충사업은 19개로, 주로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 부지선정 문제, 학교 내부 문제로 인한 설계지연 등이 그 원인임.

[확충사업 실집행저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학교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부진사유
1	충남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및 확충	’21-’25	7,344	418	5.7	설계기간 내 행정 절차 지연(조달청 적정성 검토 3회 8개월 지연 및 공사계약 체결 지연 5개월)
2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3호관 개축	’22-’25	5,000	7	0.1	설계기간 내 행정 절차 지연(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 12개월 지연)으로 공사 착공 순연
3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성공홀 신축	’22-’26	4,600	139	3.0	지역주민 공동활용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여수시 대응투자금 +20억원)으로 설계 연장(3개월) 및 행정절차 기간(1개월) 추가 소요로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학교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부진사유
4	전남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23-'26	514	-	-	교내 사업부지 변경(교내 학생시설 근접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르 위해 부지재 선정 등으로 4개월 지연)
5	경북대	상주캠퍼스 창의융합교육관 신축	'22-'26	5,000	13	0.3	조달청 설계 적정성(3개월) 및 건설교통부 '24년 감리방식 변경(일반감리→건설사업관리 변경 협의조정 5개월)으로 공사착공 순연
6	부산대	제6공학관	'22-'26	3,000	-	-	설계공모 진행 중 동일부지(지하)내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확정에 따라 사업간 과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기존 설계자의 과업내용 추가가능 여부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검토 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지연(소요기간: '23.3. ~ '23.11.)
7	부산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23-'26	679	-	-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 설계공모 절차 생략(추가 과업 변경계약)
8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축	'22-'26	5,000	-	-	설계기간 내 행정 절차 지연(조달청 적정성 검토 2회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 5.22일 기준 462일 지연) ※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기간 추가 4개월 소요 예정
9	강원대	교육1,2,3호관 개축	'21-'27	5,000	-	-	설계기간 내 행정 절차 지연(조달청 적정성 검토 3회 및 총사업비 협의 440일 지연)으로 공사착공(24.3.) 순연
10	제주대	동물의료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24-'26	6,000	15	0.2	행정 절차 지연(제주시 공용건축물 검토 지연 및 BF 인증 지연으로 5개월 연장)으로 공사발주 대기
11	공주대	평생교육원·예술관 리모델링	'23-'25	578	41	7.2	학내 사용자 협의 지연(공간조정으로 3개월 지연)
12	공주대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	'23-'25	6,230	66	1.1	동절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골조공사 2개월 일시정지
13	군산대	공대1·4호관 리모델링	'23-'25	611	-	-	학내 대체공간 활용 및 타 사업(공대통합교육관(BTL)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공간구성(학사구조 개편 등) 지연으로 설계 지연(기존 '23→'24)

(단위: 백만원, %)

연번	학교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부진사유
14	강릉원주대	자연1호관 개축	'22-'26	4,000	10	0.3	설계기간 내 행정 절차 지연(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간)으로 공사발주 순연
15	한국체대	골프연습장 개축	'22-'25	5,000	2	0.0	설계기간 내 행정 절차 지연(서울시 도시계획(1년 2개월), 환경영향 평가 및 지하철영향성 평가(4개월) 등으로 공사착공 순연
16	한밭대	디지털도서관 신축	'22-'25	5,000	253	5.1	부지선정 재검토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순연 계약담당자 부재 및 1순위 업체 포기 등 지연 (3개월)
17	서울과기대	도서관 및 학생회관 신축	'22-'26	5,000	10	0.2	건설교통부 '24년 감리방식 변경(일반감리→건설사업관리 변경 협의조정 6개월)으로 공사착공 순연
18	경상국립대	공학1·6호관 리모델링 및 증축	'23-'26	574	53	9.2	'23-'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하여 차수계약하여 설계 추진중 이며 연내 설계용역 완료 예정
19	경상국립대	교양학관 리모델링 및 증축	'22-'25	3,510	422	12.0	공사로 인한 학사일정 지연 및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공사기간 조정(향후 단기간 공사 추진) ※ (공사기간) '24. 7.~ '25. 6.

주) 2024.2.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작성

특히, 2023년 신규로 추진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은 2022년(62.3%)보다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 국회 결산시정요구[99]를 통해 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부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단계별 적정 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집행률이 10% 미만의 대학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한편, '정책사업'에서도 실집행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데, 서울교대, 공주교대의 사례와 같이 사업수요가 불분명한 결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으며, 전남대의 드라이비트 제거 사업과 같이 공사 대상이 아예 바뀌어 추진됨에

99)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단계별 적정 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따라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음.

[정책사업 실집행저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학교명	사업명	23년 예산	집행액	집행률	부진사유
1	서울교대	안전인증	100	1	0.8	교내 개인형이동장치 반입 금지 규정 제정으로 안전 예산 수요 없어졌으며, 안전 홍보에 일부 예산 집행 후 사업 완료
2	공주교대	장애인편의시설	300	27	8.9	학내 의사결정(향후 재건축)으로 23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3년 12월 불용액(273백만원) 반납
3	전남대	드라이비트 제거	6,732	-	-	부진사유: 기숙시설 드라이비트 공사 진행 시 기숙시설에 대한 대체공간 확보 및 민원발생 우려 집행 계획: 교사시설 드라이비트 공사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연내 집행 예정
4	경북대	석면제거	4,100	113	2.8	학사일정 및 이전비 예산 확보 후 동계방학 공사
5	경북대	신재생에너지	690	65	9.5	민간투자사업 범위 확정 후 동계방학 공사
6	한경국립대	신재생에너지	240	3	1.4	대학본부 옥상 방수 하자로 인해 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 현장 실사 후 공사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지연
7	한경국립대	치징벽돌 보강	265	-	-	'22년 잔여 예산으로 치장벽돌 보강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반납

주) 2024.2.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작성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요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교부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인 실집행저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및 공공임상교수제 모집정원 미달 문제 등

가. 개 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788억 3,300만원 중 622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1%)되고, 165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100]

내역사업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90억 6,900만원 중 35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6.9%)되고, 155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대병원 지원	78,833	78,833	-	-	78,833	62,296	-	16,537	111,369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19,069	19,069	-	-	19,069	3,515	-	15,554	6,350

나. 검토의견

첫째, 실집행이 극히 부진함에도 국립대병원으로 예산을 전액 교부한 뒤 전액 미집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이월시키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음.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크게 각 국립대병원의 시설·장비, 교육·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사업과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병원 지원(2743-301)(지역인재정책관)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개선 등을 위한 출연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출연금 교부와 저조한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101]

2023년 국립대병원 지원 집행현황을 보면, 여전히 실집행이 극히 부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강원대병원 강원권역 공공의료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인허가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교부된 예산 14억 4,0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서울대병원 본관 물류 하역장 차량동선 개선 사업은 사업취소 결정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출연사업 실집행률 10% 미만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율	실집행률	실집행 부진 사유
강원대병원 강원권역공공의료센터 건립사업	1,440	1,440	-	100.0	-	• 물가변동 및 건축단가 상승 등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하였고, 설계공모 및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지연되어 이월
경북대병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505	1,505	23	100.0	1.5	• 장애인협회 승인 관련 협의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 등 법적 절차가 지연되어 이월함 (이월: 14억 8,200만원)
경북대병원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	100.0	-	• 2022년 공모사업으로 작업공정에 따라 기획업무용역 이후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단계에 수개월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
경북대병원 노후장비 교체	2,500	2,500	-	100.0	-	• 우크라이나 전쟁 및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장비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기간 소요 및 수의계약 가격협상의 물리적 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비 이월
배곧서울대학교 병원 건립사업	5,215	5,215	-	100.0	-	• '23년 설계시공일괄입찰이 유찰되어 사업 일정 순연되었고, 단독 응찰로 인해 최종 유찰이 확정되어 수의계약 전환 절차가 진행에 따라 이월
전남대병원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	100.0	-	• '22.11. 총사업비 확정 후, 작업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23년 설계용역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에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

101)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시 절차 지연 등을 고려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율	실집행률	실집행 부진 사유
전북대병원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	100.0	-	• '23년 공모사업으로 '23.11월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완료되어 12월부터 관련 사업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1년차 사업비 이월함 ⇒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24년) 사업비 조정('23. 10억*2원 → '24. 5억*2원)하여 반영
서울대치과병원 국민재난 진료지원센터 건립	4,534	4,534	7	100.0	0.2	• 사업부지 중 일부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소유주의 매도 희망가격과 총사업비 보상비 금액 차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
시흥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건립	2,147	2,147	-	100.0	-	•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라 사업 일정 순연되어 사업비 이월함(이월: 2,147백만원) - '24.3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접수 및 수수료 집행
서울대병원 본관 물류하역장 차량동선 개선	983	-	-	-	-	• 대규모 사업비 증액, 병원 내 시행 중인 시설 사업들과 공사 시기 및 동선 연계성으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발생 우려, 병원의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미시행 결정함에 따라 불용액(983백만원) 발생 - '24.4월 현재 기교부 예산(89백만원) 반납 절차 진행 중

주) 2023.12.말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작성

향후 사업진행 현황,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으로 예산을 100% 교부한 뒤 전액 미집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이월시키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대병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배정인원을 설정했음에도 여전히 공공임상교수 채용인원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는 채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상시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를 지방의료원 등에서 순환근무하도록 추진한 사업임.

예비비 편성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국립대병원이 1:1로 재원을 매칭하여 추진하는 구조임.

2022년에도 예비비 93억 7,500만원 중 82억 9,200만원이 불용(집행률 11.6%)되었고, 2023년도 역시 190억 6,900만원 중 35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6.9%)되고 155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당초('22~'23) 150명 채용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전반적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2022년 결산 국회 시정요구[102]에 따라 2024년 현재는 50명 규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50명의 배정정원 중 실제 채용은 2024년 4월 기준 30명만 이루어졌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은 2명을 배정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채용 세부 현황]

(단위: 명)

병원명	배정정원	채용인원	근무시작일(인원)	지원대상 공공의료기관	진료과목
강원대병원	8	4	'22.7.29.(1)	영월의료원(2)	마취통증의학과
			'22.11.1.(1)		외과
			'22.9.1.(1)	속초의료원(1)	소화기내과
			'22.10.1.(1)	삼척의료원(1)	정형외과
경북대병원	4	2	'22.7.29.(1)	울진군의료원(1)	응급의학과
			'23.5.8.(1)	영주적십자병원(1)	신경외과
서울대병원	19	12	'22.9.1.(1) '23.11.1.(1)	경기도의료원(이천)(2)	신경과
			'22.7.29.(1) '22.9.1.(1) '22.12.30.(1)	인천적십자병원(3)	응급의학과
			'23.1.1(2) '24.3.1(1)	경기도의료원(안성)(3)	응급의학과
			'24.3.1(1)	경기도의료원(수원)(1)	재활의학과
			'23.10.16.(1)	충남서산의료원(3)	신경과(2)
			'23.11.1.(2)		가정의학과
전남대병원	2	2	'24.4.1(1)	강진의료원	정형외과
			'24.4.1(1)	목포시의료원	재활의학과
전북대병원	5	4	'22.7.29.(2)	진안군의료원(3)	신경과

102)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범사업의 적정 수요를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단위: 명)

병원명	배정정원	채용인원	근무시작일(인원)	지원대상 공공의료기관	진료과목
			'23.12.1.(1)		내과
					정형외과
			'24.3.1(1)	군산의료원(1)	안과
충남대병원	7	5	'23.3.1(1) '23.9.1(1)	공주의료원(2)	외과
					신경과
			'23.3.1(2)	서산의료원(2)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23.9.1(1)	천안의료원(1)	소아청소년과
충북대병원	3	1	'24.1.15.(1)	청주의료원(1)	신경외과
경상국립대병원	2	-	-	-	
부산대병원	-	-	-	-	
제주대병원	-	-	-	-	
소계	50	30			

주) 2024.4.기준
자료: 교육부

공공임상교수 채용을 위해 각 국립대병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배정인원을 설정했음에도 여전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는 채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25. 매치업 운영 사업: 학습과정 이수율 제고 방안 필요 등

가. 개 요

‘매치업 운영’ 사업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8억 8,8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103]

[2023년도 매치업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28,301	28,301	-	-	28,301	28,301	-	-	19,401
매치업 운영	3,888	3,888	-	-	3,888	3,888	-	-	3,792

나. 검토의견

첫째, 학습과정 신청자 수 대비 이수율이 과거보다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매치업 과정은 의료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매년 2~4개의 신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4개씩 개발하여 2년간 운영하는 사업임.

2023년은 2022년에 선정된 4개 분야(의료메타버스, D.N.A., 지능형 농장, 클라우드)의 과정과 2019~2021년에 선정된 분야의 일부 과정들이 진행되었음.

최근 5년간 학습자 신청현황을 보면 2019년 4,706명(3개 분야), 2020년 16,834명(6개 분야), 2021년 26,036명(8개 분야), 2022년 51,411명(9개 분야), 2023년 51,370명(11개 분야)으로, 2022년까지는 1개 분야당 학습자수가 1,568명→2,806명→3,255명→5,712명으로 증가해오다가 2023년에는 4,670명으로 하락하였음.

1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근 5년간 매치업 분야별 학습자 통계]

(단위: 명)

선정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분야당 학습자수)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 자동차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지능형 자동차	드론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대체에너지	의료메타버스	D.N.A.	지능형 농장	클라우드	
2019	3,093	1,481	132	-	-	-	-	-	-	-	-	-	-	-	-	-	4,706 (1,568)
2020	2,496	2,363	460	1,173	9,857	485	-	-	-	-	-	-	-	-	-	-	16,834 (2,806)
2021	817	581	268	1,587	13,803	1,083	2,890	5,007	-	-	-	-	-	-	-	-	26,036 (3,255)
2022	-	-	-	1,115	24,029	933	1,578	11,596	3,934	1,005	4,819	2,402	-	-	-	-	51,411 (5,712)
2023	-	-	-	982	23,542	-	-	8,806	4,175	1,571	5,136	1,273	934	1,078	2,041	1,832	51,370 (4,670)
합계	6,406	4,425	860	4,857	71,231	2,501	4,468	25,409	8,109	2,576	9,955	3,675	934	1,078	2,041	1,832	150,357

주) 신청자 기준
자료: 교육부

그런데 분야별로 학습과정 신청자 수 대비 이수자 수를 보면 이수율이 과거보다 저조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매치업 과정별 학습자 통계]

(단위: 명, %)

분야	선정 연도 (운영기간)	신청자수 (A)	이수자수 (B)	이수율 (B/A)	직무능력인증평가*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수 (합격률)
인공지능	2018 (2018.9.~2021.7.)	6,406	2,120	33.1	19(0.9)	0(0.00)
빅데이터	2018 (2018.12.~2021.7.)	4,425	774	17.5	40(5.2)	12(30.0)
스마트물류	2018 (2019.8.~2021.7.)	860	599	69.7	89(14.9)	36(40.5)
스마트팜	2019 (2020.9.~2023.11.)	4,857	1,966	40.5	646(32.9)	380(58.8)
신에너지 자동차	2019 (2020.9.~2023.12.)	71,231	41,209	57.9	1,664(4.0)	954(57.3)
블록체인	2019 (2020.9.~2022.11.)	2,501	816	32.6	288(35.3)	90(31.3)
스마트시티	2020 (2021.3.~2022.12.)	4,468	1,069	23.9	41(3.8)	31(75.6)

(단위: 명, %)

분야	선정 연도 (운영기간)	신청자수 (A)	이수자수 (B)	이수율 (B/A)	직무능력인증평가*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수 (합격률)
지능형 자동차	2020 (2021.4.~2023.12.)	25,409	14,383	56.6	817(5.7)	704(86.2)
드론	2021 (2022.1.~2023.12.)	8,109	1,463	18.0	606(41.4)	606(100.0)
가상·증강현실	2021 (2022.3.~2023.12.)	2,576	524	20.3	524(100.0)	524(100.0)
빅데이터	2021 (2022.6.~2023.12.)	9,955	1,110	11.2	498(44.9)	498(100.0)
대체 에너지	2021 (2022.5.~2023.12.)	3,675	1,130	30.7	1,130(100.0)	1,086(96.1)
의료 메타버스	2022 (2023.3.~2023.12.)	934	244	26.1	200(82.0)	200(100.0)
D.N.A.	2022 (2023.4.~2023.12.)	1,078	170	15.8	170(100.0)	170(100.0)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2022 (2023.3.~2023.12.)	2,041	546	26.8	546(100.0)	546(100.0)
클라우드	2022 (2023.4.~2023.12.)	1,832	386	21.1	386(100.0)	386(100.0)

주 1) 2023.12. 말 기준
2) 2021년 선정 분야부터 직무능력인증평가와 이수평가(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증 발급을 위한 평가)를 일원화
자료: 교육부

예를 들어, 2018년 선정된 인공지능 분야는 33.1%, 스마트물류 분야는 69.7%의 이수율을 보였으나, 2021년에 선정된 드론,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분야는 각각 18.0%, 20.3%, 11.2% 등의 낮은 이수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2022년에 선정된 4개 분야는 모두 이수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남.

「2023년 매치업 기본계획」 상에서도 학습지속 동기 부족, 중도 포기자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등 이수율이 낮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이수율이 낮고 중도포기가 많은 이유가 단순히 학습자 개인의 문제인지, 교육과정과 매치업 효용성의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2021년 선정 분야부터 이수평가(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증 발급을 위한 평가)와 직무능력인증평가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수자들이 대부분 직무능력인증평가 합격자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능력인증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수율도 높여야 할 것임.

둘째, 매치업의 효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체에서의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함.

교육부는 매치업 수강자(인증자)에 대해 여러 기업들에서 구직자 채용, 재직자 인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매치업에 참여한 컨소시엄 기업에의 채용연계 등 일부 사례[104]에 국한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되고 있지 아니함.

[매치업 활용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채 용			인 사		누적 합계 (중복제거)
	성적우수자 인턴 채용	채용 시 가점 부여	채용 시험 일부 면제	승진·진급 시 가점 부여	사내 교육 시간 인정	
활용기업 수	45	102	22	45	101	15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기업의 채용, 인사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나, 매치업 과정의 출발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에서의 활용은 일종의 유인책인데 기업의 활용도가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일반 직업교육 온라인강의(취업역량강화 강좌)와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교육부는 수강자 일부의 수강후기 외에 실제로 매치업 과정을 통해 직무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지, 기업체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104) <매치업 기업 활용사례>

채용시험 일부 면제	- 신에너지자동차, 지능형자동차 분야 학습자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채용 지원 시, 매치업 교육과정 우수 학습자 서류 전형 면제 - D.N.A 분야 교육 학습자, 건솔루션 서류시험 일부 면제
채용시 가점 부여	- 클라우드 분야 학습자, 메타넷 티플랫폼 채용 - D.N.A 분야 학습자, 건솔루션 채용시 가점 부여
인턴십 채용	- 클라우드 분야 심화과정 우수 이수자 메타넷 티플랫폼 취업 연계 인턴 채용 - 드론 분야 우수 이수자 TS무인항공 방제 보조로 활동 - 빅데이터 심화과정 이수자의 진로상담을 통해 데이터스트림즈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사내 교육시간 인정	- 클라우드 분야 학습 시 메타넷 디지털, 메타넷 글로벌, 메타넷 티플랫폼의 사내 직무능력교육인정시간으로 인정 - D.N.A 분야 학습 시 건솔루션 사내 직무능력교육시간으로 인정 - 스마트팜 분야 학습 시 팜한농 재직자 사내교육 인정
자격증 취득 연계	- 드론 분야 이수시 비행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TS무인항공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및 드론 정비사 자격증 취득 연계

자료: 교육부

26.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전문기술석사과정 활성화 및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내실화 필요

가. 개 요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의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1억 1,0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음[105)]

[2023년도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마이스터대 지원	12,110	12,110	-	-	12,110	12,110	-	-	15,110

나. 검토의견

첫째,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저조한 학교가 있으므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마이스터대는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을 말하며,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 6개교를 선정하였음.

[마이스터대 선정 현황]

구 분	연번	전문대학	과정명
2021~2022년 시범운영대학	1	대림대	방송음향 등 5개 과정
	2	동양미래대(주관)	클라우드 컴퓨팅/실내건축 큐레이션
		연성대(협력)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ICT)
	3	동의과학대(주관)	물리치료
		부산보건대(협력)	
	4	영진전문대	초정밀금형

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마이스터대 지원(R&D)(4602-402)(평생직업교육정책관)

구 분	연번	전문대학	과정명
	5	한국영상대(주관)	실감형융합콘텐츠
		아주자동차대(협력)	미래자동차
2023년 참여대학	1	대구과학대	공간정보
	2	대구보건대	바이오헬스
	3	대전보건대	신기술진단검사/특수의료장비진단・치료향상
	4	동원과학기술대	항공메카트로닉스
	5	연암대학교	스마트 축산/스마트 원예
	6	울산과학대	미래모빌리티제조

자료: 교육부

마이스터대 정책의 핵심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인데, 전문기술석사과정이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여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학위 취득이 가능한 과정을 말함.

[기존 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비교]

구분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 목적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 전문 직업 분야의 전문가 양성	○ 전문기술분야의 고숙련 전문가 양성
근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고등교육법」제49조의2
학위	○ 석사 및 박사	○ 석사	○ 석사 및 박사	○ 석사
가능 대학	○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 전문대학
설치	○ 자율	○ 자율(단, 사이버대학은 인가)	○ 자율(단, 박사과정 설치는 사전심사)	○ 인가
교육 대상	○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수업 형태	○ 주간(또는 야간)	○ 야간(계절 또는 주간)	○ 주간(또는 야간)	○ 주말 또는 야간 등 다양한 형태 활용 ○ 재직자, 성인 학습자 특성 고려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자료: 교육부,「2024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기본계획」, 2024.1.

그런데 전문기술석사과정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저조한 학교가 있으므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한국영상대학교는 2022년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이 50%, 2023년에도 51.4%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 과정, 메카트로닉스시스템 과정, ICT융합안전공학 과정, 동양미래대학교의 실내건축 큐레이션 과정, 울산과학대학교 미래모빌리티제조 과정 등이 2023년 4월 1일 기준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2023년 전문기술석사과정 정원 대비 입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	전문기술석사과정명	2022년		2023년	
			입학정원	입학생	입학정원	입학생
2022년 인가대학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	10	10	**10**	**5**
		방송음향네트워크	10	10	10	9
		BIM설비유지관리	10	10	10	10
		메카트로닉스시스템	10	10	**10**	**4**
		ICT융합안전공학	10	10	**10**	**2**
	동양미래대학교	클라우드 컴퓨팅	10	10	10	7
		실내건축 큐레이션	10	10	**10**	**0**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	10	10	10	10
	부산보건대학교	물리치료	6	6	6	6
	아주자동차대학교	미래자동차	15	8	15	15
	연성대학교	통합건축 ICT	10	10	10	10
	영진전문대학교	초정밀금형	30	30	30	30
	한국영상대학교	실감형융합콘텐츠	**40**	**20**	**35**	**18**
2023년 인가대학	대구과학대학교	공간정보	-	-	20	20
	대구보건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	-	-	45	45
	대전보건대학교	신기술진단검사	-	-	5	5
		특수의료장비진단·치료향상	-	-	5	5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항공메카트로닉스	-	-	12	12
	아주자동차대학교	첨단산업융합계열	-	-	5	5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	-	-	10	9
		스마트원예	-	-	10	10
	울산과학대학교	미래모빌리티제조	-	-	**10**	**0**
	한국영상대학교	첨단산업융합	-	-	**5**	**2**

주) '22.4.1. 및 '23.4.1.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입학생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후기 모집을 통해 100% 충원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영상대학교 실감형융합콘텐츠 과정의 경우, 전공(영상편집)을 추가하여 교육과정을 다각화하는 등 모집 미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향후 전체적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이 활성화되도록 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마이스터대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균형있게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2021~2022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선정 대학인 5개교에 대해 연차평가(사업기간 2022.3.~2023.2.)를 실시하였음.[106]

그런데 대학이 기재한 핵심성과지표를 검증할 수 있는 정량평가는 20%의 비율로 설정하고, 대학이 제출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 패널 토의를 통해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80%의 비율로 설정하여 정성평가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107]

[연차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지 표	배점
정량 (20점)	핵심 성과지표 (20점)	학생충원율(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5점
		산업계 요구 교과목 개설 비율	5점
		교육과정 이수 비율	5점
		근로자 학생 참여율	5점
정성 (80점)	사업 목표 (10점)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노력	5점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5점
	운영 실적 및 계획 (50점)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 실적과 계획*	15점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신규 운영 실적과 계획*	15점
		교원 확보 및 운영 실적과 계획*	5점
		학생지원 실적 및 계획*	5점
		교육환경 및 시설 운영 실적과 계획*	5점
		기업,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기여 실적과 계획	5점
	재정집행 실적 및 계획(5점)	재정집행 실적의 적절성 및 계획	5점
	성과관리 실적 및 계획(15점)	성과관리의 적절성 및 계획	5점
		성과지표 분석 및 관리와 계획*	10점
합계			100점

자료: 교육부

106) 한국연구재단, 「2022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2024.2.

107) 교육부는 정성평가 지표 중 일부 지표는 정량적 실적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연차평가는 A등급 2개교, B등급 3개교로 5개교에 20억원씩 균등 배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종합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서면으로만 100% 정성평가로 진행하였는데, 최종 평가등급도 A등급 4개교, B등급 1개교로 산출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108]

향후 마이스터대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의 비중을 좀 더 높여 정성평가와의 비중을 균형있게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108) 이에 대해 교육부는 C등급 대학 사업비의 10%를 삭감하여 A등급 대학에 인센티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C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이 없어 사업비 삭감 및 인센티브 지급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함.

【사학진흥기금】

<수 입>

27.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수납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는 융자금 원금회수액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1,807억 7,000만원 중 1,503억 900만원이 수납(수납률 83.1%)되고, 304억 6,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109]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융자원리금 연체이자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169억 5,300만원 중 11억 4,100만원이 수납(수납률 6.7%)되고, 158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110]

[2023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37,994	137,994	180,770	150,309	-	30,461	83.1	137,099
기타경상이전수입	2,010	2,010	16,953	1,141	-	15,812	6.7	2,243

나. 검토의견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조속히 융자원금과 연체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학진흥기금의 수입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9) 사학진흥기금-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지역인재정책관)

110) 사학진흥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지역인재정책관)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모두 융자연체이자로서,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 총괄표]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A+B)			수납(A)			미수납(B)
	소계	융자연체이자	기타	소계	융자연체이자	기타	융자연체이자
2019	9,864	9,166	698	2,430	1,732	698	7,434
2020	11,412	10,636	776	2,137	1,361	776	9,275
2021	13,544	12,005	1,539	2,162	623	1,539	11,382
2022	14,410	13,960	450	477	27	450	13,933
2023	16,953	16,505	448	1,141	693	448	15,812

주) 기타는 예수금, 법인세 환급 등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연체이자를 사업별로 보면 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행복기숙사 지원 융자금의 연체이자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사업별 징수결정 총괄표]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구분	징수결정(A+B)	수납(A)	미수납(B)
2019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9,166	1,732	7,434
2020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0,635	1,360	9,275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1	1	-
	소계	10,636	1,361	9,275
2021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2,005	623	11,382
2022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3,960	27	13,933
2023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5,954	693	15,261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551	-	551
	소계	16,505	693	15,812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2023년 미수납액은 304억 6,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한국국제대학교 행복기숙사 융자원금 92억 5,400만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임.

[최근 5년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미수납 대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	명지대학교	대학	12,398	9,048	9,048	9,048	9,048
2	예원예술대학교	대학	233	3,784	-	-	161
3	명신대학교	대학	166	-	-	-	-
4	동양대학교	대학	-	-	-	650	-
5	성화대학	전문대학	383	383	383	-	-
6	고구려대학	전문대학	68	41	-	-	-
7	동두천여자중학교	중등이하	3,406	3,406	3,406	3,406	3,406
8	동두천고등학교	중등이하	3,251	3,251	3,251	3,251	3,251
9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중등이하	2,603	2,603	2,603	2,603	2,603
10	동두천중학교	중등이하	2,026	2,026	2,026	2,026	2,026
11	경성유치원	중등이하	1,397	572	412	413	413
12	명현학교	중등이하	146	146	146	146	146
13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중등이하	73	-	-	-	-
14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	-	-	-	153
15	한국국제대학교 행복기숙사	SPC	-	-	-	-	9,254
소계			26,150	25,260	21,275	21,543	30,461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융자사업 연체이자와 융자원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학기관의 재정 악화와 학교법인 파산 등의 사유로 융자원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함. 특히, 2023년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학교)의 파산 선고('23.7.12.)에 따른 미수납액(92억 5,40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융자원금 미상환에 따른 연체이자가 누적됨에 따라 연체이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미수채권에 대한 ① 상환 독촉 고지, ② 담보권 행사, ③ 소송을 통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111] 2024년도부터는 미수채권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배치하였다고 설명함.

111) <2019~2024년 1분기 미수 원금 및 미수 연체이자 회수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분기)
회수 원금	-	4,441	3,985	383	650	1,987
회수 연체이자	1,732	1,361	623	27	693	429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그러나 명지대는 2020년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동두천여중·동두천고·한국문화영상고 및 명현학교 등은 2019년 미수납이 해소되지 않아 매년 융자연체이자(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더욱이, 한국국제대학교 행복기숙사의 경우 학교법인 파산으로 융자 원리금 미수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조속히 융자원금과 연체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학진흥기금의 수입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 출>

28.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융자실적 저조

가. 개 요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되어 청산 진행 중인 법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운영비·임금체불 등의 채무변제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106억 5,000만원 중 4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되고, 101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112]

[2023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10,650	10,650	-	10,650	454	-	10,196	4,450

나. 검토의견

2023년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4.3%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사업 소요예산의 추계를 보다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절차[113]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청산절차에 필요한 운영비[114]와 채무변제 비용[115]을 융자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3년 당초 청산지원 융자 계획액 106억 5,000만원 중 2개교에 4억 5,4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12) 사학진흥기금-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2861-305)(지역인재정책관)

113)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임금 체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면 청산이 완료됨

114) 감정평가 수수료, 소송 비용, 매각공고, 보유재산 유지·관리비 등

115) 직원의 체불임금 등 확정된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집행실적]

(단위: 원)

법인명	지원내용	융자액
경북교육재단	청산절차 운영비, 임금체불 등 채무 변제금	210,660,302
계약학원	청산절차 운영비, 임금체불 등 채무 변제금	243,000,000
합 계		453,660,302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해산법인(신규 발생 법인 포함) 대상 수요조사 결과(3개교, 106억)[116]를 기초로 계획액을 산출하였으나, 1개 법인이 파산하여 융자지원이 불가하였고, 2개 법인의 신청 수요액 감소에 따라 융자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2년에도 예산현액 114억 4,200만원 중 62억 4,400만원만 집행(집행률 54.6%)되었고, 2023년 역시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업 소요예산의 추계를 보다 엄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폐교 및 해산법인 현황]

구분	학교급	학교명(법인명)	폐교일	법인처분일	청산여부	채무변제용 융자지원	잔존 채무액주	비고
강제 폐쇄	대학	아시아대학교 (아시아교육재단)	'08.2.29.	'08.2.29.	미진행	-	확인불가	-
		선교청대학교(대정학원)	'12.8.31.	'12.8.23.	미진행	-	확인불가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14.2.28.	'13.12.17.	미진행	-	확인불가	-
		대구외국어대학교 (경북교육재단)	'18.2.28.	'17.10.27.	진행중	'22. 16억원 '23. 1.3억원	19억원	'22~'23년 재단 융자금
		서남대학교(서남학원)	'18.2.28.	'17.12.13.	진행중	-	96억원	소송 중
	전문 대학	성화대학교(세림학원)	'12.2.29.	'11.12.2.	진행중	'22. 44억원	-	청산 종결 등기 진행 중
		서해대학교(군산기독학원)	'21.2.28	'21.1.22.	진행중	-	31억원	소송 중 (미확정 채무액)
	각종 학교	개혁신학교(개혁신학원)	'08.2.29.	'08.2.29.	진행중	-	-	청산 종결 등기 진행 중
자진 폐지	대학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약학원)	'23.1.17	'23.1.17	진행중	'23. 1.6억원	2.4억원	'23년 재단 융자금

주) 채무 원금 기준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116) (대구외대) 4.5억원 + (계약신학대학원대) 4.5억원 + (한국국제대) 97억원(파산)

참고로, 현재 청산지원 융자의 대상이 되는 대학(학교법인)은 9개이며, 그 중 융자 수요가 있는 대학(학교법인)은 2024.5.10. 기준 1개 법인(4,000만원)임.

[2024년 융자수요 희망 현황]

(단위: 원)

구분	청산 절차 운영비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합계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대구외국어대학교)	33,638,300	6,399,660	40,037,960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 출>

29.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융자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573억 7,000만원 중 541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4%)되고, 32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117]

[2023년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고대여학자금융자	41,481	57,370		57,370	54,162	-	3,208	37,125

나. 검토의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계획액의 범위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재원부족을 사유로 2023년 7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사업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사업으로 158억 8,900만원을 전용(증)하였음.

1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국고대여학자금대융자(6036-300)(교원학부모지원관)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에 따르면, 2023년 고금리 및 고물가에 따른 국고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 등을 사유로 전용하였음.

[기금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증 체크리스트]

<table>
<tr><th>체크 리스트</th><th>검토 내용</th></tr>
<tr><td>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td><td>-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국고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
〈최근 5개년 기준금리 및 물가상승률〉
<table>
<tr><th>구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 6월</th></tr>
<tr><td>기준금리*</td><td>1.75%</td><td>1.25%</td><td>0.5%</td><td>1.0%</td><td>3.25%</td><td>3.5%</td></tr>
<tr><td>물가상승률</td><td>1.5%</td><td>0.4%</td><td>0.5%</td><td>2.5%</td><td>5.1%</td><td>-</td></tr>
</table>
* 연도말 한국은행 기준금리</td></tr>
<tr><td>②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td><td>- 국고대여학자금융자의 2학기 지급이 집중되는 8월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td></tr>
</table>

자료: 교육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발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의 발생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118] 예상과 달리 학자금 융자 수요가 증가한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음.

다만, 동 사업은 교육부의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2.5.)」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2년 계획액(531억 8,200만원) 대비 11% 감축한 472억 9,2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고, 최종 정부안에는 414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음.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계획액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평가제도[119]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119)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계획액의 범위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년 실시한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3.5.)」에서도 국고학자금 이용률 감소 예상, 중복수혜 문제점 미해소, 퇴직자 상환관리 대응책 부족 등을 이유로 '미흡' 평가등급을 받아 다시 한번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3년 계획액(414억 8,100만원) 대비 10% 가량 감축된 37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미흡사유]

ㅇ (성과목표 미달) [국고학자금 대여이용률]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학연금 국고학자금 수혜자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교직원 수는 대학 부속병원 직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음

< 최근 3년간 국고학자금 수혜자 수 및 총 교직원수 증감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수혜자 수(증감율)	17,174(△12.0%)	14,870(△13.4%)	13,970(△6.1%)
총 교직원수(증감율)	327,697(1.3%)	327,864(0.7%)	333,231(0.9%)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부적절) 학령 인구 감소 및 장학금의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학자금대여 이용률 성과지표의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2022년 목표치 : 2019~2021년 평균 실적(5.3)보다 14% 높은 목표 설정

(단위: %)

국고학자금대여 이용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 표	7.4	6.7	5.9	6.0
실 적	6.0	5.2	4.5	4.2

주) 국고학자금대여 이용률 실적 산출 산식 : (수혜자 수 / 총 교직원 수) * 100

ㅇ (사업 우수성 및 인지도 부족) 중복수혜 문제점이 완전 해소 되지 않음
ㅇ (제도 개선 부족) 퇴직자 상환 관리 문제에 대한 대응책 부족

자료: 교육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3. 발췌

국가교육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0원임.[1)]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23.8%)이 적은 75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1,300만원(83.8%)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59	1,455[2)]	1,220	△235	9,891	9,891	7,533	△2,358	6,313
총지출	259	1,455	1,220	△235	9,891	9,891	7,533	△2,358	6,313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 국가교육위회 출범('22.9.27.)에 따라 예비비 11억 9,700만원 편성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0원임.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9억 1,900만원으로, 이 중 75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9%)되고 11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9,891	9,891	28	-	-	9,919	7,533	1,140	1,245
합 계	9,891	9,891	28	-	-	9,919	7,533	1,140	1,24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교육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9억 6,9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등으로 1,4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타유동자산이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사업 등 선급금으로 12억 8,700만원 증가하였고 무형자산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신규취득 등으로 3억 2,2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함.

부채는 없음.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3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3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3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969	374	1,595	426.5
		유동자산	1,287	-	1,287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57	271	△14	△5.2
		무형자산	424	102	322	315.7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969	374	1,595	426.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381	918	5,463	595.1
	재정운영순원가		6,381	918	5,463	595.1
	재정운영결과		6,381	918	5,463	595.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회의・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 법정회의 운영, 국가교육발전・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및 정책연구 추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확립 및 조사・분석・점검 체계 구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지연과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국가재정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연 등

가. 개 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7억 4,100만원 중 14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3%)되고 2억 2,900만원이 이월되어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476	1,476	4	261	1,741	1,433	229	79	1,922
일반연구비	700	700	0	△318	381	247	111	24	450

일반연구비는 ‘홈페이지 고도화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을 위해 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1,800만원이 전용 감액된 예산현액 3억 8,1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3) 일반회계-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참여지원과)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지연과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 고도화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임.

[2023년도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내용]

사업명	내 용
홈페이지 개편	위원회 출범과 함께 필수메뉴 중심으로 구축된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메뉴·기능을 추가하고 품질관리 및 보안 사항 점검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국민들이 ①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 ②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당초 일반연구비 7억원 중 3억 1,8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및 국민의견 플랫폼에 필요한 상용 SW를 구매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3,300만원은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개발에, 2억 1,400만원은 홈페이지 고도화에 각각 집행하고, 1억 1,100만원은 이월되었음.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구분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 연구비	홈페이지 고도화	개발	312	297	208	89	15
		감리	22	22	0	22	
		수수료	6	6	6		
		소계	340	325	214	111	15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개발		33	33	33		
자산 취득비	솔루션 (상용SW) 구매	구매	316	316	316		
		수수료	2	2	2		
		소계	318	318	318		
기타	집행잔액		9				9
계			700	676	565	111	2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그런데 2023년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2023년 11월에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7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2023년도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현황]

일 자	사업추진 내용
'23.11.27.	홈페이지 구축 사업 용역 계약 체결
'24.1.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업무 분석
'24.2.~'24.3.	홈페이지 구축 사업 설계 감리
'24.3.	화면디자인 컨셉 협의 및 시안 제작
'24.4.	화면디자인 및 콘텐츠 확정
'24.5.	시스템 개발
'24.6.	통합테스트·관리자교육 및 종료감리
'24.7.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및 안정화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처럼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사업은 상반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을 2024년에 집행하거나, 2024년도 예산으로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관계 규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게시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4]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대하여 국민이 의견을 게시하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게시판임.[5)]

그런데 2024년 5월 기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현황을 보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2024년 3월에 2건,[6)] 2024년 4월에 1건에 불과하고,[7)] 동의인원도 거의 없어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의 작성항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둘째, 동의요건의 인원수가 과도하다는 점 때문임.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동의요건 및 작성항목]

요청내용	동의 요건	작성항목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30일 이내 20만명 동의	제목, 적용대상, 필요성(500자 이내), 관련 현행 국가교육과정(500자 이내), 요청내용(1,000자 이내), 기대 효과(500자 이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90일 이내 10만명 동의	제목, 교육정책 개요(500자 이내), 해당 정책 관련 주요 쟁점(500자 이내), 국민의견 수렴·조정 필요성(1,000자 이내), 국민의견 수렴방법(100자 이내)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전문가 등이 아닌 일반 국민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제된 글을 게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요건 또한 10만명(교육정책), 20만명(국가교육과정)으로,[8)] 동의 인원수가 과도하여 요

5) 동 게시판 구축에 별도의 예산 3,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게시판을 개선·고도화하는 사업이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임.

6) ○요청건명: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고 등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 등 조속히 마련 필요
-동의기간: ’24.3.8.~’24.4.6.
-동의인원 6명
○요청건명: 즐거운 생활 미술 교과 운영방안에 대한 미술교육계 입장
-동의기간: ’24.3.30.~’24.4.28.
-동의인원 0명

7) ○요청건명: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변경
-동의기간 ’24.4.16.~’24.5.15.
-동의인원 0명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처럼 국민의견 제시의 작성과 동의 요건이 오히려 국가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국가재정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제46조제5항에 따르면,[9]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담금을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나,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음.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5.1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7019-200)	320-09	21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9-250)	210-09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
전용 ('23.5.1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7019-200)	320-09	45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9-250)	430-01	
전용 ('23.11.1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9-250)	260-01	318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9-250)	430-01	상용SW구매를 위해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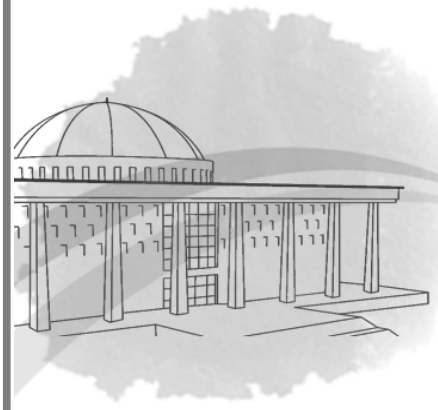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향후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7,018억 4,100만원(7.7%)이 많은 9조 7,672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888억 9,100만원(19.4%)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797,422	6,797,422	6,595,316	△202,106	7,132,008	7,132,008	8,184,158	1,052,150	1,588,842
기 금	1,534,087	1,534,087	1,583,085	48,998	2,351,568	1,933,443	1,583,134	△350,309	49
총수입	8,331,509	8,331,509	8,178,401	△153,108	9,483,576	9,065,451	9,767,292	701,841	1,588,891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140억 6,500만원(1.1%)이 많은 18조 9,381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23억 3,200만원(4.4%)이 증가함.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5,122,300	14,942,825	14,831,753	△111,072	15,981,107	15,981,107	16,200,515	219,408	1,368,762
기 금	3,322,909	3,305,109	3,304,083	△1,026	2,767,196	2,742,996	2,737,652	△5,343	△566,430
총지출	18,445,209	18,247,934	18,135,836	△112,098	18,748,302	18,724,102	18,938,167	214,065	802,332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조 2,954억 2,600만원으로 11조 9,670억 6,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조 9,100억 9,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5%)되고 10억 9,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558억 7,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30,367	330,367	-	330,367	399,890	377,757	67	22,0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149	10,149	-	10,149	12,554	12,554	-	-
- 지역지원계정	10,149	10,149	-	10,149	12,456	12,456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73	73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25	25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	3,830	3,830	-	-
우편사업특별회계	5,424,404	5,424,404	-	5,424,404	4,889,741	4,858,362	263	31,117
- 자본계정	245,654	245,654	-	245,654	234,954	234,645	-	309
- 손익계정	5,178,750	5,178,750	-	5,178,750	4,654,787	4,623,717	263	30,80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4,415,712	4,415,712	-	4,415,712	5,620,317	5,617,273	760	2,283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 자본계정	15,297	15,297	-	15,297	17,464	17,447	-	17
- 손익계정	4,400,415	4,400,415	-	4,400,415	5,602,853	5,599,826	760	2,26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40,784	1,040,784	-	1,040,784	965,419	965,349	-	7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37,301	37,301	-	37,301	36,866	36,633	-	233
- 자본계정	6,905	6,905	-	6,905	6,847	6,847	-	-
- 손익계정	30,396	30,396	-	30,396	30,019	29,786	-	23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36,709	36,709	-	36,709	38,445	38,336	-	109
- 자본계정	6,484	6,484	-	6,484	7,399	7,399	-	-
- 손익계정	30,225	30,225	-	30,225	31,046	30,937	-	109
합 계	11,295,426	11,295,426	-	11,295,426	11,967,062	11,910,094	1,090	55,87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1조 6,970억 3,800만원으로, 이 중 20조 3,531억 2,000만원을 집행(집행률 93.8%)되고 935억 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2,503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8,723,015	8,723,015	11,338	-	-	8,734,344	8,641,137	38,755	54,44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45,759	445,759	-	-	-	445,759	437,121	-	8,638
- 투자계정	445,759	445,759	-	-	-	445,759	437,121	-	8,63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14,439	614,439	-	-	-	614,439	614,205	197	38
- 지역지원계정	550,258	550,258	-	-	-	550,258	550,024	197	38
- 지역자율계정	63,241	63,241	-	-	-	63,241	63,241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70	470	-	-	-	470	470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470	470	-	-	-	470	470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432,230	432,230	-	-	-	432,230	431,737	-	493
우편사업특별회계	5,424,404	5,424,404	12,630	-	-	5,437,035	4,760,037	45,473	631,528
자본계정	245,655	245,655	12,230	-	-	257,885	189,120	41,115	27,653
손익계정	5,178,749	5,178,749	400	-	-	5,179,150	4,570,917	4,358	603,87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4,415,713	4,415,713	1,834	-	-	4,917,547	4,539,688	7,862	369,995
자본계정	15,297	15,297	1,574	-	-	16,871	8,652	7,668	552
손익계정	4,400,416	4,400,416	260	-	-	4,900,676	4,531,036	194	369,44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40,784	1,040,784	284	-	-	1,041,068	857,938	383	182,74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37,301	37,301	-	-	-	37,301	35,599	840	862
자본계정	6,905	6,905	-	-	-	6,905	5,870	826	209
손익계정	30,396	30,396	-	-	-	30,396	29,729	14	65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36,709	36,709	606	-	-	37,315	35,658	60	1,591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자본계정	6,484	6,484	550	-	-	7,034	6,693	57	284
손익계정	30,225	30,225	56	-	-	30,281	28,965	3	1,307
합 계	21,170,354	21,170,354	26,692	-	-	21,697,038	20,353,120	93,570	1,250,33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조 3,171억 800만원으로 5조 5,987억 9,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조 5,964억 5,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23억 3,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과학기술진흥기금	170,161	170,161	117,700	117,400	-	300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08,566	208,566	365,786	365,786	-	-
방송통신발전기금	1,480,802	1,480,802	2,282,819	2,281,383	-	1,436
정보통신진흥기금	1,562,746	1,457,579	2,832,488	2,831,890	-	599
합 계	3,422,275	3,317,108	5,598,793	5,596,459	-	2,335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조 3,171억 800만원으로, 이 중 2조 9,675억 2,7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5%)되고 2억 4,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7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과학기술진흥기금	170,161	170,161	-	170,161	117,400	-	2,060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08,566	208,566	-	208,566	209,222	-	240
방송통신발전기금	1,480,802	1,480,802	-	1,480,802	1,168,663	176	5,707
정보통신진흥기금	1,562,746	1,457,579	-	1,457,579	1,472,242	68	2,712
합 계	3,422,275	3,317,108	-	3,317,108	2,967,527	244	10,719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산은 전년 대비 8,146억 6,600만원이 증가한 18조 5,899억 3,5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5,681억 1,300만원, 투자자산이 2,436억 7,9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6,627억 9,200만원 증가한 7조 7,145억 800만원으로, 이는 유동부채가 5,774억 1,0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9,537억 4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481억 2,700만원이 감소한 10조 8,754억 2,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2조 8,250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억 2,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조 3,99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4억 9,3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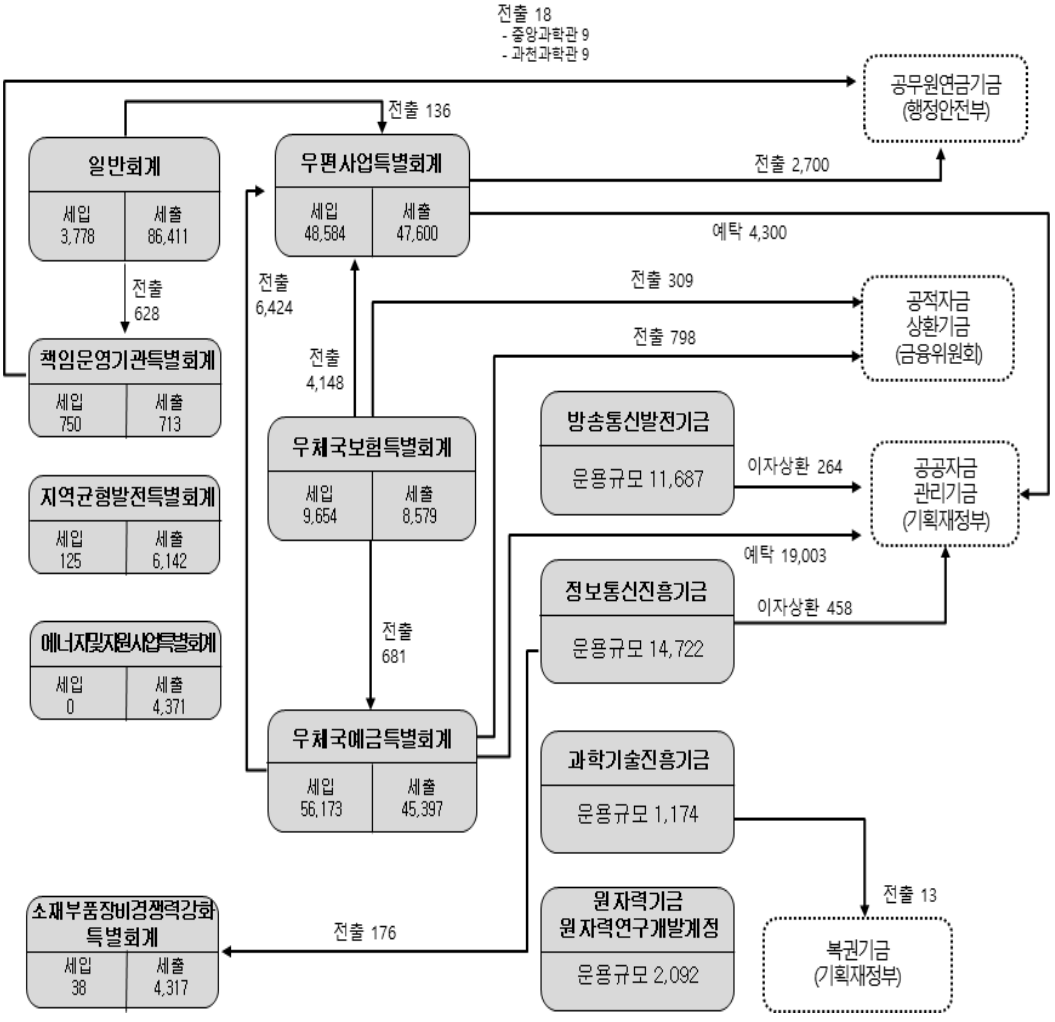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8,589,935	17,775,269	814,666	4.6
	유동자산	4,260,775	3,692,662	568,113	15.4
	투자자산	2,192,249	1,948,570	243,679	12.5
	일반유형자산	11,996,950	12,084,034	△87,084	△0.7
	무형자산	116,816	18,876	97,940	518.9
	기타비유동자산	23,144	31,127	△7,983	△25.6
	부 채	7,714,508	6,051,716	1,662,792	27.5
	유동부채	2,945,014	2,367,604	577,410	24.4
	장기차입부채	3,836,633	2,882,929	953,704	33.1
	장기충당부채	139,502	127,713	11,789	9.2
	기타비유동부채	793,359	673,470	119,889	17.8
	순자산	10,875,427	11,723,554	△848,127	△7.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825,070	12,773,145	51,925	0.4
	재정운영순원가	11,990,956	11,857,781	133,175	1.1
	재정운영결과	11,399,366	11,243,873	155,493	1.4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의 8개 회계와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AI·SW 우수인재 양성, AI반도체,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우주항공청 설립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나,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사용이므로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투자를 허용하고, 집행내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여 후속 점검을 받도록 당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0~2023년 R&D 종료과제 중 2024년 5월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1,806개이고, 정산완료 과제 중에서도 정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42억 3,100만원으로 상당한데, 현재 정산완료 기한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정산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상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들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집단연구지원(R&D) 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통합 Ezbaro에 등록하지 않은 과제가 다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등록 과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적시등록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사업에서 과제공고 또는 해외국가와의 계약 지연으로 최종집행률이 30% 미만으로 특히 부진한 7개 과제는 향후 연례적인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기에 해외기관과의 신속한 계획 조율을 통해 보다 면밀히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번 사례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민간의 재원이 국가재정 운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국가녹색연구소 등 13개 출연연구기관은 청사이전사업, 주차장 환경개선,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연구개발적립금의 성격과 무관한 경상적 경비에 지출 또는 지출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기관발전사업' 의 범위가 모호하여 발생한 현상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적립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사업의 경우, 집행이 부진한 기관은 자체적인 시설사업 집행 개선(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전년도 이월액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2023년 예산액이 교부되어 차년도 이월액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집행할 필요가 있음.

4.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우주항공청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2)]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개 세부사업(6,500억 800만원)과 산업통상자원부 15개 세부사업(396억 4,200만원)을 2024년 5월 27일부로 이체받았고, 그 외 2개 세부사업(150억원)은 예비비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합한 2024년 예산액은 7,046억 5,000만원임.

2023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당해 세부사업들을 집행하였고, 본예산 7,104억 4,700만원 중 7,071억 8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였음.

[우주항공청 이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	2023년			2024년 예산	이체부처
		본예산	결산	집행률		
일반회계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31,420	31,420	100.0	19,126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스페이스챌린지(R&D)	13,800	13,800	100.0	4,3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41,610	41,610	100.0	25,457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92,951	92,951	100.0	93,71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R&D)	8,470	8,470	100.0	4,235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차세대발사체개발(R&D)	29,000	29,000	100.0	110,106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국가위성 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R&D)	11,435	11,435	100.0	7,217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R&D)	-	-		2,5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	-		1,4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17,696	17,696	100.0	15,783	과기정통부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	2023년			2024년 예산	이체부처
		본예산	결산	집행률		
일반회계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12,793	12,793	100.0	24,0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R&D)	2,800	2,800	100.0	3,321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	-		4,0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	-		10,0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R&D)	67,503	67,503	100.0	80,136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885	885	100.0	1,72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R&D)	9,400	9,400	100.0	2,154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32,909	32,909	100.0	27,591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5,700	5,700	100.0	2,6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1,000	1,000	100.0	3,0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1,030	1,030	100.0	655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1,500	1,476	98.4	1,046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19,190	116,299	97.6	100,165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 지원(R&D)	-	-		11,253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67,872	67,479	99.4	54,984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한국천문연구원 시설 지원(R&D)	-	-		1,355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혁신도전형)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12,280	12,280	100.0	11,107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R&D)	4,128	4,128	100.0	3,648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DNA+드론기술개발(R&D)	9,825	9,825	100.0	3,625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433MHz기반드론 응용통신기술개발(R&D)	3,600	3,600	100.0	3,20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	9,450	9,450	100.0	9,350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전파연구시험시설(정보화)	1,932	1,926	99.7	457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전파업무정보화(정보화)	2,770	2,745	99.1	1,031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37,458	37,458	100.0	-	과기정통부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	2023년			2024년 예산	이체부처
		본예산	결산	집행률		
일반회계	다목적실용위성7호성능개량사업(R&D)	7,000	7,000	100.0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뉴스페이스투자지원	5,000	5,000	100.0	5,000	과기정통부
	스페이스이노베이션(R&D)	4,000	4,000	100.0	776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R&D)	-	-		-	산업부
일반회계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3,150	3,150	100.0	3,850	산업부
일반회계	그린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	-		3,000	산업부
일반회계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	-		200	산업부
일반회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3,072	3,072	100.0	2,678	산업부
일반회계	수소연료전지기반탑재중량200kg급 카고드론기술개발(R&D)	4,795	4,795	100.0	2,573	산업부
일반회계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 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R&D)	1,155	1,155	100.0	1,139	산업부
일반회계	eVTOL자율비행핵심기술및비행안정성, 운용성시험평가기술개발(R&D)	4,367	4,367	100.0	5,548	산업부
일반회계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R&D)	7,087	7,087	100.0	4,353	산업부
일반회계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 (Clean Wing) 모듈 개발(R&D)	3,213	3,213	100.0	4,282	산업부
일반회계	스마트캐빈 기술개발(R&D)	2,617	2,617	100.0	506	산업부
일반회계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 개발(R&D)	3,461	3,461	100.0	3,242	산업부
일반회계	헬리콥터전기식 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R&D)	4,470	4,470	100.0	2,402	산업부
일반회계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R&D)	6,653	6,653	100.0	3,869	산업부
일반회계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	-		2,000	산업부
일반회계	아르테미스2호 탑재 큐브위성 개발	-	-		7,000	예비비
일반회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		8,000	예비비
합 계		710,447	707,108	99.9	704,650	-

주) 음영표시된 세부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호의 발생이자 사용 규정 개정 필요

가.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R&D 사업은 과기부에서 한국연구재단 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거쳐 연구수행기관에 연구비가 교부되는 형태로 사업이 수행됨.

[R&D 연구과제 연구비 교부 흐름]

(소관부처) 과기부	(교부) →	연구관리 전문기관 (NRF, IITP 등)	(재교부) →	(사업수행기관)	(최종집행) →

이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이 연구비를 교부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연구비 관리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부와 실집행의 간극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게 됨.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연구비를 받고, 당해 연구비 수령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연구수행기관은 총 47,299개 기관이며, 해당 금액은 528억 4,946만원임.[3)]

[총 발생이자와 대표적인 과제(상위 5개)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이자금액
한국형발사체 고도화(R&D)	(재)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90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관리 과제)	한국원자력연구원	1,21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616
425사업 EO/IR 위성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84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건설관리 과제)	한국원자력연구원	475
그 외 47,294개 기관 발생이자 합		48,771
총 발생이자 금액		**52,84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함.

나. 검토의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나,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사용이므로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투자를 허용하고, 집행내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여 후속 점검을 받도록 당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호에 따르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② 연구개발에 재투자, ③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④ 국고에 납입, 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정은 이자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4)]

2023년의 경우, 총 발생이자 528억 4,946만원 중 223억 9,200만원은 국고에 반납처리되었고, 이를 제외한 304억 5,800만원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재투자하는 등 연내 집행되었음.

[2023년 연구수행기관 연구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총 발생이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국고반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52,849	24,464	5,336	55	22,392	60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이처럼 이자금액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음.

그러나 ① 과거 20여년 간 이자의 집행 또는 국고반납 여부가 연구수행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②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재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국고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회의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외에도 ③ 연구수행기관은 국고금을 조기에 교부받아 연구비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을 늘려 사업비를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재투자 등 자의적인 사용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한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투자를 허용하고, 당해 집행내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여 후속 점검을 받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5)6)]

참고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비해 연구개발출연금이 집행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사후점검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7)]

---

5)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생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을 개정할 경우 연구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후에 집행내역을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나, 동 이자는 국고금에서 발생한 이자로써 국회의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연구현장의 혼란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법령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동 검토보고서 **‘8.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사업: 슈퍼컴퓨터 시스템 도입의 추가 지연 방지 및 발생이자 국고 반납 필요, 12.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지연으로 인한 이월금 과다 및 발생이자의 국고반납 필요, 13.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및 민간 기술이전 성과지표 관리 필요’** 참조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미수납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등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처분(이하 ‘제재처분’)을 부과함.[8)9)]

2018~2023년 6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R&D 과제는 515개이고, 이를 대상으로 20억 9,5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127억 3,200만원의 연구개발비 환수금이 발생함.

[2018~2023년 제재처분 받은 R&D 과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과제 수 및 제재부가금, 연구개발비 환수금 현황		
	과제 수	제재부가금	연구개발비 환수금
2018년	79	733	2,699
2019년	153	222	4,434
2020년	91	279	1,718
2021년	78	567	1,910
2022년	66	212	1,027
2023년	48	82	944
합계	515	2,095	12,73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8)「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9)「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2018~2023년까지 제재처분으로 인한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국고반납을 통보받았으나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국고에 반납되지 못한 미환수금이 30억 2,400만원이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를 해야하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10)]

그러나 2018년부터 제재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 중 납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아직 국고에 반납되지 못한 미환수금(D)은 30억 2,400만원임.

미환수금 중 15억 2,000만원은 2018년에, 8억 4,500만원은 2019년에 각각 발생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국고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외에도 2020년 1억 5,700만원, 2021년 5,700만원, 2022년 100만원, 2023년 4억 4,400만원이 수납되지 못하였음.

---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8~2023년 제재처분 받은 R&D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개)

구분	당해년도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 (A)	연구수행기관이 납부한 환수금** (B)	미환수금 (C=B-A)			미환수율 (C/A)	미환수율 (D/A)	미환수과제수
				납기가 도래한 금액 (D)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납부유예액) (C-D)			
2018년	3,432	1,892	1,540	**1,520**	20	44.8	44.2	8
2019년	4,656	2,195	2,460	**845**	1,615	52.8	18.1	15
2020년	1,997	1,491	506	**157**	349	25.3	7.8	7
2021년	2,476	2,419	57	**57**	0	2.3	2.3	4
2022년	1,231	1,230	1	**1**	0	0.1	0.1	1
2023년	1,026	582	444	**444**	0	43.3	43.3	1
계	14,818	9,816	5,008	**3,024**	1,984	33.8	20.4	36

* 환수금 : 제재부가금 + 연구개발비 환수금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은 제외함)

** 연구수행기관이 전문기관에 납부한 환수금이 아닌, 부처에 최종적으로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즉, 국고 반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환수금)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부정사용하거나 연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비를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 국고의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납부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에 따른 환수금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11]

11)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고 미환수금을 신속히 환수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3.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및 미정산·미반납 과제의 면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함.[13]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14][15]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16]

---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2020~2023년 R&D 종료과제 중 2024년 5월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1,806개이고, 정산완료 과제 중에서도 정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42억 3,100만원으로 상당한데, 현재 정산완료 기한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정산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2020~2023년 각 연도 말(12월 31일) 종료된 R&D 과제 중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806개임.

[2020~2023년 종료된 R&D 과제 중 미정산 과제 수]

(단위: 개)

과제 종료연도	미정산 과제 수		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년	10	10	20
2021년	8	12	20
2022년	38	32	70
2023년	571	1,125	1,696
계	627	1,179	1,806

주) 2024년 5월 1일 기준임
자료 :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재구성

또한 정산이 완료되어 국고반납액이 결정된 R&D 과제 중에서도 2020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600만원, 2021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3억 4,800만원, 2022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21억 5,300만원, 2023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17억 2,500만원이 아직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음.

1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정산금 미반납 과제의 미반납금액]

(단위: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미반납 금액		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년	-	6	6
2021년	93	255	348
2022년	132	2,021	2,153
2023년	1,454	271	1,725
계	1,679	2,553	4,231

주) 2024년 5월 1일 기준임

자료 :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은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산과 관련하여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R&D 종료과제의 정산기한에 대한 범부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술하였듯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2020~2023년 연말에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정산이 다수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회수금에 대한 반납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17)]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완료되어 연구비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정산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기한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제83조제3항에 따라 정산 완료 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7) 동 검토보고서 **"14.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R&D), 24. 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25.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26.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정보화)"** 참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실적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등 기술료 수입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됨.[18)]

정액기술료는 연구과제 성공 판정 후 사업화매출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대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의 4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을 납부하는 것이고, 경상기술료는 사업화 실시로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그 산정방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름.[19)]

[경상기술료 산정방식]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 × ‘기술기여도’(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협약 시 정함) × ‘요율’(대기업 0.2, 중견기업 0.1, 중소기업 0.05)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21.1.1. 시행)으로 2021년 신규 R&D 과제부터는 경상기술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화 매출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기술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변화한 기술료 제도]

구분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2021.1.1. 이후)
납부방식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정액기술료 폐지)
경상기술료	납부한도	부처별 상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납부기준	부처별 상이	상술한 경상기술료 산정방식 참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회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총 5개 회계·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항목에서 기술료를 수납받고 있음.

이하 2020~2023년 기술료 수납액 현황을 보면, 정액기술료는 2020년 191억 3,771만원에서 2023년 15억 1,940만원으로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상기술료는 2020년에 비해 2022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증가하였으나 당해 증가폭이 정액기술료의 감소폭에 비해 크지 않아 전체 기술료 수납액은 감소하였음.[20]

20) 이러한 기술료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피해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제도(2020~2022년 한시적 시행)로 인해 기술료 감면 금액은 이하 표와 같음.

(단위: 천원, 건)

연도	기술료 감면 건수	기술료 감면 금액	감면사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제2항)			
			제1호 (국가안보와 관련)	제2호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제3호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제4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
2019	36	377,442	-	-	-	36
2020	170	276,489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	140
2021	104	692,688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77
2022	164	1,971,099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59
2023	14	112,319	-	-	-	1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2023년 기술료(정액·경상기술료)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정액기술료	19,137.71	14,798.43	3,798.16	1,519.4
경상기술료	1,099	290	69	466
계	20,236.71	15,088.33	3,866.96	1,985.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들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경상기술료는 기업들의 ‘과제 관련 사업화매출액’과 ‘기술기여도’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제출한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 등이 기재된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기술료를 부과함.[21)]

개요에서 설명하였듯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21.1.1. 시행)으로 2021년 신규 R&D 과제부터는 경상기술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2019~2022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수는 2019년 437개에서 2023년 664개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9년 64개, 2020년 56개, 2021년 15개, 2022년 79개의 기업이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69개, 2020년 76개, 2021년 253개, 2022년 90개 기업이 매출실적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22)]

---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2) 2023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 664개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019~2023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의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사)

연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수 (A=B+C)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기업수(B=a+b)			미제출 기업수(C)
		계(B)	기한 내 제출 (a)	기한 경과 제출 (b)	
2019	437	368	304	64	69
2020	473	397	341	56	76
2021	660	407	392	15	253
2022	660	570	491	79	90
2023	664	232	232	-	43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경상기술료 책정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늦게 부과하여 수납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23)]

또한 상술한 '2020~2023년 기술료(정액·경상기술료) 수납액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정액기술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경상기술료 수납액 증가폭은 정액기술료의 감소폭에 비해 크지 않은데, 이에 더하여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기술료 수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성과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와 연구자 보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들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3) 또한 기업이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을 철저하게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일반회계】

<세 입>

5. 과징금: 연례적으로 저조한 수납률 개선 필요

가. 개 요

‘과징금’ 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과징금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24억 6,700만원 중 6억 8,300만원이 수납(수납률 27.7%) 되고 미수납액은 17억 8,400만원임.[24)]

[2023년도 과징금 결산]

(단위: 백만원)

2023									2024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D/C)	예산액
본예산	추경(A)								
876	876	-	876	2,467	683	1,784	-	27.7	87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연구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폐업 등 사유에 따른 장기미수납으로 인해 2020년부터 연례적으로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고, 이는 수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납관리가 필요함.

동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수납률)을 살펴보면, 2020년 34.3%, 2021년 27.0%, 2022년 28.8%, 2023년 27.7%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4) 일반회계-과징금(56-565)(운영지원과)

[2020~2023년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022	1,022	1,022	2,685	920	90.1	34.3	1,765	-
2021	1,022	1,022	1,022	2,420	655	64.1	27.0	1,765	-
2022	697	697	697	3,043	877	125.8	28.8	2,167	-
2023	876	876	876	2,467	683	78.0	27.7	1,784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미수납액 17억 8,400만원은 대부분 2019~2020년에 최초결의가 이루어진 징수 건으로,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6526호, 2019.8.27. 시행)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등으로 2023년 말까지 수납되지 못하고 있음.[25)][26)]

[미수납액 17억 8,400만원의 미수납사유]

(단위: 원)

최초결의일자	최초납입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위반법령	미수납사유
2019-01-09	2019-01-25	507,003,920	-	507,003,92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재력부족(재무상태 불량)
2019-03-25	2019-04-09	58,801,570	-	58,801,570		폐업 및 해산간주
2019-12-05	2020-01-07	11,893,760	-	11,893,760		폐업
2019-12-05	2020-01-07	26,419,560	-	26,419,560		폐업
2020-04-09	2020-05-15	7,598,680	7,598,680	-		-
2020-04-09	2020-05-15	7,258,060	-	7,258,060		재력부족 (신용회복지원대상자)

25)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6526호, 2019.8.27. 시행)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위: 원)

최초결의일자	최초납입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위반법령	미수납사유
2020-04-09	2020-05-15	375,000,000	-	375,000,000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2020-04-09	2020-05-15	210,714,280	-	210,714,280		재력부족 (기업 영업이익 없음)
2020-04-09	2020-05-15	22,946,860	22,946,860	-		-
2020-04-09	2020-05-15	162,476,850	-	162,476,850		폐업 및 파산
2020-05-22	2020-06-30	375,000,000	-	375,000,000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2022-07-11	2022-08-09	18,437,570	-	18,437,57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폐업
계		1,783,551,110	30,545,540	1,753,005,570	-	-

주) 수납액 30,545,540원은 2024년 5월 말 기준 수납액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법령,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이고 특히 동 세입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미수납은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의 규범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납관리가 필요함.

<세 출>

6. 집단연구지원(R&D) 사업: 연구비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시 등록 및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등 방지 필요

가. 개 요

‘집단연구지원(R&D)’ 사업은 소규모 연구그룹으로 구성된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4,133억 9,6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 하였음.[27)]

[2023년도 집단연구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집단연구지원(R&D)	413,396	413,396	-	-	413,396	413,396	-	-	419,698

한국연구재단은 4,133억 9,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326억 2,900만원과 매칭금 255억 9,8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4,716억 2,300만원 중 3,329억 4,600만원을 집행(최종집행률 70.6%)하고, 1,383억 6,400만원을 이월하고 3억 1,300만원이 불용됨.

[2023년 집단연구지원(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9개 기관)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413,396	413,396	413,396	413,396	413,396	32,629	25,598	471,623	332,946	138,364	313	70.6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27) 일반회계-집단연구지원(R&D)(1234-302)(기초원천연구정책관)

동 사업은 ‘기초연구실’ 내역사업과 ‘선도연구센터’ 내역사업으로 구분되고, 연구수행기관의 최종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구실 내역사업은 교부현액 1,895억 5,800만원 중 1,431억 9,000만원을 집행(최종집행률 75.5%)하였고, 선도연구센터 내역사업은 교부현액 2,820억 6,500만원 중 1,897억 5,600만원을 집행(최종집행률 67.3%)하였음. 또한 3억 1,300만원을 제외한 1,383억 6,4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됨.

[2023년 집단연구지원(R&D) 내역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매칭 (C)	교부현액 (D=A+B+C)	최종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기초연구실	178,555	11,003	-	189,558	143,190	46,055	313	75.5
선도연구센터	234,841	21,626	25,598	282,065	189,756	92,309	-	67.3
계	413,396	32,629	25,598	471,623	332,946	138,364	313	70.6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통합 Ezbaro에 등록하지 않은 과제가 다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한 내에 연구비를 미등록하는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적시등록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28)]

기초연구실 내역사업 중 133개 과제는 2023.12.31. 기준 최종집행률이 70% 미만이었음.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이 종료하였으나 집행내역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가 129개, 이직으로 협약이 해약된 과제가 2개, 국가연구개발과제 초과 수행(3책 5공 위반)으로 협약이 해약된 과제가 2개임.

28) 통합Ezbaro란 연구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수행기관이 집행한 연구비 내역을 등록・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임.

['기초연구실' 내역사업 대상 최종집행률 70% 미만인 과제 구분]

(단위: 개)

계	집행내역 통합 Ezbaro 미등록	협약해약 (이직)	협약해약 (R&D 과제 초과 수행)
133	129	2	2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선도연구센터 내역사업 중 18개 과제는 2023.12.31. 기준 최종집행률이 70% 미만인데,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이 종료하였으나 집행내역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가 17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으로 협약이 해약된 과제가 1개임.

['선도연구센터' 내역사업 대상 최종집행률 70% 미만인 과제 구분]

(단위: 개)

계	집행내역 통합 Ezbaro 미등록	협약해약 (제재처분)	협약해약 (R&D 과제 초과 수행)
18	17	1	-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우선, 일괄지급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사전에 연구비를 지급받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연구비 사용 내역을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유인이 낮은데, 이러한 경우 연구비를 연말에 집중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집행실적 파악이 투명하지 못하여 예산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제2항 제1호는 연구비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를 기한 내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29)30)]

---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둘째, 연구개발과제 참여 수 위반으로 연구가 중단되거나, 타 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책임연구원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연구가 중단된 과제가 있었는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RIS를 통한 면밀한 과제관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한 것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성실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임.[32]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33]

그러나 당해 사업에서는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초과 수행으로 2개 과제는 2023년 11월 29일에 연구수행이 중단되었고, ② 1개 과제는 타 과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당해 과제에 참여했고, 이에 더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원이 회의비 및 국외여비 등을 부정집행하여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과제가 중단되었음.[34]

---

3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은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며,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으로 2022년 1월에 개통한 후 각 부처 전문기관의 R&D 과제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이 2024년 6월 기준 거의 완료되었음.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3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34) 과제중단 상세 사유
① 연구책임자의 타 과제 참여제한 사유 : 2011~2014년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집행으로 참여제한 6개월 및 환수금 18,926,724원 부과(2019.1.15. 최초처분 시 37,853,449원을 부과하였으나, 패소(재량권 일탈·남용) 후 1/2 감경하여 2023.8.7. 18,926,724원으로 재처분)

[R&D 과제 초과 수행으로 연구수행이 중단된 과제 현황]

내역사업명	연구수행 기관명	연구수행과제명	최종집행률 부진사유
기초연구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종 암 유전체 진단용 고감도 Universal Bio Processor 연구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초과 수행, 2023.11.29.) 초과 수행 과제 수 : 9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저항성 고형암종 치료를 위한 항암 면역패치 설계 및 작용기전 연구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초과 수행, 2023.11.29.) 초과 수행 과제 수 : 4개
선도 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탄소중립형 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선도연구센터	① 연구책임자의 타 과제 참여제한으로 인해 특별평가 후 협약해약(과제중단일: 2024.01.24.) ② 공동연구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회의비 및 국외여비 부정집행)으로 인한 제재처분 절차 진행 중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협약해약일 및 과제중단일을 보면 2023.11.29. 또는 2024.1.24.로써 회계연도 말에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과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미 진행된 연구를 중단하게 됨에 따른 매몰비용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김.

현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전 부처 R&D 과제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연구자 선정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책임자의 타 과제 참여제한 사유〉

세부사업명	과제명	용도 외 사용액 (원)		
		연도	학생인건비	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KOREA CCS2020)	고투과선택성 CO2분리막 소재를 위한 공·채널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2011	2,652,808	2,652,808
		2012	7,601,256	7,601,256
		2013	13,233,373	13,233,373
	CO2 포집용 나노탄소 분리막 대면적 모듈 제작 및 실증화 전략	2014	14,366,012	14,366,012
	총 계		37,853,449	37,853,44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공동연구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세부내역 : 2022~2023년 회의비 부정집행 금액 757,900원 및 국외여비 부정집행 금액 30,536,639원으로 참여제한 3년 6개월, 환수금 31,294,539원, 제재부가금 31,294,539원 (처분의 사전통지: 2023.12.18.) 부과

7.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중이온가속기 선행R&D’ 내역사업은 가속장치의 고에너지 구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액 22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35)36)]

[2023년 중이온가속기 선행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E/D)	
	본예산	추경(A)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R&D)	52,132	52,132	9,442	±1,962	61,574	31,813	29,493	267	51.7	33,375
중이온가속기 선행R&D	2,230	2,230	-	-	2,230	2,230	-	-	100.0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중이온가속기 선행R&D 내역사업은 시제품 발주가 지연되어 2023년 예산현액 49억 3,600만원 중 13억 4,500만원만 집행(집행률 27.2%)되었는데, 이월금이 대부분 2024년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인 발주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향후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중이온가속기 선행R&D 내역사업은 부처 및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3년 예산액 22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연구소는 교부현액 49억 3,600만원 중 13억 4,500만원만 최종집행(집행률 27.2%)하였음.

3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사업의 내역사업이고,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연구소가 수행하는 출연사업임.

36) 일반회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1640-300)(공공융합연구정책관)

[2023년 중이온가속기 선행R&D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66부액(B)	전년도 이월액(C)	교부현액(D=B+C)	최종집행액(E)	이월액	불용액	최종집행률(E/D)
2,230	2,230	2,230	2,230	2,230	2,706	4,936	1,345	3,591	-	27.2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이월금 27억 600만원은 SSR1·SSR2 시제품 제작 및 기반시설 확충에 집행되어야 하나, 동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2.12.1.~2025.12.31.(37개월)로 1차년도(2022년) 사업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여 이월된 것임.[37)38)]

그러나 전년도 이월액 27억 600만원 중 13억 4,500만원만 2023년에 집행되고 잔액을 포함한 35억 9,100만원은 이월되었는데,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SSR1 초전도가속모듈 시제품만 계약이 완료되고 타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에 집행예정임.

[이월액의 향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집행내역	집행예정시기	집행금액
SSR1 초전도가속모듈 시제품	2024.1. 계약완료	1,000
SSR2 초전도가속모듈 시제품	2024.10.	1,500
SSR2 튜너 시제품 제작	2024.8.	81
성능시험 부품 및 시설 운전 등	~ 2024.12.	449
기타 연구수행 경비	~ 2024.12.	561
계	-	3,59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SSR(Single Spoke Resonator)은 가속장치 후단부에서 고에너지를 초전도 가속시키는 장비임.

38) 2022년 예산액 42억 600만원 중 전기료에 15억원이 집행되고 잔액 27억 600만원이 이월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요세부내역	금 액
1차년도(2022년)	SSR1 시제품 제작	766
	SSR2 시제품 제작	1,494
	SSR1/2 공통	146
	기반시설 확충	300
합 계		2,70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주가 순연되고 있는 시제품은 중이온 및 희귀동위원소 빔을 가속시키기 위해 구축되는 고에너지 초전도 선형가속장치로써, 본제품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비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인 발주 지연으로 본제품 제작 등 후속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수행기관에서 집행상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을 적기에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의 출연금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39)]

3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사업: 슈퍼컴퓨터 시스템 도입의 추가지연 방지 및 발생이자 국고반납 필요

가. 개 요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사업은 초고성능컴퓨터(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184억 2,3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였음.[40]

[2023년도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18,423	18,423	-	-	18,423	18,423	-	-	18,183

한국연구재단은 184억 2,3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교부현액 184억 2,300만원 중 91억 8,000만원을 집행(최종집행률 49.8%)하고, 92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18,423	18,423	18,423	18,423	18,423	-	-	18,423	9,180	9,243	-	49.8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 일반회계-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1159-425)(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월액 92억 4,300만원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기반시설 구축비가 일부 미집행되면서 발생함.

[KISTI에서의 이월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

구분	연구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C)	매칭 (D)	교부현액 (E=B+C+D)	최종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집행률 (F/E)
초고성능 컴퓨터6호기 기반시설 구축	18,423	-	-	18,423	9,180	9,243	-	49.8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GPU 등 핵심부품 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시스템 구매입찰이 2023년 4차례 유찰되었고, 가격 상승을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2024년 9월에 종료되어 그 이후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연구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KISTI 연구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향후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있음.

초고성능 컴퓨터 6호기 시스템 구매입찰이 4차례 진행되었으나 챗GPT 등 수요 폭증과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GPU 등 핵심부품 시장가격 상승으로 4차례 모두 유찰되었음.

1차 및 2차 공고 유찰 이후 주요 성능지표는 유지하되, 비핵심 장비 위주로 조정하여 3차 및 4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에 무응찰 하였음.

[초고성능 컴퓨터 6호기 시스템 유찰 현황]

구분	기간	결과
1차 시스템 공고	2023.5.31.~7.26.	무응찰
2차 시스템 공고	2023.7.27.~8.8.	무응찰
3차 시스템 공고	2023.9.14.~10.26.	무응찰
4차 시스템 공고	2023.10.27.~11.7.	무응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에 따라 사업예산·기간 및 추진방식 개선 등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기획재정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SITEP)이 2024년 3월부터 추진 중이며 9월에 재검토가 종료되고 사업예산이 증액되면, 2024년 3분기부터 시스템 구매계약 조달 수수료 및 선금 지급 등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41]

[이월금 및 2024년 예산액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계획
초고성능 컴퓨터 6호기 시스템 구축	18,183	9,243	27,426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잔금 18,905 시스템 구매 계약 조달 수수료 1,400 시스템 계약 후 선금 지급 7,12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이 추가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1차 공고(5월) 이전에 사업비 184억 2,300만원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92억 4,300만원이 KISTI 연구비 계좌에 남게되어 약 3,793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발생이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사업에 재투자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연구비에 재투자하여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함임.[42]

그러나 당해 사업의 발생이자는 연구수행기관의 집행부진으로 인해 국고금을 교부받고 집행하는 시점이 지연되어 발생한 이자이고, 현재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당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이자의 성격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43]

4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교부시점 및 발생이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KISTI		KISTI 최종집행	발생이자
	교부날짜	금액	교부날짜	금액		
기반시설구축비용	2023.1.31.	1,300	2023.3.2.	1,300	9,180	38
	2023.2.16.	7,880		7,880		
초고성능컴퓨팅호기 시스템구축비용	2023.2.16.	2,394	2023.3.2.	2,394	-	
	2023.3.15.	3,973	2023.3.27.	3,973		
	2023.4.18.	2,876	2023.5.4.	2,876		
계	-	18,423	-	18,423	9,180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본 보고서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호의 발생이자 사용규정 개정 필요”** 참조

9.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R&D) 사업: 연구비 집행내역의 Ezbaro 적시 등록 및 글로벌 R&D의 조기 계획수립 필요

가. 개 요

‘국가간 협력기반조성(R&D)’ 사업은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229억 3,8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44]

[2023년도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R&D)	22,938	22,938	-	-	22,938	22,938	-	-	23,985

한국연구재단은 교부액 229억 3,800만원 중 222억 7,750만원을 집행(집행률 97.1%)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226억 8,200만원 중 151억 1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66.6%)하고, 75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을 불용함.

[2023년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 (북유럽과기협력센터 등 105개 기관)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22,938	22,938	22,938	22,277	22,277	404	-	22,682	15,101	7,547	34	66.6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44) 일반회계-국가간 협력기반 조성(R&D)(4731-402)(국제협력관)

동 사업은 이하 4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동연구는 해외 상대국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 인력교류는 국외 연구자와 장·단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하는 것, 협력센터는 해외 현지국가와 국내 산학연의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것, 협력활동은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역사업별 결산은 아래와 같음.

[2023년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R&D) 내역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최종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최종집행률 (D/C)
공동연구	9,624	288	9,912	6,219	3,659	34	62.7
인력교류	1,189	3	1,193	741	452	-	62.1
협력센터	8,585	-	8,585	6,271	2,314	-	73.0
협력활동	2,879	114	2,993	1,869	1,124	-	62.4
계	22,277	404	22,682	15,101	7,547	34	66.6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일정 지연 등 외부변수를 고려하여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총 283개 과제 중 최종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89개이며, ① 2023년도 4분기 개시 과제로 집행이 부진한 과제가 48건, ② 상대측 연구자와 인력교류 활동 일정이 2024년 2월 이후에 계획된 과제가 14건, ③ 통합 Ezbaro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구비 등록이 연동되지 않아 집행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례가 27건으로 나타남.

[내역사업별 최종집행률 50% 미만인 과제 사유 현황]

(단위: 개)

구분	과제 수	집행부진사유		
		2024년에 연구활동 개시	상대측 연구자와 2024.2. 이후에 일정 합의	통합 Ezbaro 연구비 미등록
공동연구	54	27	-	27
인력교류	25	11	14	-
협력센터	2	2	-	-
협력활동	8	8	-	-

(단위: 개)

구분	과제 수	집행부진사유		
		2024년에 연구활동 개시	상대측 연구자와 2024.2. 이후에 일정 합의	통합 Ezbaro 연구비 미등록
계	89	48	14	27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특히 전액 미집행된 과제는 이하 28개 과제인데,[45] 그 중 15개 연구과제가 2023년 4분기에 시작하여 교부액의 대부분이 20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될 예정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간 협력과제 추진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획에 따른 과제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임.

다만 2024년에 비로소 연구활동이 개시되거나 연구활동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62개 과제의 경우, 국제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일정 지연 등 외부변수를 고려하더라도 2023년 연말에서야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다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집행내역을 통합 Ezbaro에 등록하지 않아 집행실적 파악이 부정확하였던 27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제70조제2항제1호에서 연구비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를 기한 내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46]

45) 연구비를 연말에 몰아서 입력함에 따라, 연구비 입력 후 2023.12.31. 기준 전액 미집행된 과제는 28개로 감소하였으며, 28개 과제 중 2024.5.8. 기준 집행률이 50.0% 미만인 과제는 6개임.

4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연구수행기관 수준에서 전액 미집행된 과제]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	연구수행 기관명	해외 협력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수행개시일	교부액	2024 예산액
공동 연구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Indian Institute of Science	양자 증강형 비선형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바이오 및 나노 구조체 이미징 연구	2023-12-27	10	40
	동국대학교	CCIR-CEERI	400/800-V 배터리용 재구성 가능한 초소형 양방향 OBC 개발	2023-12-27	10	40
	부산대학교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orkee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한 음이온교환막 수전해조 기반 수소연료 생산 협동 연구	2023-12-27	10	40
	서울대학교	Jawaharlal Nehru Centre for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열전 에너지 변환을 위한 위상 양자 재료 개발	2023-12-27	10	40
	서울대학교	Indian Institute of Science Bangalore	6G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센싱 및 통신 통합 시스템	2023-12-27	10	40
	서울대학교	Amrita Vishwa Vidyapeetham, Kochi Campus,	지속 가능한 전기 이동성을 위한 멜라닌 함유 유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2023-12-27	10	40
	성균관 대학교	Indian Institute of Science	디스플레이 후면 기판용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 기반 초저전력 NCFET	2023-12-27	10	40
	인하대학교	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멤리스터 크로스바 어레이를 활용한 뉴로모픽 컴퓨팅 및 뉴로 최적화 기법 개발	2023-12-27	10	40
	중앙대학교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Jodhpur	지속가능한 ICT를 위한 생분해성 전자 소자에 대한 한-인도 공동연구	2023-12-27	10	40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Indian Institute of Science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담수화 기반 PV 패널 냉각 기술 개발	2023-12-27	10	40
	국민대학교	Zhejiang University	식물 알칼로이드인 그라민 및 호르데닌의 독성 및 섭식 억제 활성을 매개하는 수용체 규명 연구	2023-12-18	15	6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Chinese Academy of Sciences	항공우주용 초고속 반응 SAW 가스 센서의 센싱 메커니즘 및 감지 칩 개발에 관한 연구	2023-12-18	15	60
	충남대학교	Southeast University	연속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피부 집적형 사물인터넷 반도체소자 연구	2023-12-18	15	60
인력 교류	경희대학교	INSERM(1266)	화학항암제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억제성 사이신경세포와 수초화 역할 규명	2023-10-01	4	15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연구수행기관명	해외 협력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수행개시일	교부액	2024 예산액
	고려대학교	CNRS - UMR 7589	톱 쿼크와 힉스 입자를 통한 새로운 물리학 탐구	2023-10-01	4	15
	서울대학교	Université PARIS SACLAY	쌍곡공간의 등거리사상들의 군의 이산 부분군	2023-10-01	4	15
	성균관대학교	Universite Paris-Cite (UPC)	직교 다항식과 렉쳐홀 파티션	2023-10-01	4	15
	세종대학교	CNRS - UMR 8617	초기-후기 우주의 우주론적 공동 제약조건	2023-10-01	4	15
	포항공과대학교	Université Bordeaux	논리 동적 모형을 통한 강건 세포 리프로그래밍 예측의 이론과 적용	2023-10-01	4	15
	광주과학기술원	ETH Zurich	편광 제어와 질량 분광학 연구를 위한 터널링 이온화를 이용한 펨토초 레이저 펄스 측정 방법의 확장	2023-09-01	10	-
	서울대학교	Université Toulouse III Paul Sabatier	랜덤행렬이론과 추상조화해석학의 양자정보론에의 응용	2022-10-25	13	-
	순천향대학교	Yale University	노화에 따른 지방 조직 상주 면역세포들에 의한 신경 분포 조절 기작	2023-07-31	15	15
	울산과학기술원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국내 주요 수계 내 신종 미량 오염물질 거동 예측 모듈 개발 및 영향인자 분석 연구	2023-07-31	15	15
	한국과학기술원	Texas A&M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연구 프로그램	2023-12-22	75	-
협력센터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2023-12-18	400	400
	한-ASEAN 과학기술협력센터	-	한-ASEAN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사업	2023-12-01	488	488
협력활동	한국재료연구원	-	북한 희토류 화합물 맞춤형 소재화 조사 연구	2023-06-15	55	-
	한국연구재단	-	EU NCP 활동지원사업 - 재단	2023-03-01	70	49

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10.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사업: 과제공고 또는 해외국가와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연구과제 집행부진

가. 개 요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사업은 원자력 선진국 및 신흥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79억 5,000만원 중 79억 3,0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7%)하고 2,000만원을 불용함.[47)]

[2023년도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7,950	7,950	-	-	7,950	7,930	-	20	11,750

한국연구재단은 79억 3,000만원 중 69억 5,500만원을 교부(집행률 87.8%)하고 9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5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73억원 중 23억 8,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32.7%)하고 49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음.

연구수행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4개 기관임.

[2023년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교부 현액 (D=B+C)	최종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7,950	7,930	7,930	6,955	6,955	345	7,300	2,389	4,911	-	32.7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47) 일반회계-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R&D)(1436-409)(공공융합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집행액 2,000만원은 UAE와 협의하여 불용된 것이고, 한국연구재단의 미집행액 9억 7,500만원은 미국의 공동연구 중단 요청으로 6억원이, 영국과의 협력과제에 대한 접수과제 수 미달(2023년 4회 공고 추진하였으나 접수 미달)로 3억 7,5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과제공고 또는 해외국가와의 계약 지연으로 최종집행률이 30% 미만으로 특히 부진한 7개 과제는 향후 연례적인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기에 해외기관과의 신속한 계획 조율을 통해 보다 면밀히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 수행되는 과제들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최종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3개 과제가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며, 집행률이 30.0% 미만으로 저조한 과제가 7개임.

[연구수행기관 수준에서 최종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구수행기관명	해외 국가명	연구과제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	교부 현액(A)	최종 집행액 (B)	최종 집행률 (B/A)
한국원자력연구원	미국	고방사선환경 취급 및 안전성 강화 혁신기술 개발	1,600	161	1,761	1,148	65.2
한국과학기술원	UAE	계산과학 기반 HALEU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연소 거동 및 조사 성능 분석	380	51	431	363	84.2
한국과학기술원	UAE	나노기공구조 치밀산화층을 이용한 원전 냉각계통의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향상 기술개발	400	-	400	299	74.9
한국원자력연구원	UAE	UAE 환경을 고려한 원전 콘크리트 황산염 침식 평가기술 개발	400	93	493	150	30.3
한국원자력연구원	미국	수소화물재배열 조사 시험자료 분석 및 미조사 시편 장기 냉각거동 연구	200	39	239	39	16.4
경희대학교(국제)산학협력단	미국	용융염 고속로 구조재용 Ni기 산화물 분산강화 신합금 개발	200	-	200	84	42.1

(단위: 백만원, %)

연구수행기관명	해외 국가명	연구과제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	교부 현액(A)	최종 집행액 (B)	최종 집행률 (B/A)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수송용 소형/초소형 원자로를 위한 통합형 고집적 열교환기 및 동력변환계통 설계	200	-	200	86	43.2
한국원자력연구원	영국	방사성핵종 흡착기작 규명 및 측정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188	-	188	43	23.0
한국원자력연구원	영국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캐니스터의 방열, 차폐 성능 향상 및 저장부지 조밀화를 위한 흑연-보론 복합 차폐소재 개발	188	-	188	34	18.2
한국원자력연구원	RCA 회원국	아태지역 원자력공동연구 싱크탱크 육성 및 운영	600	-	600	112	18.7
한국원자력연구원	RCA 회원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전자선기술을 이용한 수질정화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200	-	200	26	13.0
한국과학기술원	RCA 회원국 (필리핀, 베트남)	이동형 X-선 진단장치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판독 프로그램 및 핵심요소기술개발	200	-	200	5	2.7
한국원자력연구원	미국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 타당성 한미공동연구	2,200	-	2,200	-	0.0
계	-		6,955	345	7,300	2,389	32.7

주 1) 최종집행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
2)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회원국 :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네팔, 라오스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이는 RCA 회원국과 수행하는 과제는 9개월분, 그 외 모든 과제는 12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여 각각 연구가 2023년 4월, 2023년 1월에 개시되었어야 하나, 과제 공고 또는 협약체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이하 표를 보면, RCA 회원국과 함께 수행하는 3개 과제 중 1개 과제는 2023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집행

하기에는 다소 계획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2개 과제는 2023년 6월에 과제 공고를 하여 실제 연구는 2023년 9월부터 시작됨.

또한 미국 또는 영국과 수행하는 4개 과제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나, 2023년 2월에서야 과제 공고를 하거나 2023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2023년 예산액이 반영되기 전에 해외 국가와 별도의 과제 계획 등 협의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됨.

[예산반영 기간 및 과제 공고시기(음영 표시한 집행률 30%미만 과제 대상)]

과제명	해외 국가명	2023년		과제 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기
		예산반영 기간	연구수행기간	
수소화물재배열 조사 시험자료 분석 및 미조사 시편 장기 냉각거동 연구	미국	12/12월	2023.07.01.~2024.06.30.	2021.2. 과제 공고 * 「MOST-DOE 원자력 연구협력 MOU」('96) 및 부속협약 체결('00)
방사성핵종 흡착기작 규명 및 측정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영국	12/12월	2023.04.01.~2024.12.31.	2023.2. 과제 공고 * 한-영 원자력시설 선진해체기술 개발 협력 MOU('13)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캐니스터의 방열, 차폐 성능 향상 및 저장부지 조밀화를 위한 흑연-보론 복합 차폐소재 개발	영국	12/12월	2023.04.01.~2024.12.31.	2023.2. 과제 공고 * 한-영 원자력시설 선진해체기술 개발 협력 MOU('13)
아태지역 원자력공동연구 싱크탱크 육성 및 운영	RCA 회원국	9/12월	2023.04.01.~2024.03.31.	2023.3. RCA사무국-BRIN 원자력 협력의향서 체결
전자선기술을 이용한 수질정화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RCA 회원국	9/12월	2023.09.01.~2024.05.31.	2023.6. 과제 공고
이동형 X-선 진단장치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판독 프로그램 및 핵심요소기술개발	RCA 회원국	9/12월	2023.09.01.~2024.05.31.	2023.6. 과제 공고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 타당성 한미공동연구	미국	12/12월	2023.12.31.~2024.06.12.	2023.12. CRADA 계약체결 * JFCS 추가연구 계획 수립 (제11차 운영위, '22.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48)]

특히 글로벌 R&D 사업은 해외기관과의 일정 조율 등 일반적인 R&D 과제보다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보다 조기에 과제수행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과제에서 연례적인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기에 해외기관과의 신속한 계획 조율을 통해 보다 면밀히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48)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84)

> 마.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추진
> o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적어도 1월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사업: 해외기관과의 조기 계획 수립을 통한 보다 철저한 글로벌 R&D 과제 수행 필요

가. 개 요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내역사업은 국내에 없는 해외 첨단 대형연구시설 및 선진 실험기법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현액 7억 9,1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49)]

동 사업 예산 중에는 국외여비가 5억 6,068만원으로 예산액의 약 70.9%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E/D)	
	본예산	추경(A)								
기초연구기반구축(R&D)	12,855	12,855	-	-	12,855	12,855	-	-	100.0	10,925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791	791	-	-	791	791	-	-	100.0	767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7억 9,100만원 중 7억 7,6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98.1%),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9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9억 9,500만원 중 4억 7,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48.1%)하고 5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 (한국천문연구원 등 총 28개 기관)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교부 현액 (D=B+C)	최종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791	791	791	776	776	219	995	479	516	-	48.1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49) 일반회계-기초연구기반구축(R&D)(1235-410)(공공융합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해외연구시설의 고장 및 사용가능일수 감소, 2023년 연내 해외연구시설 사용할당 미결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집행이 부진한 과제들은 해외기관과의 면밀한 사전 과제계획 수립이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 초기부터 해외기관의 조율을 통해 보다 면밀히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천문연구원 등 총 28개 연구수행기관들의 최종집행률을 살펴보면, 29개 과제 중 최종집행률이 70.0% 미만인 과제가 21개임.

[2023년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구수행기관명	해외 국가명	해외 연구시설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	교부 현액	최종 집행액	최종 집행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본	Belle II 검출기	9	18	27	21	80.8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본	Belle II 검출기	9	23	32	6	18.5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일본	Belle II 검출기	9	15	24	24	100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일본	Belle II 검출기	9	23	32	12	36.3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일본	Belle II 검출기	108	15	123	114	93.2
한국천문연구원	호주, 남아공	ASKAP, MeerKAT	19	18	37	37	99.8
울산과학기술원	호주	MWA, ASKAP	19	17	36	25	68.7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주	ASKAP	19	17	36	12	32.6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주	ASKAP	19	17	36	4	11.2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주, 남아공, 중국	MeerKAT, FAST	32	22	54	27	50.3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남아공, 호주	MWA, HERA	19	17	36	6	17.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네덜란드, 남아공, 호주	LoFAR, EVN, MeerKAT, ASKAP	19	17	36	9	24.0
울산과학기술원	중국	중국 CSNS	15	-	15	5	31.2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영국, 미국, 호주	ISIS(ENGIN-X), SNS(Vulcan), ANSTO(OPAL DINGO)	30	-	30	15	5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일본	SNS, NIST, JPARC	20	-	20	1	3.2

(단위: 백만원, %)

연구수행기관명	해외 국가명	해외 연구시설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	교부 현액	최종 집행액	최종 집행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일본	SNS, NIST, JPARC	80	-	80	10	12.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ALS synchrotron	20	-	20	1	5.5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영국	DIAMOND synchrotron	20	-	20	1	5.3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ALS synchrotron	20	-	20	1	4.8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ALS synchrotron	45	-	45	4	1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ALS synchrotron	20	-	20	1	4.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국, 프랑스	ALS, Soleil	19	-	19	18	97.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ALS, SLAC, Elettra	51	-	51	35	68.2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LBNL ALS	19	-	19	12	61.9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ALS	19	-	19	16	83.4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NSLS-II	19	-	19	15	77.6
광주과학기술원	독일	PETRA Ⅲ	20	-	20	6	30.5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독일	PETRA-Ⅲ 가속기(독일)	35	-	35	25	72.6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독일	PETRA Ⅲ	55	-	55	16	30.5
계			776	219	995	479	48.1

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집행부진 사유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연구시설 사용이 어려워 2022년 예산 중 이월금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당해 금액이 2023년에 소진되지 못하고 재이월된 과제가 8개, ② 학생 연구원의 신분변동(졸업, 건강 등)으로 인한 파견취소 및 파견일정 조정(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으로 인해 집행률이 부진한 과제가 6개, ③ 해외 연구시설의 고장으로 사용 일정이 연기되거나 사용가능일수가 감소(2022년 7일 → 2023년 3일)하여 집행이 부진한 과제가 6개,[50] ④ 사업 착수 후 해외연구시설 사용 할당을 2023년에 받지 못하고 2024년에 받은 과제가 12개이며, 위 4가지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과제가 11개임.

50)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던 연구들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용신청이 집중되면서, 해외연구시설 사용 할당량이 감소함.

[연구수행기관별 집행부진 사유]

(단위: 개)

합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연구시설 사용이 어려워 2022년 예산이 2023년으로 이월	학생연구원 개인사정으로 파견 일정 조정 ('23년→'24년)	해외연구시설 사정(고장, 사용가능일수 감소 등)으로 일정 지연	2023년 연내 해외연구시설 사용할당 미결정	(중복)
21	8	6	6	12	1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집행부진 사유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COVID-19, 학생연구원 개인사정, 해외연구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가능일수 감소, 2023년 연내 해외연구시설 사용할당 미결정 등으로 인하여 해외연구시설 방문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최종집행이 저조한 과제들은 세심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였음을 의미함.

본 사업의 과제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연구시설을 사용하는 일정을 조율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써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기에 해외기관과 계획 조율을 통해 보다 면밀히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이월금이 2024년까지 이월된 과제의 경우 이월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과제 종료 시 정산을 통해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있음.

12.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지연으로 인한 이월금 과다 및 발생이자의 국고반납 필요

가. 개 요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은 누리호보다 성능이 고도화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290억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51][52]

[2023년도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세대 발사체 개발 (R&D)	29,000	29,000	-	-	29,000	29,000	-	-	110,106

한국연구재단은 예산액 29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교부현액 290억원 중 111억 2,5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38.4%)하고 178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음.[53]

[2023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교부현액 (D=B+C)	최종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	29,000	11,125	17,875	-	38.4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 일반회계-차세대발사체개발(R&D)(1332-408)(우주항공청)

52) 2024년 5월 27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음.

53) 이월액 178억 7,500만원 중 18억 9,000만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체계종합기업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체계종합기업 선정지연으로 2024년으로 이월됨.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 132억원을 들여 수행되며, 저궤도 대형위성 및 정지궤도 위성, 달 착륙선 등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목표(2030년 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1차 발사, 2031년 달 연착륙 검증선 2차 발사,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로 함.

나. 검토의견

체계종합기업이 기존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선정되면서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고, 출연금 조기 교부로 인해 발생한 이자 2억 3,100만원은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7월 1일 1차년도 사업이 착수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정책적 제언에 대한 검토로 11월 30일에 비로소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에 들어감.[54)55)]

이후 12월 21일 1차 나라장터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KAI의 입찰참여 포기로 최종 유찰(2024.2.21.)되고,[56)] 2024년 2월 22일 2차 나라장터 재공고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독 입찰로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2024년 5월 9일 비로소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음.

[2023~2024년 동 사업 진행경과]

진행상황	날짜
1차년도 사업 착수	2023.7.1.
체계종합기업 입찰 착수	2023.11.30.
1차 나라장터 공고	2023.12.21.
1차 공고 유찰	2024.2.21.
2차 나라장터 재공고	2024.2.2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최종 계약 체결	2024.5.9.

자료 : 우주항공청

54) 누리호 3차 발사(2023.5.25.) 이후 6월 중 사업 착수계획이었으나, 부탑재위성 1기(도요셋) 미사출 원인조사에 착수하면서 약 1개월 소요되어 2023.7.1.에 1차년도 사업이 착수됨.

55)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① 동 발사체의 활용수요를 추가발굴하여 시행계획을 명확화하고, ② 수요에 기반한 적극적인 산업체의 투자 및 참여 유인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며, ③항우연과 참여기업들 간의 역할, 지적재산권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고려된 계약과 협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언이 있어, 이를 검토하는데 약 4개월이 소요됨.

56) 당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4년 2월 21일 KAI의 입찰참여 포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함.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상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재공고를 거쳐야 하여, 2024년 2월 22일 재공고가 이루어짐.

전년도 이월액 178억 7,500만원 및 2024년 예산액 1,101억 600만원을 합한 1,279억 8,100만원은 이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체계종합기업이 기존 계획(2023.10. 최종계약 체결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선정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향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2024년 예산현액	향후 예상 집행액 및 집행시기
110,106	17,875	127,981	ㅇ 기집행액(1~6월) : 32,301백만원 ㅇ 향후 예상 집행액 및 시기 - (7월) 8,528백만원 : 추진제탱크 FSW 장비 중도금 등 - (8월) 2,563백만원 : 추진제탱크 VPPA 장비 중도금 등 - (9월) 1,536백만원 : 시험설비 개조/구축 등 - (10월) 42,013백만원 : 총괄 주관 제작 2차 선금 등 - (11월) 13,884백만원 : 발사대 기본설계/예비설계 등 - (12월) 15,693백만원 : 엔진 시험설비 장비 구축 등

주) 2024년 7월 5일 기준임
자료 :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한 출연금이 체계종합기업 입찰공고(2023.12.21.)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290억원 전액이 항우연으로 교부되었고, 출연금 교부 시점과 실집행 시점 간 간극으로 인하여 연구비 계좌에서 2억 3,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음.

[2023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출연금 교부 및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부날짜	금액	교부날짜	금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발생 이자	이월액	최종 집행률 (D/C)
'23.08.29.	4,000	'23.08.30.	4,000	29,000	-	29,000	11,125	231	17,875	38.4
'23.09.27.	5,000	'23.10.05.	5,000							
'23.10.31.	4,000	'23.11.03.	4,000							
'23.11.27.	7,992	'23.11.28.	7,992							
'23.12.15.	8,008	'23.12.20.	8,008							
계	29,000	계	29,000							

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러한 발생이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사업에 재투자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연구비에 재투자하여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함임.[57]

그러나 당해 사업의 발생이자는 연구수행기관의 집행부진으로 인해 국고금을 교부받고 집행하는 시점이 지연되어 발생한 이자이고, 현재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당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이자의 성격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58]

57)「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58) 본 보고서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3항 각호의 발생이자 사용규정 개정 필요"** 참조

13.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사업은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반복 발사(총 4회) 및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929억 5,1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59][60]

[2023년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92,951	92,951	-	-	92,951	92,951	-	-	93,710

한국연구재단은 예산액 929억 5,1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교부현액 1,421억 5,600만원 중 1,100억 8,1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77.4%)하고 320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수행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교부 현액 (D=B+C)	최종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92,951	92,951	92,951	92,951	92,951	49,205	142,156	110,081	32,075	-	77.4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일반회계-한국형발사체고도화(R&D)(1332-405)(우주항공청)

60) 2024년 5월 27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음.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국비 총 6,873억 8,000만원을 들여 수행되며, 2023년 5월 25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3차 발사이고, 사실상 해당 사업의 시작임.

참고로, 동 사업의 전신인 ‘한국형발사체개발(R&D, 종료)’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조 9,572억원의 총사업비로 수행되었으며, 한국형발사체(누리호) 1차 및 2차 발사와 비행모델 3호기 단 조립까지 진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일정 조정으로 연구수행기관의 실집행 가능범위를 초과하여 2023년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향후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해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고, 예산의 조기 교부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향후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초기 계획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쏘아올리기 위한 누리호 4차 발사가 2024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안)(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22.10월)’을 통해 2025년으로 변경됨. 이후 ‘누리호 4차 발사준비 착수 회의(2023.10.6.)’를 통해 2025년 11월로 발사계획을 수립함.

한국연구재단은 누리호 4차 발사준비 착수 회의가 종료된 10.6. 이후에 2023년 사업 예산 잔액인 591억 6,100만원을 연구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는 상술한 계획변경으로 인해 2023년에 계획한 발사체 비행모델 제작, 설비 운용 및 관리비용이 2023년 연내 집행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액 교부된 것임.

이는 연구수행기관의 실집행 가능범위를 초과하여 2023년 예산액을 조기에 교부한 것으로써,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수행기관의 출연금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적시에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61]

또한 향후 발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발생이자 7억 7,200만원 및 2023년 발생이자 5억 1,800만원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임.

---

6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3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R&D) 출연금 교부 및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부날짜	금액	교부날짜	금액	교부액 (A)	이월액 (B)	교부현액 (C=A+B)	최종 집행액(D)	발생 이자	이월액	최종집행률 (D/C)
'23.2.2.	7,600	'23.2.28.	7,600	92,951	49,205	142,156	110,081	1,290 (22년 772, 23년 518)	32,075	77.4
'23.3.2.	13,440	'23.3.15.	13,440							
'23.8.25.	20,000	'23.9.08.	12,750							
'23.9.27.	2,000	'23.10.6.	2,000							
'23.10.31.	13,977	'23.11.3.	13,977							
'23.11.27.	15,934	'23.11.28.	15,934							
		'23.12.14.	7,250							
'21.12.19.	20,000	'23.12.30.	20,000							
계	92,951	계	92,951							

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러한 발생이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사업에 재투자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연구비에 재투자하여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함임.[62]

그러나 당해 사업의 발생이자는 연구수행기관의 집행부진으로 인해 국고금을 교부받고 집행하는 시점이 지연되어 발생한 이자이고, 현재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당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이자의 성격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63]

유사사례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R&D)' 사업 중 '다목적 실용위성 7호 개발' 내역사업은 지속적인 발사일정 연기로 인해,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15억 2,500만원의 이자가 항우연 수준의 연구

6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63) 본 보고서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3항 각호의 발생이자 사용규정 개정 필요"** 참조

비 계좌에서 발생함. 향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R&D)(1331-401)]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발생이자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24,888	24,888	24,888	24,888	697	24,888	21,968	168	2,920	82.7
2020	40,500	40,500	40,500	40,500	2,920	40,500	31,269	216	9,231	77.2
2021	26,722	26,722	26,722	26,722	9,231	26,722	3,329	220	23,393	1.2
2022	-	-	-	-	23,393	-	6,653	438	16,740	37.3
2023	-	-	-	-	16,740	-	2,453	483	14,287	46.5
계	92,110	92,110	92,110	92,110	52,981	92,110	65,672	1,525	66,571	71.3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종료과제의 신속한 정산 및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필요

가. 개 요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R&D)’ 사업은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처리 및 가시화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231억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64][65]

[2023년도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R&D)	23,100	23,100	-	-	23,100	23,100	-	-	(내역이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연구수행기관에 231억원 전액을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3,900만원과 매칭자금 38억 4,8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292억 8.400만원 중 269억 6,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2.1%)하고 23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등 63개 기관)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최종 집행률 (F/E)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39	3,848	29,284	26,969	2,315	92.1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 일반회계-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R&D)(1131-319)(소프트웨어정책관)

65) 2024년부터는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R&D)(1134-602)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고, 32.97억원이 반영됨.

나. 검토의견

2024년 5월 기준 2023년 종료된 과제 중 15개 과제(총 연구비 686억 8,800만원, 69개 연구수행기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못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6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함.[67]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68][69]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

6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6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6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70]

그러나 동 사업에서 2023년 종료된 과제 중 15개 과제(69개 연구수행기관)가 2024년 5월 기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동 과제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수행된 과제로써 수행기간 동안 받은 예산이 686억 8,800만원임.

[2023년 미정산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과제 종료 연도	미정산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정산대상 금액
2023년	15	68,688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산과 관련하여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R&D 종료과제의 정산기한에 대한 범부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술하였듯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2020~2023년 연말에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정산이 다수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회수금에 대한 반납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완료되어 연구비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정산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기한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71]

또한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라 정산 완료 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7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71) 본 보고서 **‘3.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및 미정산 · 미반납 과제의 면밀한 관리 필요’** 참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5.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사업: 연구수행기관의 사업 집행현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사업은 핵융합 실증로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인 초전도 자석의 도체 성능 시험용 시설 구축을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40억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72]

[2023년도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4,000	4,000	-	-	4,000	4,000	-	-	300

한국연구재단은 예산액 4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사업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8,5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79억 8,500만원 중 41억 2,1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51.6%)하고 38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음.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주관연구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공동연구기관)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C)	교부현액 (D=B+C)	최종 집행액(E)	이월액	최종 집행률(E/D)
4,000	4,000	4,000	4,000	4,000	3,985	7,985	4,121	3,864	51.6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1158-425)(공공융합기술정책관)

동 사업은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른 것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내에 초전도 도체 성능시험설비 및 부대설비, 실험동 1개 동을 건설하는 것이며, 총 사업기간은 2022~2027년으로 6년이고 총사업비는 498억원임.

나. 검토의견

내역사업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건설 및 시운전'의 경우,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년도 이월액 17억 600만원도 집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예산액 8억 3,8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향후 사업수행기관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중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건설 및 시운전'은 업무대행협약 체결이 지연(당초 2022년 상반기였으나 실제 2022년 12월 체결)됨에 따라 설계 착수도 순연되고, 건축규모 조정 등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해 2023년 교부현액 25억 4,400만원 중 1억 200만원만 최종집행(집행률 4.0%)되고, 차년도 이월금 24억 4,200만원은 및 이자금 200만원은 공사비 24억원, 시설부대경비 3,100만원, 연구활동비 1,300만원으로 구성됨.

전년도 이월액 17억 600만원은 대부분 공사비인데 당해 금액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2023.2.28. 2023년에 계획된 8억 3,800만원을 조기에 전액 교부함.

[연구비 교부 현황 및 최종집행률]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2023년 결산										
	부처→전문기관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주관연구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공동연구기관)						
	교부날짜	금액	교부날짜	금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발생 이자	이월액	최종 집행률 (D/C)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관리	1.31 2.27 3.22	640 772.8 646.8	3.09	322	322	11	333	293	0.1	40	88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건설 및 시운전	4.28 6.1 6.29	562.7 578.6 799.1	**2.28**	**838**	**838**	**1,706**	**2,544**	**102**	**2**	**2,442**	**4.0**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2023년 결산										
	부처→전문기관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주관연구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공동연구기관)						
	교부날짜	금액	교부날짜	금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발생 이자	이월액	최종 집행률 (D/C)
초전도 자석 계통 설계 및 운영 설비 구축			3.16	252.8	2,840	2,268	5,108	3,726	117	1,382	72.9
			3.30	646.8							
			5.4	562.7							
			6.14	578.6							
			6.29	799.1							
계	-	4,000	-	4,000	4,000	3,985	7,985	4,121	119.1	3,864	51.6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행 시점('23.2)을 기준으로 건설 착공은 2023년 하반기 예정이었으나, 건축 설계 변경('23.4~9)에 따라 착공 일정이 연기('24.7) 되어 2023년 교부액 8억 3,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총 24억 3,100만원)는 기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23년 하반기 건설 착공 시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2023년 예산액 8억 3,800만원은 다소 조기에 교부된 측면이 있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동 경비는 집행되지 못하였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을 적기에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수행기관의 출연금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73]

7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R&D) 사업: 스마트시티 랩 및 인프라 구축의 추가적인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조성(R&D)’ 사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 실제 도시와 유사한 테스트베드 환경인 모의도시(실외)와 디지털 트윈 연구공간(실내)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89억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74]

[2023년도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조성(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조성(R&D)	8,900	8,900	-	-	8,900	8,900	-	-	864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89억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900만원과 매칭금 5억 1,6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104억 7,500만원 중 32억 7,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31.3%)하고 7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음.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조성(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수행기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최종 집행률 (F/E)
8,900	8,900	8,900	8,900	8,900	1,059	516	10,475	3,279	7,196	31.3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7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조성(R&D)(2033-301)(정보통신정책관)

동 사업은 스마트 서비스 및 기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가상환경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단계별(3단계)로 구축 및 검증하여, 검증된 서비스를 도시에 시범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2~2025년 4년간 국비 총 157.64억원(지방비 195억원 별도)으로 수행됨.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조성(R&D) 사업 내용]

○ (기간/예산) 2022~2025(4년) / 국비 총 157.64억원 ※ 국비:지방비 = 6:4 매칭(지방비 195억 별도)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랩)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기관·대학등에 기술 개발 및 확산, 사업화지원등을 위한 연구시설 공간 조성 및 운영 - (트윈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서비스·기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가상환경인디지털 트윈 플랫폼 단계별 구축*및 현실↔가상세계 간 실시간데이터 연동을 위한 AIoT 센싱데이터 모델·플랫폼 기술 연구 개발 * 스마트빌리지('22~'23) → 스마트시티 랩('24) → 통합 플랫폼('25) - (비지니스 응용 실증) 가상환경에서 검증한 서비스 및 기술을 실제 공간에서검증하고, 검증된 서비스를 도시에 시범 적용 및 상용화하도록 지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는 향후 서비스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건축물이나, 설계범위 확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 대비 1년 지연되고 집행실적도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스마트시티 랩 및 인프라를 구축, 서비스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총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에서 집행이 부진함.[75]

당해 과제는 연구수행기관 중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경우 최종집행률이 2.0%(71억 4,000만원 중 1억 4,400만원 집행)로 부진한데, 미집행액 69억 9,600만원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임.

75) 동 세부사업은 2개 내역사업(4개 과제)으로 구성됨.

내역사업	과제명	현황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조성 및 운영	(총괄)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조성 및 운영	정상추진
	(세부1)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공간 및 ICT 인프라 구축	**1년 지연**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융합 기술개발	(세부2) 디지털트윈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정상추진
	(세부3) 디지털트윈 기반 비즈니스 응용 R&D 및 실증	정상추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 과제의 최종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구수행기관명	과제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재)부산 정보산업 진흥원	(사업총괄)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운영 (인프라 구축)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6,270	870	7,140	144	2.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건축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70.0%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범위 확정 및 실시설계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 대안으로 건축 사전준비를 위한 기획설계를 추가(2022.9.~12.에 실시함)하면서, 그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건립공사 일정이 약 1년 가량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스마트시티 랩 공사 추진계획(당초/현재 비교)]

구분	당초	현재
기획설계	-	2022.9. ~ 2022.12.
기본 및 실시설계	2022.4. ~ 2022.11.	2023.3. ~ 2023.12.
설계완료	2022.12.	2023.12.
건립공사 세부추진 계획(안) 수립	2023.2.	2023.12.
건립공사 조달 공고	2023.4.	2024.1.
모집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실시 등	2023.4. ~ 2023.5.	2024.2
용역수행, 모니터링 실시	2023.5. ~ 2023.11.	2024.3, ~ 2024.11.
스마트시티 랩 준공	2023.12.	2024.1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과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과제로써 건립이 지연될 경우 타 과제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출>

17.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및 추가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현액 1,581억 600만원 중 1,561억 1,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8.7%)하고 19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음.[76)]

[2023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8,106	158,106	-	-	158,106	156,115	-	1,991	142,460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교부현액 1,778억 4,000만원 중 1,473억 5,700만원을 집행(집행률 83.3%)하고 295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예산	집행액 (A)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C)	교부현액 (D=B+C)	최종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집행률 (E/D)
158,106	156,115	156,115	21,725	177,840	147,357	29,514	969	83.3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공공융합연구정책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시설비 중 1)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과 2) 원자력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 사업에서 각각 58억 7,900만원, 191억 3,3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음.

[2023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세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전기 이월	2023년 예산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집행잔액(A-B)		실집행률 (B/(A-D))
					이월 (C)	불용 (D)	
1. 기관운영비	1,961	66,218	68,179	67,215	-	964	100
2. 주요사업비	2,751	76,461	79,212	74,724	4,488	-	94.3
3. 시 설 비	17,013	13,436	30,449	5,418	25,026	5	17.8
노후시설보수사업(계속)	1	2,800	2,801	2,787	14	-	99.5
원자력시설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구축	**4,879**	**1,000**	**5,879**	**-**	**5,879**	**-**	**-**
원자력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	**12,133**	**7,000**	**19,133**	**-**	**19,133**	**-**	**-**
원자력시설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	2,636	2,636	2,631	-	5	100
합 계	21,725	156,115	177,840	147,357	29,514	969	83.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원자력폐기물 관련 시설사업이 전년도 이월액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허가 심사 이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동 사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허가심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시설 폐기물종합관리시설 및 원자력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사업은 원자력시설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심사가 각각 2020년 9월, 2021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 12월, 2024년 3월에 종료될 예정으로써, 그로 인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023년 예산 현액이 전액 미집행되고 이월되었음.

[시설사업 당초계획 대비 지연계획 현황]

시설명	구분	당초 계획	지연 계획
원자력시설 폐기물종합 관리시설	기본/실시설계 및 원자력시설 인허가 취득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진행 중(2020.9~)	**2018.1. ~ 2019.12.**	**2018.1. ~ 2023.12.**
	공사발주/계약 및 장비 도입	2020.1. ~ 2021.12.	2024.1. ~ 2025.12.
원자력 폐기물 감용실험동	기본/실시설계 및 원자력시설 인허가 취득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진행중(2021.9~)	**2020.5. ~ 2021.12.**	**2020.5. ~ 2024.3.**
	설계적정성 검토	2021.1. ~ 2021.6.	2024.1. ~ 2024.5.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2021.7. ~ 2021.10.	2024.6. ~ 2024.8.
	공사발주/계약 및 장비 도입	2022.1. ~ 2023.12.	2024.9. ~ 2026.12.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러나 당해 인허가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액 10억원과 70억원을 전액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부단계에서 인허가 일정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전년도 이월액도 전액 미집행되고 원자력시설 인허가 취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2023년도 예산액 교부에 있어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허가 심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허가 심사 종료 후에 기존 이월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실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우편사업특별회계】

<세 출>

18. 우체국 건립 사업: 일부 우체국 건립사업 집행부진

가. 개 요

‘우체국 건립’ 사업은 신도시 지역 우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우체국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915억 3,700만원 중 1,287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2%)되고 397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30억 1,300만원은 불용됨.[77)]

[2023년 우체국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E/D)	예산액
본예산(A)	추경								
182,250	182,250	9,287	-	191,537	128,735	39,789	23,013	67.2	157,50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건축공사 및 부대비용 등으로 예산이 구성되고, 2023년에는 우체국 6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40억 1,100만원, 신규 우체국 공사 56국 및 계속 공사 67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 1,199억 8,200만원, 노후 창구국 50국에 대한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등 부대비용 47억 4,200만원이 집행됨.

[2023년 우체국 건립 사업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 내역	금액
토지매입	우체국 6국 토지매입비용	4,011
건축공사	신규 우체국 56국, 계속 우체국 67국 공사비용	119,982
부대비용	노후 창구국 50국에 대한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용	4,742
계	-	128,73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 건립(5143-411)(우정사업본부)

나. 검토의견

25개 우체국 건립 사업은 설계 적정성 검토 및 BF 예비인증 지연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여 준공시점이 순연되었으므로,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우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하 25개 우체국은 설계 적정성 검토로 인한 기재부 협의 일정 순연,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조사기간 소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Barrier Free) 예비인증 지연 및 해체공사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함.

[집행률 50% 미만인 우체국 건립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우체국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D/C)	집행부진사유 (집행률 80% 미만)
마산우체국	8,170	-	8,170	2,150	4,407	1,613	26.3	설계 적정성검토 및 기재부협의 일정 순연으로 당초 계획대비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
인천검단우체국	8,507	-	8,507	2,553	1,243	4,711	30.0	
파주주차타워	3,321	46	3,367	1,594	1,071	702	47.3	불법 건축물 이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액 과다 발생
보령오천	1,583	-	1,583	200	1,359	24	12.6	매장문화재 시굴(발굴) 조사, 국가지정문화재 상변경허가 기간 소요, BF인증 지연
장성우체국	4,736	119	4,855	1,921	1,845	1,089	39.6	해체공사 심의지연, 주민민원(소음・진동)으로 공사 지연
경주안강우체국	4,624	-	4,624	1,565	2,190	869	33.8	해체공사 심의 지연 및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유찰
인천중동우체국	1532	-	1532	558	331	643	36.4	지자체와 부지교환 지연
강림우체국	1,874	-	1,874	685	1,003	186	36.6	BF인증 지연, 해체 공사 심의 지연
상남우체국	1,875	-	1,875	790	918	167	42.1	
주문진우체국	2,636	-	2,636	1,240	1,136	260	47.0	
마장우체국	1,875	-	1,875	794	881	200	42.3	
사강우체국	1,875	-	1,875	721	954	200	38.5	

(단위: 백만원, %)

우체국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D/C)	집행부진사유 (집행률 80% 미만)
양성우체국	1,875	-	1,875	822	852	201	43.8	
오성우체국	1,875	-	1,875	894	822	159	47.7	
일죽우체국	1,875	-	1,875	699	976	200	37.3	
거제하청우체국	3,317	-	3,317	1,516	1,618	183	45.7	
밀양단장우체국	1,879	-	1,879	612	1,115	152	32.6	
상리우체국	1,877	-	1,877	716	976	185	38.1	
양산통도사우체국	1,877	-	1,877	610	1,097	170	32.5	
경산진량우체국	1,877	-	1,877	786	887	204	41.9	
상주화북우체국	1,877	-	1,877	700	981	196	37.3	
경산자인우체국	3,322	-	3,322	1,474	1,648	200	44.4	
마로우체국	1,877	-	1,877	757	920	200	40.3	
세종금남우체국	1,876	-	1,876	843	827	206	44.9	
앙성우체국	1,880	-	1,880	755	917	208	40.2	

자료 : 우정사업본부

그로 인하여 25개 우체국의 건립 계획을 살펴보면, 설계, 공사입찰 및 계약, 착공 및 준공시점이 기존 계획 대비 약 2개월 내지 1년 가량 지연될 예정임.

동 사업은 노후한 우체국을 재건축하여 건물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지역의 우체국 신축을 통해 보편적인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작업공간 확보를 통해 소포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5개 우체국 건립 사업 기존계획 대비 지연 현황]

구분		기존 계획	지연된 계획
마산	기본계획	2021.1.	2021.1.
	기본설계	2021.7.~2021.10.	2021.7.~2021.10.
	실시설계	2021.11.~2022.9.	2021.11.~2023.2.
	공사 입찰 및 계약	2022.10.~2023.1.	2023.4.~2023.10.
	착공	2023.2.	2023.12.
	준공	**2025.5.**	**2026.2.**
인천검단	기본계획	2021.2.	2021.2.
	기본설계	2021.9.~2022.3.	2021.9.~2022.3.
	실시설계	2022.4.~2022.8.	2022.4.~2023.2.
	공사 입찰 및 계약	2022.9.~2022.12.	2023.6.~2023.12.
	착공	2023.1.	2024.1.
	준공	**2024.9.**	**2025.9.**

구분		기존 계획	지연된 계획
파주주차타워	기본계획	2022.1.	2022.1.
	기본설계	2022.6.~2022.8.	2022.6.~2022.8.
	실시설계	2022.9.~2022.11.	2022.9.~2022.11.
	공사 입찰 및 계약	2023.1.~2023.4.	2023.1.~2023.6.
	착공	2023.4.	2023.7.
	준공	**2024.2.**	**2024.4.**
보령오천	기본계획	2022.1.	2023.1.
	기본설계	2022.6.~2022.8.	2023.1.~2023.3.
	실시설계	2022.9.~2022.11.	2023.4.~2023.9.
	공사 입찰 및 계약	2023.1.~2023.4.	2023.9.~2023.10.
	착공	2023.4.	2023.11.
	준공	**2024.2.**	**2024.6.**
장성	기본계획	2022.1.	2022.1.
	기본설계	2022.7.~2022.10.	2022.7.~2022.10.
	실시설계	2022.11.~2023.2.	2022.11.~2023.2.
	공사 입찰 및 계약	2023.3.~2023.4.	2023.3.~2023.10.
	착공	2023.5.	2023.11.
	준공	**2025.2.**	**2025.6.**
경주안강	기본계획	2023.1.	2023.1.
	기본설계	2023.4.~2023.6.	2023.4.~2023.6.
	실시설계	2023.7.~2023.8.	2023.7.~2023.8.
	공사 입찰 및 계약	2023.9.~2023.10.	2023.9.~2023.11.
	착공	2023.11.	2023.12.
	준공	**2024.8.**	**2024.9.**
인천중동	기본계획	2023.7.	2023.7.
	기본설계	2023.9.~2024.1.	2023.12.~2024.4.
	실시설계	2024.2.~2024.4.	2024.5.~2024.8.
	공사 입찰 및 계약	2024.5.~2024.9.	2024.9.~2024.11.
	착공	2024.10.	2024.12.
	준공	**2026.6.**	**2026.8.**
강림, 상남, 주문진, 마장, 사강, 양성, 오성, 일죽, 거제하청, 밀양단장, 상리, 양산통도사, 경산진량, 상주화북, 경산자인, 마로, 세종금남, 양성	기본계획	2023.1.	2023.1.
	기본설계	2023.1.~2023.3.	2023.1.~2023.3.
	실시설계	2023.3.~2023.6.	2023.4.~2023.9.
	공사 입찰 및 계약	2023.7.~2023.8.	2023.9.~2023.10.
	착공	2023.8.	2023.10.
	준공	**2023.12.**	**2024.4.**

자료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 출>

19.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추가 사업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은 서울양천우체국을 청사·수익시설·공익시설이 포함된 복합 건물로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92억 7,000만원 중 16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7.3%)되고 76억 6,800만원은 이월되었음.[78)]

[2023년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D=A+B+C)	집행액 (E)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E/D)	예산액
본예산 (A)	추경								
7,696	7,696	1,574	-	9,270	1,602	7,668	-	17.3	26,820

자료 : 우정사업본부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17억 6,900만원 규모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기본조사설계비 20억 6,600만원, 공사비 49억 4,000만원, 감리비 5억원 및 시설부대비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17
○ 총사업비 : 2,817억 6,900만원
- ’23년 예산안 : 기본조사설계비 20억 6,600만원, 공사비 49억 4,000만원,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1억 9,000만원
○ 총사업기간 : 2021년 ~ 2028년
○ 면적 : 연면적 94,385㎡, 건축면적 5,371㎡, 대지면적 9,314㎡
○ 규모 : 지하 4층/지상 29층

자료 : 우정사업본부

78) 우체국예금특별회계-금융투자국사 건립(5261-377)(우정사업본부)

나. 검토의견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은 건축심의 지연 및 공사입찰 유찰 등으로 인해 2023년 집행실적이 17.3%로 저조하므로,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동 사업의 세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서 이월된 실시설계비 15억 7,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기본조사설계비 20억 6,600만원에서는 1,800만원만 집행(집행률 0.9%), 시설부대비 1억 9,000만원에서는 1,000만원만 집행(집행률 5.3%)하였고, 공사비 49억 4,000만원 및 감리비 5억원은 전액 집행되지 못함.

[비목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기본조사 설계비	2,066	-	2,066	18	0.9	2,048	500
실시설계비	-	1,574	1,574	1,574	100.0	-	-
공사비	4,940	-	4,940	-	0.0	4,940	24,500
감리비	500	-	500	-	0.0	500	1,700
시설부대비	190	-	190	10	5.3	180	120
합계	7,696	1,574	9,270	1,602	17.3	7,668	26,820

주) 집행액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우정사업본부

이는 서울시 건축심의 지연 및 공사계약이 유찰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심의내용은 ① 저층부 개방감 확대, ②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연면적 축소였으나, 이 중 두 번째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가 지연되었음. 그로 인하여 2023.12. 공사착공 계획이 다소 지연되어 2024.6.에 착공하였음.

또한 동 사업은 2022년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지연 및 2023년 서울시 건축심의 지연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21년 계획상 2,498억 2,600만원에서 2024년 현재 2,817억 6,9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였음.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49,826**	2021	2026	-
1차 변경	2022		249,683	2021	2026	설계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23		276,559	2021	2026	중간설계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3		276,559	2021	2027	각종 인·허가 처리 소요기간 반영
4차 변경	2023		285,158	2021	2027	물가상승분 반영
5차 변경	2024		282,994	2021	2027	감리 낙찰차액 감액
6차 변경	2024		285,378	2021	2027	물가상승분 반영
7차 변경	2024		285,378	2021	2028	서울시 건축심의 지연 및 공사입찰 유찰 등 반영
8차 변경	2024		**281,769**	2021	2028	공사 낙찰차액 감액
2024년도 요구			26,820	2021	2027	-

주) 1차, 2차, 5차, 8차 변경 :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서울시 건축심의 지연 등에 따른 변경은 아님
자료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2023년 이월액 76억 6,800만원과 2024년 예산액 268억 2,000만원 합계 344억 8,800만원에 대해, 기술제안 공사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집행 잔여금액(5억 2,400만원)을 제외한 339억 6,400만원 전액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023년 이월액 및 2024년 예산액 향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공사진도	공사업체 선정	기존건물 석면해체	설계보상비 집행 및 가설공사	기존건물 철거(지상)	흙막이공사 및 기존건물 철거(지하)	기존건물 철거(지하) 및 기초공사	합계
공사기간	2024.5.	2024.6.	2024.7.	2024.8.~10.	2024.10.~12.	2024.12. ~2025.6.	-
설계관련	59	-	1,904	-	61	-	2,024
공사관련	-	110	23,780	420	1,130	6,500	31,940
합계	59	110	25,684	420	1,191	6,500	33,964

자료 : 우정사업본부

동 사업은 공사일정 지연으로 총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가 4차례 변경되었고, 2024년 예산액 중 공사비 일부가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

<수 입>

20. 기타경상이전수입: 기술료 제도 변화를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계획현액 편성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기술료 수입에 대한 수입항목이고, 2023년 징수결정액 26억 2,800만원 중 23억 2,800만원이 수납(수납률 88.6%)되었음.[79)]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A)							
8,029	8,029	-	8,029	2,628	2,328	300	-	6,701

나. 검토의견

정액기술료에서 경상기술료로의 전환 등 기술료 제도의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계획현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한 2020~2023년 계획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보면, 2020~2021년에는 거의 유사하나 2022년은 계획현액 73억 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34억 100만원이고, 2023년은 계획현액 80억 2,9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26억 2,800만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79) 과학기술진흥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미래인재정책국)

[2020~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당초	수정(A)						
2020	6,099	6,099	6,099	5,891	5,591	91.7	94.9	300
2021	6,900	6,900	6,900	7,298	6,998	101.4	95.9	300
2022	7,305	7,305	7,305	3,401	3,101	42.5	91.2	300
2023	8,029	8,029	8,029	2,628	2,328	29.0	88.6	3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로 인하여 2022년과 2023년 실제 수납액(C)도 2020~2021년에 비해 30억원 이상 감소하였는데, 2020~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술료 수입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임.

[2020~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의 구성]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잔액	기술료수입	기타	합계
2020년	1,565	**4,025**	1	5,591
2021년	2,583	**4,415**	-	6,998
2022년	1,462	**1,639**	-	3,101
2023년	1,289	**1,039**	-	2,328

주) 기타 : 사업비 카드 캐쉬백 입금액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기술료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①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의 종료, ②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담 기술료 감면, ③「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21.1.1. 시행)을 통한 정액기술료 폐지 및 경상기술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음.[80)81)]

2020~2023년 기술료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수납되는 정액기술료 수입은 감소하고 경상기술료 수입은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80)「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신규 과제부터 경상 기술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정액기술료 징수).

81) **정액기술료**는 사업화매출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의 4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고, **경상기술료**는 사업화매출액에 비례하여 기술료가 책정되며, 구체적으로 '과제 관련 사업화매출액' × '기술기여도'(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협약 시 정함)× '요율'(대기업 0.2, 중견기업 0.1, 중소기업 0.05)로 기술료가 산정됨.

[2020~2023년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세입 항목	연도	기술료 구분	수납액 합계 (A+B+C+D)	기업별 구분			
					대기업 (A)	중소기업 (B)	중견기업 (C)	기타 (D)
과학기술 진흥기금	기타경상 이전수입	2020	정액기술료	3,701	527	2,350	816	8
			경상기술료	324	-	313	11	-
		2021	정액기술료	4,235	474	3,670	88	3
			경상기술료	180	-	180	-	-
		2022	정액기술료	1,628	410	996	220	2
			경상기술료	11	-	11	0	-
		2023	정액기술료	1,005	-	925	76	4
			경상기술료	34	-	34	-	-

주) 기타 : 기술료 발생이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사업화 매출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되는 정액기술료에 비해 경상기술료는 사업화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기술료라는 점에서, 기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에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82)]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술료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계획현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82) 본 보고서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실적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등 기술료 수입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p.367.) 참조

【정보통신진흥기금】

<수 입>

21. 법정부담금: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입 계획액 편성 필요

가. 개 요

‘법정부담금’ 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2조에 따라 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의 수입금 등을 수납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5,594억 800만원으로 5,597억 6,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594억 7,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2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83][84]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법정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A)							
982,472	559,408	-	559,408	559,768	559,474	294	-	503,337

83) 정보통신진흥기금 - 법정부담금(59-593)(정보통신산업정책관)

84)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나. 검토의견

법정부담금은 5G·28GHz 주파수의 할당 및 재할당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액 대비 약 4,000억원이 적은 금액이 수납되었는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부실한 점을 감안하여 수입 계획액을 보다 신중히 편성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 법정부담금 2023년 당초 계획액은 9,824억 7,200만원이나 이는 5G 신규 주파수 할당 및 28GHZ 대역의 주파수 재할당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여 세운 계획액임.

그러나 당초 계획액과 달리, 5G·28GHz 주파수의 할당 및 재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실제로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KT·LGU+ 및 SKT 등 통신3사가 입찰하였으나, KT와 LGU+는 2022.11. 평가결과 각각 27.3점, 28.9점으로 인해 2022.12. 5G·28GHz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을 받았고, SKT는 망 구축비율 미달로 2023.5. 5G·28GHz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법정부담금 수납액이 당초 계획 대비 4,229억 9,800만원이 덜 수납되었음.[85)86)]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20년부터 디지털 뉴딜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극복을 위해 사업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당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2020년 4,261억원에서 2022년 1조 8,53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부채/자산 비율도 2020년 414.17%에서 2022년 803.37%로 확대되어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87)]

[정보통신진흥기금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 및 재무건전성 현황]

(단위: 억원, %)

기금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 지출	6,384	8,899	13,297	14,641	17,322	12,739
	총자산(A)	7,505	5,162	2,420	3,532	3,082	2,068
	총부채(B)	10,520	8,073	10,023	17,299	24,760	28,936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5.4. 5G 주파수 할당 공고(과기정통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르면, 망 의무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공고함.

86) 2023년 당초 계획액 9,824억 7,200만원과 실제 수납액 5,594억 7,400만원의 차이임.

87)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5.)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03.37%(자본잠식)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9.89%(자본잠식)으로 재무건전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평가함.

(단위: 억원, %)

기금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자기금 예수금	-	-	4,261	9,646	18,538	21,796
	순자산 (A-B)	△3,015	△2,911	△7,603	△13,767	△21,678	△26,868
	부채/자산 비율(B/A)	**140.17**	**156.39**	**414.17**	**489.78**	**803.37**	**1,399.2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이처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파수 신규 및 재할당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편성한 법정부담금의 당초 계획은 다소 낙관적인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임.[88]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향후 수입 계획액을 보다 신중히 편성할 필요가 있음.

88) 그에 따라 법정부담금 당초 계획액의 예상 대비 감소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원 차입을 실행하였고,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2. 기타민간차입금: 연중 계획 변경을 통한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의 적정성 검토'** 에서 서술함.

22. 기타민간차입금: 연중 계획변경을 통한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의 적정성 검토

가. 개 요

‘기타민간차입금’ 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당초 계획액은 없었으나 연중 계획변경을 통해 2,500억원을 차입하였음.[89]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A)							
-	250,000	-	250,000	250,000	250,000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중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법정부담금)이 당초 계획 대비 적게 수납될 것을 예상하고, 그 대안으로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원을 차입하였음.

우체국보험적립금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4조제2항각호 및 제3항에 따라 우체국보험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와 적립금 운용수익금, 회계의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순보험료란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으로서 민간 고객에게 지급될 예정인 보험료를 의미하며,[90]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외로 두고 있음.[91]

---

89) 정보통신진흥기금 - 기타민간차입금(82-824)(정보통신산업정책관)

90)「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91)「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둔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의 권한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있고,[92] 적립금의 대출 등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어,[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대출하였음.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현황]

구분	내용
차입기간	ㅇ 2023.11.23. ~ 2026.11.22. (36개월)
차입금액	ㅇ 250,000백만원
이자율	ㅇ 연 4.04%, 고정 금리
이자납부방식	ㅇ 2024.1.25. 최초 납부 이후 매 3개월마다 납부 -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상환방식	ㅇ 3년 거치 후 차입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번 사례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민간의 재원이 국가재정 운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활용용도로 국가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므로 당해 대출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94]

9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9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9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한 선례도 있으므로,[95] 적립금의 차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96] 이러한 국채 및 차입금 한도액 규정은 무분별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국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에 통제하려는데 있음.

그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하여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을 명시하였으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부재함.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제9조 2023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9,0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2,7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따라서 개별법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달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매년 예산총칙에 차입금 등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 선례가 금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

---

95) 1999~2004년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규	2,000	3,999	3,000	5,787	4,036	1,669	-	-	-
잔액	2,000	5,999	8,999	14,786	18,822	18,491	14,482	11,492	5,70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6)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 · 차입금(외국정부 ·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관리 주체가 국가에게 있고,[97] 동 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이므로[98] 당해 대출은 '차입금'이 아닌 '회계·기금 간 거래'에 해당하여 차입금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는 「국가재정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상술하였듯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므로 그 실질은 민간이 조성한 재원이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시 적용되는 '예수금(94항)' 예산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정부 외부로부터의 차입 시 적용되는 '민간차입금(82항)' 예산과목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예산총칙에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고 이루어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차입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금번 사례가 국회 심의·의결 없이 민간의 재원이 국가재정 운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9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9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지 출>

23.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활용도가 저조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이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는 플랫폼(AI hub)을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계획현액 2,628억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99)]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280,500	262,800	-	-	262,800	262,800	-	-	55,80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계획현액 2,628억원 중 2,521억 9,200만원을 실집행(집행률 95.9%), 연구수행기관은 교부현액 2,175억 1,200만원 중 2,102억 7,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6.7%)하고 72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NIA)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 등 611개 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C)	교부현액 (D=B+C)	최종집행액 (E)	이월액	최종집행률 (E/D)
당초	수정(A)									
280,500	262,800	262,800	262,800	252,192	217,512	-	217,512	210,279	7,233	96.7

주 1)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2) NIA의 집행액과 연구수행기관의 교부액의 차액은 NIA에서 집행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99) 정보통신진흥기금-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602-305)(인공지능기반정책국)

AI 학습용 데이터는 음성·영상·문장 등 원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과 같은 학습 모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정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동 사업은 2017년도부터 수행되어 2020년 「한국판 뉴딜」 계획 이후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AI hub를 통해 공개된 데이터는 총 691개임.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개방된 데이터 중 활용도가 저조한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하여 안심존에 보관 중인 헬스케어 합성데이터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AI hub에 개방하거나, 생명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I hub를 통해 공개된 총 691개 데이터에 대한 2023년 기준 활용 건수를 구분해보면, 10건 미만으로 활용된 데이터가 74개, 11~100건 미만으로 활용된 데이터가 155개임.

[2023년 기준, 활용건수별 데이터 개수 분류]

(단위 : 개)

활용건수	10건 이하	11~100건	101~500건	501~1,000건	1,001건 이상
데이터 개수	74	155	241	99	122

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출자료를 재구성

활용건수가 10건 이하인 74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헬스케어와 관련된 데이터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심존 내 헬스케어 데이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여, 실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활용하는 것까지를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안심존에 보관 중인 헬스케어 합성데이터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AI hub에 개방하거나, 생명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00]

100)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10건 이하 활용건수 데이터 현황]

(단위: 건)

분야	유형	데이터명	활용건수
헬스케어	이미지	질병진단(유방암 조직, 부비동) 이미지	5
헬스케어	이미지	치매진단 뇌영상 데이터	5
헬스케어	비디오,이미지	전립선암 진단 의료 영상	2
헬스케어	이미지	간암 진단 의료 영상	5
헬스케어	이미지	담낭암 진단 의료 영상	4
헬스케어	이미지	췌장암 진단 의료 영상	3
헬스케어	비디오,이미지	폐암 진단 의료 영상	10
헬스케어	비디오,이미지	갑상선암 진단 의료 영상	1
헬스케어	비디오,이미지	유방암 진단 의료 영상	10
헬스케어	센서	수면질 평가 및 수면장애 진단 이미지	8
헬스케어	이미지	구강 질환 진단 의료 영상	2
헬스케어	센서,비디오	재활 운동 센서 모션 이미지	1
헬스케어	이미지	폐암 예후 예측용 영상	1
헬스케어	이미지	모발 이식 및 두피확대 이미지	2
헬스케어	이미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상피 내종양 의료 영상	5
헬스케어	이미지	한국인 지방 및 근육량	4
헬스케어	이미지	심장질환 진단을 위한 심초음파 데이터	4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심장질환 진단을 위한 심전도 데이터	9
헬스케어	이미지	소아청소년 피부질환 이미지 데이터	10
헬스케어	이미지	단계별 욕창 환부 이미지 데이터	8
헬스케어	3D,비디오	근골격계 질환자 운동훈련 동영상 데이터	1
헬스케어	이미지	체액 내 세포검사 이미지 데이터	7
헬스케어	이미지	소화기조직 병리검사 이미지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임신중 태아 초음파 영상 데이터	2
헬스케어	이미지	소아 흉부 이미지 데이터	9
헬스케어	오디오	음성질환 판별을 위한 음성 데이터	6
헬스케어	비디오	수면장애 진단을 위한 적외선 수면 동영상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파킨슨병 진단을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	1
헬스케어	이미지	뇌전이암 진단 및 치료 영상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핵의학영상(PET) 이미지 데이터	8
헬스케어	이미지	고해상도 분자조직학 이미지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후두질환 판독을 위한 후두 내시경 데이터	4
헬스케어	이미지	측면두부규격방사선사진(cephalography)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캡슐내시경 AI데이터	5
헬스케어	이미지	영유아 고관절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인체 내 식립된 임플란트 영상 데이터	4
헬스케어	이미지	폐경 후 여성 및 60대 이상의 남성의 골밀도(BMD) 데이터	3
헬스케어	비디오,이미지	6개암 최소침습수술 AI학습데이터	4
헬스케어	오디오	부산지역 노인 및 주요 퇴행성 뇌질환자의 음성정보	4
헬스케어	오디오,텍스트	의료 분야 음성 데이터	3
헬스케어	오디오	난청 검사 음성 데이터	3

(단위: 건)

분야	유형	데이터명	활용건수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고막 내시경 검사 이미지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전정기능검사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청성유발반응검사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비디오,이미지	뇌질환 융합데이터	7
헬스케어	오디오,텍스트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진단 음성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치과 구내 임상사진 이미지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악성 림프종 예후 예측 융합 데이터	6
헬스케어	이미지	암환자 방사선 치료 데이터	3
헬스케어	오디오,텍스트,이미지	흉부 청진음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	인공호흡기 작동 데이터	9
헬스케어	이미지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	5
헬스케어	이미지	난임시술 배아이미지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신생아 카테터 엑스레이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소아 복부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	5
헬스케어	텍스트	소아 뇌파 검사 데이터	9
헬스케어	이미지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진단 안저 이미지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	만성콩팥병 및 합병증 추적관찰 임상의료 데이터	7
헬스케어	텍스트	만성질환 관련 임상 및 생활습관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	근력운동 처방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피부질환 병리검사 이미지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화상 이미지 및 임상 데이터	3
헬스케어	이미지	주요질환 이미지 합성데이터(MRI)	8
헬스케어	이미지	주요질환 이미지 합성데이터(X-ray)	6
헬스케어	센서	자가 수면 검사 데이터	9
헬스케어	센서	자가 폐기능 검사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	정상 및 병적보행 융합데이터	3
헬스케어	오디오,텍스트	고령인구 우울증 데이터	5
헬스케어	텍스트	소아청소년 심리검사 및 뇌영상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비디오,이미지	수술 단계별 영상 데이터	3
헬스케어	텍스트,이미지	당뇨관리 앱을 통한 음식 이미지 활용 및 환류	3

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4. 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 및 사업범위 축소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ICT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 및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계획현액 26억 7,2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하였음.[101)]

[2023년도 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2,672	2,672	-	-	2,672	2,672	-	-	336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6억 7,2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900만원과 매칭금 6억 9,2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36억 7,300만원 중 34억 4,8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3.9%)하고 2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수행기관 ((주)서르 등 15개 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최종 집행률 (F/E)
당초	수정 (A)										
2,672	2,672	2,672	2,672	2,672	2,672	279	692	3,673	3,448	225	93.9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101) 정보통신진흥기금-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2133-306)(정보통신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해 중기재정계획 상 2024년 신규과제가 실제로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2024년 이후에도 계속될 과제가 계획과 달리 올해 종료될 예정인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에 상응한 계획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구조조정 시 당초 계획한 목표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R&D 예산편성 당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 나눠먹기식 관행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를 제거하고 건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R&D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함.

그로 인하여 2023년 초 기준 동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상 2024년 예산은 46억원이나 실제 3억 3,6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신규수요 R&BD' 내역사업의 경우 2024년에도 신규 19개 과제가 중기재정계획상 계획되어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고, 2023년 추진된 12개 신규과제 및 4개 계속과제는 과제당 단가가 2023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4개 과제만 진행되며, 그 또한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임.

[2024년 예산의 계획 대비 축소로 인한 사업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계획액	2023년 초 기준 중기재정계획 상 2024년 예산계획	실제 2024년 예산액
2,672	**4,600**	**336**
-	〈내역 : 신규수요R&BD〉 - (신규, 1단계) **10개**×143백만원×6/12개월=715백만원 - (신규, 2단계) **5개**×420백만원×3/12개월=525백만원 〈내역 : 기존성과R&BD〉 - (신규) **4개**×420백만원×12/12개월=1,680백만원	-
〈내역 : 신규수요R&BD〉 ① (신규, 1단계) BM개발 및 검증 : 572백만원 (**8개×143백만원**×6/12개월) ② (신규, 2단계) 기술개발·사업화 : 420백만원 (**4개×420백만원**×3/12개월)	〈내역 : 신규수요R&BD〉 ① (계속) 4개×420백만원×12/12개월=1,680백만원	〈내역 : 신규수요R&BD〉 ① **(종료)** 4개 과제 × **84백만원** × 12/12개월 = 336백만원

(단위: 백만원)

2023년 계획액	2023년 초 기준 중기재정계획 상 2024년 예산계획	실제 2024년 예산액
③ (계속) 1,680백만원 (**4개×420백만원**×12/12개월)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① 사업화 가능성 검증, ② 최적화 개발 및 제작, ③ 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 경쟁방식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갑작스러운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에 상응한 무리한 계획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예산삭감에 따라 수행기업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하고 연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협약변경을 진행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성과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 수준에서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향후 유사한 구조조정 시 당초 계획한 목표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면, 기술사업화 성공률 및 사업화 매출액에 대한 2024년도 목표치를 이미 2023년에 달성한 수치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데, 실적이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해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술사업화 성공률 목표치는 50.0%인데 이는 2022년 실적인 66.7%보다 낮은 수치이며, 사업화 매출액(단위 : 억원/10억원) 목표치는 1.66억원인데 이는 2022년 실적인 1.75억원보다 낮은 수치임.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기술사업화 성공률	목표	(신규)	45.4	50.0	**54.9**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중소기업	종료과제 지원과제 수
	실적	-	66.7	**80.0**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 %)	달성도	-	146.8	160		사업화 성공률 50%를 1단계(2023년) 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10%내외로 목표치 상향	대비 사업화 성과 발생 과제 수 비율
신규고용인력 (단위: 명) ('21~'22)	목표	5.84	6.01	(종료)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18조 4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5억원당 1명(만18세이상 34세이하)신규채용 기준 적용하고 연차별 103% 상향	정부지원금 5억원당 신규고용 인원수(명)(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실적	12	35				
	달성도	205.5	582.4				
사업화 매출액 (단위: 억원/10억원) ('23~'25)	목표	(신규)	1.28	1.66	**2.15**	동 사업 선행사업인 '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의 성과목표(1차년도 정부출연금 10억원당 사업화 매출액 1.17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후속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10%상향 설정하고, 매년 30% 수준 목표상향	당해연도 사업화 매출액(억원)× 기여율/당해연도 정부 출연금(10억원)
	실적	-	1.75	**2.42**			
	달성도	-	136.7	145.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출액은 기업경영환경이나 시장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사업목표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불합리하게 높은 사업목표가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유사사업의 실제 매출실적을 참고하되 매년 전년대비 30% 수준을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부처의 입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더하여 지속적으로 성과 달성도가 개선되고 있어 사업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 지표와 같이 실적이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참고로 사업화 매출액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다른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사업,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성과목표 수치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정하고,

'5G 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 사업,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차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성과지표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화 매출액이 성과지표인 타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목표	9	9	9	9	-
		실적	55	9	39	(집계중)	-
		달성도	100.0	100.0	100.0	-	-
2	미디어지능화 기술개발	목표	-	(신규)	13	13.4	13.8
		실적	-	-	29.6	(집계중)	-
		달성도	-	-	227.6	-	-
3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목표	-	(신규)	72	72	72
		실적	-	-	72	72	-
		달성도	-	-	100	100	-
4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목표	(신규)	72	72	72	72
		실적	0.08	12	17	-	-
		달성도	-	16.7	23.6	-	-
5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목표	-	(신규)	128	166	215
		실적	-	-	175	242	-
		달성도	-	-	136.7	145.8	-
6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	목표	(신규)	180	189	198	-
		실적	-	180	217	(집계중)	-
		달성도	-	100	114	-	-
7	ICT미래시장 최적화협업 기술개발	목표	-	(신규)	230	300	300
		실적	-	-	290	340	-
		달성도	-	-	126	113	-
8	민관협력기반 ICT스타트업 육성	목표	(신규)	278	306	337	370
		실적	4.86	2312	3379	(집계중)	-
		달성도	-	831	1,104	-	-
9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목표	-	(신규)	405	446	491
		실적	-	-	597	2,130	-
		달성도	-	-	147.4	477.4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셋째, 동 사업 과제 중 2022년 종료된 1개 과제 총연구비 6억 1,142만원 및 2023년 종료된 4개 과제 총연구비 24억 3,480만원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1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103]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104][105]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106]

---

1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1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10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나 2022년에 종료한 1개 과제 및 2023년에 종료한 4개 과제는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음.

[2022~2023년 미정산 과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과제 종료 연도	미정산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정산대상 금액
2022년	1(2개 기관)	611
2023년	4(7개 기관)	2,435

주) 2024년 5월 1일 기준임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산과 관련하여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R&D 종료과제의 정산기한에 대한 범부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술하였듯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2020~2023년 연말에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정산이 다수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회수금에 대한 반납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완료되어 연구비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정산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기한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107]

또한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라 정산 완료 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07) 본 보고서 **‘3.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및 미정산 · 미반납 과제의 면밀한 관리 필요’** 참조

25.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종료과제의 신속한 정산 및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필요

가. 개 요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R&D, 정보화)’ 사업은 빅데이터・컴퓨팅・인공지능 반도체 등 SW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계획현액 1,163억 9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하였음.[108)]

[2023년도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R&D, 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 (R&D, 정보화)	116,309	116,309	-	-	116,309	116,309	-	-	111,814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163억 900만원 전액을 연구수행기관에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8,000만원과 매칭금 106억 2,4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1,343억 1,400만원 중 1,250억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3.1%)하고 93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년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R&D, 정보화)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80개 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최종 집행률 (F/E)
당초	수정 (A)										
116,309	116,309	116,309	116,309	116,309	116,309	7,380	10,624	134,314	125,000	9,314	93.1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108) 정보통신진흥기금-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2231-323)(소프트웨어정책관)

나. 검토의견

동 사업 과제 중 2021년에 종료된 4개 종료과제 총연구비 5억 3,300만원 및 2023년 36개 종료과제 총연구비 1,217억 6,700만원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1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110]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111][112]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

1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1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1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113]

그러나 2021년에 종료한 4개 과제 및 2023년에 종료한 36개 과제는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음.[114]

[2021~2023년 미정산 과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과제 종료 연도	미정산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정산대상 금액
2021년	4	533
2023년	36	121,767

주) 2024년 5월 1일 기준임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은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산과 관련하여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R&D 종료과제의 정산기한에 대한 범부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술하였듯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2020~2023년 연말에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정산이 다수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회수금에 대한 반납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완료되어 연구비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정산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기한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115]

또한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제83조제3항에 따라 정산 완료 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1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14) 2021년 종료한 4개과제는 2021년에 시작한 단년도 과제이고, 2023년에 종료한 36개 과제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시작한 3~4년 기간의 다년도 과제임.

115) 본 보고서 **'3.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및 미정산 · 미반납 과제의 면밀한 관리 필요'** 참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26.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정보화): 종료과제의 신속한 정산 및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필요

가. 개 요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유선통신, 전파·위성, 방송·스마트미디어 등 방송통신인프라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계획현액 927억 3,8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 하였음.[116]

[2023년도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R&D)	92,738	92,738	-	-	92,738	92,738	-	-	90,360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계획액 927억 3,8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77억 4,200만원과 매칭금 117억 2,7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1,107억 300만원 중 1,019억 2,6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2.1%)하고 87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음.

116)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산업기술개발(R&D)(2132-301)(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관)

[2023년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수행기관 ((주) 지크립토 등 40개 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최종 집행률 (F/E)
당초	수정										
92,738	92,738	92,738	92,738	92,738	91,238	7,742	11,727	110,703	101,926	8,777	92.1

주 1)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2) 전문기관 집행액(92,738백만원)과 연구수행기관이 교부받은 금액(91,238백만원)의 차액인 15억원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정산하는 보안과제에 해당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동 사업 과제 중 2024년 5월 기준, 2021년 4개 종료과제 21억 5,000만원, 2022년 7개 종료과제 47억 7,500만원은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반영이 누락되었고, 2023년 71개 종료과제 763억 5,900만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기한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1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118]

---

1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1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119)120)]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121)]

그러나 동 사업 과제 중 2021년 4개 과제 21억 5,000만원, 2022년 7개 과제 47억 7,500만원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정산이 누락된 것으로 표시되었고, 2023년 71개 과제 763억 5,900만원은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음.

[2021~2023년 미정산 과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정산누락 및 미정산 과제 수	정산대상 금액
2021년	4(정산누락)	2,150
2022년	7(정산누락)	4,775
2023년	71(미정산)	76,359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산과 관련하여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R&D 종료과제의 정산기한에 대한 범부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술하였듯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2020~2023년 연말에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정산

1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1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다수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회수금에 대한 반납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완료되어 연구비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정산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기한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122)]

또한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라 정산 완료 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22) 본 보고서 **‘3.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 정비 및 미정산 · 미반납 과제의 면밀한 관리 필요’** 참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123]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기술료 집행 법정비율 타당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1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2023년 기술료 징수금액은 총 1,238억 6,200만원이고 그 중 1,18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술료 잔액은 1,511억 6,300만원임.

[2023년 과기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말 잔액 (A)	2023년 기술료 징수액 (B)	2023년 기술료 사용액 (C)	2023년 말 잔액 (A+B-C)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46,018	123,862	118,717	151,163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료의 사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집행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 사용비율은 아래와 같음.[125]

---

1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2024년 5월 27일~)으로 편재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3개로 변경되었음. 다만, 2023회계연도 결산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 분석함.

1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정부지분기술료 사용 원칙]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제1호)	50% 이상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제2호)	15%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제3호)	**10% 이상**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제4호)	나머지 금액

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을 재구성

나. 검토의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3년 기술료 사용 내역 중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을 보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 이상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것이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비율인 10% 이상 지급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함.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23년 과기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집행 현황]

(음영표시 : 법정비율 10% 이상 준수 3개 기관)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기술료 사용								
	전문기관 납부	참여 연구원 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기타	소계
합 계	61	61,935	**2,689**	31,449	3,389	7,947	10,659	588	**118,717**
KIST	-	3,208	**-**	355	-	550	25	40	**4,178**
녹색연	-	-	**-**	-	-	-	-	-	**-**
기초연	-	288	**67**	125	-	14	74	-	**568**
천문연	-	375	**-**	93	-	24	6	-	**498**
생명연	2	1,522	**68**	580	-	69	236	97	**2,574**
KISTI	-	296	**57**	-	7	24	34	-	**418**
한의학연	-	154	**37**	399	-	85	11	-	**686**
생기연	-	4,781	**817**	1,245	1	502	470	174	**7,990**
ETRI	-	28,430	**982**	18,996	337	3,175	5,787	-	**57,707**
국보연	-	321	**64**	167	-	139	40	-	**731**
건설연	-	1,702	**58**	175	-	296	555	37	**2,823**
철도연	-	1,456	**58**	693	-	124	358	-	**2,689**
표준연	-	895	**42**	632	50	29	233	-	**1,881**
식품연	-	723	**56**	30	-	118	456	16	**1,399**
김치연	-	141	**28**	289	-	14	57	-	**529**
지자연	-	916	**123**	109	104	200	151	24	**1,627**
기계연	-	2,889	**36**	60	800	845	413	18	**5,061**
항우연	-	1,306	**-**	1	68	218	175	-	**1,768**
에너지연	-	2,253	**59**	2,981	-	345	39	-	**5,677**
전기연	-	3,282	**9**	143	-	582	246	-	**4,262**
화학연	50	2,754	**-**	3,082	50	107	320	167	**6,530**
안전연	-	135	**12**	132	-	4	6	3	**292**
원자력연	-	1,177	**-**	314	1,972	105	585	12	**4,165**
재료연	9	2,737	**79**	613	-	342	320	-	**4,100**
핵융합연	-	194	**37**	235	-	36	62	-	**564**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에 대하여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율이 10% 이상인데 기술료 금액이 큰 기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②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동 보상금 제도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규정에 따른 법정비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관 사정을 고려한 집행 등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비율인 10% 이상이 타당한지 우선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당해 규정이 합당하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비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합당하지 않다면 당해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 미납된 기술료의 징수대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12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127] 2019~2023년 5년간 기술료 예상수입은 총 5,131억 8,500만원이나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실제 징수된 기술료 수입은 4,715억 5,200만원이고, 징수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납부되지 못한 기술료는 31억 9,200만원(47건의 기술이전 계약에서 미납액 발생)임.

[2019~2023년 5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관명	당해연도 총 기술계약건수	총 기술료 예상 수입 (A)	실제 징수된 기술료 수입 (B)	징수 기일이 미도래한 기술료수입(C)	미납액 (D=A-B-C)	기술료가 미납된 계약 건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9,557	513,185	471,552	38,442	**3,192**	47

주) 2024년 6월 중순 기준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나. 검토의견

경영악화로 인해 미납된 기술료는 징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미납된 기술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7)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2024년 5월 27일~)으로 편재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3개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술료 미납건수 및 미납액은 조사되지 못함.

기술료가 미납된 47건의 기술이전계약을 살펴보면, 경영악화, 실시기업의 경영상 이유, 상용화 포기 및 지연, 기업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억 9,200만원의 기술료가 수납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47건 미납건 중 32건이 보증 및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징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기술료는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등 주관기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당해 주관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납부받는 금액이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가 없는 기술이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납된 기술료가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증 및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미납건 중에서도 경영악화 또는 기업파산 등으로 기술료가 미납된 사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제5항에 따라 담보와 관련된 권리를 지체없이 행사하는 등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128]

[기술료 미납 상세현황 및 사유]

(단위: 원)

기관명	기업명	기술료 미납액	기술료 미납건수 (총 미납액)	원래 납부기한	미납 사유	보증 및 담보 여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티*******	5,000,000	9건 (617백만원)	2019.7.15.	경영악화	X
	㈜오***	80,000,000		2019.12.31.	경영악화	X
	㈜라**사이언스테크놀로지	100,000,000		2020.5.6.	경영악화	X
	Ph**onIC Technologies	60,000,000		2020.6.30.	경영악화	X
	사단법인 한국장****재단	3,000,000		2021.10.15.	경영악화	X
	원더**오㈜	4,000,000		2021.10.15.	경영악화	X
	㈜엑**디	260,000,000		2022.4.29.	경영악화	X
	㈜칠**	35,000,000		2023.5.30.	경영악화	X
	농업**법인 플*** 주식회사	70,000,000		2023.10.7.	경영악화	X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솔**앤이에스	550,000,000	1건 (550백만원)	2023.5.31.	경영악화	X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진OOO	30,000,000	2건 (38백만원)	2019.6.6.	상용화 포기	X
	㈜다이아***	8,000,000		2022.6.30.	경영악화 및 상용화 포기	X

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기술료의 납부)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 ·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위: 원)

기관명	기업명	기술료 미납액	기술료 미납건수 (총 미납액)	원래 납부기한	미납 사유	보증 및 담보 여부
					(2025.12.31.까지 분할납부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월**크	50,000,000	15건 (582백만원)	2019.04.30.	파산 (2023.11.10.)	X
	하**밀	11,000,000		2020.03.31.	경영악화	X
	㈜**중공업	9,900,000		2020.03.31.	경영악화	X
	주식회사 **알티	66,000,000		2019.12.01.	경영악화	X
	라이프**베이션(주)	33,000,000		2020.10.30.	경영악화	X
	㈜에**씨	5,500,000		2019.12.10.	경영악화	X
	㈜토탈***센스	5,500,000		2020.01.15.	폐업 (2023.07.31.)	X
	㈜광**디아이	22,000,000		2020.8.7.	경영악화	X
	㈜프**토솔루션	27,500,000		2021.6.30.	경영악화	X
	㈜에**프에스	165,000,000		2021.8.13.	경영악화	X
	㈜에**프에스	38,500,000		2021.10.7.	경영악화	X
	㈜삼**처리	55,000,000		2022.6.30.	경영악화	X
	㈜청**앤티	56,000,000		2022.12.5.	경영악화	X
	주식회사**피피티	33,000,000		2023.1.30.	경영악화	X
	㈜이**	4,400,000		2023.11.24.	경영악화	X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원**㈜	15,400,000	2건 (59백만원)	2021.7.30. 2021.11.30.	실시기업의 경영상의 이유	O
	㈜두**보기술	44,000,000		2022.6.16.		O
세계김치연구소	㈜이**	20,000,000	2건 (30백만원)	2023.9.12.	상용화 포기	X
	㈜뜨**	10,000,000		2023.1.11.	경영악화	O
한국기계연구원	㈜아**이트	14,000,000	2건 (69백만원)	2023.4.30.	경영악화	O
	㈜노**틱스	55,000,000		2023.3.31.	경영악화	O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식회사 에이****	110,000,000	6건 (451백만원)	2022.12.31.	경영악화	O
	풍원** 주식회사	55,000,000		2023.7.21.	상용화 지연	O
	비나**주식회사	55,000,000		2023.7.31.	상용화 지연	O
	비나**주식회사	55,000,000		2023.7.31.	상용화 지연	O
	주식회사 오빌***	49,912,500		2023.10.30.	경영악화	O
	주식회사 상*	126,500,000		2023.12.29.	경영악화	O
한국전기연구원	㈜옴니**에스	30,000,000	3건 (70백만원)	2019.6.12.	경영악화	X
	㈜시**스	20,000,000		2020.12.9.	경영악화	X
	㈜대**크놀러지	20,000,000		2023.12.28.	경영악화	O
한국화학연구원	코리**FC	330,000,000	5건 (726백만원)	2020.7.31., 2021.9.30.,	경영악화	O

(단위: 원)

기관명	기업명	기술료 미납액	기술료 미납건수 (총 미납액)	원래 납부기한	미납 사유	보증 및 담보 여부
				2022.3.31., 2022.9.30.		
	에이**리아	313,500,000		2022.12.30., 2023.12.31	경영악화	X
	신산**	17,770,000		2022.5.26., 2023.5.26.	기업 파산후 법원 회생인가	O
	스퀘**	18,360,000		2022.12.31.	CNRS측에서 우리기관에 기술료 배분 미완료	X
	엔디**	46,200,000		2023.4.7., 2023.5.7	경영악화	O
계			47건 (3,192백만원)	-		

주) 2024년 5월 중순 기준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9.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용도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경상경비 등 부적정한 집행 문제

가. 개 요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개발 재투자·교육사업 및 기관발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인데, 이는 결산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보충하고 남은 금액 중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함.[12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①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 ② 교육훈련사업, ③ 기관발전사업으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2023년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연구개발사업에 1022억 9,700만원 중 877억 6,300만원 집행, 교육훈련사업에 65억 3,600만원 중 52억 6,400만원 집행, 기관발전사업에 948억 9,400만원 중 791억 7,400만원을 집행함.

[2023년도 기관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자체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사용계획	집행실적	사용계획	집행실적	사용계획	집행실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640	5,393	414	372	4,134	3,716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274	274	79	70	378	37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	2,876	1,823
한국천문연구원	1,437	1,104	100	100	300	29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38	2,518	210	210	1,326	6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351	4,454	120	93	4,104	1,319
한국한의학연구원	414	405	50	33	50	4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855	6,279	350	278	25,572	21,59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338	12,504	1,953	1,227	1,830	1,71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969	966	130	123	-	-

12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08)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에 선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자체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사용계획	집행실적	사용계획	집행실적	사용계획	집행실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430	3,327	430	393	4,976	4,96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548	4,159	200	158	4,809	3,8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487	3,834	150	150	3,561	3,494
한국식품연구원	1,094	1,051	100	84	1,317	113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400	394	40	39	218	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50	2,860	250	250	1,980	605
한국기계연구원	8,828	8,534	340	334	5,480	5,46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980	4,211	220	205	1,200	9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474	7,349	400	265	5,368	4,385
한국전기연구원	1,391	1,391	300	296	8,074	7,171
한국화학연구원	5,456	5,229	-	-	4,647	4,077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1,763	1,744	-	-	1,159	1,159
한국원자력연구원	6,603	5,337	300	272	2,210	1,967
한국재료연구원	4,377	4,156	200	187	9,325	9,29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300	290	200	125	-	-
계	102,297	87,763	6,536	5,264	94,894	79,174

주) 집행실적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 재구성

나. 검토의견

국가녹색연구소 등 13개 출연연구기관은 청사이전사업, 주차장 환경개선,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연구개발적립금의 성격과 무관한 경상적 경비에 지출 또는 지출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기관발전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발생한 현상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적립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수행되는 기관발전사업은 적립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시설 구축 및 장비 도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재원임.

그러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13개 출연연구기관은 청사이전사업, 정보보안 시스템, 주차장 환경개선, 기숙사 증축,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동 적립금의 성격과 무관한 경상적 경비에 지출 또는 지출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있음.

[집행부진 기관발전사업 및 부적절한 계획(음영표시) 현황]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사업명	사용계획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Ⅳ (시설매칭)	1,860	1,442	총사업비 조정(증액) 협의(진행중)에 따른 설계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해 이월금 발생
국가녹색기술 연구소	청사이전사업	318	318	-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연구1동 증축사업 ('22~'25)	1,966	1,313	구청 인허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 지연('23.4) 흙막이 공사 중 암석토질(경암)로 인해 공정 지연('23.9) 터파기 시 건설 및 일반폐기물 다수 발견으로 공정 지연('23.10)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23~'26)	910	510	'23.5~12 인천자유경제구역청과의 토지 임대/매입 관련 실무협약 지연으로 설계공모 중단
한국천문연구원	정보보안 시스템 강화	200	198	-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자원동 환경개선사업 (시설매칭)	701	-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을 활용하여 적립('25년 사용 승인 요청 예정, 2022년 적립금 15억 2,000만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차세대 연구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304	1,238	1억원 이상 장비 도입을 위한 NFEC 심의 지연으로 집행 부진
	본관 노후 외벽 교체 및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1,715	-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을 활용하여 적립 중('24년 사용 예정)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2,000	0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검토 및 건축공사계약의뢰 기간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지능형 정보서비스 EIP 3.0 구축 사업	1,974	756	EIP3.0 고도화 용역사업 유찰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
	청정연구소 노후구 기숙사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	1,500	741	날씨(폭설, 혹한기 등)의 영향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업체의 공사 완료 후 잔급 지급 요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	-	24년도 사용 계획 145백만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방사선동 저류조 개선	237	175	- 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입찰 진행으로 계약 시 낙찰율(87.757%)로 계약하여 비용 감소 - 기획단계에서 적용한 내부탱크 공사 방법을 개선된 공법으로 변경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사업명	사용계획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지역조직설립이자(이자)(시설매칭)	74	-	(명시성-적립)
	경북본부지역조직 설립사업(시설매칭)	992	-	(명시성-사용)
	경북본부지역조직설립이자(이자)(시설매칭)	121	-	(명시성-적립)
세계김치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조직문화 개선 사업	38	38	-
	연구소 정보보호 인프라 고도화	180	179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규탐사선(탐해3호)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1,330	-	'23년도 명시성 적립 사업(1,330백만원, 총사업비 3,420백만원)으로 '24년 2분기 전액 집행예정으로서 '24년 3월 선박 취득 시 집행(부대비용) 예정으로 선박 취득을 위한 법정 필수 소요 비용 적립
	지오키즈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	-	-	'24년도 사용 계획 230백만원
한국기계연구원	연구9동 옥외 전기실 건축공사	1,900	1,899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과학관 야외전시장 개선 사업	400	144	'24년도 정부 R&D 예산 신청 삭감으로 인해 설계/제작/설치 통합발주가 아닌 설계만 발주하여 집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 첨단연구동 건설사업	470	119	조달청 적정성검토 지연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간 소요
	기숙사 증축사업	680	184	신임기관장 취임 이후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적립금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로 사업중단
한국전기연구원	880kW급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1,625	900	ESS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 납품 수급 문제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23.4.~'23.12. → '23.4.~'24.3.)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23년 : 1,625백만원 → '23년 : 900백만원/'24년 : 725백만원) 승인 완료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사업명	사용계획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소재·부품 상생 기술 협력 센터 구축(매칭)	2,215	1,669	불가피한 설계 변경 사유(지하수위 증가에 따른 흙막이 추가) 발생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주요 건축공사 이후 투입 가능한 후속공정 관급자재 비용 중 일부 미집행액 발생
	본원 전산망 교체 비용 지원	-	-	'24년 사용 계획 700백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건물 누수보수 및 내진보강	-	-	'24년 사용 계획 800백만원
한국재료연구원	정보전산 고도화	840	809	'24년 사용 계획 260백만원

주) 집행실적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용도를 '기관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해석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관고유연구 및 교육훈련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적립금의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09)

>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그러나 주차장 환경개선, 청사이전 사업, 기숙사 증축,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일부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도 지역조직 설립자금이나 정보보안시스템 설치 등은 연구개발적립금이라는 자금의 성격과 무관한 지출로 보임.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2024.2.)'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별표 1]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따르면, 기관홍보비, 비품 구매 및 임차비, 단순 편의시설 공사 등에는 동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130]

130)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2024.2.)」(p. 201)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발전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적립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장비 및 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또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규정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0. 국회 의결 예산액 대비 수권 상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가. 개 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지결산총괄표는 수입 및 지출을 ‘수권(예산계획)’과 ‘결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수권(예산계획)’은 정부출연금・자체수입 및 전기이월액으로, 결산은 인건비・연구직접비・경상운영비・시설비・결산잉여금 및 차기이월액 등으로 구분하되, 수입과 지출 금액을 일치시켜 작성함.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수권’은 6조 1,051억원이고, 결산액은 6조 2,069억원으로 계획 대비 1,018억 1,800만원 증가함.

[출연연 수지결산총괄표의 구성]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항목	수권(A)	결산(B)	증감(B-A)	항목	수권(A)	결산(B)	증감(B-A)
정부출연금	2,246,554	2,203,439	△43,114	인건비	1,499,007	1,450,678	△48,328
				연구직접비	4,014,167	3,903,674	△110,493
자체수입	3,746,946	3,891,879	144,933	경상운영비	275,645	269,430	△6,215
				시설비	209,320	116,256	△93,064
				결산잉여금	-	195,861	195,861
전기이월액	111,654	111,654,	-	차기이월액	-	148,426	148,426
				기타(기술료 등)	107,015	122,646	15,632
계	6,105,154	6,206,972	101,818	계	6,105,154	6,206,972	101,818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나. 검토의견

국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해 기관이 이사회를 통해 정부 및 민간 수탁사업의 수주상황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수정한 ‘수권(예산계획)’ 대비 결산 사항을 심사하여 왔음.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56조에 따른 결산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액에 대한 집행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정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3년 수권(예산계획)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수립하고, 이후 연구기관은 자체적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1차례 이상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된 수권(예산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제출함.

구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을 보면, 1) 2022년 결산 결과 반영, 2)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에 따른 자체수입 변경, 3)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 변경, 4)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4) 기술료 수입 및 사용계획 현실화 등 정부수탁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들에 관한 변경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제56조에 따른 결산은 국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2023년 예산액에 대한 결산 내역을 심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31)]

그러나 국회의 심의·의결내용이 아닌 정부 및 민간 수탁사업의 수주상황 등 변경상황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이사회를 통해 ‘수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정된 예산계획에 대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회의 예산안 의결 직후 수립되는 사업계획부터 결산 시점까지 변경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상 결산심사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정한 ‘수권’에 대해 변경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31) 「국가재정법」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출연연별 2023년 수권(예산계획) 수정날짜 및 수정내용]

구분	최초 계획한 날짜	이후 수정한 날짜	수정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ETRI 부설)	2022.12.27	2023.3.24.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2022.12.27	2023.3.24.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2022.12.27	2023.3.24.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2022.12.27	2023.3.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2.12.27	2023.3.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기계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 변경 등
한국식품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기간 및 사업비 변경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천문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한의학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 변경 등

구분	최초 계획한 날짜	이후 수정한 날짜	수정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기술료 수입 및 사용계획 현실화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화학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원자력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전기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 변경 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한국재료연구원	2022.12.27	2023.3.24.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입-지출계획 변경 등
		2023.12.7.	신규 수탁사업 수주 및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자체수입 현실화 등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자료를 재구성

31.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설사업 집행부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관 고유 및 수탁사업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건립 등 시설사업을 진행하며, 2023년에는 총 2,093억 2,035만원 중 1,162억 5,561만원을 집행(집행률 55.5%)하였음.

[25개 출연연 총 시설비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수권(A)	결산(B)	집행률(B/A)
209,320,349	116,255,608	55.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시설사업 집행부진 기관은 자체적인 시설사업 집행 개선(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전년도 이월액도 집행하지 못하였음에도 2023년 예산액이 교부되어 차년도 이월액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집행할 필요가 있음.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 중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시설사업은 이하 12개 사업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설계용역 지연, 조달성 설계 적정성 검토, 부지매입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심사 등으로 인하여 2023년 예산액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한국식품연구원의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사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민간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구축 및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사업은 2022년 이월액도 집행하지 못하여 재이월되었는데, 2023년 예산액은 전액 교부되어 이월금이 증가한 상황임.[132)]

[25개 출연연 중 시설사업 집행률 60% 미만 기관의 미집행 사유]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기관명)	예 산			집행액 (B)	집행률 (B/A)	미집행액 (A-B)	미집행 사유 및 집행계획
	전 기 이월액	2023년 예산액	계 (A)				
글로벌 기숙사 리모델링 (KIST)	1	2,762	2,763	612	22.1	2,151	○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 조정에 따른 용역 착수 및 건설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 동 사업으로 이월하여 전액 집행 예정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Ⅳ (KIST)	-	4,423	4,423	597	13.5	3,826	○ 총사업비 조정(증액) 협의(진행중)에 따른 설계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 동 사업으로 이월하여 전액 집행 예정
연구1동증축사업 (기초연)	587	4,250	4,837	1,939	40.1	2,898	○ 연구1동 증축사업 공사 중 암석토질, 폐기물 등 다수 발견으로 인한 공정지연 미집행액 발생
수도권통합센터연구동 건설 (기초연)	-	1,000	1,000	8	0.8	992	○ 실무협약 지연으로 설계공모 중단 미집행액 발생
자원동 환경개선사업 (생명연)	397	5,000	5,397	647	12.0	4,750	○ 조달청 계획·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등에 따라 설계용역 완료 지연으로 설계용역 잔금 및 공사비 예산 잔액 발생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생기연)	2,956	11,615	14,571	2,185	15.0	12,386	○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계약체결 후 2024년 상반기 내 착공 예정 - 건축설계 단계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계획, 중간, 실시, 단가검토 등) 및 총사업비 조정 등 지연으로 이월금 발생 - 실시설계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조달청 계약 체결 및 착공 예정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 (식품연)	5,950	-	5,950	-	0.0	5,950	○ 경북본부 지역조직설립사업 부지매입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 - 부지매입문제 해결 및 주무부처(기획재정부)의 총사업기간·사업비 변경 승인으로 사업 정상 추진 예정(사업기간 ~26년, 사업비 830백만원 증)

13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민간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은 2024년 5월 기준 미집행액 176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기관명)	예 산			집행액 (B)	집행률 (B/A)	미집행액 (A-B)	미집행 사유 및 집행계획
	전 기 이월액	2023년 예산액	계 (A)				
탐사선 운영 (지자연)	336	1,896	2,232	1,336	59.9	896	○ 기존 탐사선 처분(탐해2호) 및 신규 탐사선 도입(탐해3호)에 따른 안정적 탐사선 운항관리 목적 예비비 확보(896백만원)
민간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 (항우연)	13,699	4,200	17,899	211	1.2	17,688	○ 환경부 인허가 협의 및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금 발생
수소에너지 첨단연구동 건설사업 (에너지연)	422	4,000	4,422	422	9.5	4,000	○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간 소요로 집행부진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구축사업 (원자력연)	4,879	1,000	5,879	-	0.0	5,879	○「원자력안전법」 제 68조의3제2항 개정에 따른 과업 추가와 허가심사 자료보완 등으로 규제기관의 인·허가 심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연 및 미집행 발생
원자력시설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사업 (원자력연)	12,133	7,000	19,133	-	0.0	19,133	

주) 집행액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를 재구성

우선 당해 시설사업들은 전년도 이월금이 대부분 존재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시설사업 집행 개선(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또한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에 2023년 시설사업 예산액을 모두 교부하고 집행잔액은 차기 이월하고 있는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년도 예산요구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필요한 출연금을 배정함으로써,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집행할 필요가 있음.[133]

133)「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을 적기에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29)

[2023년 예산액 교부날짜와 교부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기관명)	2023년 예산액	예산 교부 날짜 및 교부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출연연)
글로벌 기숙사 리모델링 (KIST)	2,762	6월26일(468백만원), 7월20일 (302백만원). 9월26일(303백만원), 10월23일(151백만원), 11월28일(258백만원), 12월20일(1,280백만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Ⅳ (KIST)	4,423	6월26일(679백만원), 7월20일(494백만원), 9월26일(494백만원), 10월23일(247백만원), 11월28일(421백만원), 12월20일(2,088백만원)
연구1동증축사업 (기초연)	4,250	4월26일(396백만원), 6월26일(585백만원), 7월20일(646백만원), 9월26일(335백만원), 10월23일(1,316백만원), 11월28일(162백만원), 12월20일(810백만원)
수도권통합센터연구동건설 (기초연)	1,000	4월26일(96백만원), 6월26일(137백만원), 7월20일(151백만원), 9월26일(78백만원), 10월23일(310백만원), 11월28일(38백만원), 12월20일(190백만원)
자원동 환경개선사업 (생명연)	5,000	4월26일(652백만원), 6월26일(700백만원), 7월20일(538백만원), 11월28일(2,998백만원), 12월20일(112백만원)
연구동환경개선사업 (생기연)	11,615	4월26일(1,096백만원), 6월26일(1,605백만원), 7월20일(1,478백만원), 9월26일(986백만원), 12월20일(6,450백만원)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 (식품연)	-	-
탐사선 운영 (지자연)	1,896	1월30일(313백만원), 2월23일(313백만원), 3월22일(313백만원), 4월26일(212백만원), 5월25일(212백만원), 6월26일(212백만원), 7월20일(111백만원), 11월28일(105백만원), 12월20일(105백만원)
민간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 (항우연)	4,200	1월31일(289백만원), 2월27일(69백만원), 3월28일(252백만원), 4월27일(488백만원), 6월28일(675백만원), 7월25일(87백만원), 9월27일(29백만원), 10월24일(188백만원), 11월29일(436백만원), 12월 22일(1,687백만원)
수소에너지 첨단연구동 건설사업(에너지연)	4,000	7월20일(362백만원), 8월24일(62백만원), 9월26일(146백만원), 11월28일(965백만원), 12월20일(2,465백만원)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구축사업 (원자력연)	1,000	11월28일(362백만원), 12월20일(638백만원)
원자력시설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사업 (원자력연)	7,000	11월28일(2,534백만원), 12월20일(4,466백만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임차 공유지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본원 외에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06개소이고 그 중 한시조직(과기회 이사회의 승인 및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설립된 사실상의 지역조직)은 47개소임.[134]

또한 47개소 한시조직은 2023년 기준 정부출연금 및 정부수탁금 약 2,208억 5,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전체 지역조직 및 한시조직 현황]

(단위: 개, 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명	지역조직 수	지역조직 전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정부수탁금	한시조직 수	한시조직에 대한 출연금 및 정부수탁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460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	344.4	-	-
한국천문연구원	7	19	7	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704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213	-	-
한국한의학연구원	2	95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5	2,635	32	약 2,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434	3	7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4	1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152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123	-	-
한국식품연구원	1	7	1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171	1	11
한국기계연구원	3	168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352.5	2	90.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316	-	-
한국전기연구원	3	402	-	-
한국화학연구원	3	158	-	-
안전성평가연구소	2	242	-	-

134)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조직”이란 연구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단위: 개, 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명	지역조직 수	지역조직 전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정부수탁금	한시조직 수	한시조직에 대한 출연금 및 정부수탁금
한국원자력연구원	2	506	-	-
한국재료연구원	3	117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	196	-	-
계	106	7,753.4	47	약 2,208.5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 중 47개 한시조직은「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제14조에 반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립된 조직이므로 운영적정성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역조직이 임의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조직 운영을 위해서는「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제7조·제10조 및 제14조[135]에 따라 지역조직 설치 이전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한 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적정성 검증을 받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함.

그러나 47개 한시조직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영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후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136]

따라서 시범사업 없이 설치되어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조직이 향후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35)「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7조(지역조직 시범사업의 운영)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타당성조사의 실시) ① 연구회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계획의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원 외 조직 설치의 제반 여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6)「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17조(한시조직에 대한 운영적정성 검토) ① 연구회는 한시조직 운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조직의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영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시 조치) ①연구기관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연구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중인 본원 외 조직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합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이하 36개 지역조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토지 대부기간 등이 만료될 때 토지 매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하 36개 지역조직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지 상에 시설물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137]에 따르면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그 이후 토지매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공유지 상에 출연연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사례]

기관명	지역조직명	설치연도	부지 유형	토지 계약 종료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2003	공유지	2053-07-23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2008	공유지	2028-04-0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1992	공유지	2036-10-20
	광주센터	1992	국유지/공유지	2037-12-05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2006	공유지	2043-11-03
한국천문연구원	KVN탐라전파천문대	2006	공유지	2027-10-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2005	공유지	2043-07-14
	전북분원	2006	공유지	필지마다 대부기간 상이 1. 2024-12-31(18,098㎡) 2. 2031-03-31(18,040㎡) 3. 2033-09-09(41,116㎡) 4. 2034-12-30(73,427㎡)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2015	공유지	2033-07-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	2015	공유지	2029-12-30
	서남기술실용화본부	2004	공유지	2024-07-31
	나노기술집적센터	2007	공유지	2024-07-31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2016	공유지	2024-07-31

1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기관명	지역조직명	설치연도	부지 유형	토지 계약 종료일
	동남기술실용화본부	2007	공유지	2037-07-31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2015	공유지	2024-04-30
	대경기술실용화본부	2012	공유지	2034-06-09
	대구뿌리기술지원센터	2015	공유지	2034-06-09
	울산기술실용화본부	2011	공유지	2031-12-26
	김제뿌리기술지원센터	2013	공유지	2025-04-30
	농기계기술지원센터	2012	공유지	2025-04-30
	강원기술실용화본부	2015	공유지	2027-12-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본부	2006	공유지	2034-05-31
	호남권연구본부	2001	공유지	2043-02-2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2009	공유지/ 자체소유	2027-12-3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2016	공유지	2031-07-21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2010	공유지	2034-07-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2004	공유지	2039-01-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2019	공유지	2025-07-31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본부	2020	공유지	2038-01-30
한국화학연구원	그린정밀화학연구센터	2012	공유지	2031-12-26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2016	공유지	2036-03-21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2008	공유지	2028-01-20
	경남분소	2012	공유지	2030-02-28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2005	공유지/ 자체소유	2033-10-31
	양성자과학연구단	2013	공유지	2039-08-07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2012	공유지	2025-12-06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방송통신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371억 4,800만원(△22.3%)이 적은 1조 1,742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48억 900만원(△18.4%)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산	31,109	31,109	22,349	△8,760	30,584	30,584	5,575	△25,009	△16,774
기금	1,373,151	1,373,151	1,416,698	43,547	1,480,802	1,480,802	1,168,663	△312,139	△248,035
총수입	1,404,260	1,404,260	1,439,047	34,787	1,511,386	1,511,386	1,174,238	△337,148	△264,809

주) 방송통신발전기금(방통위, 과기부 공동관리) 결산액은 기금 전체 금액임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0억 5,000만원(△2.3%)이 적은 2,54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300만원(0.6%)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0,758	50,526	47,980	△2,546	49,323	49,323	47,187	△2,136	△793
기 금	205,378	205,378	204,956	△422	211,396	211,396	207,482	△3,914	2,526
총지출	256,136	255,904	252,936	△2,968	260,719	260,719	254,669	△6,050	1,733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05억 8,400만원으로 888억 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5억 7,500만원이 수납(수납률 6.3%)되고, 832억 3,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0,584	30,584	-	30,584	88,807	5,575	-	83,232
합 계	30,584	30,584	-	30,584	88,807	5,575	-	83,23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94억 5,700만원으로, 이 중 471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4%)되고 1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9,323	49,323	134	±6	-	49,457	47,187	133	2,137
합 계	49,323	49,323	134	±6	-	49,457	47,187	133	2,137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4,808억 200만원으로 2조 2,828억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조 2,813억 8,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4억 3,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방송통신발전기금	1,480,802	1,480,802	2,282,819	2,281,383	-	1,435
합 계	1,480,802	1,480,802	2,282,819	2,281,383	-	1,435

주) 수납액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체 금액이며, 총계 기준으로 작성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113억 9,600만원으로, 이 중 2,074억 8,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8.1%)되고 39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방송통신발전기금	1,480,802	1,480,802	-	1,480,802	1,168,663	176	5,707
(방통위 소관)	211,396	211,396	-	211,396	207,482	-	3,914
합 계	211,396	211,396	-	211,396	207,482	-	3,914

주) 합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금액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17억 9,800만원이 증가한 89억 1,40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11억 1,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20억 6,7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3,7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000만원 증가한 4억 8,200만원으로, 이는 장기충당부채 4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유동부채 4억 5,600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7억 6,700만원이 증가한 84억 3,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6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36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9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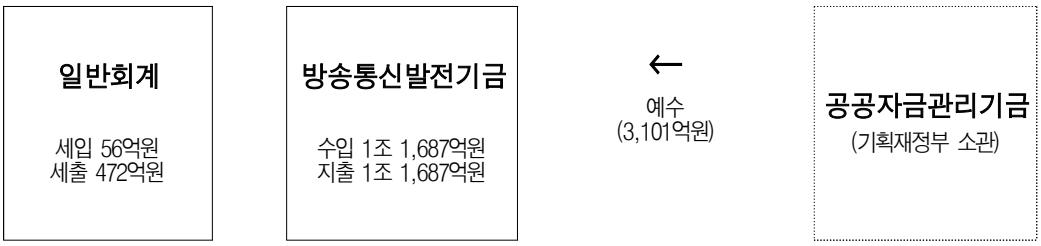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8,914	7,116	1,798	25.3
		유동자산	6,661	4,594	2,067	45.0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1,139	1,102	37	3.4
		무형자산	1,110	1,377	△267	△19.4
		기타비유동자산	4	44	△40	△90.9
	부 채		482	452	30	6.6
		유동부채	482	26	456	1,753.8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426	△426	△10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8,432	6,665	1,767	26.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6,314	17,109	△795	△4.6
	재정운영순원가		53,640	54,279	△639	△1.2
	재정운영결과		53,640	54,279	△639	△1.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결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흐름도]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관리 기금으로 지출액 1조 1,687억원 중 사업비는 1조 1,192억원이며,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비는 2,075억원임
2)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65개 세부사업에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조금 교부와 실집행 차이 등으로 인하여 2022~2023년 발생한 이자금액이 2020~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하고,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사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조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의 경우,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의 실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액 8억원을 4차례에 나누어 전액 KBS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반하므로 향후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셋째,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내역사업은 2019~2023년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총 21,009건의 개선권고를 하였으나 실제 개선된 사례는 8,610건(41.0%)에 불과함. 특히 2021년부터 3년간 개선권고 대비 조치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개선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보조사업 총괄: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절차 준수 필요

가. 개 요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총 37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094억 500만원 중 2,055억 2,400억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는 2,007억 5,200만원을 실집행하여 86억 5,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수준에서 15억 4,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음.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민간보조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세부사업 수	예산현액(A)	방송통신위원회 →보조사업자 교부액	실집행액(B)	정산잔액 (A-B)	이자발생액
37	209,405	205,524	200,752	8,653	1,547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보조사업자 수준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보면 2022~2023년이 2020~2021년에 비해 약 10배 가량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조기에 교부한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할 필요가 있음.

2020~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전체 보조사업 대상 이자발생액 현황을 보면, 2020년 1억 5,800만원, 2021년 1억 3,300만원, 2022년 11억 5,600만원, 2023년 15억 4,700만원으로 2020~2021년에 비해 2022~2023년에 발생한 이자가 크게 증가하였음.[2)3)]

2) 발생이자는 차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세입항목에 수납되고,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분

[2020~2023년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정산잔액(A-B)	이자발생액
2020년	217,251	210,885	6,366	158
2021년	209,773	202,015	7,759	133
2022년	218,720	207,750	10,970	1,156
2023년	209,405	200,752	8,653	1,547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음.

첫 번째는 예년에 비해 평균 이자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9~2021년 1.0% 내외에서 2022.5. 1.75%, 2022.8. 2.50%, 2022.11. 3.25%, 2023.5. 이후 3.50%로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변경일	2019.10.	2020.5.	2021.11.	2022.5.	2022.8.	2022.11.	2023.5.	2023.11.
기준금리	1.25	0.5	1.0	1.75	2.5	3.25	3.50	3.50

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시점보다 조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 보조금 교부비율은 2020년 60.45%, 2021년 63.3%에서 2022년 71.91%, 2023년 67.57%로 증가하였으나,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B/A)은 2020년 61.4%, 2021년 59.7%에서 2022년 50.9%, 2023년 49.8%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로 인하여 2022년의 경우 4분기 실집행률이 326.32%, 2023년의 경우 3분기 실집행률이 286.50%로 연도 하반기에 보조금 실집행률이 집중되었는데, 이처럼 2022~2023년에는 교부시점과 실집행 시점의 간극이 길어짐에 따라 이자발생액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내 집행 목표를 매년 50% 이상 설정하여, 보조금을 조기에 교부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되어 해당 회계/기금에 수납됨.

3) 당해 발생이자는 2024년 6월 기준 전액 국고에 반납완료됨.

[2020~2023년 보조금 교부액 및 실집행액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분기(a)	2분기(b)	1·2분기 (a + b)	3분기(c)	4분기(d)	합계(e)
2023	보조금 교부액(A)	40,478	98,380	138,858	15,529	51,137	205,524
	실집행액(B)	21,572	47,541	69,113	44,491	87,148	200,752
	분기별 보조금 교부비율(a/e, b/e, c/e, d/e)	19.70	47.87	**67.57**	7.56	24.88	-
	실집행률(B/A)	**53.29**	**48.32**	**49.8**	**286.50**	**170.4**	**-**
2022	보조금 교부액(A)	52,902	101,293	154,195	36,184	24,024	214,404
	실집행액(B)	23,951	54,462	78,413	48,424	78,395	205,232
	분기별 보조금 교부비율(a/e, b/e, c/e, d/e)	24.67	47.24	**71.91**	16.88	11.21	-
	실집행률(B/A)	**45.27**	**53.77**	**50.9**	**133.83**	**326.32**	**-**
2021	보조금 교부액(A)	62,370	69,104	131,474	26,860	49,367	207,700
	실집행액(B)	24,774	53,778	78,552	41,244	80,877	200,673
	분기별 보조금 교부비율(a/e, b/e, c/e, d/e)	30.03	33.27	**63.3**	12.93	23.77	-
	실집행률(B/A)	**39.72**	**77.82**	**59.7**	**153.56**	**163.83**	**-**
2020	보조금 교부액(A)	57,281	72,939	130,220	50,708	34,488	215,416
	실집행액(B)	26,910	53,099	80,009	46,716	82,767	209,492
	분기별 보조금 교부비율(a/e, b/e, c/e, d/e)	26.59	33.86	**60.45**	23.54	16.01	-
	실집행률(B/A)	**46.98**	**72.80**	**61.4**	**92.13**	**239.99**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재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목적에 적합 여부와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을 적기에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할 필요가 있음.[4)5)]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둘째, 공모를 통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가능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호의 사유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재정상 원조라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해석함이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17개 내역사업에서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사유로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17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은 보조사업자 선정을 공모(公募)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특정 기관이 수행하지 않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6]

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재정상 원조라는 측면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므로, 공모를 통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선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함이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7]

그러나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내역사업 기준 총 101개 보조사업 중 '공동제작협정제작지원' 내역사업과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내역사업을 제외한 99개 내역사업에서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9)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을 적기에 배정·집행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민간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현황]

(단위: 개)

합계	공모절차 준수	공모절차 미준수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	특정기관 지원 목적	유일무이한 기관
101	2	99	17	26	35	2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제출자료 [별첨]으로 첨부, p. 510~513)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세한 사유를 분석해보면, ①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② 타 기관 선정시 기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 예산상 비효율이 발생, ③ KBS, EBS, 국제방송교류재단, (재)국악방송,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특정기관 지원 목적, ④ 사업을 수행할 유일무이한 기관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③과 ④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법령상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①의 경우 「보조금법」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동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음.[8)9)]

예를 들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세부사업 중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내역사업은 2013년부터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오고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2023년에는 공모절차 없이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전문성 보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10)11)]

8) 사유 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p.510~513. [별첨]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함.

9) 사유 ②의 경우에도,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조금법」 상 공모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미준수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임. 예를 들어,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세부사업 중 ‘이동통신단말기 국내외 가격비교’ 내역사업은 2019년부터 기 구축한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공모를 통해 타 기관을 선정할 경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므로 현 예산 수준으로는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공모절차 없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기 구축한 시스템 활용이라는 사유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향후 필요해 보임.

10) 일반회계-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모바일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11) 2013년부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서 수행하였으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2022년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수행기관 공모(방송통신위원회 공고문 제2021-107호, 2021.12.29)를 통해 선정되어 2023년까지 사업을 수행하였음.

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재정상 원조라는 측면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나,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사유로 타 기관에 참여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당해 기관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공모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공모절차를 통해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선정될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사유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17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법」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12)]

12) 17개 내역사업은 보고서 p.30~33의 [별첨]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함.

【일반회계】

<세 입>

2.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세입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가. 개 요

‘벌금 및 과료’ 는 2010년 이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 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135억 7,500만원 중 6,600만원이 수납(수납률 0.49%)되고, 135억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13)]

‘과태료’ 는 「정보통신망법」 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방송법」 위법행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425억 3,400만원 중 45억 3,2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7%)되고, 380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14)]

‘가산금’ 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304억 200만원 중 2억 900만원이 수납(수납률 0.7%)되고, 301억 9,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15)]

[2023년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 (A)						
벌금 및 과료	6	6	13,575	66	13,509	-	0.49	6
과태료	4,259	4,259	42,534	4,532	38,002	-	10.7	4,022
가산금	98	98	30,402	209	30,193	-	0.7	14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3) 세입목명 : 벌금 및 과료(56-561)(기획조정관)

14) 세입목명 : 과태료(56-563)(기획조정관)

15) 세입목명 : 가산금(58-581)(기획조정관)

한편, 이들 3개 목명의 2023년 미수납액의 98.4%인 804억 800만원은 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수입항목별 비중은 벌금 및 과료 100.0%, 과태료 97.1%, 가산금 99.4%임.

[2023년 미수납액 중 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관련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A)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B)	비중(B/A)
벌금 및 과료	13,509	13,509	100.0
과태료	38,002	36,898	97.1
가산금	30,193	30,002	99.4
계	81,704	80,409	98.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 중 장기 미수납채권의 비율이 92.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독촉 및 압류·추심을 통해 수납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말 기준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 804억 900만원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되고 있는 장기 부실채권은 총 595억 3,100만원으로 74.0%를 차지하고 있고, 5~10년 기간으로 체납되고 있는 부실채권도 144억 5,800만원으로 18.0%임.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0년 이상 (~'13.12월)	5년~10년 ('14.1월~'18.12월)	5년 이내 ('19.1월~'23.12월)	합 계
벌금및과료	13,504	-	5	13,509
과태료	23,112	8,787	4,999	36,898
가산금	22,915	5,671	1,416	30,002
합계	59,531 (74%)	14,458 (18%)	6,420 (8%)	80,409 (1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 징수업무를 2018년 9월 방송통신사무소 신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이관받을 당시부터 미수납액이 많았고, 미수납액이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부실채권인 사유로 징

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업무 이관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임.[16)17)]

그러나 전체적인 과태료 등 수납실적이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법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크지 않고, 수납하여야 하는 과태료가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미수납된 장기채권의 지속적인 독촉 및 압류·추심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18)]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통위에 이관(2018.9.28.)한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107,529	45,264	45,726	16,53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7) 2018~2023년 최근 6년간 당해연도 발생한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해년도 징수율 (징수액/징수결정액)	58.7% (29억원/50억원)	71.3% (33억원/46억원)	74.6% (30억원/40억원)	101.8% (37.2억원/36.5억원)	98.7% (33.8억원/34.3억원)	101.5% (37.7억원/37.1억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출>

3.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후 교부할 필요

가. 개 요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은 대외방송 송출 5개 송신소(당진・김제・화성・김포 및 제주) 운영비와 송신시설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예산현액 60억 8,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9)]

[2023년도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6,089	6,089	-	±394	6,089	6,089	-	-	5,766

동 사업은 송출비와 송신시설교체비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에서 ‘송출비’ 내역사업으로 3억 9,400만원을 세목 조정하여 보조사업자인 한국방송공사(KBS)에 교부하였음. KBS는 ‘송출비’ 내역사업에 대하여 56억 8,300만원 중 56억 6,300만원을 실집행한 반면,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은 4억 600만원 중 5,0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2023년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시행주체(한국방송공사)					
	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송출비	5,289	5,289	394	5,683	5,683	5,683	5,683	5,663	-	20	107.1
송신시설 교체비	800	800	△394	406	406	406	406	50	-	356	6.25
계	6,089	6,089	±394	6,089	6,089	6,089	6,089	5,713	-	376	93.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9) 일반회계-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2171-301)(방송정책국)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의 실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액 8억원을 4차례에 나누어 전액 KBS에 교부하였음. 그러나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반하므로 향후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은 제주 안테나, 김제·화성의 송신기를 교체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내역사업에서 2023년 12월 18일 이후에 5,000만원만 실집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집행 내역은 이하 표와 같음.

[송신시설 교체비 5,000만원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	예산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실집행액
제주 안테나 교체	600	△394	406	6
김제 송신기 보강	200			35
화성 송신기 보강				9
계	800			5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KBS가 5,000만원을 실집행한 시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에 대하여 KBS에 2023년 11월 21일까지 8억원을 전액 교부하고, ‘송출비’ 내역사업으로 2023년 12월 18일에 3억 9,400만원을 세목조정한 이후였음.[20)21)]

20) 내역사업간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		금액	송출비 지원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3.12.18)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2171-301)	320-07	394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2171-301)	320-01	'23년 전기료 인상에 따라 대외방송 5개 송신소 전력요금 부족이 발생하여 세목조정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1) ‘2023년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표에 따르면,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3억 9,400만원을 세목조정하고, 4억 600만원만 KBS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8억원을 전액 KBS에 교부하였으나, 송신비 내역사업의 부족한 전기료를 보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8억원을 전액 KBS로부터 회수(2023년 12월)하고, 세목을 조정한 후 4억 600만원을 재교부하였기 때문임.

[2023년 분기별 자금배정]

(단위: 천원)

자금배정(방송통신위원회 → KBS)			
분기	배정금액		교부일
	송신비	송신시설교체비	
1분기	1,904,040	576,000	2023.2.22.
2분기	1,904,040	128,000	2023.4.25.
3분기	740,460	48,000	2023.7.24.
4분기	740,460	48,000	2023.11.21.
계	5,289,000	800,000	-
세목조정 후(±394,000)	5,683,000	406,000	2023.12.1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은 외자구매 대상사업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여야 연내 완료할 수 있으나, 제주도 송신소 보강 추진과정에서 건축공사 인허가 문제(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지정)로 2023년 7월 이후 집행이 어려워졌고, 더하여 ‘송출비’ 내역사업에서 전기료 부족이 예상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억원을 전액 KBS로부터 회수(2023.12.)하고 세목을 조정한 후 4억 600만원만 재교부(2023.12.18.)하였음.

즉,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했어야 하나, 집행이 어려워진 7월 이후에도 KBS에 잔여 보조금을 모두 교부하였고, 이는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22)]

따라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22)「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4.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 통신분쟁조정 결정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가. 개 요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내역사업은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과 통신분쟁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예산현액 6억 8,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23)]

[2023년도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758	2,758	-	-	2,758	2,758	-	-	2,499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681	681	-	-	681	681	-	-	562

통신분쟁조정제도란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도임.[24)]

---

23) 일반회계-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24)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동 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신분쟁조정제도가 2019년 6월 출범한 이후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신청건 4,216건 중 3,869건이 처리 완료되고, 347건이 처리 중임.

[통신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처리완료						진행중	전체 신청건수
	조정 전 합의	취하 등 기타	조정안 마련	조정안 수락	조정안 불수락	계		
2019년	63	20	72	33	39	155	-	155
2020년	149	32	391	98	293	572	-	572
2021년	374	298	496	185	311	1,168	2	1,170
2022년	337	370	351	148	203	1,058	2	1,060
2023년	270	475	171	76	95	916	343	1,259
계	1,193	1,195	1,481	540	941	**3,869**	**347**	**4,21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조정안이 마련된 171건의 통신분쟁조정 사건 중 109건(63.7%)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못했는데,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5제6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25)]

그러나 2020년 조정안이 마련된 391건 중 191건(48.8%)이, 2021년 496건 중 153건(30.8%)이, 2022년 351건 중 127건(36.2%)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2023년에도 171건 중 109건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비율이 63.7%로써

25)「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분쟁이 처리되는 평균기간을 보면, 2020년 95.6일에서 2021년 78.8일로 소폭 짧아졌으나, 2022년 82.4일, 2023년 106.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20~2023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연도	처리 유형	30일 이내(건)	31~60일(건)	61~90일(건)	91일 이상(건)	합계(건)	최댓값(일)	평균(일)
2020	조정 전 합의	49	45	34	21	149	204	55.8
	취하 등 기타	8	7	13	4	32	171	59.5
	조정안 마련	1	67	132	**191**	**391**	217	95.6
	조정안 수락	0	19	29	50	98	196	97.2
	조정안 불수락	1	48	103	141	293	217	95.1
	전체	58	119	179	216	572	-	-
2021	조정 전 합의	126	156	71	21	374	185	45.4
	취하 등 기타	121	75	61	41	298	392	50.0
	조정안 마련	13	140	190	**153**	**496**	392	78.8
	조정안 수락	8	57	65	55	185	203	76.1
	조정안 불수락	5	83	125	98	311	199	80.4
	전체	260	371	322	215	1,168	-	-
2022	조정 전 합의	108	137	64	28	337	234	46.7
	취하 등 기타	162	78	74	56	370	270	50.0
	조정안 마련	14	65	145	**127**	**351**	335	82.4
	조정안 수락	7	32	59	50	148	287	81.8
	조정안 불수락	7	33	86	77	203	335	82.8
	전체	284	280	283	211	1,058	-	-
2023	조정 전 합의	89	89	66	26	270	163	49.8
	취하 등 기타	227	74	82	92	475	252	51.7
	조정안 마련	5	19	38	**109**	**171**	268	106.9
	조정안 수락	5	10	16	45	76	268	106.2
	조정안 불수락	0	9	22	64	95	191	107.6
	전체	321	182	186	227	916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이후 위원 수 증원(10명→30명) 및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고, 2024년 6월 기준 위원 수가 16명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26)27)]

다만, 2023년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비율 및 처리 평균기간이 최근 4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정기한 초과 처리비율 개선 등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28)]

---

26)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7) 아울러, 2023년에 법정기한 초과 처리비율 등이 특히 높았던 것은, ① 2023년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00여건 급증하였고, ② 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만료 후 3기 구성까지 약 2개월의 공백기(2023.6.12.~8.12.)로 인해 조정안 마련이 불가능했으며, ③ 2024.2월에 위원 6인이 추가 위촉되어, 위원수 증원에 따른 효과가 2023년도에 조정사건 처리 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8)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조정안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5.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개선권고 대비 실제 개선조치 비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내역사업은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예산현액 5억 1,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29)]

[2023년도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758	2,758	-	-	2,758	2,758	-	-	2,499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519	519	-	-	519	519	-	-	499

동 사업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앱마켓사업자 등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30)]

참고로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은 앱마켓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 표와 같음.[31)]

29) 일반회계-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모바일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30) 개선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1)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2) 결제완료 후 고지의무 부과, 3) 결제절차 개시 이후 철회권 보장, 4) 유료정보 표기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권고임.

31) 동 가이드라인은 통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하며 가장 최근 재검토 날짜는 2022년임.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함.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제4조(기본 고지사항)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 을 이용자가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고지
	다운로드 이전에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콘텐츠의 종류 및 특징을 알기 쉽게 고지
제5조(유료정보 표기)	모바일콘텐츠가 유료인 경우 모바일콘텐츠의 대가, 기간 등을 표기
제6조(결제절차 개시 이후 철회권 보장)	결제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철회권 보장
제7조(결제완료 후 고지의무)	모바일콘텐츠 대가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는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
제8조(미인지 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
	내용 또는 결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동의 의무화
제9조(이용자 보호 및 권리구제)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용자가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고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고지

자료: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나. 검토의견

2019~2023년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총 21,009건의 개선권고를 하였으나 실제 개선된 사례는 8,610건(41.0%)에 불과함. 특히 2021년부터 3년간 개선권고 대비 조치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개선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19~2023년 개선권고가 실제 개선조치로 이어진 비율을 보면, 2019년은 29.8%, 2020년 52.5%, 2021년 40.0%, 2022년 45.0%, 2023년 48.0%로 최근 5년 간 저조한 개선 비율을 보이고 있음.

[2019~2023년 개선권고 대비 개선조치 비율]

(단위: 건, %)

구 분	모니터링	개선권고 (A)	개선조치 (B)	비율 (B/A)
2019년	13,247	6,191	1,848	29.8
2020년	12,354	2,279	1,198	52.5
2021년	12,988	4,413	1,794	40.0
2022년	13,727	4,003	1,793	45.0
2023년	14,982	4,123	1,977	48.0
계	**67,298**	**21,009**	**8,610**	**41.0**

주) 2018년까지는 개선권고 후 결제방식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제11조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앱마켓사업자가 이에 자율적으로 협조하여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 피해 범위 및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어, 개선권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32)33)]

그러나 개선 권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사업의 효과성도 미흡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내용 안내강화 등 개선조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앱마켓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되었으며, 가장 최근 재검토 날짜는 2022년임.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함.

33)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제1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모니터링 기관은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의 위반행위의 확인 및 조치 등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② 앱마켓사업자, 개발자 및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준수 등 자율규제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피해 범위 및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시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의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6.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ISP 수립 없이 정보화사업 추진 부적정 및 공개된 AI 데이터 적극 활용 필요

가. 개 요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신규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음성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음성을 자막 및 수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예산현액 1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34)]

[2023년도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5,718	15,718	-	-	15,718	15,718	-	-	20,176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700	1,700	-	-	1,700	1,700	-	-	1,700

나. 검토의견

첫째, ① 음성-자막 변환시스템과 ② 자막-수어 변환시스템은 정보화사업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없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ISP 수립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

34) 방송통신발전기금-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3132-308)(방송기반국)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소요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체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함임.

그러나 두 시스템의 초기 시스템 구축단계부터 고도화 이후 유지 및 관리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정보화사업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없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어 절차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35]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및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H/W, S/W 초기 구축	지원기기 확대(IOS앱)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브라우저 앱 개발 음성인식 엔진 고도화	브라우저 앱 고도화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화자구분 등 추가)	브라우저 앱 고도화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화자구분 고도화)	서비스 품질 확보 음성-자막 앱 고도화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서비스 제공 음성-자막 앱 유지보수 음성인식 성능 최신화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	-	-	H/W S/W 초기 구축앱 개발(서버연동)	고도화(일상언어) 앱고도화 (남/여 선택) AI 수어번역 고도화	고도화 (뉴스/정보장르) 앱고도화 및 대화면앱 (신규) AI 수어번역 고도화	공개 시범서비스 가능한 수어 어휘 및 번역 품질 확보 앱/AI 고도화 학습데이터/수어단어 추가제작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4월 국민 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따라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ISP 수립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ISP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르면, 단순시스템 도입 및 단순 기능개발, 기존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하는 사업 등 7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반드시 ISP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유는 ISP 수립 제외 사유가 아니고[36], 이처럼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아닌 세부사업 안의 내역사업으로 포함시켜 ISP 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3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36)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서 명시한 ISP 수립 제외 가능 유형 〉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AI hub에 2023년까지 약 700종을 공개하고 있음.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데이터 중 음성-자막 관련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 간 연계를 통해 기 구축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예정되어 있는 데이터 신규 구축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2023년까지 약 700종의 데이터를 AI hub에 공개하였음. 그 중에서 이하 18개 데이터는 동 사업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음성-자막 관련 데이터임.

[과기부 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 중 음성 관련 데이터(일부)]

구분	분야	유형	데이터명
1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한국어 음성
2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한국인 대화음성
3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자유대화 음성(일반남여)
4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자유대화 음성(노인남여)
5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자유대화 음성(소아남여, 유아 등 혼합)
6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명령어 음성(소아,유아)
7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차량 내 대화 및 명령어 음성
8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한국어 강의 음성
9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회의 음성
10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고객 응대 음성
11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상담 음성
12	재난안전환경	오디오,텍스트	위급상황 음성/음향
13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저음질 전화망 음성인식 데이터
14	헬스케어	오디오,텍스트	의료 분야 음성 데이터
15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방송콘텐츠 한국어-유럽어 통·번역 음성 데이터
16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방송콘텐츠 한국어-아시아어 통·번역 음성 데이터
17	헬스케어	오디오,텍스트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진단 음성데이터
18	한국어	오디오,텍스트	감성 및 발화스타일 동시 고려 음성합성 데이터

주) 음영표시한 데이터는 동 사업에 활용되었음.(2024년 6월 기준)
자료 :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NIA) 및 AI hub

① (단순시스템 도입)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
② (단순 기능개발)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사업,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③ (운영·유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사업
④ (단순물품 구매) 사무기기(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장비구매 위주의 사업
⑤ (시설 구축) 정보시스템이 아닌 단순시설 또는 특수장비를 도입(구매)하는 사업
⑥ (DB구축) 시스템 구축없이 인력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온라인)화하는 사업
⑦ (민간투자형 SW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ISP 기본 구성항목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단, 정부고시형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ISP 또는 ISMP를 수립하여야 함
•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2024년 이후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은 새로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상술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위 데이터를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0회계연도 결산 당시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시스템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음.[37]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콘텐츠 대화체 음성인식 데이터’ 등 7개 건에 대해서만 활용(2023년 6월)하여 이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는데, 상술한 데이터 중 방송콘텐츠 관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38]

37) 2023년 기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38)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타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연계할 것

[별 첨]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민간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현황]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수행기관	공모 여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역량강화보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인터넷불편광고금지행위 모니터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통신분쟁조정제도운영을통한 이용자피해구제강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실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이동통신단말기국내외가격비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시스템 기구축
□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			
- 위치정보의안전한활용지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한국방송공사대외방송송출지원			
- 송출비지원	KBS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송신시설교체비지원	KBS	X	
□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인프라개선			
- 방송제작시스템	EBS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네트워크시스템	EBS	X	
□ 공익채널운영실적모니터링및평가			
- 공익 장애인 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공익 장애인 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시청자미디어재단	X	
□ 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			
- 재난방송수신환경개선	한국전파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유일무이한 기관
□ EBS프로그램제작지원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EBS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청소년 프로그램		X	
- 평생교육 프로그램		X	
- 2TV 프로그램		X	
-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X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 TV프로그램제작	국제방송교류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영어FM 프로그램 제작		X	
- 위성방송사업		X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수행기관	공모 여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
- 방송시설운영		X	
□ 국악방송지원			
- 정규프로그램 제작	(재)국악방송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특집프로그램 제작		X	
-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		X	
- 프로그램 제작지원		X	
- 한국음악의 명곡 명연주 제작		X	
-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X	
□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KBS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X	
□ 지역,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 프로그램 제작지원	한국전파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X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X	
□ 미디어다양성증진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유일무이한 기관
- 시청점유율 조사		X	
-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X	
- 시청점유율 조사 분석 및 검증 등		X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유일무이한 기관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시스템 기구축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X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X	
- 음성인식기반자막·수어방송시스템 개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X	
-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접근 환경 조성	시청자미디어재단	X	
□ 언론중재위원회지원			
- 언론중재위원회지원(인건비)	언론중재위원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언론중재위원회지원(경상비)		X	
- 언론중재위원회지원(사업비)		X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인건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경상비)		X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사업비-방송심의활동)		X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사업비-통신심의활동)		X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			
-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X	
□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수행기관	공모 여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
-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시청자미디어재단	X	
□ 방송시장상생환경조성			
- 외주제작 실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X	
□ 인터넷환경의신뢰도기반조성			
- 기술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 시스템 기구축
-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X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시청자평가원활동지원		X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시청자권익증진 사업		X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X	
-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X	
-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마련(민간경상보조)		X	
-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마련(민간자본보조)		X	
□ 공동체라디오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 프로그램제작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방송평가기반조성			
- 방송내용 편성 운영영역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KI 시청자평가지수 조사		X	
-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X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X	
-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		X	
□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 공익광고제작및확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시스템 기구축
- 광고정보센터운영및관리	한국광고총연합회	X	
□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 제작지원 및 컨설팅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유일무이한 기관
□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 방송콘텐츠가치정보분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방송통계통합정보제공체계구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	
□ 지역밀착형방송광고활성화기반구축			
-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유일무이한 기관
-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지원		X	
-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X	
□ OTT산업경쟁력 강화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수행기관	공모 여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
- OTT 해외진출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 방송 국제기구 공동 협력사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	「보조금법」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유일무이한 기관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X	
- 남북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X	
-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X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X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X	
- 공동제작협정제작지원	한국전파진흥협회	O	-
□ 재난방송운영지원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KBS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특정기관 지원 목적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시청자미디어재단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한국전파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 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 지원체계강화(정보화)			
- 위치정보활용플랫폼안정적운영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정보화)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O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시스템 기구축
□ 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기반조성			
-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유일무이한 기관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X	
□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 부가통신사업자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유일무이한 기관
- DNA성능평가제도도입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 유일무이한 기관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X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 고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02억 8,800만원(6.5%)이 많은 3,319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 5,200만원(10.7%)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677	1,677	2,951	1,274	1,771	1,771	2,130	359	△821
기 금	285,427	285,427	296,851	11,424	309,895	309,895	329,824	19,929	32,973
총수입	287,104	287,104	299,802	12,698	311,666	311,666	331,954	20,288	32,152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01억 8,900만원(4.5%)이 많은 4,733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억 7,300만원(4.8%)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56,098	155,991	154,930	△1,061	143,270	143,270	143,530	260	△11,400
기 금	285,427	285,427	296,851	11,424	309,895	309,895	329,824	19,929	32,973
총지출	441,525	441,418	451,781	10,363	453,165	453,165	473,354	20,189	21,573

주) 2023회계연도 예산에는 예비비 2,505백만원 불포함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7억 7,100만원으로 22억 6,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1억 3,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9%)되고 5,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8,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771	1,771	-	1,771	2,267	2,130	56	82
합 계	1,771	1,771	-	1,771	2,267	2,130	56	8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57억 7,500만원으로, 이 중 1,435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22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43,270	143,270	-	-	2,505	145,775	143,530	-	2,245
합 계	143,270	143,270	-	-	2,505	145,775	143,530	-	2,24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098억 9,500만원으로 3,303억 1,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298억 2,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억 4,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3억 4,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09,895	309,895	330,311	329,824	147	340
합 계	309,895	309,895	330,311	329,824	147	34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099억 4,400만원으로, 이 중 3,298억 2,4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6.4%)되고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09,895	309,895	49	309,944	329,824	39	58
합 계	309,895	309,895	49	309,944	329,824	39	5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283억 9,700만원이 증가한 2,137억 5,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52억 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734억 6,1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0억 1,000만원 증가한 429억 6,0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60억 3,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2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707억 9,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41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261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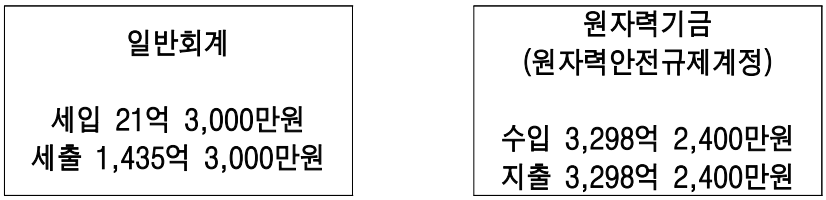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13,754	185,357	28,397	15.3
		유동자산	82,565	127,766	△45,201	△35.4
		투자자산	128,337	54,876	73,461	133.9
		일반유형자산	531	619	△88	△14.2
		무형자산	624	586	38	6.5
		기타비유동자산	1,697	1,510	187	12.4
	부 채		42,960	36,950	6,010	16.3
		유동부채	6,199	6,225	△26	△0.4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36,761	30,725	6,036	19.6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70,794	148,407	22,387	15.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41,841	244,076	△2,235	△0.9
	재정운영순원가		260,024	263,225	△3,201	△1.2
	재정운영결과		126,128	108,881	17,247	15.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반회계 1개 회계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신규 원전에 대한 심·검사 증가에 대해 최신기술 기준을 활용한 안전규제 강화, 국내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현장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및 방사선 안전환경 조성 등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45개의 세부사업에서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세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타재산이자수입을 분리하여 별도로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감시기 설치·운영’사업의 경우 재활용고철사업자의 조치결과서 제출에 대한 연기요청이 사유서의 제출 없이 유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치 결과서 제출 연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비 운영지원(R&D)’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리 미흡으로 장비가 도입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추후 장비 개발 연구개발과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구분 계상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법정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의 정산 잔액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0억 6,600만원 중 20억 5,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2)]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1,677	1,677	2,066	2,057	-	9	99.6	1,746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재산이자수입을 별도로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 수납되는 비목이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수입과 같이 기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 등이 수납되는 비목임.

2)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국가재정법」 제21조는 세입세출예산을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을 다른 관·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2023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

관		항		목	
11	재산수입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폐지) 기타재산 이자수입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12	경상 이전수입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593 594 595 596	법정부담금 민간출연금 설비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자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원이 다른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비목에 해당하는 수입(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의 규모가 작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임.

[2019~2023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및 집행잔액 이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1,704	1,559	1,472	2,691	2,057
기타경상이전 수입 수납액 중 집행잔액 이자	65	48	81	84	15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3)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그러나「국가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세입원별로 세입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작은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중앙행정기관들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음.[4)]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구분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100만원을 수납하였음.

<세 출>

2.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 조치결과 연기 시 안전지침 준수 필요

가. 개 요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은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유통・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5억 5,400만원 중 34억 7,800만원이 1차 집행되고, 33억 8,400만원이 최종집행(집행률 95.2%) 되었으며 7,600만원이 불용됨.[5)]

[2023년도 감시기·설치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6,507	6,507	-	-	6,507	6,431	-	76	5,980
감시기 설치・운영	3,554	3,554	-	-	3,554	3,478 [3,384]	-	76	3,598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6)]과 및 동법 시행령[7)]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출연을 통해 감시기 실태조사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5) 일반회계-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1402-401)(방사선방재국)

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1.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2.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

나. 검토의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상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조치결과 제출 연기를 원하는 경우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유선으로 연기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생활방사선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함.[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이하 '지침'이라함)에 따르면,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 '검출 → 유의물질 보고 → 원안위 조치 요구 → 사업자 조치 계획서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치계획 승인 → 사업자 조치 → 사업자 조치결과서 제출'로 조치가 이루어짐.

지침은 재활용고철취급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조치결과서 제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당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의물질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의물질의 보관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주요 내용]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기한]

① 감시기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계획 승인에 따른 이행 후, 유의물질 조치결과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유의물질 조치결과서는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불가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조치결과 보고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유의물질 조치 예상 완료 기간

※ 유의물질 조치는 **조치계획 승인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감시기 운영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안위에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을 바탕으로 재구성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 · 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그런데 지침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조치결과서 제출을 연기하는 경우에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으로 연기 요청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023년 재활용고철취급자 조치결과 연기 현황]

(2024년 7월 기준)

검출 일자	물품명	핵종	유의물질 보고일*	원안위 조치 요구일	사업자 조치 계획서 제출일	원안위 조치계획 승인일	사업자 조치결과 제출일	특이사항 (연기 요청 등)
23.02.09	박스형 고철	Cs-137	23.02.14	23.04.13	23.04.25	23.05.16	23.11.30	유선상으로 연기 요청
23.04.18	수처리 필터	Ra-226, Th-232	23.05.08	23.08.18	24.07.18	매립지 선정에 시간 소요로 조치계획서 제출 연기 (유선상으로 연기 요청)		
23.07.01	비정형 고철	Th-232	23.07.04	23.09.08	23.09.20	23.11.30	24.07.03	유선상으로 연기 요청

* 유의물질 검출 보고 접수 업무를 KINS에 위탁하여 사업주가 KINS에 보고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활용고철사업자들에게 연기 사유서 작성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유선으로 연기 요청을 하였더라도 조치에 대한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지침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8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9] 효과적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임의로 다르게 조치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치결과 제출 연기를 원하는 경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에 따라 연기 사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0]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 · 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0) 현재 지침상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 업무의 경우 ① 감시기 운영 담당자 명단, ② 재활용고철 감시기 일일점검 기록지, ③ 재활용고철 감시기 유의물질 보고서, ④ 매립 전 방사선량률 측정 관리 등의 양식이 있으나 연기사유서 양식은 없으므로 양식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연구개발과제 관리 방안 개선 필요

가. 개 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연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11억 5,000만원 중 294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6%)되고 16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관련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8,645	28,645	-	-	2,505	31,150	29,483	-	1,667	27,998
장비·시스템 구축비	2,000	2,000	-	-	1,195	3,195	2,105 [2,075]	-	1,090	800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불용액 16억 6,700만원 중 10억 9,000만원은 주변국 핵활동 탐지 사업 수행을 위한 방사성제논탐지장비의 미구축으로 인해 장비·시스템 구축비가 미교부 되어 발생함.

나. 검토의견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미흡으로 계획한 제논탐지 장비가 도입되지 못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연구개발 과제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방사성제논탐지장비 도입을 위해 장비 시스템 구축비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개발 중인 장비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임[12)].

11) 일반회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031-401)(안전정책국)

12) 제논(Xe)은 핵실험 중 발생하지만 자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질임. 제논 방사성 동위원소의 비율을 확인하면 핵폭탄 제조 방식이나 기술에 관한 정보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장비가 도입되지 못하고, 계획한 제논탐지장비 구축비 예산 10억 9,000만원이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있었음.

2023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음.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방사선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활동 탐지 기술'(출연금 23억원) 연구협약을 맺고 제논탐지장비를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작하였으나, 해외의 부품과 핵심기술을 모방 제작하여 기술분쟁 우려로 제논탐지장비를 미배치하는 것으로 2018년 1월에 결정하였음.

② 그런데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8년 2월 '100% 국산화 개발, 핵실험탐지측정소 설치·운영'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구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 5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8년 5월부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제논탐지장비의 운영·활용 등을 심의하지 않고 제논탐지장비를 방치하였으며, 유지보수 점검을 미이행하였음.[13)]

위와 같은 사유로 당초 계획하였던 국내기술로 개발된 방사성제논탐지장비 도입이 어려워졌음. 세 차례의 입찰공고에도 모두 무응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장비 도입 비용에 대해 미교부 및 불용조치를 함.

[202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중 장비시스템 구축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장비시스템 구축비	2,000	2,000	-	-	1,195	3,195	2,105 [2,075]	3,195	2,105 [2,075]	-	1,090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2,000	2,000	-	-	1,195	3,195	2,105 [2,075]	3,195	2,105 [2,075]	-	1,090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① 계획했던 장비와 같은 성능을 가진 유사장비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도입비용이 약 22억원으로 가용 예산을 초과하였고, ②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R&D사업의 과제 평가 및 진도 점검을 진행하였으나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임.

1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논탐지장비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부적정한 연구개발의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점검 등 연구개발 진도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